2024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4.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2-225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13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1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2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8

1. 보건복지부 일반 현황 ····· 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12

Ⅲ. 세부 추진계획 ····· 22

◈ 전략목표 Ⅰ ····· 29

• 성과목표 Ⅰ-1 ····· 32

∘ 관리과제

[1]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Ⅰ-1-①, 보건의료정책과) 36
[2]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Ⅰ-1-②, 의료인력정책과) ····· 41
[3]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Ⅰ-1-③, 의료자원정책과) ····· 47
[4]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Ⅰ-1-④, 의료기관정책과) ····· 51
[5]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Ⅰ-1-⑤, 약무정책과) ····· 57
[6]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 인력 양성(Ⅰ-1-⑥, 간호정책과) ····· 63

• 성과목표 Ⅰ-2 ····· 68

∘ 관리과제

[1]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Ⅰ-2-①, 보험정책과) ····· 72
[2]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Ⅰ-2-②, 보험급여과) ····· 80
[3]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Ⅰ-2-③, 보험약제과) ····· 86
[4]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Ⅰ-2-④, 보험평가과) ····· 90
[5]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Ⅰ-2-⑤, 필수의료총괄과) ····· 95
[6]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Ⅰ-2-⑥, 지역의료정책과) ····· 101

• 성과목표 Ⅰ-3 ····· 105

∘ 관리과제

[1]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Ⅰ-3-①, 질병정책과) ····· 112
[2]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Ⅰ-3-②, 공공의료과) ····· 118
[3]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Ⅰ-3-③, 응급의료과) ····· 125
[4]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Ⅰ-3-④, 재난의료대응과) ····· 130

5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Ⅰ-3-⑤, 생명윤리정책과) ····· 135
6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Ⅰ-3-⑥, 혈액장기정책과) ····· 139
• 성과목표 Ⅰ-4 ····· 145
∘ 관리과제
1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Ⅰ-4-①, 건강증진과) ····· 149
2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Ⅰ-4-②, 건강정책과) ····· 154
3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Ⅰ-4-③, 건강정책과) ····· 158
4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Ⅰ-4-④, 구강정책과) ····· 161
• 성과목표 Ⅰ-5 ····· 166
∘ 관리과제
1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Ⅰ-5-①, 정신건강정책과) ····· 169
2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Ⅰ-5-②, 정신건강관리과) ····· 175
3 생명존중문화의 확산(Ⅰ-5-③, 자살예방정책과) ····· 181
• 성과목표 Ⅰ-6 ····· 186
∘ 관리과제
1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Ⅰ-6-①, 한의약정책과) ····· 191
2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Ⅰ-6-②, 한의약산업과) ····· 196

◈ 전략목표 Ⅱ ····· 201
• 성과목표 Ⅱ-1 ····· 212
∘ 관리과제
1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Ⅱ-1-①, 복지정책과) ····· 215
2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Ⅱ-1-②, 기초생활보장과) ····· 220
3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Ⅱ-1-③, 자립지원과) ····· 223
4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Ⅱ-1-④, 기초의료보장과) ····· 229
• 성과목표 Ⅱ-2 ····· 235
∘ 관리과제
1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Ⅱ-2-①, 지역복지과) ····· 238
2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Ⅱ-2-②, 급여기준과) ····· 244
3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Ⅱ-2-③, 복지정보기획과) ····· 249
4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Ⅱ-2-④, 복지정보운영과) ····· 253
• 성과목표 Ⅱ-3 ····· 257
∘ 관리과제
1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Ⅱ-5-①, 국민연금정책과) 261
2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Ⅱ-5-②, 국민연금재정과) ···· 270
3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Ⅱ-5-③, 기초연금과) ····· 273

• 성과목표 Ⅱ-4 ····· 277
∘ 관리과제
1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Ⅱ-4-①, 장애인정책과) ····· 281
2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Ⅱ-4-②, 장애인권익지원과) ····· 287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Ⅱ-4-③, 장애인자립기반과) ····· 292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체계 구축(Ⅱ-4-④, 장애인서비스과) · 298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Ⅱ-4-⑤, 장애인건강과) ····· 303
• 성과목표 Ⅱ-5 ····· 309
∘ 관리과제
1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Ⅱ-5-①, 사회보장총괄과) ····· 312
2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Ⅱ-5-②, 사회보장조정과) ····· 316
3 사회보장제도 평가 (Ⅱ-5-③, 사회보장평가과) ····· 320

◈ 전략목표 Ⅲ ····· 326
• 성과목표 Ⅲ-1 ····· 336
∘ 관리과제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Ⅲ-1-①, 인구정책총괄과) ····· 338
2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Ⅲ-1-②, 인구정책총괄과) ····· 343
3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Ⅲ-1-③, 청년정책팀) · 346
4 임신·출산 건강 지원 (Ⅲ-1-③, 출산정책과) ····· 351
• 성과목표 Ⅲ-2 ····· 358
∘ 관리과제
1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Ⅲ-2-①, 아동정책과) ····· 361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Ⅲ-2-②, 아동보호자립과) ····· 368
3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Ⅲ-2-③, 아동학대대응과) ····· 376
• 성과목표 Ⅲ-3 ····· 381
∘ 관리과제
1 취약 노인 돌봄 강화(Ⅲ-3-①, 노인정책과) ····· 387
2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Ⅲ-3-②, 노인지원과) ····· 394
3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Ⅲ-3-③, 요양보험제도과) ····· 399
4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Ⅲ-3-④, 요양보험운영과) ····· 403
5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Ⅲ-3-⑤, 노인건강과) ····· 409
• 성과목표 Ⅲ-4 ····· 414
∘ 관리과제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Ⅲ-4-①, 보육사업기획과) ····· 419
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Ⅲ-4-②, 보육기반과) ····· 425
3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Ⅲ-4-③, 보육정책과) ····· 431
• 성과목표 Ⅲ-5 ····· 436
∘ 관리과제

[1]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Ⅰ-3-①, 사회서비스정책과) … 439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Ⅰ-3-②, 사회서비스사업과) …… 446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화(Ⅰ-3-③, 사회서비스자원과) …… 451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Ⅰ-3-④,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455

◈ 전략목표 Ⅳ …… 460
• 성과목표 Ⅳ-1 …… 468
∘ 관리과제
[1]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Ⅳ-1-①, 보건산업정책과) …… 472
[2]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Ⅳ-1-②,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478
[3]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Ⅳ-1-③, 보건산업진흥과) …… 484
[4]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Ⅳ-1-④,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491
• 성과목표 Ⅳ-2 …… 497
∘ 관리과제
[1]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Ⅳ-2-①, 의료정보정책과) …… 501
[2]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Ⅳ-2-②,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507
[3]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Ⅳ-2-③, 재생의료정책과) …… 513

Ⅳ. 협업과제 …… 519

Ⅴ. 환류 등 관련계획 …… 526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52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528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 529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 552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약자복지 강화) 최우선 복지정책**으로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 범정부 사회보장 **전략·비전 및 5년간 추진계획** 수립

○ **(취약계층) 생계급여**(+4만명)**·긴급복지**(+3만건)**·재난적의료비**(+1.4만명) 확대, 기초연금(+1.6만원)·장애수당(+2만원) 인상 등 **안전망 대폭 강화**

○ **(新 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수당 +5만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10만명, 2.1만명) 등 **新 복지수요 충족기반 확충**

○ **(위기가구) 위기정보** 확대(39→44종), **휴대폰 번호** 연계 등 발굴체계 고도화

○ **(전략)**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로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 **(의료개혁 착수)** 생명과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 본격 시동**

○ **(필수의료) 중증·응급·소아의료** 대책('23.1~) 및 **건강보험** 재정기반 정비('23.2), **의사인력 확대** 논의 본격 착수('23.1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23.6)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수립('23.2), **R&D 예산** 대폭 확대(13%↑, '24) 및 종합·체계적 지원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23.12)

□ **(미래 대비)**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

○ **(국민연금)** 청년·근로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소통**, 치밀한 연구·분석에 근거한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23.10)

○ **(양육) 부모급여** 도입(최대 70만원) 및 **다둥이지원** 인상(태아당 +100만원)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 의료개혁 4대 과제

□ 의료인력 확충

○ **(의대 정원 확대) '35년 수급** 고려,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3,058 → 5,058명),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 **(교육·수련 혁신)** 의학 **교육 질 제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 개편, 연속근무**(36시간 상한) **축소**, 수련비용 지원

*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 실습여건 개선 지원 등

○ **(운영 혁신) 전문의 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공유형 진료** 활성화

○ **(면허관리 선진화) 환자 안전과 의료질 확보** 위한 면허관리체계 개선

* 영국, 캐나다 등 사례 : 2년간 필수·일차의료 임상수련 연계 개원면허 부여, 주기적 면허 갱신

□ 지역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 **(전달체계·네트워크) 대학병원 중증·응급 진료 강화**, 필수의료 특화 **2차 민간·공공병원 집중 육성,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확산

○ **(인력·재정 등 지원)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 교육 및 **지역 수련**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 등 추진, **지역수가 확대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병상수급 기본시책 이행**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부담경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無과실 국가보상** 강화

○ **(환자 권리구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감정 기회** 보장, **공제회** 설립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정당한 필수의료 보상)** '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 저평가 항목 **상대가치 점수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사후 보상 및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 다변화**

○ **(비급여 관리)** 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예 : 도수치료 등) **금지, 실손보험 개선**(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등), **미용 의료 제도 개선** 추진

2 의료기반 강화

□ (건강보험) 필수의료 및 지속가능성 위한 구조개혁

○ **(필수의료 보장) 중증·응급·소아** 지원 강화, **만성·정신질환** 관리, **생애말기의료**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급여제한 예외 확대**

○ **(지불제도 개혁)**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양 중심 의료공급 초래하는 **불합리·불균형 수가 구조의 정상화**

○ **(지속가능성 향상) 지출효율화** 및 인식 제고*, **보험료 형평성** 확보(소득중심 부과체계), **국고지원 확대**(11→12.2조원) 등 건전재정 관리

* "현명한 선택 캠페인" 추진, 의료 이용량·내역 전 국민 알림서비스 지원 등

□ (국립대병원) 지역 ·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

○ **(역량 강화) 전임교수 확충**(1천명+α, ~'27), **공공기관 규제 혁신**(총인건비·정원 등), 시설·장비 첨단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 필수의료 혁신 **R&D 투자** 확대 등 추진, **연구-진료 병행** 활성화 위한 연구비 제도개선, **산학협력단** 설치(의료기술협력단) 등 추진

○ **(권한 부여)** 지역자원 관리(병상·인력 등), 평가 참여*, 네트워크 총괄·조정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 및 책임 강화**

*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지역 공공병원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 참여

○ **(거버넌스)**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 및 예산·조직 복지부 이관**으로 현재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보건의료정책 시너지 창출**

☞ 역량·권한·지원 거버넌스 망라한 **「국립대병원 혁신 로드맵」 마련** ('24)

□ (건강관리)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체계 강화

○ **(건강검진)** 항목 **평가·조정체계, 선택항목 도입** 검토 등 근거기반 구축

○ **(치(齒)의료)** 병원별 **역할정립, 수가개선,** 노인·장애인 지원 등 정책패키지 마련

○ **(만성질환)** 동네의원 **고혈압·당뇨 등 관리사업** 확대 (109개 시군구→전국 확대)

* 관리대상 확대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학생검진 연계 비만아동 건강관리

○ **(비대면진료)** 국민 불편 없도록 **시범사업 안정적 운영**, 중장기 제도 발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지속 추진**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1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 **(ICT·AI 활용) 복지위기 알림 앱** 개발('24.上)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협력 활성화)** 소재확인 불가 시 **경찰조사 협조요청**(시범운영→'24.6 본사업), 집배원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지자체에 **정확한 주소** 및 **채무·관리비 체납정보** 제공, 민간봉사단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2 두터운 약자 보호

□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 **(생계 지원) 기준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5.47→6.0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35% 목표)

○ **(의료 지원)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소득 1~3분위 4.8만명)

□ (아동)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하위법령, 시스템,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구축 등 **법률 시행**('24.7) **차질 없이 준비**

○ **(입양) 국가책임 강화 입양체계 개편*** 법률 시행('25.7,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대비 하위법령,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자립)**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금 매칭지원(1:2)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 대폭 확대** (연령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7.2→20.5만명)

□ (노인) 활기찬 노후 보장

○ **(기초연금)** 물가상승률(3.6%)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32.3→33.5만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 **(노인일자리)** 일자리 **백만개 돌파**(88.3→103만개) 및 **수당 인상**

○ **(여가)** 노인복지관·경로당의 **여가·건강프로그램** 및 식사제공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강화

□ **(장애인) 소득·건강 보장**

○ **(장애인연금)** 기초(32.3→33.5만원) 및 최대(40.3→42.5만원) **급여액 인상**

○ **(장애인일자리)** 공공일자리 **2천명 확대**, 장애 특성 고려한 맞춤형 **신규직무 신설**(42→45종)

○ **(건강) 건강주치의** 및 방문진료·간호 확대, **치과주치의** 강화

3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 **(발굴시스템)** 기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고독사 특성* 반영한 위험군 선별시스템** 구축 및 위험도 판단 도구 개발

* 기존 경제적 위기정보(44종) +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고혈압, 당뇨, 알코올질환 등)

○ **(생활지원)**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및 **스마트기술** 활용한 모니터링·응급대응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및 **식사 지원, 지역공동체 공간** 마련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39→229개 시군구)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1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 **간병비 부담 경감**

○ **(급성기병원)** 중증환자관리 및 **간병기능 강화**(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확대·근무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원·병상 확대**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20개소 1,200명, '24.4~'25) ⇨ 2단계 시범사업('26) ⇨ **본사업 전국 확대**('27~)

○ **(퇴원환자)** 퇴원 후 **집에서도 연속적인 의료·간호·돌봄** 지원

□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 **(품질관리) 공급기관 기준*** 마련 후 등록제 도입, **간병인 교육·훈련** 강화 및 **표준계약서** 작성 등 투명성 확보

* 업무범위·단위 표준화, 제공인력 이력·건강검진결과 제공, 사전교육,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기술활용) 간병·돌봄로봇 등 R&D**(450억원, ~'27) 및 복지용구 지원(간병용품 대여, 복지용구 예비급여 등) 확대 통해 **서비스 질 향상**

2 국민돌봄 통합지원

□ (청년) 공정한 기회 및 도약 뒷받침

○ **(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등 지원, **고립은둔청년 상시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운영

*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4개 시도, '24~'25) ⇨ 본사업 전국 확대

○ **(자립준비) 전담인력** 및 **사례관리 대상** 확대, 자립수당(월 40→50만원) 인상

○ **(일상돌봄)** 취약청년·중장년 대상 **돌봄·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서비스 확대**

□ (노인)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보장

○ **(포괄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확충** 및 **재가 노인 통원센터** 운영,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 마련,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요양**서비스 연계 주택 도입 등**

○ **(장기요양)** 의료·요양 필요도 평가 및 서비스 연계 **통합판정 시범사업**('24.4~), 중증 **재가수급자 서비스 제공량 확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추진

○ **(건강생활지원) 고령자 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관** 등 활용한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식사배달서비스 도입, 이동 및 가사지원 확대** 등

○ **(치매관리) 치매전문 의사**가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에 따라 **심층상담, 방문진료** 등 체계적 관리 시범사업 시행(20개 시군구, '24.7~)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연계체계 우선 마련**, 향후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확대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및 통합지원 시범사업(12개 지역, ~'25) 추진

□ (장애인)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최중증 발달장애) 획기적 돌봄지원체계** 도입(24시간 1:1돌봄, 주간 1:1돌봄)

○ **(활동지원) 대상자·단가 인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 등 확대

□ (전 국민) 돌봄공백 해소 및 서비스복지 실현

○ **(마음돌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국가 정신건강검진 강화**('25), **모바일 자가진단** 도입('24.下), **자살예방 통합상담번호 109** 도입 등

○ **(긴급돌봄)** 한시적(30일) **가정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즉시 제공**

□ (서비스 기반) 양질의 서비스 공급체계 조성

○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발굴체계** 마련 및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 **혁신기업 투자펀드 확충**(145억+'24년 70억원), 스마트기술 활용 지원(실증 시범사업)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1 출산·양육 부담 경감

○ **(난임)** 체외수정 급여 횟수 **건강보험 적용 확대**('24.2) 및 **소득기준 없이 시술비 별도지원**('24.1), **가임력 검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등

○ **(양육비)** 더 두터운 지원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 ('24.1)

* 출생순 무관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 0세 월 70→100만원, 1세 35→50만원

○ **(의료비) 모든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24.1), **소아·청소년 1형 당뇨** 의료기기 구입부담 경감('24.2.), **다둥이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24.1) 등

○ **(보육) 영아반 인프라 유지 지원** 및 **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연착륙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등 추진**

2 연금개혁 지속 추진

○ **(국회 공론화 지원) 기초자료 제공, 실무인력 지원** 등 지속 추진

○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병행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3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 (R&D 혁신) 보건의료 R&D 확대 및 혁신·글로벌 R&D 추진

* 보건의료 R&D : ('23) 6,967억원(글로벌 248억) → ('24) 7,884억원(글로벌 1,360억)

○ **한국형 ARPA-H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의사과학자** 경력단계별 **전주기 지원** 강화 및 **연구친화 생태계** 조성

□ (수출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반등 견인

○ **(의약품)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위한 **혁신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의료기기)** 수출 유망품목(영상·치과·진단·디지털·AI) 지원 강화 및 디지털 헬스케어

○ **(화장품)** 美·中 **규제대응**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북미·일본 등) 전략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진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지원 확대

□ (규제 혁파) 킬러 규제 체계적 발굴·개선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3.12~)로 부처 칸막이 극복, 개선과제 **지속 발굴·점검**

□ (의료데이터·첨단의료) 국가데이터 자원 구축·활용 제고

○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연계 확대, 첨단재생의료 치료 허용** 제도 신설 등 추진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보건복지부 일반 현황

(1) 조직

○ 본부 : 4실 1대변인 5국 17관 83과(11담당관 1센터 포함) 4팀

○ 소속기관 : 12개(보건의료분야 10개, 사회복지분야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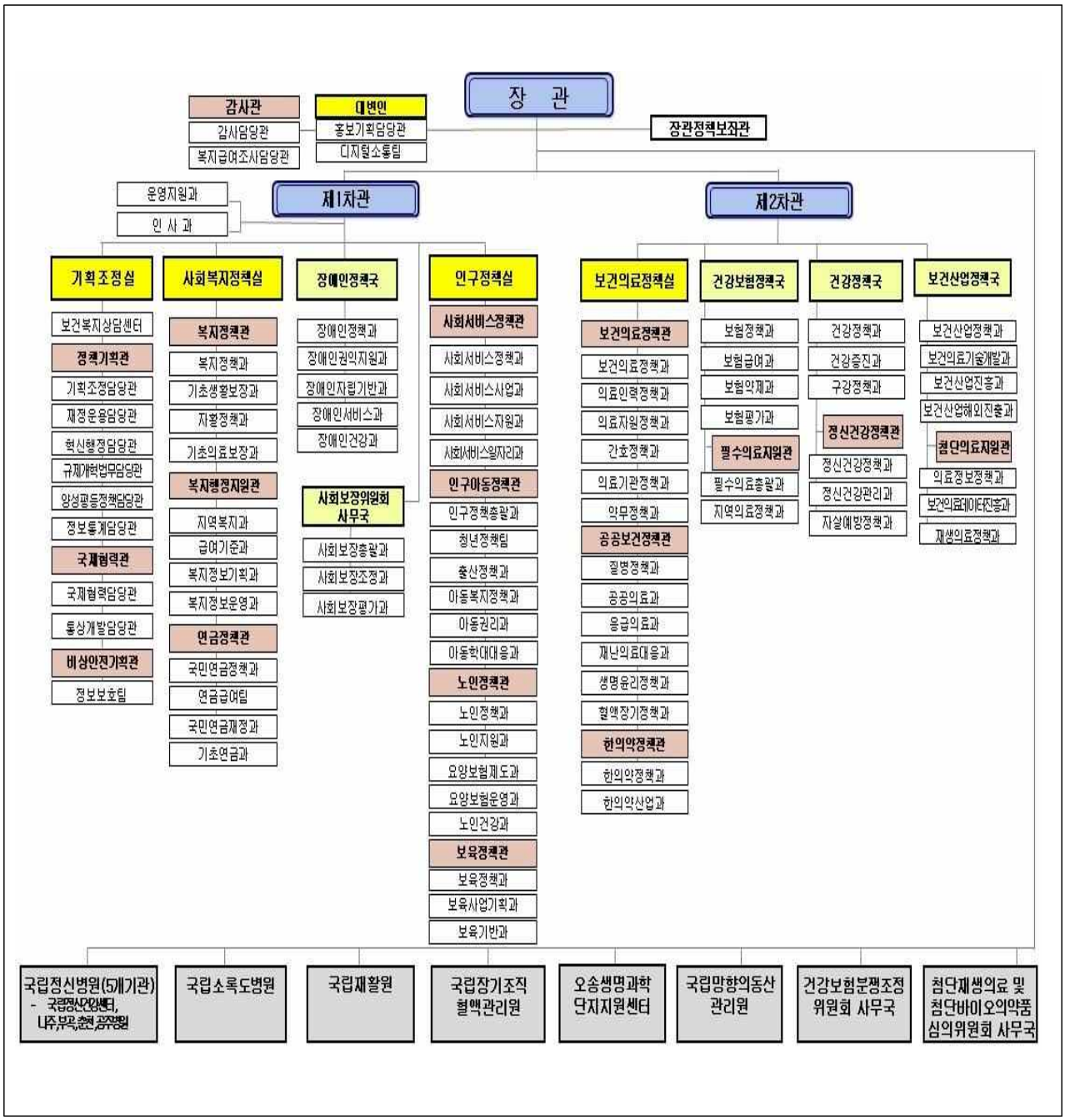

(2) 인원(2024.3월 기준)

○ 부서별 현황

구 분	내 용
본 부	• 4실(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 1대변인 • 5국(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 17관(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정신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 83과 (11담당관, 1센터 포함) 4팀
소속기관 (12개)	•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책임운영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나주, 부곡, 춘천, 공주), 국립재활원
정 원	총 2,510(본부 885, 소속기관 1,625)

○ 정원현황

('23.7월 기준)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경위)	일반직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
총계	2,510	3	6	1	35	34	162	80	380	411	410	500	391	14	22	55	6
본부	885	3	6	1	27	19	63	64	310	220	108	48	10	-	1	5	-
소속기관	1,625	-	-	-	8	15	99	16	70	191	302	452	381	14	21	50	6

<소속기관 정원>

총계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정신병원(5개)						재활원	소록도병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망향의동산	오송센터	건강보험분쟁조정사무국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계	정신건강센터	나주병원	부곡병원	춘천병원	공주병원							
1,625	953	336	183	185	118	131	355	220	34	7	35	17	4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109,629	1,223,779	1,350,060	1,493,425	1,646,169
(전년대비증가율, %)		10.3	10.3	10.6	10.2
ㅇ 총계	2,633,490	2,465,592	2,589,221	2,511,818	2,576,102
(전년대비증가율, %)		△6.4	5.0	△3.0	2.6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7,056	7,470	7,993	8,553	9,151
(전년대비증가율, %)		5.9	7.0	7.0	7.0
ㅇ 기본경비	288	300	308	317	326
(전년대비증가율, %)		4.2	2.7	2.9	2.8
ㅇ 주요사업비	1,102,285	1,216,009	1,341,759	1,484,556	1,636,691
(전년대비증가율, %)		10.3	10.3	10.6	10.2
□ 예산					
ㅇ (총)지출	671,177	741,794	791,722	860,947	938,914
(전년대비증가율, %)		10.5	6.7	8.7	9.1
ㅇ 총계	675,007	745,935	796,928	866,320	944,575
(전년대비증가율, %)		10.5	6.8	8.7	9.0
【일반회계】					
ㅇ (총)지출	653,712	722,264	769,403	837,666	914,575
(전년대비증가율, %)		10.5	6.5	8.9	9.2
ㅇ 총계	657,439	726,288	774,484	842,905	920,092
(전년대비증가율, %)		10.5	6.6	8.8	9.2
【지역균형발전회계】					
ㅇ (총)지출	15,808	17,703	20,245	21,122	22,035
(전년대비증가율, %)		12.0	14.4	4.3	4.3
ㅇ 총계	15,808	17,703	20,245	21,122	22,035
(전년대비증가율, %)		12.0	14.4	4.3	4.3
【책임운영특별회계】					
ㅇ (총)지출	1,657	1,826	2,074	2,159	2,304
(전년대비증가율, %)		10.2	13.6	4.1	6.7
ㅇ 총계	1,760	1,943	2,199	2,293	2,448
(전년대비증가율, %)		10.4	13.2	4.3	6.8

구 분	'23	'24	'25	'26	'27
【국민건강증진기금】					
ㅇ **(총)지출**	36,664	36,377	27,912	29,872	30,818
(전년대비증가율, %)		△0.8	△23.3	7.0	3.2
ㅇ **총계**	45,238	45,581	37,264	43,150	44,189
(전년대비증가율, %)		0.8	△18.2	15.8	2.4
【국민연금기금】					
ㅇ **(총)지출**	399,287	442,908	526,884	598,801	672,527
(전년대비증가율, %)		10.9	19.0	13.6	12.3
ㅇ **총계**	1,906,386	1,667,459	1,748,524	1,598,144	1,583,328
(전년대비증가율, %)		△12.5	4.9	△8.6	△0.9
【응급의료기금】					
ㅇ **(총)지출**	2,501	2,701	3,542	3,805	3,909
(전년대비증가율, %)		8.0	31.1	7.4	2.7
ㅇ **총계**	6,858	6,617	6,505	4,203	4,009
(전년대비증가율, %)		△3.5	△1.7	△35.4	△4.6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1 정책 여건

○ 현재 우리나라는 ①고물가·저성장 등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②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필수의료 붕괴 가속,** ③초저출산 지속, 노인증가로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등 **시대적인 변화 직면**

○ 소득·돌봄·건강 등 **삶과 밀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주길 원하는 **국민적인 요구 직면**

2 추진방향

◈ **의료개혁 본격 추진, 약자복지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지속 추진**

① **(의료개혁)**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구조 개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본격 추진**

② **(약자복지)**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 지원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지속 추진**

③ **(인구변화 대응) 영유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돌봄 확충**

④ **(바이오헬스 육성) 우수한 의료자원**을 바탕으로 **신약·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 등 **유망 분야 지원** 및 **보건의료 R&D 확대 및 혁신·글로벌 R&D 추진**

3 전략목표

○ (목표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 (목표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 (목표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 (목표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 건강 향상

4 전략목표와 '24년 시행계획과의 연계

○ (전략목표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 (성과목표①)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시행계획) 의료전달체계 개선, 안전 예방·관리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선제적 대응

- (성과목표②)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 (성과목표③)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대응 거버넌스 체계 강화,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단계적 지정·확충, 외상전문진료체계 인프라 보강 및 지역 외상체계 구축 등 의료공공성 제고

- **(성과목표④)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시행계획)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금연·절주 환경 조성,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성과목표⑤)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 (시행계획)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대국민 심리방역 강화·자살자 전수조사 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 **(성과목표⑥)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시행계획) 의·한 협진 활성화를 통한 융합의료기술 발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통한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 산업 활성화

ㅇ **(전략목표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성과목표①)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 (시행계획)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확대 및 긴급복지 지원수준 향상, 자활 프로그램 확대 등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 (성과목표②)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운영으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시행계획)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복지제도 기준 조정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체감도 제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③)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시행계획)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지급 등을 통한 지원 강화

- (성과목표④)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시행계획)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등록 및 장애심사 관련 제도개선,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성과목표⑤)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시행계획)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적극 협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4대 핵심분야의 제도 및 전달체계 평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구축

ㅇ (전략목표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 (성과목표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시행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차질 없는 실행, 제2차 노후준비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강화

- (성과목표②)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 (시행계획)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성과목표③)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시행계획) 취약노인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 강화, 노년기 사회참여 강화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 (성과목표④)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 (시행계획)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어린이집 안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성과목표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시행계획)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업관리 내실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화,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ㅇ (전략목표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 (성과목표①)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시행계획) 바이오헬스 전문 인재양성전략 수립·추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②)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시행계획)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통한 정밀의료 연구개발 촉진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 빈곤·질병·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비전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국가 건설
전략목표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전략목표 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목표 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전략목표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성과목표 Ⅰ-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목표 Ⅱ-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성과목표 Ⅲ-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성과목표 Ⅳ-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Ⅰ-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성과목표 Ⅱ-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성과목표 Ⅲ-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성과목표 Ⅳ-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성과목표 Ⅰ-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성과목표 Ⅱ-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성과목표 Ⅲ-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성과목표 Ⅰ-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성과목표 Ⅱ-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성과목표 Ⅲ-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성과목표 Ⅰ-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성과목표 Ⅱ-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성과목표 Ⅲ-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성과목표 Ⅰ-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18	30	72	219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①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건의료정책과	국정 66-1 국정 67-4
	② [민생]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의료인력정책과	국정 66-1
	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자원정책과	국정 66-1
	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의료기관정책과	국정 66-2
	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약무정책과	
	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간호정책과	국정 45-2 국정 66-1
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보험정책과	국정 66-4
	②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보험급여과	국정 66-1 국정 66-2 국정 66-4 국정 67-1 국정 67-2
	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보험약제과	국정 66-3
	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보험평가과	국정 66-4
	⑤ [민생]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필수의료총괄과	국정66-1, 66-3, 66-4
	⑥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지역의료정책과	국정66-4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①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질병정책과	국정 2-3 국정 66-2
	②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과	국정 66-1 국정 66-2
	③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응급의료과	국정 66-2, 국정 2-3
	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재난의료대응과	국정 66-2
	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생명윤리정책과	
	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혈액장기정책과	
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과	국정 46-4 국정 67-1
	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건강정책과	국정45-5, 국정67-1
	③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장애인자립기반과	국정47-3
	④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구강정책과	국정47-2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국정기조 연계
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신건강정책과	국정 67-3
	②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관리과	국정 67-3
	③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자살예방정책과	국정 67-3
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한의약정책과	
	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한의약산업과	
전략목표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①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정책과	국정44-5
	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과	국정43-1, 43-3
	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정책과	국정91-3
	④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기초의료보장과	국정43-2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 **[민생]**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지역복지과	국정 44-3
	②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급여기준과	국정 44-3
	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복지정보기획과	국정 44-3
	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복지정보운영과	국정 44-3
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 **[민생]**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국민연금정책과	국정42-1
	②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국민연금재정과	국정42-1
	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기초연금과	국정42-1
4.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정책과	국정47-1, 47-2
	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장애인권익지원과	국정47-5
	③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서비스과	국정47-3
	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건강과	국정47-2
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①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사회보장총괄과	국정 42-2
	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회보장조정과	국정 42-2
	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평가과	국정 42-2
전략목표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 **[민생]**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인구정책총괄과	국정 46-4
	②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인구정책총괄과	국정 46-3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국정기조 연계
	③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청년정책팀	국정 91-3
	④ 임신·출산 건강 지원	출산정책과	국정 46-4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	아동정책과	국정 46-5
	②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보호자립과	국정 46-5 국정 91-3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대응과	국정 46-5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 취약 노인 돌봄 강화	노인정책과	국정45-3
	②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있는 노후 생활 지원	노인지원과	국정43-4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요양보험제도과	국정43-3
	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요양보험운영과	국정45-3
	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노인건강과	국정43-3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사업기획과	국정46-2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기반과	국정46-2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보육정책과	국정46-2
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서비스정책과	국정 44-1, 44-2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사회서비스사업과	국정 44-1, 44-2
	③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사회서비스자원과	국정 44-1, 44-4
	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국정 44-5
전략목표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보건산업정책과	국정25-1
	②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국정25-1, 25-2
	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진흥과	국정25-1
	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① [민생]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의료정보정책과	국정 25-3
	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정 25-4
	③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재생의료정책과	국정 25-1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기 본 방 향

◇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투자 확충**

○ 의료전달체계 개선, 안전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요구 충족 및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 **환자·의료인 안전 관리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마련 및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 추진

◇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공정한 보험료 부과기반 구축,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재정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및 필수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책임 강화

◇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 필수의료 지원 과제발굴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논의체계 운영을 통한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등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全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및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의료 선택권 강화

◇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지역의료지도, 지역수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모델** 도입 등 추진

○ **예비적 성격**의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항목** 대상 **주기적 재평가**로 **요양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 조정**

◇ **필수의료, 응급의료 학충 등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닥터헬기 추가배치 등 의료공공성 제고**

○ 신종감염병 등을 대비한 인프라·법·제도 정비, 닥터헬기 추가 배치 및 심뇌혈관질환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예방가능한 사망 방지**

◇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

○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지역중심 맞춤형 건강증진 추진

○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자살 고위험군 발굴 ·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 정신건강증진 강화

◇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의·한 협진 활성화를 통한 융합의료기술 발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한의약 건강돌봄 등 국민의료비 절감 및 한방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현장 맞춤형 지원,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6	11	27	7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①국민건강검진 수검율
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①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실적 ②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개선율
	①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①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②의료질평가 지표 사전공개 ③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④전문병원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⑤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② **[민생]**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①의대정원 확대 ②'25년도 레지던트 정원 비수도권 배정 비율 ③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컴퓨터시험(CBT) 시행 시험
	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①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③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
	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①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②의료기관 안전관리 ③조정중재 개시율 ④조정중재 성공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①의약품 공급내역 적기 보고율 ②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 ③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법령 개정
	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①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수 ②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3교대제 운영 비율 ③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환자 수
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율
	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①건강보험 자격·부과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개선 추진율
	②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①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율 ②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급여 확대 추진율 ③공정한 보상체계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추진율
	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①연간 약제 접근성 개선 및 적정관리 추진율
	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①자율점검 사전예방 비율 ②하위기관 적정성평가 결과 향상률
	⑤ **[민생]**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①필수의료 보완대책 수립 ②소아의료 지역협력 시범사업 참여율 ③재난적의료비 지원보장률 ④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분 ⑤공·사보험협의체 개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⑥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①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실시율 ②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③지역병원 육성방안 수립 ④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 계획 수립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①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 도착 90분내 최초PCI 시술률 ②책임의료기관 확충률 ③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①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①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도착 90분 내 최초 PCI 시술률 ②소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 ③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④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⑤2024년 호스피스 시행계획 수립 ⑥중앙감염병병원 건립·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②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①책임의료기관 확충률 ②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③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혜 가임여성 인구비율
	③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①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②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환자 비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①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② 재난안정통신망 정기점검 평균 응답률 ③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도착률
	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①정자 기증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②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시 환자 의사 반영 비율
	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①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수 ②기증희망등록자 수 ③30세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 수
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
	①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 이행률 ②금연 홍보 사업 인지도
	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①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 ②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 이용자 만족도
	③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①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록 환자 수
	④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①구강질환 예방 관리율 ②구강보건사업 성과도 ③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 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①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②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대상 등록자 수 ③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
	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①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②정신건강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③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관수
	②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①재난 심리지원 담당 인력 교육·훈련 이수 인원 ②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 대상 등록자 수 ③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④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③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①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 ②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 관리 서비스 동의율
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①한의(韓醫)서비스 개선 추진율
	① 한의(韓醫)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①의·한 협진 의료질 개선도 ②한의약 서비스 활성화 ③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
	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①한의약 R&D 표준진료지침 개발 건수 ②한의약 제품개발 맞춤형 기업지원금 대비 매출 기여율 ③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

전략목표 I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주요내용

□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 요구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의료질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 추진**

□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공급·이용, 건강보험 자격, 재정관리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안전망 강화**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및 **자격 관리 강화, 저소득층 급여제한 예외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공정성 강화**

○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 조정, 정부지원 예산 확대, 환산지수 계약 추진** 및 **신뢰도 높은 재정관리체계 강화** 추진

□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 소아·분만·정신 등 **필수의료 및 저평가된 고난도·고위험 행위 수가 보상 강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료체계 강화**, 건강보험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

□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 관리**

- ㅇ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보험 적용** 및 등재기간 단축, **필수약 안정 공급 등 접근성 개선 및 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
- ㅇ 급여 적정성 및 외국약가 재평가 및 **약제비 사후관리,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 ㅇ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 운영**, 부당청구감지시스템에 **AI 예측모델 도입** 등을 통해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
- ㅇ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및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

□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 ㅇ 의료현장 등 **논의체계 운영, 연구**를 통한 **신규 과제발굴 및 정책점검,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
- ㅇ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 의료 공급 및 이용 유도**
- ㅇ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ㅇ **全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및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의료 선택권 강화**

□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 ㅇ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지역의료지도, 지역수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모델** 도입 등 추진
- ㅇ **예비적 성격**의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항목** 대상 **주기적 재평가**로 **요양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 조정**

□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및 **흡연, 음주,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수명 제고**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 등 **수요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

○ 형사사법정보 기반 자살사망 분석 및 **고위험군 발굴 등 자살 방지, 정신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지원 등 추진

□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의·한 협진 활성화를 통한 **융합의료기술 발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한약제제 현대화 등 **국민의료비 절감 및 한방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국민건강 검진수검율	69.1	66.8	72.6	69.3	70.8	71.3	최근 3개년 건강검진 수검율 고려하여 연평균 0.1%씩 증가 예상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00	건강검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목표 Ⅰ-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1) 주요 내용

□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ㅇ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하여, 의료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강력하게 추진
- ㅇ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기여**를 위한 **의료기관 대상 평가체계 개편** 및 **전문병원 지정 제도개선** 추진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 ㅇ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 이용량** 등 분석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요·공급 분석,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 ㅇ 외상·소아심장·감염·신경외과 등 국민 생명과 연관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전공의 수련환경 구축 지원**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ㅇ 보건의료인 **자격관리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ㅇ **국가 병상관리 체계 확립** 통해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 ㅇ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중앙/지역 환자안전센터 운영, 환자안전문화 등 종합적 단계적 추진
- ㅇ 의료분쟁 조정과정에 신청인·피신청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정 성공률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통한 환자 권익 보장

□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위한 유통환경 조성

○ 불법 개설·운영 약국에 대한 약무질서 확립 및 전문약사 제도 법령 제정 추진,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 적정 간호인력 수급 관리,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간호서비스 질 향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서비스 모형 다양화를 통해 **미래환경**에 맞는 **입원서비스 모형** 구축

○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한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 및 **서비스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으로 **간병의 질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실적 · 요양병원 중간현장 조사 개선율
관리과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 의료질평가 지표 사전공개 ·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 전문병원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 의대정원 확대 · '25년도 레지던트 정원 비수도권 배정 비율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컴퓨터시험(CBT) 시행 시험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의료기관 안전관리 · 조정중재 개시율 · 조정중재 성공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 의약품 공급내역 적기 보고율 ·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법령 개정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수 · 간호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3교대제 운영 비율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환자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 실적(건)	11	12	12.3	12.4	고가의 신의료기술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과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근거 마련 및 정책평가 연구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의 정책연계 실적'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자 함	최근 3개년 보건의료정책 지원 및 건강보험정책 지원 건수(ⓐ+ⓑ+ⓒ)의 평균치 ⓐ정부 아젠다 지원 ⓑ정부시책 반영 ⓒ법령 제·개정 지원	1)정부,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연구수행 및 결과 회신건수 2)정책부서 협의완료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프 발간 등
②요양병원 중간 현장조사 개선율(%)	88.0	88.0	88.0	88.0	'16년부터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 도입을 통해 개선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인증 유지수준을 높이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	중간현장조사 후 당해연도 '개선완료'한 병원 수/중간현장조사 시행 후 당해연도 개선대상 요양병원 수 ×100	의료기관인증현황(의료기관 병가인증원)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수준의 성장, 평균 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에 대한 의존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심 고조

○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발생 및 필수의료 분야 기피 등 심화

* 지역 내 의료 이용률('21) : 서울 89.2% vs 충남 66.4%, 경북 63.4%
전공의 충원율('19→'22) : 소아청소년과 92→28%, 산부인과 73→69%, 흉부외과 63→35%

□ 갈등요인 분석

○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패키지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나 갈등으로 논의가 어려운 상황

- 또한 적정한 의료이용을 위해 환자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그간 의료이용 관습으로 제도 개선 어려움

□ 갈등관리 계획

○ (**의견수렴**) 견해 차이를 줄이고,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 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의정협의체, 의병정협의체 등 운영으로 의료계와의 지속적 소통 추진

-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질평가 실무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질평가 개편방안 및 지표개선 등 논의

○ (**적극적 홍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및 의사-환자 간 신뢰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캠페인 등 실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Ⅰ-1-①,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 보장**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야기**

* 상위 5개병원 지방환자 비율('08→'18년) : (외래) 18.2→23.9%, (입원) 29.5→36.1%

-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전문병원 지정제 도입**('09)

- **전문병원 역할 강화 및 지역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위해 지정 기관수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

* 4기2차~5기1차 전문병원 지정기관 수: 109개소('22년 10개소, '23년 5개소, '24년 94개소)

○ **의료기관 대상 인증·지정·성과평가제도**(이하 '평가'로 통칭)는 **정부의 방향성**을 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보상 기전**으로 **활용 필요**하나,

- **산발·중복적인 평가**들은 **평가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며,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부담** 또는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 **기여할 병원**들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기관 대상 평가체계**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편방향 제시 필요**

○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24.2.1.)의 **구체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유기적·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24년 중)

-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등을 통해 **로드맵 마련 및 추진방안 구체화**하여 **중장기적 개편 위한 준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정적 운영 및 모형 보완·발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4년)

-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제도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5기 전문병원 제도 개선 추진**

- 필수의료 등 **전문병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연구 추진, 전문병원 관련 규정*** **전부 개정**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료기관 평가체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24.1~3월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1~3차 회의	'24.2~3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24.2월	
	제1차 전문병원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24.3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구성·운영	'24.3월	
2/4분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	'24.4월	
	제2차 전문병원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24.4월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4~5차 회의	'24.4~5월	
	비대면진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24.4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구용역 추진(필수의료 등 전문병원 역할강화 방안 연구)	’24.5월	
	제1차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개최	’24.6월	
	‘24.~’26. 전문병원 지정신청 공고	’24.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운영	‘24.4~12월	
3/4분기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초안 바탕으로 정책연구 착수	’24.7월	
	’24년 의료질평가 수행	‘24.7~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위한 「의료법」 법안소위 상정 등 노력	’24.9월	
	전문병원 제도개선 로드맵(추진계획) 등 마련	’24.9월	
	제3차 전문병원 제도개선 전문가 협의체 운영	’24.9월	
4/4분기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4.10월	
	‘25.~’27. 전문병원 지정 공고	’24.12월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24.12월	
	의료질평가 등 개편 세부 추진방안 구체화	’24.12월	
	’26년 의료질평가 지표 공개	’24.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24.3.~4.),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의제화 및 특위구성 자문(관계부처, 전문가 참여)

- 민관합동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24.4.~)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공급자·수요자·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 **(의료기관 평가)**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정책 상호 이해도 증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공유, 개편방향 및 향후 과제** 관련 **컨센서스 마련** 위해 운영(’24.2~5월)

- **복지부 내 주요 유관부서, 주요 평가 수행기관**(심평원, 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문가** 등으로 16인 구성

- 자문위와 별도로 **병협 등 피평가기관 대상 의견 수렴**

○ **(비대면진료)** 의약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화 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

○ **전문병원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 자문위원회 운영**하여 **전문병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운영**

- **공급자**(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수요자**(시민, 소비자단체), **전문가**(학계, 연구계), **관계기관**(심평원) 등으로 구성,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의료질평가 관련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24.2~5월
간담회	개편 추진방향 등 관련하여 병협 등 병원계 의견 수렴	’24.3~4분기
간담회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계, 전문가 등과 이슈별 의견수렴	필요시 수시 개최
현장방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의료취약지 등 대상 환자 관련 지역 방문 간담회 개최	‘24.1분기
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24.3월,7월, 1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부처, 전문가 등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24.3~4) 및 의료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24.4~)	‘24.3~12월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 운영하여 전문병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24.3~12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공급자(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수요자(시민, 소비자단체), 전문가(학계, 연구계), 관계기관(심평원) 등으로 구성,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의료질평가 관련 의견수렴	’24.4~12월

□ 기대효과

○ **지역의료 등 육성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에 걸맞는 성과평가 체계 구축**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물리적·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전문병원의 **전문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및 **국민건강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	-	-	로드맵 마련	유기적·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연내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연내 로드맵 보고
의료질평가 지표 사전공개	'23년 지표 공개	'24년 지표 공개	'25년 지표 공개	'26년 지표 공개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6년 평가지표를 '24년말 사전 공개	연내 '26년 평가지표 사전 공개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거쳐 확정,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26년 평가지표 공개(12월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방안 마련	-	-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방안 마련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방안 보완	○ 제도화 대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보완 추진여부 목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 분석 실시여부 - 자문단 운영, 간담회 등 제도화 방안 관련 의견수렴 실시	실시현황 분석결과 자문단 운영, 간담회 개최횟수	보도자료 등
전문병원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	-	-	로드맵 마련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제도개선 로드랩 마련	연내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	-	-	위원회 구성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 후속조치로 의료 혁신과제 논의·추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24.5)	보도자료 등

2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Ⅰ-1-②, 의료인력정책과)

□ 추진배경(목적)

○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 이용량** 등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

-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에 대한 실태 및 특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 **필수의료*** 및 **의과학 연구 분야** 등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인력 양성**

* 6개 분야: 외상·소아심장·감염·공공·일차의료·신경외과(뇌혈관)

-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부터 **필수의료 및 의과학 분야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한 **경험 지원 및 미래 진로 유도**

○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구축 지원**

- 전공의가 수련 중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수련병원의 교육역할 제고**

- **과도한 전공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과 근로가 병행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 **의사 등 20종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시행**('19.10월)에 따라,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전문기관 운영,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3년 주기) 등 추진

○ **우수한 보건의료인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운영**

- **컴퓨터 활용 필기시험 도입 직종 확대를** 통한 역량 평가 강화 및 **상시시험 운영으**로 응시자 편의 증진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기출문제 상시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시험 투명성·신뢰도 제고

○ 의료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의 지속적 관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대정원 확대 추진 >

○ **(의대정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 국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3,058명 →5,058명)

< 지역·필수분야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

○ **(필수의료 분야)** 외상·소아심장·감염·신경외과·공공·일차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참여 지원**

○ **(의과학 분야) 의대 학부시절부터** 기초의학 및 융복합(의학, 공학, 기초과학) 등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 지역별·전문과목별 전문의 양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배정 확대**

○ **(공동수련 시범사업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고,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의료환경 수련**을 **제공**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 **(수련내실화) 필수과 중심으로 인턴 수련**을 **강화**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소아청소년과 필수수련기간 확대 위한「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술기교육 지원 확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 학회의 **교육내용 내실화 지원**

○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사전준비) 전공의 교육과정 내실화 및 수련병원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정책분과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연속 수련시간 도출**을 위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 **(수련환경평가 개편)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 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전공의 정원 책정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개편 추진**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대상 현황 분석, 근로실태 등 **'24년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로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료인력 수급 추계**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과학적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지원인프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20.12월 지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인력 양성·지원사업 수행, **인권침해상담 및 교육, 홍보**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운영 >

○ **(국가시험 선진화) 양질의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방식 개선**

- **효율적인 필기시험** 시행을 위한 **멀티미디어 방식 활용**

* 의사 국가시험('24.1.),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24.11.)

- **멀티미디어 문항 출제 직종 확대**를 위한 **신규문항 개발 추진**

○ **(국가시험 안정화)** 컴퓨터활용 국가시험 시행의 안정적 운영

- **컴퓨터활용 필기시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시험센터 운영**

* 전국 9개 권역에 1,550석 규모 컴퓨터시험장 운영

- **역량 평가 강화**를 위한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확대 추진** ('23년 5개 → '24년 12개(예정))

<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면허관리 내실화 >

○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인 실태파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지속적 관리**

-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개정·배포, 주기적 실적 관리 등
- 보수교육 이수율, 면허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한약사 국가시험 CBT 시행	'24.1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확대 방안 발표	'24.2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24.2월	
	보건교육사 1·2급,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CBT 시행	'24.2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개정·배포	'24.2월	
	의료인 중앙회에 신규 면허 발급자 정보제공 안내	'24.2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상시시험 시행	'24.2~12월	
	전공의 수련제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	'24.3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기출문제 상시공개 실시	'24.3월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시 개정	'24.3월	
	2024년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추진	'24.3월	
	의대생 대상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 지정	'24.3월	
	2024년도 수련환경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24.3~9월	
2/4분기	전공의 정원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4.4~6월	
	의사 신규 면허 발급자 정보제공	'24.6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 시범사업 착수	'24.6월	
	의대생 대상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 분야 기관·학생 선발	'24.6월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실시	'24.6~12월	
	'24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실시	'24.6~12월	
3/4분기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안내	'24.7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24.8월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오픈·운영	’24.8월	
	의대생 대상 필수의료 하계 실습 및 의과학 분야 연구 참여 지원	’24.7~8월	
4/4분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CBT 시행	’24.11월	
	수련병원(기관)별 전공의 정원 책정	’24.11월	
	2024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발표	’24.11월	
	의대생 대상 필수의료 동계 실습 지원	’24.12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연중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축공사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해 **의료현장, 전문가 등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발전방향 모색**

○ 정책 설명회 및 의료진 간담회, 의료현장 방문 등 **지속적인 정책 현장 의견수렴 추진**(연중)

○ **필수의료** 및 **의과학 연구분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미래 진로 유도**와 **수련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간담회 예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학회, 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 관련 단체 간담회 진행	연중
간담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연중
현장방문	○ 의대생 실습, 수련병원 등 현장방문	연중
간담회	○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사업 성과교류회	‘24.2월
포럼	○ 전공의 수련제도 전문가 토론회	’24.3월
간담회	○ 전공의 정원배정 기준 개선 의견수렴	’24.4~6월

□ 기대효과

- ㅇ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분야**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수요 대응성** 향상
- ㅇ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으로 20종에 달하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업무 수행 및 **근로환경 개선** 기반 마련
- ㅇ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체계적인 의료인력통계 분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인력정책 기반 마련**
- ㅇ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선진화**를 통한 **임상능력 평가 강화**로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 도모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시험 운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의료인력 양성 (Ⅰ-1-일반재정②)			
① 의료인력 양성(4331)	일반회계	422.7 (422.7)	486.8 (486.8)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300)		320.5	291.4
▪ 국가시험원 운영(301)		57.4	63.5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302)		44.8	13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의대정원 확대(명)	-	-	-	2,000	'35년 수급추계 토대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해 규모 결정	'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명)	교육부 '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확정 등
'25년도 레지던트 정원 비수도권 배정 비율	38.0	38.3	44.2	46.0	최근 3년간 배정 비율과 지역의료 인력 양성 목표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비수도권에 배정한 '25년도 레지던트 정원 / '25년도 레지던트 총 정원) × 100 *최종정원 기준	보건복지부 '25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보고자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컴퓨터시험(CBT) 시행 시험(건)	0	1	5	1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컴퓨터시험(CBT) 도입목표를 고려하여 시행 건수 목표치 산출 * 국시원 시행 국가시험: 26개 직종, 35개 시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컴퓨터시험(CBT) 시행 건수(누적)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험계획 공고 등

3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Ⅰ-1-③, 의료자원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보건의료인 자격관리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인 행정처분 제도개선)** 의료인 **행정처분 제도의 전반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기준 개선 추진

- 마약, 음주진료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제기**
- 행정처분 지연 등 **면허관리 부적정 등 지적**(감사원, 국정감사 등)에 따라 **처분기준 현행화·구체화 및 절차 효율화** 필요

○ **(의료기사 인력관리)**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 적응력 제고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필요**

- 현장실습 과목 **최소 이수 시간** 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치기공소·안경업소 개설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통한 **보수교육 내실화 추진**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절차 개선】

○ **(제도)** 혁신적 의료기술 등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현장 先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2년간, '15.9월~), 혁신의료기술평가(3년간, '19.3월~)

- **시장진입·활용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규제 완화 요구 존재**

* 선진입 대상 기술 범위의 한정, 실시기간 한정으로 근거 창출 어려움 등

○ **(시스템)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안전망 확보** 및 **임상근거 창출 지원** 등 **안정적 평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선진입 의료기술 근거창출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및 평가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22.4월~9월)에 따라 **구축과제 이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보건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인 행정처분 제도개선)** 현행 처분규칙의 '19.8월 개정 이후 **의료환경 변화, 의료법 개정사항, 외부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 추진

- 의료현실에 맞게 **처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 감경기준을 추가**하는 등 합리적인 처분기준 마련

< 주요 개정 추진 내용 >

1 마약류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강화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강화
3 의료법 개정사항에 맞춰 처분기준 신설
4 법령에 처벌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기준이 없는 경우 신설
5 감경기준 추가 및 기타 법령 조문 변경, 이동 또는 분리신설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 및 소요시간 단축 추진**

○ **(의료기사 인력관리)** 양질의 의료기사 인력배출을 위한 양성학과 **현장실습 제도화** 및 **보수교육 제도 내실화**

- 현장실습과목의 **최소 이수시간** 등을 규정하고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개설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절차 개선】

○ **(제도)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선진입 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선진입 의료기술 대상도 확대** 추진

- **(기간 연장) 혁신의료기술의 선사용 기간**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유예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

* **(혁신의료기술)** <현행>3년→<개선>4년, **(평가유예 기술)** <현행>2년→<개선>2년+2년

- **(대상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현행>**비침습적 진단검사** → <개선>**비침습적 의료기술 전체**

○ **(시스템)**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청·접수, 과정관리(환자상태, 이상반응 등) 등 **근거창출 전 주기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1단계), 시스템 **확대**(2단계), 시스템 **최적화**(3단계)에 걸친 중장기계획('24~'26) 수립에 따른 구축 추진 (총사업비 6,568백만원)
-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사업수행자 선정·계약**을 통한 **사업 발주** 및 **정보시스템 개발** 착수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료기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4.2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마련 완료	'24.3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적정성 검토	'24.4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자 선정 위한 입찰 공고	'24.5월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 실시	'24.5월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행정규칙 및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 및 입법(행정)예고	'24.6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자 선정 및 착수보고	'24.6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4.6월	
3/4분기	행정규칙 및 고시 개정(안) 법제처 심사 등 완료 후 공포·시행	'24.9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24.9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	'24.9월	
4/4분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간보고	'24.12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공포 및 시행	'24.11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사, 의료산업종사자 등

○ **(이해관계자)** 병상관리 대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도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산업 종사자 등

□ 기대효과

○ 행정처분기준의 구체화 및 현행화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면허제재 예측가능성**과 **의료인 윤리의식 제고**

- 위법행위를 하는 일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의료기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혁신적 의료기기를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해 **의료 질 개선** 및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 기회의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신규	신규	신규	개정 완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의 개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시행(공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신규	신규	신규	개정 완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개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공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신규		개정 완료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3.12.22.) -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후평가 제도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Ⅰ-1-④, 의료기관정책과)

□ 추진배경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의료 질 향상 도모**

○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 신속·공정 구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의료인의 법적 부담완화**

○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퇴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평가 등 정비**

- **(인증제도 개선) 기본인증(안)** 마련, 인증 무료 **컨설팅 지원***, **대국민 홍보** 등 인증 **활성화** 및 **조사위원** 교육·모니터링 등 인증조사 **신뢰도 제고** * ('22) 7개소 → ('23) 9개소 → ('24) 10개소

- **(환자안전)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지역환자 안전센터 확대 운영, 환자 안전 환류 정보 개발·확산 등

-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정·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개편 방향 검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표 모니터링 등

- **(시설기준 개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 확충, 임종실 설치의무 도입** 등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

-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월별 평가·모니터링** 및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 지속**

○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통한 환자권익 보장 및 안전망 구축**

- **(조정개시율 및 성공률 제고)** 의료분쟁 조정과정에 신청인·피신청인 참여를 유도, 조정 성공률 제고를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추진**

○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근절**

- **(단속강화)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실태·행정조사** 실시(암 병원 기획 조사 등),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추진

- **(환수강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 장기·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등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강화**

○ **화재 등 의료기관 재난, 보건의료 위기관리(의료서비스 마비)**

- **(의료기관 재난)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의료기관 **내진보강** 유도,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지속**

- **(보건의료 위기) 개원의 집단행동** 행정조치 마련,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24년도 의사 집단행동 대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24.1월	
	개원의집단행동 대응지침 배포	‘24.2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모니터링 운영 계획 수립	’24.3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착수	’24.3월	
	재활의료기관 관련 고시 개정(슬관절 치환술 대상 확대)	‘24.3월	
	회복기 재활 지정기준 고시 개정	’24.3월	고시 일부개정
	2023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	’24.3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실시	’24.3월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24.3월	
	중소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24.3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지원사업 안내	‘24.3월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논의 참여·지원	’24.2~5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4.3~12월	
2/4분기	제2기 재활의료기관 1차 년도 평가 실시	’24.4월	
	환자안전활동 국민참여 활성화 이벤트	’24.5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지원사업 안내	‘24.5월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24.6월	
	환자안전 환류정보(주의경보 등) 제작 및 배포	’24.6월	
	기본 인증기준(안) 마련	’24.6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3-’24년 시행계획 수립	’24.6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분기별 모니터링	‘24.6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실시	’24.6월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24.6월	
	불법개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 마련 추진	’24.6월	
	음압격리병실 등 확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4.6월	
	국가안전대전환(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	‘24.4~6월	
	중소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24.6월	
3/4분기	실태조사 일부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	’24.7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제도 개선	’24.8월	
	임종실 설치 의무 도입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4.8월	
	중소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24.8월	
	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교류회	’24.9월	
	환자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24.9월	
	환자안전 환류정보(주의경보 등) 제작 및 배포	’24.9월	
	기본 인증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24.9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분기별 모니터링	‘24.9월	
	암 상병 관련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기확조사 실시	’24.9월	
	의료기관 내진현황 실태조사	’24.9월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24.9월	
4/4분기	의료기관 테러대응 실태점검	‘24.10월	
	중소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24.10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24.12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평가	’24.12월	
	세계환자안전의 날 글로벌 활동보고서 등록(WHO)	’24.12월	
	환자안전 환류정보(주의경보 등) 제작 및 배포	’24.12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환류	’24.12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개최(4주기 치과·한방병원 인증기준 등)	’24.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완료	’24.12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분기별 모니터링	’24.12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실시	’24.12월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24.12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개최	’24.12월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평가지표 등 기준 검토	’24.7~12월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시스템 개발	’24.7~12월	하반기
	제2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연중	**‘23.3.~’26.6.**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관련 학회, 유관기관·단체 그룹 의견수렴

○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운영**

* 복지부, 권익위,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위원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유관학회(대한환자안전학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장 의견 수렴	분기별 1회
회의	국가 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단 세부그룹 및 유관기관·단체그룹의 의견 수렴	월 1회
공청회	의료사고 특례법(안) 공청회	‘24.2.29.
회의	기본 인증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4.2~3월
현장방문	기본 인증기준(안) 시범조사 및 공청회 실시	‘24.9월
회의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 협의체 회의	’24.12월

□ 기대효과

○ **환자안전 역량 제고**를 통한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노력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Ⅱ-1-일반재정②)			
①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4333)3」	일반회계	144	118
		(244)	(300)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일반회계	144	1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Ⅲ-10-일반재정④)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4337)	일반회계	179	18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4337-300)	일반회계	179	1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100	100	100	100	①환자안전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 최근 3년간('21년~'23년) 실적치 평균(52.4%) 대비 102% 상향하여 목표치(53.4%) 설정 ②세계환자안전의 날 글로벌 활동보고서 등록(WHO) ③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교류회 개최	항목별 점수의 합 ① 자체점검 시행 응답 기관 수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수 x 100 (목표치 53.4%, 가중치 33.3) ② 33.3% ③ 33.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사업실적 보고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교류회 결과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80	100	100	100	안전점검 및 매뉴얼 개정 ① 내진보강지원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내진현황 점검 ② 의료기관 테러 대응 점검 ③ 보건의료위기 표준 매뉴얼 개정 ④ '24년도 안전대진단 추진	항목별 점수의 합 ① 25 ② 25 ③ 25 ④ 25	점검내역, 개정내역 등
조정중재 개시율 (공통)	65.3	66.0	68.3	66.5	최근 3년간('21~23년) 실적치 평균(66.5%)을 목표치로 설정	조정중재 개시율(%) = (조정·중재 개시 건수(A)) ÷ {조정·중재 개시 건수(A) + 불참(각하) 건수(B)} × 100	의료중재원 통계시스템
조정중재 성공률 (공통)	61.1	66.0	72.9	66.7	최근 3년간('21~23년) 실적치 평균(66.7%)을 목표치로 설정	조정중재 성공률(%) = {합의조정건수(A) +조정성립 건수(B)+화해 중재건수(C)+ 중재판정건수(D)} ÷ {조정 개시 사건 중 당해연도에 종료된 사건수(조정개시 이후 각하건수 제외(E))} × 100	의료중재원 통계시스템

5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Ⅰ-1-⑤, 약무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및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필요**

-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활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품질 경쟁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 의약품 공급내역을 통해 수집된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 추진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및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품질 향상 도모

* "적기 보고율" 통합지표 사용, 모니터링 강화(2개월→매월), 위원회를 통한 행정조사 투명성 제고, 정기 설명회·정책홍보 개최, 코드착오 등 경미사항 시정기회 부여 등

-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에게 적시 제공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유통차단 실시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및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 마약류 의약품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해 DUR 점검 시 사유 입력 신설,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한 식약처 시스템 연계 추진, 비대면진료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차단 모니터링 등

- 개인투약이력 제공 확대를 통한 진료 효율화 및 환자 안전 강화

* 고위험 노년층 증가에 따른 "내 부모님 드시는 약 확인 서비스" 신규 도입(70세 이상), 의료기관 투약이력 정보 확인 간소화 추진 등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해 DUR 이용 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기관의 업무처리 허용 등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DUR 시스템 기능개선 및 지침 개정 추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4.7.19 시행),「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7.3 시행)

② 의약품 공급내역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ㅇ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체계 마련

ㅇ 유통개선 조치 등 부족 원인별 조치방안 마련

- 통상적 재고 수준 이상을 보유한 사재기 의심 약국 현장 조사

③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위한 유통환경 조성

ㅇ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교육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 기반 강화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 의무화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마련

ㅇ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시행

-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합리화 등 제도 개선 및 대국민 공개를 통해 리베이트 자정 기능 강화

- 현황 파악을 위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공표

④ 불법 약국 조사,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면허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약무질서 확립

ㅇ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시기·방법, 결과 공표방법 및 위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실시** 및 지자체, 공단 등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에 **협업체계 강화**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마련**

○ **약사 면허신고 제도 지속 운영**를 통해 약사의 자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약사 인력 관리** 및 국민의 안전·건강 확보

○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약사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약사 제도 지속 추진**

○ 약국개설등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기존 서식 정비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에서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

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및 아시아약학연맹 총회 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 공공심야약국 설치 운영 및 정부지원 근거 마련('24.4.19. 시행 예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약사법 시행규칙)

- 야간 경증 환자에게 상담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

○ **선진 약학교육 전수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약학연맹총회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매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운영	매월	
	공공 야간·심야약국 사업 공고 및 지원약국 선정	1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1~3월	
	'24년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약 체결	2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2월	
	공공 야간·심야약국 사업 1차 국고보조금 교부	2월	
	위기 산모 및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3월	
	2024 아시아약학연맹총회 지원 사업 승인	3월	
2/4분기	2024 아시아약학연맹총회 지원 사업 1차 국고보조금 교부	4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홍보 및 가이드라인 안내	~5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6월	
	위기 산모 및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DUR 시스템 개선 및 지침 개정 추진	~6월	
	'24년 상반기 DUR 실무협의회	6월	
	'24년 상반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	6월	
	불필요한 서식 정비(등록기준지 삭제)	6월	
	공공심야약국 지원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안 개정	6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4~6월	
3/4분기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생산	7월	
	공공 야간·심야약국 사업 2차 국고보조금 교부	7월	
	2024 아시아약학연맹총회 지원 사업 2차 국고보조금 교부	7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7~9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교육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9월	
4/4분기	의약품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보강	~10월	
	'24년 하반기 DUR 실무협의회	12월	
	'24년 하반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	12월	
	2024년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선정	12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공표	12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12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10~12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결과 보고	12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관련 하위법령안 개정(약사법 시행규칙)	12월	
	제2차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관련 협회*,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수의사회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24.2~3월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2월, 3월, 5월
	○ 불법개설의심약국 실태조사 관련 간담회	3월
	○ 공공심야약국 관련 간담회	6월
	○ 전문약사 관련 간담회	6월
현장방문	○ 의약품도매상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2월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현장방문	4월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관련 현장방문	6월
회의	○ DUR 실무협의회	6월, 12월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	6월, 12월

□ 기대효과

○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추진

○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교육,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개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의약품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한 약무질서 문란행위 근절

○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및 약사(한약사) 윤리기준 추가 등 약사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향상에 기여

○ 의약품 관리, 사용에 전문성있는 전문약사를 양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도의 의약품 관련 전문성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공공야간 · 심야약국 운영 지원(일반재정 Ⅱ-1-⑤ 관련)			
① 공공야간 · 심야약국 운영 지원	일반회계	26.97	30.01
▪ 공공야간 · 심야약국 운영 지원(4333-319)		26.97	30.0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일반재정 Ⅱ-1-⑤ 관련)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일반회계	18.66	23.13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4334-500)		18.66	23.13
아시아약학 연맹 총회(일반재정 Ⅱ-1-⑤ 관련)			
①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일반회계	-	2
▪ 아시아약학 연맹 총회		-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1 '23	'24			
의약품 공급내역 적기 보고율(%)	신규	신규 99.4	99.3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적기 보고율을 99.3%로 설정 -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의약품 공급내역 적기 보고율이 99.0%이며, - 당초 '23년 목표치를 99.0% 시작하여 매년 0.2%p씩 상향토록 도전적 설정하고, '24년 목표치를 99.2% 설정하여야 하나, - '23년 목표치 99.0% 대비 실적치 99.4%로 초과 달성함에 따라 '24년 목표치를 당초 계획(99.2%)과 '23년 실적치(99.4%)의 중간값 99.3%로 설정	기한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수량 / 의약품 공급내역 전체 수량 *100 *일련번호 보고 대상은 출하시(익일까지), 그 외 의약품은 익월까지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명)	신규	신규 신규	170,271	23년 시범사업의 약국 이용자 수 및 공공심야약국 홍보 등을 통한 심야약국 이용자 수 증가를 고려하여(+3%) 목표 설정함 * '23년도 약국당 이용자 수(2,583명)*1.03*64개소 =170,271명 ※ '23년 약국 이용자 현황 : 67개소 173,062명 이용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명)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법령 개정	신규	신규 달성	개정 완료	건전한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질서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법령개정 완료	약사법령 또는 의료기기법령 등

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Ⅰ-1-⑥, 간호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 증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필요**

- 장기간 근속하는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간호인력 수급정책, 근무환경 및 교육 · 훈련체계 개선 추진
-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 · 돌봄체계 구축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서비스 모형 다양화를 통해 **미래환경**에 맞는 **입원서비스 모형** 구축

-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완화** 및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한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 및 **서비스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으로 **간병의 질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간병비 경감 대책」 이행

○ **급성기 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질 제고 등 제도개선 실시**

- **중증 환자 배제** 및 **간병 기능 미흡** 등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국민 간병비 경감 대책」, '23.12월)

○ 충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상 확대 지속** 추진

- 서비스 제공 병원 검색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원 현황 분기별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② **적정 규모의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수급상황 ·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간호대 입학정원 결정**

- **보정심 산하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운영 및 간호인력 **장기 수급 추계 연구** 실시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제 모니터링,**

○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속

③ **체계적으로 교육 · 훈련된 간호인력 양성**

○ 신규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 운영 **재정지원 지속**

- **필수의료병동** 교육전담간호사 확산에 **국고 지원**(신규사업)

- **교대제 개선**사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지원 강화

○ **특수병동(중환자실, 응급실)** 특성을 반영한 임상현장 간호사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배포 및 임상현장 활용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일반병동** 특성을 고려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배포

○ 간호대학에 대해 **실습 장비 ·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술기 및 실습교육의 질 개선 추진**

* '23년 7개소 → '24년 14개소

○ **간호사 임상사례해결형 문제 도입**을 위한 **국가시험 과목 통합 추진**('28년부터 시행)

○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의료기관 현장실습** 중 일부(30% 이내)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내 실습교육**으로 **대체 인정**

- 현장 의료기관 **실습 표준교육과정 도입 추진**

○ **전문간호사** ①**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②분야별 교육기관의 **실습협약기관 다양화**하여 **자격요건 완화 추진**

⑤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일반간호사까지 확대**

○ **재택간호 통합센터 시범사업 추진**

⑦ 요양병원 간병 지원체계 구축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평가**

* 대상 환자·선정방식·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 검증('24~'25)

○ **간병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간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간병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 표준지침 마련·배포**

⑧ 비상진료체계 지원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해소 및 현장 간호사 법적불안 완화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건정심 보고	'24.1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24.1~2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제6차 공모 실시	'24.2월	
	간호조무사 실습교육과정 일부 교내실습 대체 인정	'24.2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24.2월	
	요양병원 간병인 간병인 관리·운영 표준지침 마련·배포	'24.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비용 점수제 전환	'24.3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시	'24.3월	
2/4분기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24.5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 착수	'24.5월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실시	'24.5월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통합(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4.6월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인력기준 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4.6월	
3/4분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 개정	'24.7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 기준 완화	'24.7월	
	재택간호 통합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24.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24.9월	
4/4분기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운영	'24.10~1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및 운영병원 현황 공표	'24.12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 중간보고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전병동 운영 기관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ㅇ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 위한 병원 관계자 설명회 및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실시
- ㅇ **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논의 위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운영(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참여)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병원 및 전병동 운영기관 현장방문	'24.1월
설명회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24.2월
설명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등 사업설명회	'24.2월
간담회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현장의견 수렴	'24.3월
간담회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운영	'24.11월

□ 기대효과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적정 간호인력 확충 및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대

○ **환자의 간병 부담 경감, 간병인력의 질 관리**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의료인력 양성(Ⅱ-1-일반재정①)			
① 의료인력 양성(4331)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300)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300) 중 내역사업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	98
-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		47	33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30	58
-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운영		6	6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6	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87	-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70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Ⅱ-1-일반재정②)			
①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정책지원(4333)[3]		(244.4)	(299.9)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324)		-	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이용환자 수 (단위: 만명)	194	204	246	270	'21~'23년도 이용환자 수 등 확대 추이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이용환자 수 목표치 산출(약 10% 증)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이용환자 수(입원건수)	연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통계를 바탕으로 추계 (건강보험공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3교대제 운영 비율 (단위: %)	신규	신규	신규	50	예측불가능한 3교대제 대신 다양한 근무제 도입 사업 취지에 따라 3교대제 비율 50% 이하로 목표 설정 (사업 참여전 평균 3교대제 비율 88.9%('22년))	참여기관의 참여병동 근무 간호사 중 3교대제 근무 비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위탁기관 제공 성과평가 자료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환자수(명)	신규	신규	신규	600	24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환자 수 60명x10여개소= 600명 목표 설정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환자수(명)	연도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건강보험공단)

성과목표 Ⅰ-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주요 내용

□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공급·이용, 건강보험 자격, 재정관리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안전망 강화**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및 **자격 관리 강화, 저소득층 급여제한 예외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공정성 강화**

○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 조정, 정부지원 예산 확대, 환산지수 계약 추진** 및 **신뢰도 높은 재정관리체계 강화** 추진

□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 지역별 의료 공백 해소 및 **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보상 강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 여성·장애인·중증질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급여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 관리**

○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

○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종합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도모**

○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상황에 적극 대응 및 공급 의무부과 등 약제 사후관리 강화로 환자 치료권 보호**

□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부적정 청구행태**를 **개선**하여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및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

□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 지원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차질없는 대책*** **이행**을 통한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및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19) 등

○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 의료 공급 및 이용 유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기반 확대**

○ 全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및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의료 선택권 강화**

□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지역의료지도, 지역수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모델** 도입 등 추진

○ **예비적 성격**의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항목** 대상 **주기적 재평가**로 **요양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 조정**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율
관리과제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자격·부과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개선 추진율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율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급여 확대 추진율 · 공정한 보상체계 및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추진율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 연간 약제 접근성 개선 및 적정관리 추진율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 자율점검 사전예방 비율 · 하위기관 적정성 평가결과 향상률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 필수의료 보완대책 수립 · 소아의료 지역협력 시범사업 참여율 ·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 ·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률 · 공·사보험협의체 개최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실시율 ·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 지역 병원 육성방안 수립 ·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계획 수립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율(%)	100	100	100	100	각 관리과제별 추진목표 100% 달성 -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성과목표내 목표 달성과제/ 관리과제 수	각 관리과제별 추진 증빙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지속**

○ 최근 **급격한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量에 치중한 의료 공급**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 정상화 필요**

○ ▲필수의료 인력 유출, ▲비합리적 의료 이용, ▲풍선효과(급여 확대 시 비급여 가격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 비급여 보고·공개항목 확대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의료계 반발**

□ **갈등관리계획**

○ 보험료 부과 관련 **다양한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부과체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자격관리 강화

○ 국민에게 **적정 가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 **추진**

- **본인부담 차등화**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공급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 요인 방지**

-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매년 평가·환류**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보완 추진**

○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불제도 개혁 추진

○ 非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체계 교란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료제출 시스템 개선 등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Ⅰ-2-①, 보험정책과, 상병수당추진단)

□ 추진배경 (목적)

○ **(부과체계 개편)** 직장 - 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 국회 여야 합의('17.3월), 국정과제 66-4(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등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자격·징수 관리 강화** 등 **추진**

○ **(지속가능성 제고)**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 **가계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전 필요**

* 최근 10년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12~'21) : **한국 8.0%** > OECD 평균 4.4%

- **(수가 결정방식 개선)** 획일적인 수가(환산지수) 인상 방식을 개선하여 低보상·高가치행위, **필수의료** 등에 **공정한 보상** 지원

- **(합리적 의료 이용)** 의학적 효과 또는 **필요도가 낮은 의료**의 **본인부담 상향** 등을 통하여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이용 유도**

- **(안정적 재정운영)** 정확한 재정전망 하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정 보험료율 결정 및 정부지원 지속 추진**

- **(재정 투명성 강화)** 역대 **최대 누적준비금** 보유('23, 27.9조원)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건강보험 개혁)**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전체 17.0%**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3.4% 지출**('22년 기준)

- 변화하는 환경 속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개혁 방안**으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24.2월 발표)

- **종합계획 세부 과제**의 **구체화**를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매년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 발굴, 시행계획 조정** 등 **환류 체계 구축**

○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재산·자동차보험료 축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 ▲**자동차보험료 폐지** 추진(2월)

  * (재산) 330만 세대, 평균 월 2.4만원↓, (자동차) 9.6만 세대, 평균 월 2.9만원↓

- **(주택부채공제 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는 대출* 등 **재산보험료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 확대**(8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 **(소득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5월)

  * (現) 소득구간별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改) 소득의 일정비율('24년 7.09%)

- **(일시소득 보험료 납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조정·정산 대상 소득 확대**(8월)

  * (現) ①근로·사업소득이 ②감소한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
  (改) ①소득 종류 무관(이자·배당 등)하게 ②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 **(급여제한 최소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체납 부담 완화**(5월)

  * (現) 연소득 100만원 미만, 재산 100만원 미만 → (改) 연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

○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

- **(외국인 피부양자)** 외국인의 **피부양자 제도 악용 사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4월)

  * 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 이용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

  **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요건 기 적용 중('19.7월~)

- **(본인·자격확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 자격 도용**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등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추진**(5월)

※ **요양기관의 본인·자격확인 관련 제도개선 병행 추진**(5월)

- **(간편화)** 보다 쉽고 편리한 본인·자격 확인을 위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정보시스템을 통한 **QR인증 확인 절차** 등 **도입**
- **(예외사유)** ▲응급환자, ▲19세 미만, ▲6개월 내 재방문, ▲원외처방, ▲의뢰·회송, ▲거동불편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자격 확인 예외 인정
- **(과태료)**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低보상·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수가(환산지수) 조정·개선

- 모든 행위의 수가를 일괄 인상해온 기존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개선, **低보상·필수의료 항목**에 **보상**을 **강화**하는 **환산지수 조정방안** 마련
- 환산지수 **조정**에 투입할 **재원규모(범위)** 도출, 유형·분야별 환산지수 **재원 배분**방안(유형 세분화, 상대가치 연계 등) 논의*를 통해 **'25년 수가 결정**

  * 정책연구용역('25년 환산지수 산출·개선방안 연구),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논의 추진

○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과다 외래진료 이용 관리)**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여 과다 이용 억제(7월)

▪ **(제도정비)** 본인부담률 상향의 **예외 대상*** 등 **합리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의 **고시 제정 추진**(7월)

* ▲아동, ▲임산부, ▲장애인·희귀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등

▪ **(모니터링)** 본인부담률 90% 적용 예상자*의 외래진료 이용 형태, 보험급여 등 **모니터링** 및 **제도효과 분석 병행**

* ▲전년도 300회 이상 이용자, ▲최근 5년 내 365회 초과 이용자

-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현황조사·분석**, ▲**시범사업 모형 연구**, ▲관계기관(복지부, 건보공단 등)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추진**(7월~)

*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돌려주는 사업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 **(보험료율 결정)** 건강보험 **재정 여건***, **국민**의 **부담 여력**, 차질없는 **의료개혁 이행** 등 종합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9월)

* 건강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선 및 新모델 개발을 통한 추계 정확도 제고

- **(정부지원 확대)**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위해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재정당국 협의 등 **'25년 정부지원 예산 확대**(~12월)

○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한 관리 강화

- **(재정지표 공개 확대)** 건강보험 재정정보에 대한 기존 공시항목 세분화, 신규공시항목 추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지표 공개 확대**(~12월)

* (예) 재무안정성(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자금운용(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 등) 관련 자율공시항목 추가 등

- **(준비금 관리 강화)** 건강보험 **준비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12월)

* 준비금 운영 형태, 공단의 업무 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침 등 마련

○ 건강보험 개혁의 이행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강화

- **(시행계획 수립)** 제2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세부 과제별 '24년 시행계획 수립**(6월)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 등 바탕으로 평가 실시 및 '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25)

- **(연구용역)** ▲**제1차 종합계획 종합평가**를 통한 **주요 성과·한계 고찰**,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환류 구조 강화**를 위한 **추진 실적 평가방식 개선방안 검토**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6~12월)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2월) 및 선정(4월), 시행(7월~)

- **(집중 신청기간 운영)**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초기 사업인지 부족으로 인한 **신청기한 도과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연장** 등을 통한 **수급권 보장**(10월)

- (**추진실적 점검**) 1·2단계 시범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추진경과 보고회**(11월) 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25년도 운영계획 수립)** 보장수준, 자격기준, 의료인증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한 **'25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12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공모계획 수립	’24.1월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	’24.2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	’24.2월	
	’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24.1~8월	
2/4분기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24.4월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기준 강화	’24.4월	
	상병수당 수급사례 체험수기 공모전	’24.5월	
	요양기관의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시행	‘24.5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의 정률제 전환 시행	‘24.5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한 ‘25년 수가 계약·결정	’24.6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수립	’24.6월	
3/4분기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시행	’24.7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모형 연구 추진	’24.7월	
	연 365회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90% 적용 제외 기준을 위한 고시 제정	’24.7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대상 확대	’24.8월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24.8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회의	’24.9월	
4/4분기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지역 등 집중신청기간 운영	’24.10월	
	’25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24.1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 관련 규정·지침 마련	’24.12월	
	건강보험 재정지표 공개 확대	’24.12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3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추진	’24.6～12월	
	본인부인부담률차등제 적용 대상자 모니터링 및 제도효과 분석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필요성** 등 **부과체계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건보공단)*' 운영 지속**

* 내·외부전문가-공단-복지부로 구성, 부과체계 개선 필요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23.5~)

○ **'25년도 환산지수** 관련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급자·가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통해 최종 결정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의약계 대표,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가계 부담 및 경제 상황** 등 고려, **'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 **본인부담률차등제 시행 효과**를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 간담회**를 통한 **본인부담률차등제 확대 등 발전방안 마련**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해관계자**(사용자, 근로자, 의료기관, 건보공단 지사, 지자체 등)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을 위한 간담회(전문가-공단-복지부)	'24년 연중
간담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간담회(1차)	'24.2월
회의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선정지역 설명회	'24.4월
회의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참여의료기관 모집 설명회	'24.5월
회의	'24년 국민건강보험 시행계획(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24.4~5월
간담회	'25년도 환산지수 협상 관련 공급자·가입자 간담회 개최	'24.5월
간담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간담회(2차)	'24.6월
회의	'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결정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6월
현장방문	상병수당 급여 3단계 시범사업 현장 방문	'24.7월
간담회	'25년 보험료율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24.8월
회의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논의	'24.8월
간담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간담회(3차)	'24.9월
간담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경과 보고회	'24.11월
간담회	본인부담률차등제 효과 등을 토대로 발전방안 논의	'24.12월

□ 기대효과

○ **보험료 부과 및 자격관리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격관리 및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 등 **안정적 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예측 가능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 가능**

-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건강보험 지원(Ⅱ-6-일반재정①)			
① 건강보험 지원(4931)	일반회계	91,698	102,782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300)	일반회계	91,494	102,636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309)	일반회계	204	1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건강보험 자격·부과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개선 추진율	100	100	100	100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추진항목 선정 및 달성 추진** <추진항목> ① 건강보험 24년 시행계획 수립(20%) ②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경감(15%) ③ 요양기관 환자본인확인 시행(15%) ④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15%) ⑤ 취약계층 보험료체납 부담완화(10%) ⑥ 지역보험료 등 정산 대상 소득과 조정·정산 사유 확대 방안 마련(10%) ⑦ 상병수당 취업자 자격 개선(10%) ⑧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기준 개선(5%)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 여부 * 각 항목별 가중치 0.05~0.20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고시 개정안 공포 - 계획 발표(보도자료)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

2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Ⅰ-2-②, 보험급여과)

□ 추진배경

○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건강보험 공정 보상** 추진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24.2.1.) 발표

○ **지역별 의료서비스 공백 문제 해소** 및 **필수의료분야 수가 보완** 등 공정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장애인 중증질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체계 강화

○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급여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 **(고난도·고위험)** 저평가된 수술 및 시술 행위 보상 강화

- **(소아) 소아 외과계열**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 **(심뇌혈관)** 심근경색증 중재시술 수가 개선을 통한 **응급 중재시술 보상 강화**, **뇌동맥류 수술·개두술·천두술 수가 인상**

○ **(소아·분만)** 수요 감소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 **(소아) 1세 미만** 연령 **가산 확대**(30%→50%),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소아 입원 진료 시 수가 인상**
- **(분만)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도입,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지원('23.12.)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적시치료** 위한 보상방안 마련

- **(일반환자)** 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정신과 입원 보상 강화**
- **(중증·응급)** 급성기 입원료, 개인, 가족 상담 등 치료 수가 횟수 확대 등 **중증응급 정신질환 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②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 제도 다변화

○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 **공공정책수가** :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나, 진료특성·지역여건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에 적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 **(소아) 중증 신생아** 및 **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원 확대
- **(감염관리)** 미래감염병 대비를 위한 **격리실 입원료 인상** 및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 지원·관리

○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 **(중증진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보상**하는 시범사업 착수
- **(중증소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9개소→13개소), '23년 참여기관(9개소) 대상 의료손실 규모를 측정하여 사후보상 실시
- **(모자의료)** 가칭**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 **(연계·협력)** 지역별로 지정한 **특화분야의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위한 시범사업 추진

③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경감 및 진료체계 강화

○ **(임산부)**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140만원 →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추가 지원(2태아 200, 3태아 300, 4태아 400 등)

○ **(영유아)**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로 개선

○ **(중증소아)** 중증소아 재택의료 및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아동)** 영유아 질병·건강관리를 위한 심층상담 시범사업 확대

○ **(희귀질환)**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완화(20~60 → 10%)하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추진**

○ **(장애인)** 재택치료 **중증 장애아동** 및 **시각장애인** 관련 **보조기기 급여 확대** 추진

○ **(재택환자) 거동불편자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

○ **(요양비)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교육 및 상담 횟수 확대** 및 **임신성 및 2형당뇨**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

④ 건강보험 기준 및 기타 제도 개선

○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 효과분석 및 개선**

- 중환자실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또는 집중치료실 대상질환 확대 등 개선 추진

○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 수가 개선**

- 질병군별 적정 지불방식 마련 및 정책가산 개편, 연구 등을 통한 질병군 분류 개편 등 개선된 모형 기반의 수가 확대 추진

○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의료에 필요한 치료재료* 선정·관리

* (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응급 시술.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

- 공급 부족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 불안정 발생 시 가격 조정 등 신속 대응체계 마련

*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관련 학회·협회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24.1월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24.1월	
	2세미만 영유아 본인부담률 개선	'24.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실시	'24.1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착수	'24.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소아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24.1월	
	소아·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지원	'24.1월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한 격리실 수가 인상 및 상시 음압 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정책수가 지원	'24.1월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수가 인상	'24.1월	
	소아·청소년 1형 당뇨의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액 인상	'24.2월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교육 및 상담 횟수 확대	'24.2월	
2/4분기	소아 외과계열 수가 개선 추진	'24.4월	
	심장중재시술 수가 개선 추진	'24.5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지원	'24.6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24.6월	
3/4분기	장애인 보조기기(기립훈련기) 수가 신설	'24.7월	
	임신성 및 2형당뇨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 추진	'24.9월	
	뇌혈관질환(개두술, 천두술 등) 수가 인상	'24.8월	
	중증정신질환의 적시 치료를 위한 보상방안 마련	'24.9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건정심 보고	'24.9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	'24.9월	
4/4분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추진	'24.10~1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사후보상 실시	'24.10월	병원별 회계자료 분석에 따라 변동가능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 효과분석 및 개선안 검토	'24.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및 개선안 마련	'24.12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및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추진	'24.12월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 마련·시행	'24.12월	
	시각장애인 관련 보조기기 급여 확대 추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각 과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관련 환자단체·전문가 등 의견 수렴	‘24.1월
회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 업무 협의	‘24.3월
협의체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 개선을 위한 협의체	’24.3월
협의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의견 수렴 실시	‘24.4월
회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운영 관련 사항 심의	‘24.5~6월
협의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의체 4차 회의	‘24.5월
협의체	치료재료 공급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부처 업무 협의	’24.8월
설명회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예상 시범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24.8~9월
협의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의체 5차 회의	‘24.9월
협의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안 건정심 보고	‘24.9월

□ 기대효과

○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및 **필요한 대상**에 **적시 제공 촉진**, 이를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항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효과평가 실시	시범사업 기관 지정기준 충족률 *기관 신규지정 시 대비 추가 장비, 병상 수 등 인프라 강화 여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추진계획, NMC 수행보고서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급여 확대 추진율(%)	100	100	100	100	**<필수의료 관련 수가 개선 항목>** ①소아 외과계 수가 개선 ②심장 중재시술 수가 개선 ③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적시치료 위한 보상방안 마련 ③1세 미만 연령가산 확대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 여부 *각 항목별 가중치 0.1~0.3 적용	관련법령 개정안, 추진계획, 건정심 안건 등
공정한 보상체계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추진율(%)	100	100	100	100	**<공정한 보상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 항목>** ①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②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급여 확대 ③2세미만 영유아 본인부담률 개선 ④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사후보상 실시 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⑥장애인보조기기(기립훈련기 등) 수가 신설 ⑦시각장애인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액 인상 추진 ⑧1형당뇨 관련 요양비 급여 확대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 여부 *각 항목별 가중치 0.1~0.2 적용	관련법령 개정안, 추진계획, 건정심 안건 등

3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Ⅰ-2-③, 보험약제과)

□ 추진배경 (목적)

○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

○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종합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도모**

○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상황에 적극 대응 및 공급 의무부과 등 약제 사후관리 강화로 환자 치료권 보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치료 접근성 강화>

○ **(약제 접근성 개선)**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약제 등재기간 단축

-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실시(1차 종료, 2차 시행 예정)

○ **(필수약 안정 공급)**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

- 국가필수의약품 국산원료 사용시 약가 우대(가산) 규정 마련 및 상한금액 조정요건 완화를 통한 필수약 공급 안정화 도모
- 상한금액 인상조정 및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지원

○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적 관리)** CAR-T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약가 지불 방안** 및 투약 이후 성과 평가 등 **신약 사후관리 강화**

<유관기관 소통 강화>

○ **(민관협의체 운영)** 약가제도 개선 논의 등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 국내 및 국외 제약사 약가제도 개선을 의한 건의사항 논의

<재정 지출 효율화>

○ **(급여적정성 재평가) 임상 유용성 등이 미흡한 약제 재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가·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 결정

- **('24년 평가)** 청구현황, 외국 급여현황 등을 고려하여, **급여 등재 연도가 오래된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 '23년도에 이어 7개 성분 평가 예정(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 **(외국약가 재평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재평가(안) 마련

○ **(약제비 사후관리 지속 운영)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연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운영**을 통한 재정 절감

○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약제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

-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 마련

- 고가의약품 관리를 위한 인하율(최대 15%) 규정 개선 등

<약제 사후관리 강화 등>

○ **(해외약가 재평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재평가 계획 수립

○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고가의약품(면역항암제 등)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시

○ **(통상이슈 상황 관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주요 통상 상황* 대응

* 무역장벽보고서, 지적재산권침해보고서, 슈퍼301조 공청회, 한-EU·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약 및 산정 약제 건강보험 접근성 강화	'24.1~3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1차 시범사업 추진	'24.1~3월	
	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공고	'24.3월	
	한약제제 상한금액 조정방안 마련 추진	'24.2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24.3월	
2/4분기	2023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관련 대응	'24.4~5월	
	신약 및 산정 약제 건강보험 접근성 강화	'24.4~6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1차 시범사업 추진	'24.4~6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제도 개선 추진	'24.4~6월	
	한약제제 상한금액 조정 진행	'24.4~6월	
3/4분기	신약 및 산정 약제 건강보험 접근성 강화	'24.7~9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제도 개선 추진	'24.7~9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1차 시범사업 추진	'24.7~9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2차 시범사업 약제 수요조사	'24.7~8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약평위 1차 심의	'24.7~8월	
	국산 원료 사용 약제 가산 규정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24.7~8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2차 대상약제 선정	'24.9~10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24.9월	
	약제비 감소에 기여한 그린 처방의원 지정	'24.9월	
4/4분기	신약 및 산정 약제 건강보험 접근성 강화	'24.10~12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2차 시범사업 추진	'24.11~12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약평위 2차 심의 및 고시 개정	'24.12월	
	외국약가 재평가 시행 공고 및 안내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약가제도개선 관련 정책수요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관련 제약협회 간담회	’24.1.
간담회	외국약가 재평가 관련 제약업계 간담회	’24.1~3월
정책토론회	국회 정책토론회	’24.2월
회의	코로나19 급여 등재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24.2~3월
간담회	ECCK 등 제약회사 간담회	’24.4~6월
회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2차 시범사업 민관협의체	’24.10~12월

□ 기대효과

○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약제 등재기간 단축에 따른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

○ 의약품 재평가 및 사후관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연간 약제 접근성 개선 및 적정관리 추진율(%)	100	100	100	25	<추진항목> ①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25%)	’24년 건수 ÷ (’22~’23년 중증신약 등재 및 급여확대 평균값) * 100 * 0.25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계획, 건정심 안건, 결과 보고 등 및 약제급여목록 및 약제 상한금액표 고시 등
				25	②혁신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25%)	규정 개정 여부 (0 or 100) * 0.25	
				25	③필수약제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약가 조정(25%) * 약가인상 요청 시기는 ’23.12월부터, 약가 조정은 ’24.12월까지 조정한 실적으로 하고, 90% 달성을 최대 목표(만점)로 함	(약가조정 및 원가보전 한 품목) ÷(수급불안으로 약가인상 검토 요청된 약제 건수 및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약평위 결정 건수) * 100 * 0.28 ≤ 25	
				25	④약품비 합리적 지출 관리(사용량 증가 약제 가격인하)(25%)	450억원 이상 절감 여부 (0 or 100) * 0.25	

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Ⅰ-2-④, 보험평가과)

□ 추진배경 (목적)

< 건강보험 사후관리 >

○ 그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확대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요구 지속**

- **현지조사** 실시 기관수는 전체 요양기관의 1.0% **미만에 불과**하나, **조사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확대에 한계**

* 조사기관수(개소, 조사율) : ('21) 665(0.7%) → ('22) 606(0.6%) → ('23) 674(0.6%)

○ **사후적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현지조사 총량관리 요구 등) **및 사전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 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 필요

< 적정성 평가 강화 >

○ 건보재정의 **합리적 자원 배분** 및 사용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의 효율적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63조(업무 등)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의 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

* 대장암·폐암 등 암 질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항생제 처방률,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 36항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강보험 사후관리 >

○ **현지조사 및 자율점검을 통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

- 정기조사(매월) 및 기획조사(하반기), 이행실태조사(분기 1회) 등 실시
- 착오 청구,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 중심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 지속 유도**

○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 **의료계 주도의 '사전예방활동'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시행**
- **多기관 多발생 착오청구 항목* 대상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항목) 검진당일 '내시경검사료'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요양급여 사후관리 고도화**

- **부당청구감지시스템에 AI 예측모델 시범 적용 및 운용**

* AI모델 활용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조사결과(부당유형, 금액 등) 환류 및 미비점 발굴

-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한 AI 예측모델 추가 개발 계획 수립**

< 적정성 평가 강화 >

○ 의료 질 향상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 및 평가결과 활용을 확장하고,** 의료 질 향상 **효과성 제고 기반 마련**

*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6개영역 목표: ①환자안전, ②효과적인 진료, ③환자중심성, ④의료전달체계 구축, ⑤의료이용의 형평성, ⑥건강보험의 효율성

- **(환자안전·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①고혈압·당뇨병 통합 평가결과 첫 공개*, ②요양병원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③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법적근거 마련, ④간암 시술 지표 및 출혈성 뇌졸중 적시치료 지표 개발

* 고혈압, 당뇨병 평가결과 공개(기존 양호기관만 공개 → 변경 기관 전체 평가등급 공개)

- **(평가항목·지표의 생애주기 관리)** 의료 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별 정량목표 설정, 핵심지표 선정 및 비핵심·천장효과 지표 종료 등 전 항목 정비 추진*(~'25년)

기존	개선
항목별 정성목표 설정 * 예시: 모든 핵심지표 목표 달성	**정성목표 점검 + 구체적 정량목표(확대)** * 예시: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10만 당) 이하

* '24년 정비 항목: 고혈압, 당뇨병, 환자경험, 대장암, 폐암, 위암

- **(평가정보 자료수집 개선)** 표준서식(e-Form) 시스템 활용한 전자적 자료수집 확대·개선, 의료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자료수집 간소화

- **(가치기반 성과보상 강화)**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우수한 의원급 최초 가산 지급, 기관단위 평가를 위한 핵심 의료정보 수집 보상체계 구축(P4R*)

* P4R(Pay for reporting): 의료정보 수집 보상체계, 신뢰도 높은 성과평가를 위한 요양기관의 임상정보 수집·정리·제공 등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 **(평가정보 통합관리)** 국민 중심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근거* 마련

*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2·3항, 의료법 제58조의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등 개정안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 수립	'24.2월	**건강보험 사후관리**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4.3월	
	AI모델 활용 부당청구 개연성 높은 기관 선별	'24.3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행정처분	'24.1~3월	
	'2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수립	'24.1월	**적정성평가 강화**
	의료 질 통합관리 법령 개정 검토	'24.1~12월	
	요양병원 평가지표 개선 위한 간담회	'24.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과제(P4R) 확정	'24.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평가 현장조사 근거 신설	'24.3월	
	표준서식 기반 평가자료 제출기관 확대	'24.3~12월	

2/4분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4.4월	건강보험 사후관리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세부운영(안) 마련	’24.5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4.6월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24.6월	
	AI모델 활용 선별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4.6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행정처분	’24.4~6월	
	상반기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심의 및 선정	’24.6월	
	P4R 시범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4~12월	적정성평가 강화
	핵심지표 중심 평가항목·지표 정비(6항목)	’24.5~12월	
3/4분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4.8월	건강보험 사후관리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24.9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행정처분	’24.7~9월	
	AI모델 선정 기관 현지조사 실시	’24.8~10월	
	P4R 시범사업 추진(안) 마련	’24.7~12월	적정성평가 강화
	요양병원 평가결과(2주기4차) 질지원금 연계	’24.7월~	
4/4분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4.10월	건강보험 사후관리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모니터링 및 신규항목 검토	’24.10~12월	
	AI모델 활용 조사결과 분석 및 보완점 발굴 · 개발 계획 수립	’24.11~12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24.12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행정처분	’24.10~12월	
	하반기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심의 및 선정	’24.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첫 가산 지급	’24.10월	적정성평가 강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P4R) 보고	’24.11~12월	
	고혈압·당뇨병 통합 평가결과 첫 공개 및 인센티브 지급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관련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지표 개선 관련(요양병원 협의회)	’24.1~12월 ’24.2월
현장방문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24.6월
회의	사전예방활동 운영협의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평가기획분과위원회 및 평가항목분과위원회	’24.1~12월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통하여 **재정 건전화 기여**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의료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자원 배분·사용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자율점검 사전예방 비율(%)	신규	신규	신규	17.85	전년도('23년, 17.0%) 실적 대비 5% 상향 설정	자율점검 항목의 점검 전·후(1년) 청구금액 평균 감소율	자율점검 운영 효과 분석 결과보고서
하위기관 적정성 평가 결과 향상률(%)	22.9	26.1	32.9	40.1	최근 3년간 하위기관 적정성 평가 결과 향상률 평균	해당연도 평가결과가 향상된 기관 수/질 향상 통합관리 기관수	평가결과 보고서

5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Ⅰ-2-⑤, 필수의료총괄과)

□ 추진배경(목적)

○ **(필수의료 지원) 중증·응급환자** 등 **적기치료 실패 사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제공, 보상 강화 및 인력 확보 대책 등 **추가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한 **정책 성과 도출**

- **분야별 간담회, 연구 등**을 통한 **신규 과제발굴, 지원방안 마련**

○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비 적정 관리)** 비급여진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비급여 확대는 보험재정에도 악영향**

-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을 통해 **비급여 성격에 따른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등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가격 적정화 유도** 필요

-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보완적 지원**을 통해 고액 **의료비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필요

○ **(다차원적 의료보장) 합리적 의료 공급·이용 유도**를 위해 **공·사보험 연계 등 필요**

- 실손보험이 유발하는 **비급여 진료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진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19, KDI)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필수의료 강화방안 수립 및 과제이행

- 분만, 소아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강화방안 마련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 정책연구, 포럼 및 의료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과제 발굴 및 정책 보완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완결적 소아진료제공체계 구축

-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의료인력 양성지원 강화

○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 정책연구,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및 추가대책 마련

○ 비급여 관리 강화

- 全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비급여 현황 파악
  * 1,068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3·9월분 진료내역, 비용 등 보고

- 가격공개·고지·사전설명제도 내실화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 강화
  * (공개) 62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정보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
  * (고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시설 내부에 제공하는 비급여 내역 전체 가격 표기
  * (설명) 비급여 제공 전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공개항목+@)에 대한 설명 의무화

○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및 보장성 지표개선

-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률 지표 지속 산출

○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 건강보험(公)과 실손보험(私)간 연계를 위한 공사보험협의체 등 소통 지속 및 협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 마련 추진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TF 참여로 부처·이해당사자 간 협의 지속

○ **보완적 의료비 지원 지속 추진(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 의료비 부담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재난적의료비 모든 질환 합산방식 시행	'24.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 모든질환 합산 방식	'24.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시행	'24.1월	
	소아 진료 현장방문·간담회	'24.1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참석	'24.1월~	
	분만·신생아 현장의료진 간담회	'24.2월	
	소아의료 포럼 개최	'24.3월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시행	'24.3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구축사업(안) 마련	'24.3월	
2/4분기	소아진료 현장방문·간담회	'24.4월	
	全 의료기관 대상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접수 개시	'24.4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점검	'24.6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구축사업 실시	'24.6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관계부처 협의	'24.6월	
3/4분기	소아의료 포럼 개최	'24.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24.8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실시	'24.8월	
	'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4.9월	
	소아의료 등 추가대책 수립	'24.9월	
	필수의료 간담회 개최	'24.9월	
4/4분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9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접수 개시	'24.10월	
	'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24.11~12월	
	공·사보험협의체 개최	'24.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점검	'24.12월	
	필수의료(분만,소아 등) 개선방안 수립	'2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 국민

- 필수의료 지원을 통해 골든 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적정 제공
-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보완적의료비 지원을 통해 보다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의료비 보장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의료정보 접근성 및 선택권 강화

○ (이해관계자) 의료계, 민간의료보험회사 등

- (의료계) 비급여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분쟁 가능
- (민간보험사) 실손보험료·보장범위 조정 및 이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이해에 영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해 **의료현장, 전문가 등과 소아의료체계 발전방향 모색**

○ 정책 설명회 및 의료진 간담회, 의료현장 방문 등 **지속적인 정책 현장 의견수렴 추진**(연중)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확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예정('24.7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학회, 의사회, 아동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진행	연중
현장방문	○ 병원급별 소아의료현장 방문	연중
설명회	○ 신규 추진 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24.3월
포럼	○ 소아의료 포럼 추진	'24.3월
간담회	○ 비급여 관리 정책 간담회(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24.7월

□ 기대효과

○ **(필수의료 지원)**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 **(의료이용 적정화)**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공급·이용 유도

○ **(가계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연중 지원, 저소득층 대상 본인부담 상한제 보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재난적의료비 지원(Ⅱ-1-일반재정⑧)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6362)	복권기금	568	685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344)		568	685
건강보험 지원(Ⅱ-6-일반재정①)			
① 건강보험 지원(4931)	일반회계	38	170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307)		38	1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필수의료 보완대책 수립	신규 신규 신규	2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필수의료 혁신 전략" 등 대책 이행 및 후속 조치로 추가 지원방안 마련	대책, 연구보고서 자료 활용(건수)	대책, 연구보고서 자료 활용
소아의료 지역협력 시범사업 참여율	신규 신규 신규	80	'23년. 소아의료 개선대책(2차례) 의 소아 지역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협력 활성화 이행 일환으로 시범사업 실시 *20개 지역네트워크를 선정이 사업 목표로, 17개시도별 1개 이상 네트워크 참여 가능한 수준인 80%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시범사업 참여 지역네트워크 /20개지역*100	시범사업 공모 결과로 산출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공통)	신규 11.3 12.1	12.2	5년('19~'23) 실적을 바탕으로 베타분포 방식 활용한 추정값(11.2)에 5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총진료비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률	신규 신규 신규	80	全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는 '24년 첫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기존 비급여 가격공개자료 뿐만 아니라, 환자별 비급여 진료내역을 작성해야한다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률 80%로 설정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기관 수/제출대상 기관 수*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공문 등
공·사보험협의체 개최	1 1 1	1	공사보험협의체 개최를 통한 공사보험 연계 및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	개최여부	공문, 결과보고 등

⑥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Ⅰ-2-⑥, 지역의료정책과)

□ 추진 배경(목적)

○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19.) 후속조치로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 필요

- **필수의료 위기**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추진

○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 지역 간 의료·건강 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대책 추진 시급**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치료 가능 사망(10만명 당, '21) : 서울 38.6명 vs 강원 49.6명, 경남 47.3명

○ **체계적 선별급여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의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점검 필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의4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및 이행관리**

- 의료인력 확충 및 확충된 의료인력이 **필수 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2.1.)

-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차질 없는 이행 지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조 개혁과제** 논의 지원

○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개발**

- **(의료지도)** 행정구역을 벗어나 **의료 이용·공급 실태, 자원배분** 등을 분석 → **소~중진료권* 단위 (전체·질환별) 지역의료지도 개발**

* 기존 70개 중진료권 개편하여 질환별 세분화 된 지역의료지도 개발

- **(지역수가) 「지역의료지도」** 기반 **지원 필요성 평가**를 통해 **적용단위** 및 **차등화*** **기준 마련** 등 **지역수가 도입·확산**

* 의료자원 공급, 지역 자체 충족률 등을 기준으로 진료권 단위 취약도 평가 척도 마련

○ **지역 병원 육성**

- 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책** 수립·시행

-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例) ▲신포괄 개편과 연계 보상체계 개선, ▲전문의 정책 가산, ▲인력·재정 등 우선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모델** 도입

- **지속·포괄적** 관리를 포함한 **핵심 일차의료 서비스** 규정, 다학제 팀 구성 방안 등 **시범사업 운영모형 개발**

-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기존 **시범사업**과의 **연계** 방안 **검토, 전문과목, 질환** 등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적 일차의료모형 검토**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 평가 주기가 도래한 **49개 항목** 대상 **적합성 평가*** **수행, 항목별 사용량**(횟수·인원·금액 기준)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

* 평가 기간(3~5년) 동안 변경된 주요 임상 지침 및 연구결과 분석, 관련 학회 자문 등을 바탕으로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평가

※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선별급여 관리 업무는 상반기까지만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제1~2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1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24.2월	
	‘24년 제3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2월	
	‘24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3월	
2/4분기	‘24년 제5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4월	
	「2차병원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24.4월	
	지역의료지도 개발 및 지역수가 개발 연구용역 착수	’24.4월	
	지역의료 강화 협의체 구성·운영	’24.4월~	
	한국형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24.5월	
	‘24년 제6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5월	
	‘24년 제7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6월	
	선별급여 항목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	’24.6월	
3/4분기	‘24년 제8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7월	
	‘24년 제9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8월	
	‘24년 제10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9월	
4/4분기	‘24년 제11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10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중소병원 육성방안 발표	’24.10월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 계획 발표	‘24.11월	
	‘24년 제12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11월	
	‘24년 제13차 적합성평가위원회	’24.12월	
	지역수가 시범사업 실시	’24.12월	
	선별급여 항목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적합성평가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24.1~12월
회의	지역의료 강화 협의체 구성·운영	‘24.4~12월
현장방문	2차 병원 현장 방문	’24.5~7월
간담회	2차 병원 육성방안 추진 계획 의견수렴	’24.10월
간담회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 계획 의견수렴	’24.10월

□ 기대효과

○ **(지역·필수의료) 모든 국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

- 지역별로 정교한 **의료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합리적 지역 보상체계 마련, **취약지**에 대한 **의료 지원 기반** 마련

-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 **2차 병원 양성**을 통한 **역할·기능에 따른 지역 내 의료 공급 체계** 구축

- **핵심 일차의료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적 일차의료 제공기관**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여 **일차의료 기능 정상화**

○ **(선별급여) 선별급여 관리체계 정상화**를 통한 **재정 누수 최소화**와 **환자 안전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실시율(%)	신규	100	100	100	국민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기 결정된 평가 주기 준수 필요	적합성 평가 실시 항목 수 / 적합성 평가 대상 항목 수 × 100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신규	신규	신규	1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발표여부	발표여부
지역 병원 육성방안 수립	신규	신규	신규	1	지역 2차 병원 육성방안 발표	발표여부	발표여부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 계획 수립	신규	신규	신규	1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 계획 발표	발표여부	발표여부

성과목표 Ⅰ-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1) 주요내용

□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전문진료기능 강화, 전문치료팀 신설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 및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 **(암관리)** 암의 예방-검진-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소아암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 **새로운 팬데믹 발생** 대비 감염병 **인프라 구축**(중앙감염병병원)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호스피스)**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수립·추진**

○ **(사회적 약자 지원) 한센인, 원폭 피해자, 희귀질환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 모든 **국민의 필수·공공의료 보장**을 위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 따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지원 등 지속 추진

- **공공의료 제공체계 확충**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인프라 확대**

- **역량 강화**를 위해 파견의사, 공공임상교수, 공중보건장학생 등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의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등 **취약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마련**

○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 권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 등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한 **소아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 **외상전문진료체계 인프라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운영 도모**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 내원 환자가 적고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인력 및 의료기술 지원**

□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 재난의료체계 강화**

- **재난의료 대응체계 중장기 개편방향 검토**, 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등 **재난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응급의료종사자 활동여건 개선 등 **재난 대응체계 내실화**

○ **안전하고 전문적인 응급환자 이송관리체계 구축·운영**

- 민간 이송업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시범 운용**을 통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교육과정 개선·운영**을 통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일반인 응급처치 인프라 확충**

□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생명윤리정책** 제도 운영 및 **윤리적 연구 수행** 지원

○ **유전자검사 발전 및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 **국민 건강개선**을 **목적**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체유래물은행, 시체제공기관 제도 개선**

○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 지원**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기반 확충**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 **헌혈 가능 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른 혈액 공급 한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헌혈 증진 방안 강구 필요**

- 혈액 수급 활성화·안정화를 위한 **'24년 헌혈권장계획,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에 따른 '24년 혈액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 장기부전 질환(고혈압, 당뇨 등)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이식대기자는 지속 증가**하나, **기증자 정체로 불균형 심화**

- 기증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적정한 **기증자 예우**, 효율적인 **뇌사자 발굴 관리**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24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 도착 90분내 최초PCI 시술률 · 책임의료기관 확충률 ·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관리과제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도착 90분 내 최초 PCI 시술률 ·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 ·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 2024년 호스피스 시행계획 수립 ·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 책임의료기관 확충률 ·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례 가임여성 인구비율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 환자 비율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 재난안전통신망 정기점검 평균 응답률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도착률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 정자 기증자 보호를 위한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시 환자 의사 반영 비율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수 · 기증희망등록자 수 · 30세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 도착 90분내 최초PCI 시술률(%)	98.5	98	98	98	최근 3년간 평균 및 신규지정 센터 운영('22.9월)을 고려한 목표치 * 3년간 평균: 98.1%	각 센터의 시술률(90분 이내 PCI) 평균의 합/권역심뇌센터 수(14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DB
책임의료기관 확충률(%)	57.5	66.7	66.7	83.9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 따라 '25년까지 책임의료기관 87개소*(권역 17, 지역 70) 지정 추진 중으로, '24년 지정 목표 개소 수(누계)를 73개소(권역 17, 지역 56)로 설정 *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소수(누계)/「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상 목표 지정 책임의료기관 개소수(87개소)	책임의료기관 지정 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92.2	91.6	92.3	92.0	코로나19 영향 감소로 응급실 내원환자 증가 및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로 '24년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 실적의 평균값= (92.2+91.6+92.3)/3 = 92.0	권역응급의료 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 *1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22.7월) 사건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기반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및 **심뇌혈관질환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 소아청소년암의 진료·진단·치료까지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지방의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는 붕괴 직전

-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암 전문인력 지속 감소도 문제

* 소아암 발생: '15(1,048) → '20(966) / 전문인력 67명(서울 29, 경기 12, 그 외 26, 경북·강원 0)

○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생애 말기**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호스피스 서비스***에 관한 **수요 확대**

*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확충('23년 말 188개소) 등 관련 서비스 인프라 확대 필요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역할이 불분명함*에 따라 중증·경증에 상관없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 응급실 과밀화 발생**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로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은 동일하게 '응급환자의 진료'로만 명시

** 권역응급센터 경증환자(KTAS 4, 5등급) 비율 38.3%, 지역센터 50.9%

○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및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 대응의 필요성** 지속 증가 추세

- 민간 의료인력인 DMAT에 대한 수당 지급, 면책규정 마련 등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재난의료대응체계 운영 필요**

○ **전국 141개 민간 이송업체**가 **구급차 1,144대 운용 중**이나 ('23년말 기준), 안전하고 적정한 이송을 위한 **관리체계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 생명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기관위원회(IRB) 심의범위 확대** 및 **연구수요 증가**

* 공용IRB 심의 건수 증가 : ('18) 1,856건 → ('23) 4,744건

-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확대** 필요

○ **유전정보**는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민감정보**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유전정보 기반 **질병 예방** 및 **정밀의료 기술 발전**에 발맞춰 **유전정보 활용 기반 조성 필요**

- **최근 혼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생식세포(난자·정자 등) 및 배아 동결이 증가하여 **안전한 생식세포 기증 기반 마련 필요**

○ **인체자원**을 활용한 **연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학·의생명공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원 제공·관리체계 개선** 필요

○ 최근 **고령화, 사망원인 변화** 등으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급속히 증가**

- 국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 상담의 질 표준화** 및 **참여 의료기관 확대** 등 정책적 기반 확대 필요

□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 **저출산·고령화**로 10~20대 **헌혈가능인구 감소** 대비 **수혈인구 지속 증가** 등으로 **혈액수급관리 환경 악화**

○ 장기부전 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평균수명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이식대기자는 지속 증가**하나, **기증자 정체로 불균형 심화**

○ 수혈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적정한 기증자 예우, 효율적인 뇌사자 발굴 관리 등 **장기기증 활성화 추진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Ⅰ-3-①, 질병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심뇌혈관질환)**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22.7월) 사건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기반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및 **심뇌혈관질환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 **(암관리) 지역 맞춤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및 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지역내에서 소아암 진단-치료-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감염병) 새로운 감염병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한 **인프라·법·제도 정비 신속 추진 필요**

○ **(호스피스)**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수립·추진**

○ **(사회적 약자지원) 한센인, 원폭 피해자, 희귀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전문진료기능 강화, 전문치료팀 신설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 및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 **(뇌전증)** 뇌전증 로봇 수술장비 지원을 통하여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삶 개선**

○ **(암관리)** 지역 맞춤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및 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지역내에서 **소아암 진단-치료-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 **새로운 팬데믹 발생** 대비 감염병 **인프라 구축**(중앙감염병병원)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인프라)** 감염병 연구, 교육, 진료(평시) 및 의료대응 컨트롤타워(위기시)로서 역할 예정인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28)

- **(법·제도)** 코로나19 경험을 반영해, 중앙감염병병원의 **체계적 작동** 및 **임상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24)

- **(대응 훈련)** '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정안전부)에 따른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대비 위기대응 훈련' 기획·시행** 추진(~'24.下)

○ **(만성질환)**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복지부·질병청 간 업무 협력 체계 정비**('24)

○ **(호스피스)** 호스피스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추진**

○ **(사회적 약자 복지)** 한센인 수 감소에 따른 **소록도병원**의 **기능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추진('24.上)

- 한국인 **원폭피해자 2~3세대 유전적 영향** 확인 및 **코호트 구축**을 위한 **심층연구** 수행

-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설계공모** 및 **원폭피해자복지회관 기능개선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수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암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	’24.1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4.1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3차 심층연구 추진	‘24.1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 마련	’24.2월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안내서 발간 및 배포	‘24.3월	
	암예방의 날(3.21) 정부포상	’24.3월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24.3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4.3월	
2/4분기	뇌전증 로봇수술장비 지원기관 공모	’24.4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발표	’24.4월	
	국립소록도병원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추진	‘24.4월	
	2024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마련	’24.5월	
	2024년 국가암관리 시행계획 수립	‘24.5월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연구	’24.5월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위한 실무회의(1차)	‘24.5월	
	4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 발표 및 미흡기관 관리	’24.6월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육성(5개 거점병원)	’24.6월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종료	‘24.6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24.6월	
3/4분기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24.7월	
	5주기 암검진기간 평가 제도개선 연구 완료	‘24.7월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위한 실무회의(2차)	‘24.7월	
	만성질환 관리 업무 협력 체계 정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4.8월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계획 수립	’24.9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추진(의료자원정보시스템)	’24.9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관련 공모계획 마련	’24.9월	
	원폭피해자복지회관 기능개선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추진	’24.9월	
4/4분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설계공모	‘24.10월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24.11월	
	22년 암등록통계 발표	‘24.12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지침 마련	’24.12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심뇌혈관 질환)** 중앙·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방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암관리)** 소아암 거점병원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협력 의료기관 간 MOU 체결 등

○ **(감염병)**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업무 협력 체계 정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호스피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학회,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등 포함 공청회 실시

○ **(원폭)**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예정지 지자체, 원폭피해자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공청회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4.3월
회의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 회의	'24.2월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리모델링 방안 연구 사전회의	'24.3월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심평원 회의	'24.3월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역 등 관련 전문가 등)	'24.5월
MOU 체결	소아암진료체계 협력 의료기관 간 MOU 체결	'24.3월
간담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유관 전문학회 간담회	'24.5월
	소아암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간담회	'24.9월
	만성질환 관리 업무 협력 체계 정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4.8월
현장방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예정지 현장방문	'24.2월
	소아암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현장방문	하반기

□ 기대효과

○ **(심뇌혈관 질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합적 전문치료** 및 **협력 기반**의 **응급 대응 시스템 보완** 및 **사전 구축**

-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등 **골든타임 내** 최선의 **대응**과 **예방치료-관리 등 전주기적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격차 완화**

○ **(암관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암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암관리 사각지대 해소**

○ **(감염병)** 감염병 **인프라 구축, 법·제도** 및 **거버넌스 정비** 등 통해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향후 신종감염병 등장 시에도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 **(만성질환)**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호스피스)** 호스피스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호스피스 제도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도모

○ **(사회적 약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및 원폭피해자 복지·인권 향상**

- 희귀질환, 뇌전증 등 **소외받는 질환에 대한 의료·돌봄 수요 충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공공보건의료지원(Ⅱ-2-일반재정④)			
① 공공보건의료지원(2740)	일반회계	43	86.4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306)		13	6.4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311)		40	80
국가암관리사업 지원(Ⅱ-2-일반재정⑪)			
① 국가암관리사업 지원(2756)	국민건강증진기금	618	709
▪ 국가암관리(301)		606	695
▪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308)	일반회계	12	14
국립암센터 운영(Ⅱ-2-R&D①)			
① 국립암센터 운영(2757)	일반회계	834	895
▪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300)		457	476
▪ 국립암센터운영지원(R&D)(301)		278	273
▪ 국가암빅데이터운영(304)		6	14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305)		19	95
▪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307)		74	37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지원(Ⅱ-3-일반재정③)			
① 응급의료기관 지원(2833)	응급의료기금	102.5	100.4
▪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지원(321)		102.5	100.4
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			
① 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2758)	일반회계	122	127
▪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300)		69	72
▪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301)		53	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 도착 90분내 최초PCI 시술률(%)	98.5	98	98	98	최근 3년간 평균 및 신규지정센터 운영('22.9월)을 고려한 목표치 * 3년간 평균: 98.1%	각 센터의 시술률(90분 이내 PCI) 평균의 합/권역 심뇌센터 수(14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DB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			신규	5	소아암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을 신규 지표로 선정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운영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 결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신규	계획 수립 및 훈련 시행	엔데믹 이후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훈련 필요	안전한국훈련 시행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신규	수립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의거 제2차 종합계획 수립 필요7	종합계획 수립	제2차 종합계획
2024년 호스피스 시행계획 수립			신규	수립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시행계획 수립	2024년 시행계획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	100	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의 마무리 단계로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포함한 최종계획 수립 필요	최종계획 수립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

2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Ⅰ-3-②, 공공의료과)

□ 추진배경 (목적)

○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 집중** 및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발생**

* 지역 내 의료 이용률(급성기 입원): 서울 88.2% vs 충남 64.9% ('21)

** 치료가능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서울 38.6명 vs 강원 49.6명 ('21)

- 특히, **민간 위주 의료 공급**에 따른 전반적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 취약** 및 **필수의료 부족** 등으로 공공성 저하

* '22년 기준 : 기관 수 5.2%, 병상 수 8.8%, 의사 10.2%

○ 또한 **출산율 감소 및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분만취약지 산모는 산전·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하는 등 **분만인프라 악화**

○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6.), 「필수의료 혁신전략」('23.10.) 등 각종 대책 발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6)**」에 따라 **주요시책,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 과제의 효과적 뒷받침을 유도**

○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행정체계·의료이용률·인구수 등을 고려, 권역과 지역으로 분류하여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23. 58개소 → '24. 73개소(+15))**

* (권역) 국립대병원 등 중심으로 지정 (지역)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지정·육성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병의원·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 권역 책임의료기관(17개소) 사업비 6.6억원, 지역 책임의료기관(56개소) 사업비 4.8억원 지원

○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

-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교수정원 확대**, △필수의료 **R&D 투자**, △시설·장비 등 **인프라 첨단화** 등 **혁신 로드맵 마련**

○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추진 및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적정 규모의 증축(이전신축)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자원 확보

*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강원 삼척의료원

** 강원 영월, 서울 제2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인천 제2의료원 등

-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감염병대응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

-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대내외 여건 및 문제점 분석, 자체 업무개선방안 도출 유도

-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1년 한시)을 통해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

○ 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및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 및 파견의료인력 **사업 대상자 연차별 확대*** 추진

* (파견의료인력) '24년 80명 → '25년 100명, (공중보건장학생) '24년 120명 → '25년 150명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확대 추진**

- ’23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미설치 권역 (경기·인천·충북·제주)에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23년 8억원 → ’24년 61억원 → ’25년(안) 109억원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 설치·운영비 지원**

-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을 **지정**하여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 및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고**

  * (’23) 70개소 지원(산부인과 54개소, 소아청소년과 10개소, 인공신장실 6개소)
    (’24) 77개소 지원(산부인과 58개소, 소아청소년과 11개소, 인공신장실 8개소)

○ 지역 특성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협력진료 및 이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자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권역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분만 및 통합적 치료를 담당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운영지원**(계속),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 운영지원**(계속)

○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28)을 통해 **필수의료*** **기능 대폭 강화 추진**

  * 응급, 중증외상, 심뇌, 감염병, 모자의료 등

- 신축·이전 부지 정비를 위한 **토양환경정화**(’23.3.~’25.2.) **및 부지 내 근대건축물 종합정비계획 수립**(’24.4.~’24.12.)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기본설계(~’24.12) 추진** 및 NMC 신축이전 사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SP 수립 연구 (~’24.4)**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	'24.1월	
	'24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선정대상 통보	'24.2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개선	'24.1~5월	
	국립대병원 혁신 협의체 개최	'24.1~2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4.2~10월	균특회계 자금집행에 따라 변경 가능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계획 및 가이드라인 배포	'24.3월	
	신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평가 및 지정 통보	'24.3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24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년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대상자 기관 배치 통보	'24.2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계획 수립	'24.1월	
2/4분기	근대건축물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	'24.4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4.4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혁신계획 평가 및 1차 지원금 지급	'24.4~5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혁신계획 이행상황 평가 및 컨설팅	'24.4~10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개선	'24.4~5월	
	의료 및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지원기관 공모	'24.4월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개최	'24.4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경영분석	'24.4~6월	
	'24년도 공중보건장학생 신규모집	'24.4~5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계획 통보 및 지침설명회 개최	'24.5~6월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방안 현장의견 수렴	'24.6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연장 통보	'24.6~7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계획 설계	~'24.6월	
3/4분기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경영진단	'24.7~9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실시	'24.7~10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추진과제 실적 모니터링	'24.7~10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선정평가	'24.7~10월	
	지역·필수의료 완결적 보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완료	'24.8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건살사업관리 용역 발주	'24.9월	설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 발주	'24.9월	설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엄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개최	'24.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국립대병원 혁신방안 마련 연구 완료	’24.10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현장점검	’24.10~11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 의료기관 현장점검	’24.10~11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통보 및 환류계획 수립	’24.10~12월	
	’23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현지점검	’24.10~12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보고서 작성 및 발간	’24.10~12월	
	’23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24.11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2차 지원금 지급	’24.11~12월	
	’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추진성과 공유회 개최	’24.11~12월	
	’25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4.12월	
	’24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현장점검	’24.12월	
	국립대병원 혁신 로드맵 마련	’24.12월	
	’25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 안내	’24.12월	
	’24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통보	’24.12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중간 설계	~‘24.12월	
	근대건축물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4.12월	
	‘미군 공병단 부지’(신축이전 부지) 토양정화 추진	’24.1~12월	’23.3월부터 시작 ’25년 완료예정
	‘미 공병단 부지(신축이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24.12월	서울시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계·학계·현장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여 공공의료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국립대병원 간담회	’24.上
	책임의료기관 간담회	’24.4, 9월
현장방문	국립대병원 현장방문	’24.上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현장 컨설팅	’24.4~10월
	책임의료기관 현장방문	’24.6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현장 점검	’24.12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현장점검	’24.10~11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 의료기관 현장점검	’24.10~11월
	’23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현장방문 및 점검	’24.下
회의·위원회	국립대병원 혁신 협의체 개최	’24.上
	신규 책임의료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4.3월

□ 기대효과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의료 전달 체계 확립

○ 국립대병원 혁신·육성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전환 유도**

○ 분만 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에게 산전 진찰, 분만 등 **산부인과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지방의료원 등 육성(Ⅱ-3-일반재정②)			
① 지방의료원 등 육성(2743)	균특회계	1,511 (1,511)	1,940 (1,940)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300)	균특회계	1,511	1,940
의료취약지 지원(Ⅱ-3-일반재정②)			
① 의료취약지 지원(2750)		18,004 (18,004)	18,192 (18,192)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301)	균특회계	16,836	17,154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303)	일반회계	1,168	1,038
국립중앙의료원 지원(Ⅱ-3-일반재정②)			
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2701)		579,735 (579,735)	59,447 (59,447)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300)	건강기금	45,805	56,953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지원(301)	건강기금	533,930	2,49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책임의료기관 확충률(%)	57.5	66.7	66.7	83.9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 따라 '25년까지 책임의료기관 87개소*(권역 17, 지역 70) 지정 추진 중으로, '24년 지정 목표 개소 수(누계)를 73개소(권역 17, 지역 56)로 설정 *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소 수(누계)/「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상 목표 지정 책임의료기관 개소 수(87개소)	-책임의료기관 지정 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	-	-	90	공공병원 설립주체인 지자체 및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경영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로써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참여율	공공병원 경영혁신 계획서 제출 건수 / 41개 공공병원	지자체·대한적십자사 작성 공공병원 경영혁신 계획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혜 가임여성 인구 비율(%)	47.3	44.8	50.3	52.2	'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 4개 지역 목표 달성 및 분만의료기관 감소 추세 반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가임여성인구수 / 분만취약지 가임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결과

3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Ⅰ-3-③, 응급의료과)

□ 추진배경 (목적)

○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 지역완결형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립**

○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전문응급의료체계 구축**

○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마련**

- 지역내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 각 권역별 이송 및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구축**

- 응급의료수요·공급 변화 등 고려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지역 여건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마련 위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내실화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지원**

-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책임 강화를 위해 **지역별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 **소아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 야간·휴일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적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 취약시간인 야간·휴일의 적정 소아진료를 위해 경증 소아환자 대상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지원 강화**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 강화**

○ **외상전문진료체계 인프라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운영 도모**

- 우리나라 외상진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중증외상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권역외상센터 운영 수준 및 손익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 의료인프라가 취약,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인력 및 의료기술 지원**

-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 현황 점검** 및 **응급원격협진·영상판독 사업 현지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응급의료정책 홍보**

-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응급실 이용 행동수칙 콘텐츠 제작, 응급의료 서포터즈** 운영, 참여형 **캠페인**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의료정보망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24.1월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추진	'24.2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2개소)을 위한 운영계획서 승인	'24.2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침 개정 추진	'24.3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24.3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 추가 지정 및 개소(순천향대천안병원)	'24.3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및 응급영상판독 지원 사업 추진	'24.3월	
2/4분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지침 마련 및 지자체 배포	'24.4월	
	2024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신규)	'24.4월	
	2024년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 추진	'24.5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 추가 지정 및 개소(해운대백병원)	'24.5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 권역 단계적 개소	'24.5월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금 지급	'24.5월	
	권역외상센터 평가설명회	'24.6월	
3/4분기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 현황 점검	'24.7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2개소 최종 지정 및 개소	'24.7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	'24.8월	
	중증외상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추진	'24.8월	
	권역외상센터 현지평가	'24.9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및 영상판독 사업 운영 점검	'24.9월	
4/4분기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평가 연구 추진	'24.10월	
	권역외상센터 손익분석 및 보상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	'24.10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수립 및 지자체 배포	'24.10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사업 간담회 추진	'24.11월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발표	'24.12월	
	응급의료 전진대회 및 홍보 캠페인 추진	'24.12월	
	권역외상센터 평가 및 결과 발표	'24.12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ㅇ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및 전문가 회의**(6월)
- ㅇ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소) 전원업무 운영 개시에 따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수도권 광역상황실 현장 방문** 및 **상황실별 의견 청취**(4월)
- ㅇ 외상 정책 및 제도 논의를 위한 **중증외상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대한외상학회 및 응급의학회 전문가 등)·**운영**(8월)
- ㅇ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및 영상판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현지 점검** 및 교육 등 실시(9월~11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응급의료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응급의료 현장 전문의 간담회 개최	’24.3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사업 간담회 추진	’24.11월
현장방문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점검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24.2월
	수도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방문 및 상황실(4개소)별 의견 청취	‘24.4월
	외상정책 관련 건의사항 및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등 의견 수렴	‘24.9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사업 운영 실태조사 및 현지점검	‘24.9월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점검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24.9월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사업 참여기관 현지점검	’24.10월
회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및 전문가 회의	’24.6월
	대한외상학회 및 응급의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중증외상 분야’ 전문위원회 신설하여 외상정책 및 제도 논의	‘24.8월

□ 기대효과

○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되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효과 기대**

○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응급의료기관 지원(Ⅱ-2-재정③)			
① 응급의료기관 지원(2833)	응급의료기금	1,145	1,363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303)	응급의료기금	306	546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316)	응급의료기금	233	240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317)	응급의료기금	606	577
응급의료기관 지원(Ⅱ-2-정보화①)			
①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금	16	22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응급의료기금	16	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92.2	91.6	92.3	92.0	코로나19 영향 감소로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 및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로 '24년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 실적의 평균값= (92.2+91.6+92.3)/3 = 92.0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1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활용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환자 비율(%)	신규	신규	63.1	59.3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 우려로 인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감소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4개년('20~'23) 평균(59.2%)을 기준으로 하여, 0.1%p 증가한 59.3%로 목표치 설정	(최초 중증도 분류 결과가 KTAS 1-3등급인 환자/내원 환자) x 100	응급환자진료망(NEDIS)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자료 전수조사

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Ⅰ-3-④, 재난의료대응과)

□ 추진배경 (목적)

○ 다수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응급의료체계 운용**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이송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선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관리체계 운영**

○ **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일반인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 재난의료체계 강화**

- **재난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별 재난의료 자원분석 및 이에 따른 **재난의료대응체계 중·장기 개편, 기본방향 검토**(연구용역)

- **재난의료대응인력** 대상의 **기본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기초/심화 과정*으로 분리하고, 표준 교안 마련 및 이력관리체계 도입

  * (기존) KDLS-F(원외) → (개편) KDLS-B(기초) + KDLS-A(심화)

- 재난 시 이동형 병원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전체 시설 전개·점검,**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용기관 대상 **재난 시나리오 기반 실습 교육 추진 등 재난 대응체계 내실화 지속 도모**

- DMAT 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 출동 수당 외 대기수당 신설,** 재난 대응을 위한 **물품·장비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추진**

○ **안전하고 전문적인 응급환자 이송관리체계 구축·운영**

- **병원전(前) 응급환자 분류(Pre-KTAS) 교육 및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최적 병원에 신속 이송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닥터헬기(1개소) 신규 배치 및 8개* 지역** 지속 운영,취약지역 닥터헬기 **이·착륙장 건설** 지원**

  * 닥터헬기 배치 시·도(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 제주)

  ** '24년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 1,400백만원

-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해 중환자실(ICU)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MICU)** 시범 운용(1대)

- **이송처치료 현실화,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 추진

  · 구급차 내 처치비 인정기준, 적정 인상률 반영 등 **이송처치료 현실화**하고 **인증제* 도입 등 모니터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평가지표(안))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 운영·관리 체계 등

○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응급상황 시 **적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추가 5종) ①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③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심전도 측정 및 전송, ⑤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절단

-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등** 실시

-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교육 내 **추가 교육·재인증 과정 개발** 및 응급환자 대상 영상의료지도를 실시하는 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 **평가·확대 방안 연구 추진**

-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및 관리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DMAT 대기수당 신설 및 지급	'24.1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지자체(1개소) 신규 공모	'24.2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수요조사 결과 확정 및 확정내시	'24.3월	
2/4분기	중증응급환자 전담 구급차(MICU) 1대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 실시	'24.4월	
	이송처치료 제도개선 연구 및 인증제 도입 연구 추진	'24.4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24.4월	
	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 확대 방안 연구 추진	'24.6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4.6월	
3/4분기	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 추진단 워크숍 실시	'24.8월	
	이동형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 실시	'24.8월	
	재난의료대응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추진	'24.8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8월	
	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안 마련	'24.9월	
4/4분기	이송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4.10월	
	의료지도의사 재인증 교육과정 개발·교육 실시	'24.11월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용기관 대상 교육 실시	'24.11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정기 점검 추진	'24.11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1개소 추가 예산교부	'24.12월	
	중증응급환자 전담 구급차(MICU) 1대 시범 운영 개시	'24.12월	
	2024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실시	'24.12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난의료관리자 및 재난의료책임자 대상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재난의료대응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학회, 응급의료종사자, 민간 이송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쟁점 논의**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재난의료관리자 간담회	’24.2월
	재난의료책임자 간담회	‘24.9월
	구급차 운용 제도개선 관련 이송업체 간담회	’24.3, 9월
회의	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 추진단 워크숍	’24.7월
	민간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24.분기별
현장방문	응급의료 전용헬기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8월

□ 기대효과

○ 재난의료대응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현장응급의료종사자 등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률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Ⅱ-2-재정①)			
①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응급기금	120	114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301)		47	43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302)		73	71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Ⅱ-2-재정②)			
①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	응급기금	251	289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309)		11	32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311)		240	2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단위:%)			신규	98.4%	최근 3개년 실적의 산술평균 * ('21) 99.2, ('22) 97.2, ('23) 98.9	KDLS-B과정 수료자 / KDLS-B과정 참여 대상자 × 100	중앙응급의료센터 교육 결과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점검 평균 응답률 (단위:%)			신규	97.4%	최근 3개년 실적의 산술평균에서 3%상향 * ('21) 91.5, ('22) 94.2, ('23) 98.2	재난안전통신망 월별 정기점검 결과(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약 700여개 기관 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산출 시 집단행동 기간 제외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도착률(단위: %)	49.8	49.6	51.1 (잠정치 *)	50.1	최근 3년의 실적 평균치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응급의료기관에 발병 후 24시간 이내 내원하여 입원한 중증응급환자	NEDIS 자료 *실적 산출 시 집단행동 기간 제외

* 데이터 전송 및 수정 기간, 입원 환자의 퇴원 등을 고려하여 확정 실적은 '24.상반기 이후 최종 실적치 도출 가능 예정

5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Ⅰ-3-⑤, 생명윤리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생명윤리 및 안전 관리) 생명윤리 분야 연구** 및 **조사 활동 수행**을 위한 **연구 기반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국가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운영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인증·등록 등을 통한 연구 지원 체계 강화

○ **(유전자검사 및 생식세포 제도 개선) 유전자검사 및 생식세포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

○ **(인체연구자원 관리)** 「생명윤리법」, 「시체해부법」에 따라 **연구 목적**의 **인체유래물, 시체조직 등 제공·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환자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국민의 자기결정이 실효성 있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행 인프라**를 **확충**하고 삶의 마무리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생명윤리 및 안전 관리)** 연구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공용위원회 운영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공용위원회 지역거점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연구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활동** 수행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2주기('25년~) 준비를 위해 1주기('21년~'24년) 완료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유전자검사 및 생식세포 제도 개선) 유전자검사**의 **안전한 활용 환경** 및 **정자 기증자 보호 기반** 조성

- **DTC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2차 서비스 안내 기준** 및 **미성년자 검사 기준 마련**, DTC 유전자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항목까지 **범위 확대**하는 등 **인증제 운영 확대**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확대** 및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최근 남성 난임환자 증가로 정자 기증 필요성 증대하고 있어, 안전한 **정자 기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인체연구자원 관리)** 인체유래물은행, 시체제공기관 등 **연구자원 제공기관 활용성 강화**를 통한 **연구 친화적 환경 마련**

- 시체조직 분양을 위한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개소수 확대**

- 시체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 연구 기반 마련

- **잔여검체 활용 절차 개선**을 통한 인체유래물 수집 용이성 제고

- 인체유래물등 제공 촉진 및 질 향상을 위해 **인체유래물은행 평가 제도 확대·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제도 이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수요자 지향적 제도 운영 강화**

-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4~'28) **수립**

- 지역 내 등록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 등록기관 시범 지정·운영**

- 공용윤리위원회 **부재** 지역 및 위탁 의료기관 **과밀 지역** 대상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설치**('23. 12개소 → '24. 15개소)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등록기관 **종사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지속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24.1월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24.3월	
2/4분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4.4월	
	'24년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대상 기관 선정	'24.4월	
	'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차 인증 결과 공고	'24.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차 지정	'24.5월	
	DTC 유전자검사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	'24.6월	
	상반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부여	'24.6월	
3/4분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거점 등록기관 시범 운영	'24.7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24.7월	
	정자 기증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완료	'24.8월	
	공용IRB 지역거점 특화패널 운영	'24.9월	
4/4분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차 지정	'24.11월	
	DTC 인증기관 실태평가 및 사후관리 추진	'24.12월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부여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계·학계·종교계·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명윤리 정책 이행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기관위위원회 평가 대상기관 설명회	'24.2월
	대전지역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24.2월
	공용윤리위원회 종사자 간담회	'24.12월
	생명윤리 현안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쟁점 논의(콜로키움)	격월, 연6회
현장방문	시체제공기관 현장 방문	'24.3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장점검	'24.下
회의·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4.4월
	인체유래물은행 제도개선 회의	'24.11월
실태조사	연명의료 이용 국민 및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24.12월
	공용IRB 이용 연구자 대상 상담 만족도 조사 실시	'24.12월

□ 기대효과

- ㅇ **생명윤리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 ㅇ 유전자검사 및 생식세포 제도를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 ㅇ 인체유래물은행, 시체제공기관을 통한 **원활한 인체연구자원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 기반 마련**
- ㅇ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대**를 통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 지원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Ⅱ-1-일반재정⑩)			
① 생명윤리및안전정책(2755)	일반회계	120	128
		(120)	(128)
▪ 생명윤리및안전관리(302)		120	1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정자 기증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신규	개정 완료	최근 남성 난임환자 증가로 정자 기증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안전한 정자 기증 환경 마련하고 정자 기증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개정 완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국가법령정보센터 내 확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시 환자 의사 반영 비율(%) (공통)			신규 78.5	79.6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취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자 의사 영비율은 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목표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자기결정존중비율 상승 로그 추세를 적용하여 목표치 산출	환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이행비율(①+②+③/①+②+③+④)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방법 ① 연명의료계획서,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③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가족 진술, ④가족 전원 합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통계

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Ⅰ-3-⑥, 혈액장기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저출산으로 주 헌혈층인 10-20대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암·중증질환 증가 등으로 혈액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 관리** 필요

○ 장기이식법 제정('99.2월) 이후 **지속적인 기증활성화대책 추진**으로 뇌사 장기기증 등 기증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등의 영향으로 **기증자 정체 상황**

○ 장기부전 질환(고혈압, 당뇨 등)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이식대기자는 지속 증가**하나, **기증자 정체로 불균형 심화***

* 이식대기: 34,187('17) → 51,857('23), 뇌사기증 515명('17) → 483('23)

○ 장기등의 수급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장기·조직 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급·관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혈액 관리)** 국가 및 지자체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

○ **(헌혈 권장)**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2024년 헌혈권장 계획 수립** 및 혈액제제별·연령대별·지자체별 **목표관리 추진**, 범부처 헌혈 장려 협의체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운영**

* (위원)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 기재부, 행안부, 국방부, 교육부 등 9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위원

○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 3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 추진

○ **(헌혈자 예우 및 헌혈 홍보 강화)**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헌혈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헌혈자의 날'(6.14.) 행사 추진**

○ **(원료혈장 수급관리)**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시행**

* 국내 혈장 수요량 분석, 국내 헌혈실적을 활용한 국내 혈장 공급량 예측, 부족한 혈장의 수입 필요량 산출, 국내 혈장 제약사별 배분량 산정 등

○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vCJD(인간광우병) 위험국가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관련 **합리적 개선안 마련**

○ **(혈액 수급 인프라 강화) 헌혈 접근성 강화 및 채혈환경 개선**을 위한 **헌혈의 집** 신설 및 보수 등 **인프라 강화,** 혈액제제의 **안전한 품질** 및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혈액원 노후화 시설개선 및 관리·평가**

○ **(혈액 안전관리 강화) 혈액제제**의 제조·보존 등의 **품질관리**부터 **수혈**까지 **전주기적 혈액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개정***

* 혈액제제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존기관 조정 관련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혈액원 표준업무 규정 및 심사평가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 및 수혈자 부적격혈액 수혈사실 통보기준 마련 등

○ **(장기 및 인체조직)** 변화하는 기증환경, 심화되고 있는 장기 등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추진**

○ **(종합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장기 정책과제와 실천 전략 수립**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23.6.13, '25.6.14 시행)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 **(생존기증 지원 확대)** 생존기증자 추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기증자 권리·건강권 강화**

* 생존기증자 추적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실시('23년)

○ **(새로운 장기기증 방식 도입 추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등 기증 방식 확대로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증 활성화 추진**

*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영구적인 순환정지(심정지) 후 장기기증하는 방식(미주, 유럽 등 18개국 시행)

○ **(장기기증 인식개선)** 청소년, (예비)의료인, 일반인 등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중·고교 교육 강화, 민관협력의 홍보·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의료기관 지원강화) 의료기관에 기증활성화프로그램* 보급 확대**('23.84개소) 및 **운영방식 개선**** 통한 뇌사자 발굴 적극참여 등 **의료기관 지원·협력 강화**

* 뇌사추정자 신고·면담 연계 프로토콜 정립, 의무기록 분석, 의료진 인지 조사 등 지원
** 기존 회의·교육 위주 프로그램에서 기증활성화 캠페인 등 현장 활동 강화

○ **(장기기증 유가족 예우강화)** 학업을 마치지 못한 뇌사기증자 대상으로 **명예졸업장 수여 추진, 유가족 심리상담·비대면 서신 교환 서비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등

○ **(제대혈 공공관리)** 악성질환 **치료 및 연구 자원인 기증제대혈의 안정적 확보·관리**를 위한 **기증제대혈 은행 지정, 제대혈정보센터 운영 등**

- **(제대혈 질 관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대혈은행 허가 및 정기 심사·평가 등 관리**

- **(제대혈 정책기반 강화)** 제대혈 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협의체 구성·운영** 및 **근거기반정책을 위한 정책연구**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3년도 헌혈권장계획 하반기 실적점검(17개 시도)	’24.2월	
	· 2024년 헌혈의 집, 혈액원 등 혈액 수급 인프라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행	’24.2월	
2/4분기	· 원료혈장 수급계획 마련	‘24.4월	
	· 혈액안전관리 관련(혈액제제 보존기간 관련) 법령개정 추진	’24.4월	입법예고
	·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4.4월	
	·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용역 추진	’24.4월	
	· 장기·조직 기증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24.5월	
	· 단체 헌혈 행사 시행(상반기)	’24.5월	
	· 2024년 헌혈 권장계획 수립 및 배포(17개 시도)	’24.5월	
	· ‘6.14 헌혈자의 날’ 기념 행사	’24.6월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최	’24.6월	
3/4분기	· 2024년도 헌혈권장계획 상반기 실적점검(17개 시도)	’24.8월	
	· 제대혈 관리정책 전문가 자문협의체 구성	’24.9월	
	· 혈액안전관리(부적격혈액수혈통보기준 관련) 법령개정 추진	’24.9월	
	· ‘생명나눔주간’ 행사 및 기증활성화 집중 홍보	’24.9월	
4/4분기	· 2024년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4.11월	
	· 단체 헌혈 행사 시행(하반기)	’24.11월	
	·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12월	
	·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12월	
	·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소관 법인 감사 실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계·학계·윤리계·현장전문가·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여 혈액장기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현장간담회	’24.3월
	헌혈자 간담회	’24.11월
	장기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 및 논의	’24.11월
현장방문·소통	헌혈자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유공자 표창	’24.6월
	공공조직은행 현장 방문	’24.5월~8월
회의·위원회	혈액관리위원회 개최	’24.3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최	’24.6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 장기등 기증 활성화, 적출·이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만족도 제고, 가족에게 돌봄부담 경감**

○ 제대혈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Ⅱ-2-일반재정①)			
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2731)	일반회계	193 (193)	212 (212)
▪ 장기·조직기증원 운영(302)		84	88
▪ 공공조직은행 운영(303)		41	57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305)		60	60
▪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500)		8	7
장기기증활성화지원(Ⅱ-2-일반재정②)			
① 장기기증활성화지원(2731)	건강증진기금	38 (38)	51 (51)
제대혈 공공관리(Ⅱ-1-일반재정⑦)			
① 제대혈 공공관리(2748)	일반회계	14 (14)	- (-)
혈액안전관리(Ⅱ-2-일반재정③)			
① 혈액안전관리(2734)	건강증진기금	76 (76)	88 (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수(만명)(공통)	38.8	40.3	41.5	42.5	최근 3년간 연간 신규 모집자 평균 및 검사비 예산규모 고려 ('24년 신규 15,000명 모집 목표이나 기증철회 등 고려하여 목표 설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되는 기증희망자 수(누적)	장기이식정보시스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증희망등록자수(누계)(만명)(공통)	258.7	271	284	298	최근 3년간 평균 기증희망등록자수(누계) 고려, 10% 목표 상향하여 설정 -3년 평균 기증희망 등록자수(누계) ×1.10 (목표상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수(누계) 집계	장기이식정보시스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30세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수(연인원)(명)(공통)	1,142,195	1,216,701	1,248,047	1,250,000	최근 3년간 실적 자료에 따른 3년 평균치(1,202,314명)의 약 4% (48,000명) 상향된 도전적 목표치 설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 등 의료기관 혈액원 통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통계

성과목표 Ⅰ-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1) 주요 내용

□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목표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강화 등 **국민의 건강수명을 제고**하기 위한 「제3차 **국민건강검진종합계획**('21~'25)」 수립·시행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30년 성인남성흡연율 25%) 달성**

* (주요내용)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금연구역 지정·관리,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등 담배광고 규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등

○ **음주 폐해 예방정책*** **지속 추진**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30년 성인남성고위험음주율 17.8%) 달성**

* (주요내용) 주류광고 표현·매체 규제 강화, 과음경고문구 표시 확대, 금주구역 지정·운영 도입,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

○ **비만문제 개선** 추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를 기반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 추진**

○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강화**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수요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방안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24.上)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유사 사업의 장점을 반영하여 **연계·통합방안 마련**('24.下)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여 **본사업 추진**('24.下)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내실화를 위한 추진·전문위원회 운영(계속)
-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사용처 확대 추진('24.下)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 지역 확대 추진('24.下)

□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통한 구강·치의학 분야 정책·기술개발 연구 및 산업육성 지원 토대 마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24.1.23)으로 설립 근거 마련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2억, ~'25.上)

○ 구강보건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

*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확대 추진, 노인구강방문진료사업 추진 방안 마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
관리과제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 이행률 · 금연 홍보 사업 인지도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 ·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 이용자 만족도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록 환자 수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 구강질환 예방 관리율 · 구강보건사업 성과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점) (공통)	79.6	85.4	79.8	81.5	최근 3년간의 실적치 추세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국의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 참여에 따른 건강개선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 OTT 플랫폼 및 유튜브 등 **주류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필요**

- **(금연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조장 마케팅 모니터링 등 추진
- **(절주대책)**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절주 예방 교육 강화

○ **국가건강검진체계 개선**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ㅇ 지역별로 책임성 있는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조사체계를 개선**해 **정량적 평가 강화 필요**하다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3년) 및 **적용 예정**

ㅇ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료기능 제외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 증진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유관 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 의료기관 : 진료 및 상담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ㅇ 본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환자단체 등도 공감

ㅇ 다만, 본사업 전환 시 만성질환 진료행태 및 환자 본인부담 변화 등이 예상되어 이해관계자 간 협의 통해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ㅇ 아동·노인·장애인 등 구강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학교, 치과병·의원의 참여 의지 및 적극적 협조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Ⅰ-4-①, 건강증진과)

□ 추진배경 (목적)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30년 성인남성흡연율 25%) 달성**

* (주요내용)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금연구역 지정·관리,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등 담배광고 규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등

○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및 근로자의 주요 생활 공간인 직장환경의 건강친화적 개선 필요

* '21년 기준 15조 6,382억원으로 '15년의 11조 606억원에 비해 약 41.4%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건강검진 제도 개선으로 생애주기별 검진제도 강화>

○ 학생건강검진(교육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으로써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 대상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영유아부터 소아·청소년(학생), 청년, 노인까지 **연령별 특성 및 사회적 요구** 등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율 감소>

○ **(담배규제·관리강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담배유사제품) 온·오프라인 규제 추진 및 담배규제 관련 국제공조 강화**

- 담배제품 사용 감소 유도를 위한 **담배업계 광고·판촉 규제**

* 온·오프라인 **담배광고 마케팅 모니터링**,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개발·시행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점검** 정책수립 지원

-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담배규제 **협약이행 촉진·선진화 방안** 논의 및 국내 정책 성과 공유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담배소비·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2월~, 우리나라는 '05년 5월 비준), 격년 총회 개최

○ **(금연지원 확대)** 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임대주택, 학교, 사업장 등의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시도자 발굴, 서비스 제공 등 **금연지원 확대**

- 금연 동기와 성공률이 높은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기능 강화**

-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립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간 연계** 및 **전달체계 정비 기반 마련**

○ **(금연 홍보)** '20년부터 추진한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 캠페인**의 **대상과 소재를 확대**하여 **연중 디지털 참여 캠페인** 추진

- 근거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한 **신종담배 위해성 인식 강화** 및 금연지원서비스 홍보를 통한 **금연 행동 촉구**

<절주문화 확산으로 음주율 감소>

○ **(중장기 홍보 전략 수립)** 잘못된 음주 인식을 개선하고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중장기('24~'26) 홍보 전략 및 브랜드 슬로건 개발**

- 신규 브랜드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홍보 캠페인 및 공익광고 제작,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 중심으로 집중 홍보 추진

○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기존 대상(방송·인쇄·통신·옥외매체) 외에 온라인 웹·앱 기반 주류 취급(판매·픽업·배달) 플랫폼 등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음주조장환경 개선 및 불법 주류광고 저감화에 기여

<비만예방관리로 비만율 감소>

○ **(홍보·캠페인)**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 개발·보급 및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협력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아동비만예방사업(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실적 관리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지원, 비만아동 교육·상담 서비스 모델 개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로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인증심사 운영)** 인증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단 구성을 통한 심사 및 인증기업 선정·환류 진행

○ **(건강친화 경영지원)**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우수사례집 제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WHO 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 참석(파나마)	'24.2월	
	금연홍보 및 캠페인 대행사 선정	'24.3월	
	아동 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교육매체 배포	'24.3월	
	음주폐해예방사업 중장기 홍보전략 용역 발주 및 계약	'24.3~4월	
	비만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 운영	'24.3~4월	
	제1차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개최	'24.3~4월	
	비만 아동 교육·상담 서비스 모델 연구	'24.3~11월	
2/4분기	1차 금연광고 제작 및 송출	'24.4월	
	세계 금연의 날 행사(5.31.)	'24.5월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안) 마련	'24.5월	
	'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 및 설명회 실시	'24.5~6월	
	건강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24.5월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24.5~11월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공모전(6월~8월)	'24.6월	
	지자체 비만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운영	'24.6월	
3/4분기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 구성 및 워크숍 개최	'24.7~8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	'24.7~10월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24.8~10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음주폐해예방관리 공익광고 제작	'24.8월~	
4/4분기	2차 금연광고 제작 및 송출	'24.10월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사업 공모전 시상식	'24.10월	
	제2차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개최	'24.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행사 개최	'24.11월	
	'24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실적 분석 및 성과 환류	'24.12월	
	제5기 답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고시 시행	'24.12월	
	지역사회 금연사업,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복지부·교육부 공동으로 '학생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

* (복지부·교육부 국장 공동 단장) 여가부·질병청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3인

○ 복지부·질병청·건보공단 내 '검진제도 개선 협의체(신규)' 운영

○ 국가금연정책 추진 관련 심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운영

* 관계부처(복지부·여가부·식약처·질병청) 및 보건·의료, 법조, 홍보, 소비자단체 등

○ '음주폐해예방 협의체(신규)'를 통해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 지자체 비만예방관리사업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지침 개선 의견수렴

○ 관련 전문가(산업보건, 경영, 법률 등)을 포함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관련 개정 논의	'24.1월~3월
회의	학생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논의	'24.3월, 5월, 7월, 10월
회의	음주폐해예방 협의체 논의	'24.5월, 8월, 11월
간담회	학교흡연예방사업 간담회	'24.5월
회의	1차 지역금연지원센터장 협의체 회의	'24.4월, 7월, 10월
현장방문	4기 지역금연지원센터 현장 방문	'24.7월
의견조사	지역사회 비만 사업 안내서 개정 의견 수렴	'24.9월
설문조사	지역사회 비만 사업 담당자 만족도 조사 실시	'24.10~12월
설문조사	음주폐해예방홍보 인지도 조사 실시	'24.11~12월
회의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회의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ㅇ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제도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 제고 및 건강형평성 향상
- ㅇ **흡연·음주 예방** 및 **금연·금주 유도**를 통한 **흡연율·음주율 감소,**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ㅇ 금연·절주 문화 확산 및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적 금연·절주 분위기 형성
- ㅇ 비만예방관리사업을 통한 비만율 개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ㅇ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만족도 제고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만성질환 예방관리(Ⅲ-1-일반재정③)			
① 만성질환예방관리(3334)	국민건강증진기금	96	95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07)	국민건강증진기금	96	95
금연사업(Ⅲ-2-일반재정④)			
① 금연사업(3335)	국민건강증진기금	1,139	1,347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01)	국민건강증진기금	1,139	1,000
▪ WHO FCTC국제분담금(304)	일반회계	-	347
절주사업(Ⅲ-1-일반재정⑤)			
② 절주사업(3340)	국민건강증진기금	13	13
▪ 음주폐해예방관리(300)	국민건강증진기금	13	1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Ⅲ-2-일반재정④)			
①건강생활신천지원(3340)	일반회계	4	1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307)	일반회계	4	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국가건강검진 제도개선 이행률(신규)	-	-	94.6	96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이행률	7대 추진과제 이행률	과제별 추진실적
금연 홍보 사업 인지도	(77.0)	(75.3)	76.0	76.8	대국민 금연 광고 캠페인 인지도	대국민 설문조사	3,500명 샘플 조사

2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Ⅰ-4-②, 건강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운동·영양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수요 증가**

○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요인 대응**뿐만 아니라 **생애과정 접근,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건강정책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건강증진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각 지역 정책환경이 고려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의 '24년도 실행계획 수립 및 '23년도 추진실적 평가·환류**
- 지역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 도모를 위해 全 지자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3~'27)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건강이슈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정책 추진 전반에서 시민 건강이 고려되도록 **건강도시 지표 지자체 보급 및 담당자 교육** 등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 의료-비의료행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추진

○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강화**

-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필요도를 중심으로 각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중앙(복지부)-지자체(시도·시군구)-유관기관(시도 지원단 등) 간 연계·협력체계 강화로 건강증진 기능 강화

-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성과지표 조사 방식**을 개선해 **대규모 조사체계**(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반영 추진**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수요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 기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어르신 특성에 맞게 비대면(AI·IoT 활용) 건강관리서비스로 개편 확대

  * ('22년) 90개소 → ('23년) 141개소 → ('24년) 178개소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보건소의 단계적 확대 추진

  * ('22년) 180개소 → ('23년) 202개소 → ('24년) 225개소

○ 지역보건기관의 특성과 업무역할에 맞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력의 역량 강화**

○ 소생활권 기반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기존 보건지소 증축 · 개보수**를 통한 건강증진형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추진

- 소규모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원방식 다각화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축·설비비 및 보건의료장비 국고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24.1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24.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24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 연구 실시	'24.5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 개시	'24.5월	
	건강도시 지표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24.5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	'24.6월	
	미래 건강전략 포럼 운영	'24.6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24.6~7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대상기관 공모	'24.6월	
3/4분기	맞춤형 건강도시 컨설팅 연구 추진	'24.7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평가 및 환류	'24.7월	
	'24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보건소 서비스 개시	'24.7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대상기관 선정	'24.9월	
4/4분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 간담회 개최	'24.11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24.12월	
	미래 건강전략 포럼 운영	'24.12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설명회 개최	'24.10~12월	
	'24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신규 참여보건소 공모·선정	'24.10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권역별 컨설팅 실시	'24.10~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실행계획 수립('25)을 위한 시도 담당자 간담회 개최	'24.11월
현장방문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24.1월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24.2월

□ 기대효과

- ㅇ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역량 향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구축
- ㅇ 대상자 맞춤형 건강증진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도 향상
- ㅇ 건강증진에 대한 중장기 성과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소건강증진(Ⅲ-2-일반재정②)			
① 보건소건강증진(3333)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300)	국민건강증진기금	724	560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Ⅱ-1-일반재정④)			
②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2735)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300)	국민건강증진기금	58	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점) (공통)	79.6	85.4	79.8	81.5	최근 3년간의 실적치 추세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국의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 참여에 따른 건강개선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 이용자 만족도(점)	-	89.5	94.9	89.8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22년~'23년 실적 평균값을 '24년 목표치로 산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 리서치기관 설문조사결과

3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Ⅰ-4-③, 건강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심각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를 통해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 비효율 개선** 기반 마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국단위 본사업 추진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개선**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을 유도**
- **개인이 건강관리 실천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 질병 발생 예방, **조기 합병증 감소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방안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24.上)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유사 사업의 장점을 반영하여 **연계·통합방안 마련**('24.下)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여 **본사업 추진**('24.下)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내실화를 위한 추진·전문위원회 운영(계속)

-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사용처 확대 추진('24.下)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 지역 확대 추진('24.下)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24.1~3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	'24.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청구현황 분석	'24.2~3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홍보 영상 송출	'24.3월	
2/4분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현황 등 모니터링	'24.4~6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24.4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24.6월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사용처 확대 방안 마련	'24.6월	
3/4분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24.7~9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제공자 교육 이수 현황 분석	'24.7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방안 마련	'24.7~9월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사용처 확대 추진	'24.9월	
4/4분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현황 등 모니터링	'24.10~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추진	'24.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성과 포상	'24.12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지역 확대 추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계, 유관기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위원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위원회 개최	'24.6월

□ 기대효과

○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관리 및 환자의 자가관리 강화로 합병증 감소

-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및 의료 전달체계 개선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개인의 능동적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습관 형성, 사회적 건강증진 활동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수명 향상

- 건강위험요인 감소와 질병예방,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노동력 손실 억제 및 진료비 지출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건보재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록 환자 수(공통)	-	-	-	660,00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수로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하여 목표 설정 ※('22년)약55만명→('23년)약60만명 →('24년 목표치)약66만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 수 (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자료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4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Ⅰ-4-④, 구강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충치·치주질환 등에 따른 **저작 불편, 치아 상실** 등은 **생애 전 주기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건강수명** 등 **삶의 질과 직결**

○ 특히 칫솔질 등 스스로 구강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은 구강질환 이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대상자별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기반 강화** 필요

* 어린이(12세)의 58.4%는 치아우식증, 노인(70세 이상)의 37.9%는 구강기능저하 경험('22년 기준, '23. 국민건강영양조사)

** 장애인 구강검진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8.1%p 낮으나 치료필요 판정은 8.8%P 높음 ('20년 기준, '23.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년)」의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 통해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사업, 구강보건 공공 인프라 지원 강화 등으로 국민 구강건강 증진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준 높은 치과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치과 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 분기별 치과의사 면허범위외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모니터링,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

○ 구강질환별 **적정 의료기관 이용환경 조성**

- 치과의료 특성을 반영한 의뢰·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24.5~11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 모니터링('24.3월)을 통한 치과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활성화 방안 모색

○ **아동·노인·장애인 등 구강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예방·관리에 중점을 둔 구강건강서비스 확대**

-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아동 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확대* 추진**

*①연령확대(초4→초1,초4), ②지역확대(2개→5~7개시도), ③주치의 수가인상 등

- 노인 구강-전신건강 통합관리를 위한 **보건소 기반의 구강방문 진료사업** 추진방안 마련

-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계적 확충 및 지원* 강화**

* 센터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방안 검토

○ **구강건강관리 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 활성화**

-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 운영, 기념행사 및 참여형 온라인 캠페인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책 타겟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지자체 구강건강관리사업(교육·홍보 등)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지자체 치과전문인력 직무역량강화***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개선 선순환 기대

* 구강관리 방법 및 진료기술 등 이론교육과 환자 응급상황 대응법 및 처치 방법 등 실습교육 실시(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대상, '24. 5월~11월)

○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년)』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한 '24년 부처별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내 구강보건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실적 심의·평가, 결과 환류

○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체계적 연구·육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미래 맞춤형 치과의료기술 개발** 지원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2억, ~'25.上)
- 만성 구강질환 극복 치의학 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16억) 및 치의학 데이터 생성기술개발(16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설치 지원 수요조사	'24.1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교부	'24.2월	
	국립대학치과병원 혁신 협의체 운영	'24.1~3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 모니터링	'24.3월	
	부처별 구강보건사업 제2차 기본계획 24년 실행계획 수립	'24.1~4월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R&D 예산 교부	'24.1~3월	
2/4분기	부처별 구강보건사업 제2차 기본계획 '23년 실적 평가	'24.4월	
	치과의사 면허범위외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24.4~6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24.4~7월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24.5~12월	
	노인 구강 방문진료사업 필요성 및 사업방안 연구	'24.5~12월	
	'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배포	'24.6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홍보	'24.6월	
	제2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공모·선정	'24.6월	
3/4분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 착수	'24.7~9월	~25.上 (계약일부터 1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24.7~9월	
	제2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24.7~9월	
	지자체 구강건강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대회	'24.6~11월	
4/4분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24.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ㅇ 국립대학치과병원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필수 치과의료 강화, 정책·제도(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유관단체 의견수렴
- ㅇ 제2회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의견 수렴
- ㅇ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23년 실적 평가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전문위원회 평가 의견 수렵
- ㅇ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업무협의 및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 ㅇ 구강보건의 날 기념주간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국립대학치과병원장 간담회	'24.3~4월
현장방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면담	'24.2월
현장방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24.11~12월
회의	국립대학치과병원 혁신 협의체 회의	'24.1월
회의	치과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 회의	'24.2월
회의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 및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24.3~5월
회의	아동치과주치의 추진위원회	'24.4~12월
회의	구강보건정책전문위원회 '23년 실행계획 실적 평가	'24.4월
회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협의회	'24.5월
회의	치과병·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운영안 논의	'24.10~12월

□ 기대효과

- ㅇ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ㅇ 생애 전주기에 맞는 **예방중심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강건강권 보호 및 구강건강불평등 완화**
- ㅇ 아동·노인·장애인 등 **구강취약계층 예방·관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소 건강증진(Ⅲ-1-일반재정)			
① 보건소건강증진(3333)	국민건강증진기금	733	560
▪ 구강건강관리(301)		9	-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①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3344)	일반회계	136	101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02)		69	67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308)		-	2
▪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418)		67	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구강질환 예방관리율(%)	신규	신규	신규	23.0	·**기존지표**(①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 ②성인 스케일링 이용률)의 경우, 3년간 평균실적치로 목표설정 ·**신규지표**(③노인 구강방문진료 이용률)는 '23년도 실적치 대비 10%p 상향하여 목표설정 ⇒ **('24.목표치)** (①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14.5%)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21.9%) + ②성인 스케일링 이용률(19.1%) + ③노인 구강방문진료이용률(36.6))의 가중 합산치인 23%로 설정)	①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25%)+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25%) + ②성인 스케일링 이용률(25%) + ③노인 방문진료이용률(25%) 가중치 부여하여 합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통계, 보건복지부 통계
구강보건사업 성과도(점)	90.6	90.9	92.0	91.1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91.1점)로 목표 설정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건강개선 만족도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 ※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성과도(60%) + 장애인구강센터 사업 성과도(40%)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 수(명) (공통)	85,500	91,684	98,973	90,000	전년대비 5.9% 목표치 상향조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장애인 환자 수 ※ 센터 진료환자 수 + 이동진료 환자 수 + 기타 진료 환자 수	진료환자 수 전수집계

성과목표 Ⅰ-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1) 주요 내용

□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의 과제 구체화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대책의 고도화**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하여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구현

○ **정신질환 치료·지원 확대, 정신건강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성 제고**

○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 인프라 개선,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 **국가건강검진체계 내 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관리 강화**

○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등 대규모 재난에 상시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 트라우마 대응능력 강화 및 인프라 확대**

○ **알코올·마약류** 등 **물질중독 증가** 추세에 따라 **중독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 **적극적, 선제적 개입**을 통해 삶의 위기요인을 줄이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사후관리 체계 마련**

○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확산 추진**

○ 법 개정으로 **적극적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체계** 마련에 따른 **자살예방 인력 확충** 등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추진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및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내실화**

○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화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을 **기억하기 쉬운 번호 '109'**로 **개편 및 서비스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대상 등록자 수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
관리과제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관수
	전 국민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 재난 심리지원 담당 인력 교육·훈련 이수 인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대상 등록자 수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 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점)(공통)	80.1	79.3	80.1	80.0	3개년('21~'23년) 평균(79.8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24년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입소자 만족도 조사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 대상 등록자 수(공통)	26.5	25.3	23.9 (잠정)	23.5	적극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여 상시관리 등록자수 감소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 등록자 수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수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명)	20,241	27,053	31,739	32,056	'24년 목표치를 전년 실적대비 1% 증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관리된 인원(명)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MHIS)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 및 자살위험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자살예방체계 강화 필요**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원활한 응대 등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체계 운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Ⅰ-5-①, 정신건강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 고도화** 및 정신질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강화**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마련**

○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마련** 및 위기쉼터, 주거, 일자리 등 **지역사회 자립 기반의 복지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가 과제 발굴**

-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 로드맵 제시**

- 정신건강정책 혁신委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 논의**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 따른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과제 이행력 제고**

- 국가계획(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재활지원**

○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화 관련 방안 논의**

-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개념·주체·범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

- **심리(상담)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신응급·급성기 집중치료 강화**

- 외상 등 신체적 질환 동반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23년 10개소→'24년 12개소)**

-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 기준 마련 및 적정 수가 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확대** 및 **본 사업 전환 준비**

* '20.1월부터 급성기 치료활성화 수가 시범사업 중이며, 참여기관 확대

- 응급입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가능 병상 등 파악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

*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컨설팅('22.12월~'23.4월)

-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정신응급 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정신의료기관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21.3.5. 개정, '23.1.1. 시행)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무리없는 **현장 적용**

* 입원실 병상 수 최대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신설(1.5m 이상),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등

-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낙후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예산 지속 지원('24년 15억원)**

-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평가(인증)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및 지자체 통보

* (평가 합격률) 1주기('13～'16년) 86.9% → 2주기('17～'20년) 73.3% → '21년 47.9% → '22년 61.3% → '23년 67.9%

**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여도 불이익 없어 평가에 소극적

○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과 회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원 사업(안) 마련
- 정신재활시설 최소설치 기준 연구를 통한 객관적 설치기준 마련 및 사업지침 반영 및 지자체 평가 기준 신설 등을 통한 지역 내 재활자원 확충 촉진

○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일시적인 정신과적 위기 상황 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재활서비스(예: 동료지원쉼터) 운영(신규, 24년 5개소)
- '24년 동료지원쉼터 운영 상황 평가를 통해 지원서비스 등 표준운영방안(모델) 도출

○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한정된 **공공후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권리행사 지원**
- **공공후견 및 절차조력 규정 마련**('26.1.3.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 질 제고**

- 비대면 인권교육의 일상화 등 사회변화 및 교육수요 대응 위해 **사이버교육 기관 운영**(인재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환경변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수련과정*** **등의 개편분배 동향 사전분석**(분기별) 및 **정책 대응방안** 검토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24.3.)에 맞춰 수련환경 개선방안 준비 및 검토

○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24년 32억원)

- 국민과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홍보기간 확대 및 온라인 매체 활용으로 홍보 콘텐츠 차별화와 맞춤형 정보 제공

-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확정*** 및 **기준 확산**

*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2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시행 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및 내용 확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수가 시범사업 연장 및 참여기관 모집	'24.1~2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수가·급여기준 등 마련	'24.1~12월	연중
	'24년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 추진	'24.2~12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관련 협업기관 방문 및 사업 협의	'24.2~3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환경 개선방안 검토	'24.3월	
	'24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계획 수립	'24.3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마련	'24.3~10월	
2/4분기	지역별 정신재활시설 최소설치기준 마련 연구 실시	'24.4~8월	
	공공후견 특정후견 대상자 수요조사	'24.4월	
	공공후견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24.5월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개선(직역별 특수성 반영) 간담회 실시	'24.5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24.6~12월	
	중앙정신응급협의체 운영	'24.6~12월	2회
	상담사법 의견조율을 위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인증제 등 다양한 대안 논의	24.6월	
	지역별 정신재활시설 최소설치기준 마련 연구 결과보고	'24.6월	
3/4분기	'24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 공모 등 추진	'24.7월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개정안 마련	'24.8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24.9월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24.9월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개선 방안 검토	'24.9월	
4/4분기	정신건강홍보주간 및 정신건강의 날(10.10.) 행사 실시	'24.10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 방향 건정심 보고	'24.12월	

	‘25년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확보	‘24.12월	
	동료지원쉼터 모델 개발 등 표준운영방안 마련	‘24.12월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 성과평가 및 차년도 공모 진행	‘24.12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수립	‘24.12월	
	지역별 정신재활시설 최소설치기준 등 사업지침 개선방안 마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마련을 위해 협업기관 및 지자체(시·도) 등과 사업 협의

- 그 외 정신건강복지정책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회의, 간담회 등 지속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관련 협업기관 방문 및 사업 협의	‘24.2~3월
회의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안) 신청 지자체(시·도) 등 사업참여 협의	‘24.3~10월
회의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4.3월
회의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	’24.5월
간담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개선(직역별 특수성 반영)	’24.5월
간담회	상담사법 의견조율을 위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인증제 등 다양한 대안 논의	24.6월

□ 기대효과

○ 정신건강의 **예방-치료-회복 全 주기 혁신대책 고도화**를 통해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기여**

○ 정신질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불필요한 입원 방지,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환경 조성** 등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통한 불필요한 입원을 비롯하여 행정·응급 입원 등 **각종 형태의 입원 감소, 지역사회 기반 회복 체계 강화**

○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의 **실질적 자립과 회복지원**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Ⅲ-2-일반재정⑩), 정신건강증진사업(Ⅲ-2-일반재정⑪)			
①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3345)	일반회계	1,283	1,485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00)	일반회계	82	127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02)	일반회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일반회계	26	35
(정신질환자 정신의료-돌봄통합관리시스템 등 운영)	일반회계	3.4	11
(정신건강 홍보·교육)	일반회계	2	3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일반회계	17	23
(당사자·가족 지원)	일반회계	19	12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	11
▪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315)	일반회계	997	1,056
▪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329)	일반회계	38	38
▪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330)	일반회계	99	111
▪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R&D)(331)	일반회계	-	30
② 정신건강증진사업(3346)	건강기금	15	9
▪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300)	건강기금	15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점)(공통)	80.1	79.3	80.1	80.0	3개년('21~'23년) 평균(79.8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24년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입소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신규	신규	664	2,451	'23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동료지원센터, 공공후견활동 지원, 절차보조사업) 사업수행 실적과, 동료지원센터 사업이 '24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동료지원센터, 공공후견활동 지원, 절차보조사업) 사업실적 보고서 상 수혜자 수	사업실적 보고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관수(개소)		8	10	12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24년 목표치를 설정	'24년말 기준 지정 기관수	권역정신응급센터 지정 현황 자료

2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Ⅰ-5-②, 정신건강관리과)

□ 추진배경 (목적)

○ **정신건강문제**는 **국민 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조기개입과 관리**를 위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등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예방, 치료 등 **재난 심리지원과 지역사회 트라우마 지원체계 정립**

○ **마약류·알코올** 등 **물질중독**, **도박·인터넷 등 행위중독**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독관리 인프라 중요**

○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만성 환자 치료·관리에 집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건강 문제 지원은 소홀**한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관리 강화

○ **(정신건강검진)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체계 내 정신건강검진 확대*** **추진**

* (**현행**) 우울증, 10년 주기 → (**개선**) 조현병, 조울증 추가, 2년 주기

-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절차에 따라 **타당성 분석,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개정, 검진 시스템 개편**

○ **(정신응급 대응 강화) 정신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및 국민 보호 강화** 위해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 추진**

- **위기개입팀 인력 102명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인력 충원
- 위기개입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야간수당, 위험수당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 협의

○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실화)** 신규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 소통채널 강화

- **회복지원사업** ‘24년 **3개소 신규 운영**(6개소→9개소) 확대

- 분기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 반기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전파**

(2)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강화

○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국민 심리지원 지속 추진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5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63개)로 구성

○ **(인력 양성) 국가 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재난 심리지원 인력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홍보 및 인식 개선) 트라우마 치유주간 운영,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트라우마 예방 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 추진**

○ **(재난 심리지원 인프라 확대) 대규모 국가 재난에 상시대응 가능**하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경기, 경북) 2개소 **개설 추진**

(3) 마약류·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 및 **실질적 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접근성 제고**

-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운영평가 결과 반영 **성과금 지급**, 노후 시설·장비 **환경개선금 지원, 치료보호기관 신규 지정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 (’23년) 25개 → (’24년) 30개

- 기존 비급여였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24.5월)

- 마약류 중독치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료지침 마련, 전문인력 교육,** 치료기술 개발 **R&D 연구 지원 강화**

- **보다 많은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 **(중독관리 강화)** 지역사회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중독문제 대처**를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사업 **내실화**

- 지역사회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서비스의 질적·양적 관리**

- **'광역형** 중독관리사업',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관리 사업'** 등 **중독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공유를 통한 개선 추진**

- **중독 정신건강 정책** 및 지역의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논의* 협의체 운영**

*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복지부, 법무부, 식약처, 대검찰청), 중독 정신건강 협의체(국립정신병원, 민간 학회 등) 운영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24.下~)

○ **(상담 서비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상담 서비스 지원**

- **'24년**은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 **(신규 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 상담이력관리 등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마련	'24.2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수탁협약 및 사회보장정보원 업무위탁 승인	'24.3월	
	치료보호기관 지침 마련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지원금 지원	'24.2~3월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 마련	'24.3월	
	회복지원사업 4개소 신규 추진	'24.3월	

2/4분기	트라우마 치유 주간행사 및 유공자 표창	‘24.4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마련	’24.5월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실태조사 추진	’24.5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건강보험 적용 개시	’24.5월	
	정신건강 검진 타당성 분석 연구 진행	’24.6월	
	위기개입팀 처우개선 예산 재정당국 협의	‘24.4~6월	
3/4분기	정신건강 검진항목 평가 결과 작성 및 보고	’24.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 및 홍보	’24.7월	
	경기·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인력채용 및 교육	’24.7~9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시스템 ISP 수립	’24.9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상정	‘24.9월	
	중독 정신건강 심포지엄 개최	’24.9월	
4/4분기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24.11월	
	경기, 경북 권역트라우마센터 개소	’24.11월	
	’24년 트라우마센터 평가 실시	’24.11월	
	건강검진 시스템 개편	‘24.12월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24.12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4년 운영 현황 및 실적 점검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등

- 분기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회의, 반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대표자 회의 개최
- 경기·경북 권역 트라우마센터 개소 관련 간담회 개최 및 매월 국가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 협의체 회의 운영
- 반기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등 실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관리를 위한 치료보호기관 간담회 등 운영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마련, 시·도의 업무 협력를 위한 간담회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등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학회 의견 수렴	’24.1~2월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대표자 간담회	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	반기
	권역 치료보호기관 간담회	’24.4월
	권역 트라우마센터 개소 관련 간담회	’24.10월
현장방문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24.1~2월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 방문	’24.5월
회의	중독 정신건강 협의회	반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회의	분기

□ 기대효과

○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등 확대 개편 및 정신질환자 치료를 강화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로 **일상 회복지원**

○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개입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

○ **대규모 재난의 피해자와 일반국민**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조기 일상회복 도모**

○ 알코올·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및 지원대상 확대로 **중독자의 조기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및 일상복귀 지원**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Ⅲ-1-재정(7))			
①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3345)	일반회계	190	666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02)		58	76
		(141)	(199)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23)		55	49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324)		77	69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332)		-	472
(Ⅰ-1-일반재정②)			
① 정신건강증진사업(3346)	기금	1,171	1,270
▪정신건강증진사업(301)		1,171	1,2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재난 심리지원 담당 인력 교육·훈련 이수 인원	신규 신규 500	450	대규모 재난에 상시 대응이 가능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심리지원 업무 담당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집계한 재난 심리지원 직무교육 이수자 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복지부 보고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 대상 등록자 수(공통)	26.5 25.3 23.9 (잠정)	23.5	적극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여 상시관리 등록자 수 감소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 등록자 수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수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실적	신규 신규 641	750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12%)과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수(명)	시·도 및 국립정신병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
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 -	80.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목표치 산출	리커트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3 생명존중문화의 확산(Ⅰ-5-③, 자살예방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18~'22) 및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대책 수립 등 범부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자살사망자 12,906명**(자살률 25.2명) **OECD 최상위**

○ 자살은 **사회구조적·경제적으로 악순환**을 초래하는 문제로,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 강화 필요**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자살 급증에 대응한 **생명안전망 강화** 등 **중장기 대책** 필요

○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초기발굴) 자살예방법 개정 시행**('22.8.) **후속조치**로 자살시도자 발견 시 **정보연계***를 위한 경찰·소방-복지부(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자살시도자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및 자살 재시도 방지 강화**

* 그간 경과: ('22.7.) 사전설명회, ('22.8.) 매뉴얼 배포, ('23.9.) 매뉴얼 개정 배포

○ **(생명존중문화 확산)**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확산** 추진

- **생명존중민관협의회* 개최,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7억원, 12개소) 운영으로 민간·지자체 자살예방분야 지원 강화

*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유교 성균관장
(구성) 종교계, 언론계, 재계, 학계, 노동계 등 43개 민관기관으로 구성

○ **(형사사법정보 분석) '23년 발생 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 **분석,**

지역별 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한 **근거기반 자살예방대책 마련**

* (근거) 자살예방법 개정('22.8 시행)으로 경찰에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조사항목) 시군구별 자살사망 현황, 특성분석, 빈발지역, 자살원인정보 등

○ **(자살예방교육 강화)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 (2023.7.11. 공포, 2024.7.12. 시행)

○ **(위해요인 관리) 자살유해정보** 및 **수단관리 강화** 통한 **위해요인 제거**

- **(자살유발정보 차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국민 모니터링단**(지켜줌인) **운영**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등 유해정보 차단 추진**

*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 등 논의위한 협의체 (자살예방법 제19조 제2항, 위원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부·민간위원 구성)

- **(수단관리)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추진**('23.6.~), **농약·번개탄·수면제** 등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 지속(자살수단 차단 지원사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칼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신규 지정

○ **(사후관리 강화) 자살 고위험군(시도자, 유족) 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 치료** 등 **사후관리 연계**

- **(자살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및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내실화 추진**

* 現 84개 응급의료기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수행 중

** 자살사고 발생 시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 경제·환경지원 등 지원

-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에서 우울,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 치료** 또는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시범사업 활성화***

* 부산시 소재 비정신과 의원 참여 중인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2년), 사업 방식 개선 및 지역 확대

- **(자살 사후대응)** 혈족뿐만 아니라 학교·회사 등 자살 사망으로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심리지원 및 교육 제공

○ **(중앙 정책지원 강화)**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교육연구본부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 추진

- 자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 사업 담당자, 경찰·소방, 유관기관 등 대상으로 **자살예방 콘퍼런스 개최**(’24.12월 예정)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충 등** 추진

- **(전담인력 확충)** 당사자 동의 이전에 센터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 정보 연계, 자살 고위험군 대상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충**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차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공

○ **(상담서비스 내실화·접근성 강화)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안정적 운영** 및 높은 청년층 자살률* 등을 고려한 **SNS 상담** 도입

* **10대~3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22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4년도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개시	’24.1월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24.2월	
	• 광역주도형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지자체 간담회	‘24.2월	
	• 심리부검 면담사업 심포지엄 개최	’24.3월	
	•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기관 공모 및 선정	’24.1~3월	

	• 생명존중민관협의회 하반기 실무협의회 개최	’24.3월	
	• 자살보도권고기준 4.0 마련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24.3월	
	•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운영 관련 1차 컨설팅	’24.2~3월	
	• 지역별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분기별 현황조사 및 결과안내	’24.1~3월	
2/4분기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역 확대	’24.4~6월	
	•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인력 추가 채용 및·교육	’24.4~6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공고	’24.6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24.6월	
	•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참가자 모집 및 활동 진행	’24.6월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지침 개정 관련 간담회	’24.6월	
	• 지역별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분기별 현황조사 및 결과안내	’24.4~6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고도화 완료	‘24.6월	
3/4분기	• 자살예방 SNS 상담 정보 시스템 구축	’24.7~9월	
	• 자살예방 SNS 상담 인력 채용 및·교육	’24.7~9월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2차 컨설팅	’24.7~9월	
	• 지역별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분기별 현황조사 및 결과안내	’24.7~9월	
	• 생명존중민관협의회 대표협의회 개최	’24.9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발간	‘24.9월	
	•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발간	‘24.9월	
	• 자살유족 동료지원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24.9월	
	• ‘자살예방의 날’ 행사 및 유공 표창	‘24.9월	
	• 청년자살예방서포터즈 ‘같생’ 박람회 개최	‘24.9월	
4/4분기	• 자살예방 SNS 상담 체계 도입	’24.10~12월	
	• 세계 자살유족의 날 행사 개최	‘24.11월	
	• 생명존중민관협의회 하반기 실무협의회 개최	’24.11~12월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24년 운영실적 점검	’24.12월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개정안 마련	’24.12월	
	• 지역별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분기별 현황조사 및 결과안내	’24.10~12월	
	• 기초 지자체 단위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배포	‘24.12월	
	• 중앙부처·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작성 및 평가 지침 안내	‘24.12월	
	•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개최	’24.12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공고	‘24.12월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광역주도형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간담회	’24.2월
평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24.6월
간담회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4.9월

□ 기대효과

○ 안정적·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통해 **삶의 위기요인 제거, 자살 시도** 및 **자살사망자 감소**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모방효과 최소화, 생명존중문화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생명존중문화의 확산(Ⅱ-5-③)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3346-302)	국민건강증진기금	488	5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공통)	20,241	27,053	31,739	32,056	’24년 목표치를 전년 실적대비 1% 증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관리된 인원(명)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율(%)	63.6	64.7	66.0 (잠정)	66.3	‘23년 목표치(65.3%)를 초과 달성하여, 전년도 목표 대비 1%p 상향 조정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성과목표 Ⅰ-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1) 주요 내용

□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인구고령화 및 돌봄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한의약 건강돌봄 체계 역량 강화**

-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컨설팅·지원 체계 구축** 등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개선 및 지역사회 돌봄사업 활성화**

○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등을 **한의약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의·한 협진 활성화**를 통한 융합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함께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한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개선된 사업모형*을 적용**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4.4.~'26.12) 추진, **탕전실 2주기**('22~'25) **인증기준 마련, 탕약 안전관리 강화** 등 통해 **한약 이용체계 개선**

  * (대상 질환) 3 → 6종, (본인부담률) 50 → 30~60%, (참여기관) 한의원 → 한의원·한방병원·한의과 설치 병원, (급여기준) 연 1개 질환 최대 10일 → 연 2개 질환별 최대 20일 등

□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R&D 추진** 및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소재은행 운영을 통한 **한의약 산업육성 기반강화**

○ 한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 산업 활성화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한의(韓醫) 서비스 개선 추진율
관리과제	한의(韓醫)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개선도 · 한의약 서비스 활성화 · 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 한의약 R&D 표준진료지침 개발 건수 · 한의약 제품개발 맞춤형 기업지원금 대비 매출 기여율 ·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인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한의(韓醫)서비스 개선 추진율	100	100	100	100	한의(韓醫)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 과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설정	∑각 지표별 ①이용기관 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 (53%)*0.5 ② 한의약 R&D 표준 진료지침 개발 건수 (5건)*0.5	각 항목별 실적 및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25년에 고령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노년부양비)는 **29.3명**에 달하여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 인구 연령구조 >

< 노년부양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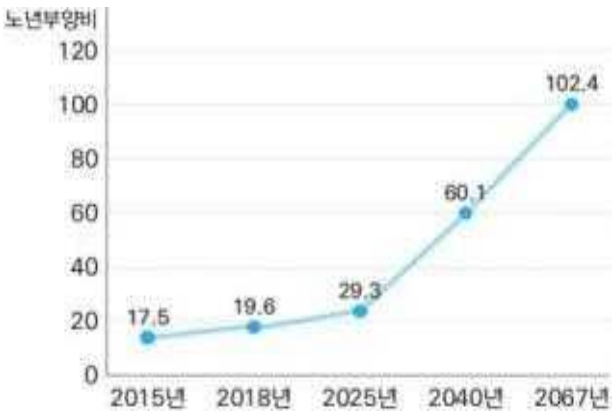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자도 증가**하여 **'22년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2,061만명, 진료비는 40.8조원**에 달하는 상황

* 만성질환(12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 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 >

구분	진료실인원수(천 명)				진료비(억 원)			
	2018	2021	2022	CAGR	2018	2021	2022	CAGR
계	18,029	20,095	20,616	3.4%	312,904	393,472	408,220	6.9%

*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 **한의약**은 질병 이전 단계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만성질환 예방, 관리 역할 강화 기대**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시장 확대 및 사회 전반 큰 변화 예상**

○ 의료 영역도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치료, 예방의학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16년 14.4억 달러에서 연평균 48%씩 성장하여 '23년에는 227.9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2018)

○ **한의약**이 4차 산업혁명과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객관화,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이 필요**

* 중국의 경우, 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진단 보조 AI 활용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시 중의약 진료 차트를 데이터화하고 '중의보조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 **한의약품, 한의용 의료기기 등은 산업규모가 작고**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가 50~60%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한계**

-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산업성장의 마중물 역할 **필요**

* 한의약산업('21년): 한약재(0.3조), 한의약품(1.2조), 한의 의료기기(0.1조), 한방의료서비스(6.8조원)

- 이와 동시에 **한의약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산업기술지원** 등을 통해 한의 산업 활성화 도모 필요

< 한의약 제조업 매출액 규모별 분포 >

(단위 : 개소, %, 억 원)

구분	업체 수	매출액 규모별 업체 수 비율 (%)					매출액 총액 (억 원)
		5천만원 미만	5천~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한의약품 제조	263	14.9	3.0	20.4	16.6	45.2	6,871
한방 의료기기 제조	43	4.9	9.9	19.7	24.1	41.4	606

* 2021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 통계집(2021,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접근성 개선 필요**

* 건강보험 보장률('21) : (전체) 64.5% / (한방병원) 35.8% (한의원) 56.6%

○ 한방의료에서 **비싸다고 생각**되는 치료법으로 **첩약이 가장 많았으며**(68.3%) 다음으로 추나요법(52.8%), 한약제제(51.6%) 등의 순임('22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4.4월~'26.12월)을 통해 한방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한의 의료 접근성 강화**

*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첩약 치료에 대해 시범수가 적용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Ⅰ-6-①, 한의약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인구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의료비 부담 완화 요구도 증가

* ('00) 고령화사회(노인 7%) ⇨ ('17) 고령사회(14%) ⇨ ('25) 초고령사회(20%)

**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7개에 달하며, 만성질환 조절실패에 따른 뇌졸중 등 중증화로 인한 입원환자가 OECD 평균의 2배

○ 한의약(韓醫藥)의 강점을 살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의약 건강돌봄 진료안내서*** **보급·컨설팅,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표준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한의약 서비스 체계화, 질 향상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 ('21) 노인 대상 진료안내서 개발, ('22) 장애인 대상 진료안내서 개발, ('23) 노인 대상 진료안내서 개정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22.4월~'24.12월)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 강화

- 의·한 협진 치료 유효성 등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수행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 건정심 보고**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4.4월~) 추진을 통한 **한방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설명회 개최 및 참여기관 공모·선정, 홍보 등 **첩약 2단계 시범사업 준비**
-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현장방문 등 사업 활성화 모니터링

○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탕약의 품질·안전성 향상** 추진

- 원외탕전실 2주기('22-'25) 인증제 실시
- 원외탕전실 인증 유지·진입 지원을 위해 인증 희망 탕전실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컨설팅, 규정 및 사례집 배포, 교육 실시
- 탕약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및 인지도 확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시 준비	1~3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실시	1~12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실시	1~12월	
	탕전실 안전관리 온라인교육 운영	1~12월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안내서 배포	2월	
	조제한약 안전관리 모니터링 홍보 및 참여대상 모집·선정	2~3월	
	한의약 건강돌봄 자문회의 등 실시	2~3월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설명회 개최	3월	
2/4분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관 모집	4월	
	제1차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 운영	4~5월	
	조제한약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4~12월	
	탕전실 한약 조제 공정별 위해요소 예방 가이드 배포·안내	4~6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	4~11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 컨설팅(기술지원) 추진	4~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4~12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실시	5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 개최	6~7월	
3/4분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7~8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컨설팅 및 인증기관 견학 지원	7~9월	
	탕전실 현장방문을 통한 조제 환경 관리 지원	7~9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중간보고	8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9월	
4/4분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최종보고	10월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고도화 시범적용	10~11월	
	한의약 건강돌봄 다직종 소통회의 실시	10~11월	
	한의약 박람회 연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홍보실시	10~12월	
	조제한약 안전관리 모니터링 참여증서 발행	12월	
	의·한 협진 모니터링 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과보고	12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	지자체 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 자문실시 *구성: 복지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전문가 등	연 2회
자문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사업 자문단 운영	'24.3~11월
현장방문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니터링 및 추진·미추진 지역 대상 현장 방문 실시	'24.4~11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미실시 및 한의약사업 수행 보건소 중 표준프로그램 미활용 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기술지원) 추진	'24.4~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방의료기관 현장 의견 청취	'24.하반기
간담회	원외탕전실 지속적 질관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24.1월
	원외탕전실 인증 평가위원 대상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24.3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다직종 소통회의 실시	연 2회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	'24.4월

□ 기대효과

- ㅇ 한의약 건강돌봄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ㅇ 의·한 협진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한 **의료이용 편의 증진, 부담 경감** 및 융합기술 발전
- ㅇ 한약조제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이 복용하는 조제 **한약의 안전성 확보**
- ㅇ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 상승 및 이용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Ⅱ-6-일반재정-①)			
①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3233)	-	30 (30)	30 (30)
▪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302)	일반회계	19	19
▪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308)	일반회계	6	7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311)	일반회계	5	4
② 한의약산업지원(3234)	-	224 (167)	169 (196)
▪ 한의약산업육성(302)	일반회계	69	46
▪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310)	일반회계	123	1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4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1</th><th>'22</th><th>'23</th><th>'24</th></tr>
<tr><td>의·한 협진 의료질 개선도
(단위:점)(신규)</td><td>-</td><td>-</td><td>신규</td><td>85점</td><td>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협진 다빈도 질환 표준임상경로(Clinical Pathway) 도입률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도입률
<table>
<tr><td>100%</td><td>100~95%</td><td>95~90%</td><td>90~85%(목표)</td><td>85~80%</td><td>80~75%</td><td>75%이하</td></tr>
<tr><td>100점</td><td>95점</td><td>90점</td><td>85점</td><td>80점</td><td>75점</td><td>70점</td></tr>
</table>
-의·한 협진 시범사업 만족도("만족 이상") : '23년 목표 대비 3% 상향 목표치 설정
<table>
<tr><td>95점 초과</td><td>95~94점</td><td>93~92점</td><td>92~90점(목표)</td><td>90~88점</td><td>88~86점</td><td>85점 이하</td></tr>
<tr><td>100점</td><td>95점</td><td>90점</td><td>85점</td><td>80점</td><td>75점</td><td>70점</td></tr>
</table>
4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 기관(75개) 변동한 점 고려</td><td>시범사업 표준임상경로 도입률 × 0.5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환자 만족도 × 0.5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환자들 중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환자의 비율 분석</td><td>의·한 협진 모니터링 센터 실적보고서</td></tr>
<tr><td>한의약 서비스 활성화
(단위:건)</td><td>신규</td><td>신규</td><td>신규

신규</td><td>2개

54개</td><td>①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미추진 지역 컨설팅 건수

②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활용 보건소 수
- '23년 목표 대비 6%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td><td>①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미추진 지역 컨설팅 건수
+
②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활용 보건소 수</td><td>사업 결과보고서</td></tr>
<tr><td>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단위:%)</td><td>44%</td><td>47%</td><td>50%</td><td>53%</td><td>이용기관수, 조제건수가 많은 중대형 원외탕전실에 집중적으로 인증제 참여 독려하여 안전성·품질 일관성이 확보된 조제한약 비율 제고,
'23년도 실적인 50%에서 올해 선제적 접촉 및 간담회,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인증제 참여율을 전년대비 약 3% 상향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td><td>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中 인증제 참여 개소수 / 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개소수*100</td><td>각 항목별 실적 및 결과보고서</td></tr>
</table>

2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Ⅰ-6-②, 한의약산업과)

□ 추진배경 (목적)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 한의약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약 경쟁력 강화
- 한의약과 첨단과학기술·지식 간의 융합의료기술 및 제품기술 개발, 기존 한약처방의 신규적응증 발굴 등을 지원하여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

○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소재은행** 등을 통한 **한의약 산업육성 기반구축**

○ 한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수출 지원, 세계화 정책 지원)을 통한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 산업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지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 추진

-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 근거 마련, 질환별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기술 최적화, 국민복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양약 병용지침 수립 지원 등 **국민체감형 R&D 추진**

R&D 추진	→	성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국민체감 기대효과
전통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 수행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질환별 표준 진료지침 개발		표준화된 한의치료 시행 및 한의 정책반영 근거 활용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4-'26) 추가 질환 대상**(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

○ (한의약 산업화 연구지원)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및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 **한의약**과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과학간 융합연구**를 통해 만성질환 등 **난치성 질환 해법 모색** 및 **한의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 **다빈도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한 협진 치료·관리기술** 개발 및 한약처방의 **신규적응증 발굴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 부가가치 창출**

○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임상용 한약제제 생산지원시설에서 한약제제 위약 및 위탁 생산을 통해 **한약제제 연구개발 지원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기여**
-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한약재 독성시험 인증을 획득을 통해 **한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성 자료 확보를 통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지원**
- **(한의약 소재은행) 한방 산업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한약재 소재를 활용한 **천연물질** 확보 및 보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한약자원 개발 및 한의산업 지원**

○ **한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 **(한의약제품 맞춤형 개발 지원)** 한의약 기업, 병원 등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제품 출시에 기여**토록 하여 한의약산업 활성화 도모
- **(한의약산업 실증지원)** 의료현장에서 **한의 의료기기 등의 실제 사용 적합성 여부를 지원**하여 병원·기업체 등의 의료기기 개발 유인 동기 부여 및 한의약 산업 육성지원

○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한의 **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기업** 등 **맞춤형 해외수출 지원**, 친(親) **한의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지 의료인·공직자** 대상 **임상연수·해외교육** 실시

- **(해외환자유치 지원) 신규대상국**(중동·동남아 등) **확대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결합한 **유치모델 개발**, 한의약 현지 홍보회를 통한 **유치 활성화 환경조성**

- **(세계화 정책 지원) 한의약 세계화** 및 **산업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콘텐츠 개발** 확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개최	1~2월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 지원 대상 공모	2~3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해외진출 사업 설명회·공모	2~3월	
2/4분기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총괄과제 연구개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최종평가, 신규과제 공고	4~5월	
	첩약 안전성·유효성 임상연구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	4~7월	
	해외 현지 문화원 연계 한의약 홍보회(일본)	5월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5월	
3/4분기	첩약 안전성·유효성 임상연구 신규 과제 연구 개시	8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협약 및 착수	8월	
	베트남 메디팜엑스포 내 한의약 홍보관 운영	8월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 개최(제주)	9월	
4/4분기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회	11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단계평가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11~12월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성과 교류회 개최	11~12월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개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산업육성 기반구축, 해외진출 지원, 한약재 유통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3회)	‘24.1~2월, 12월
	한의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24.9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24.1월, 12월
	한의산업 수요맞춤형 기술지원 성과교류회 개최	‘24.12월
한약재수급조절 위원회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수입 배정량 등 자문	반기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협의회 개최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현장방문	반기별

□ 기대효과

○ 미래 유망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가경쟁력 확보**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위한 연구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육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

○ 한의 의료인력·제품·서비스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유치 지원으로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한의약산업육성 및 기술개발(Ⅱ-7-일반재정②)			
① 한의약산업지원(3234)	-	212	196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301)	일반회계	20	20
▪한의약산업육성(302)	일반회계	69	46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310)	일반회계	123	130
②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3233)	-	19	20
▪한의약의 해외진출지원(302)	일반회계	19	20
③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3237)	-	265	259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302)	일반회계	44	16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303)	일반회계	183	197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308)	일반회계	38	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한의약 R&D 표준진료지침 개발 건수(단위:건)	5	5	5	5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개발분야 과제별 연구기간 및 연구진행상황 등을 반영한 목표 건수	당해연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 표준진료지침 추인 건수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 안건 및 결과 문서
한의약 제품개발 맞춤형 기업지원금 대비 매출기여율(%)	-	신규	신규	64.0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근거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금 대비 개발기술의 매출액 비율을 평가 * 평가년도 직전 3개년 수혜기업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매출액 합계 * 목표치 설정 : 21~22년 평균 매출기여도 기준으로 24년 목표치 설정	3개년도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금 대비 제품매출액 비율=∑(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제품매출액)/∑(지원금) *100	결과보고서 (한국한의약진흥원) * 수혜기업 전수조사 결과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 (단위:명)	2,592	4,462	8,000 (잠정)	9,000	한의약 외국인 환자유치 인원수로 전년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수(명)	결과보고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략목표 II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 본 방 향

◇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자복지 정책 방향** 제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확대**를 통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수준 향상**을 통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 적극 지원**

○ 저소득층 **자활급여 인상, 교육** 등을 통한 **경제적·정성적 자활 지원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빈곤 예방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지원 확대 등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 마련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 다양한 **복지사업별 기준·절차를 합리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관심 및 복지체감도 제고**

○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제도 개편 및 지자체 복지사업 시행 적기 지원,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 적정성 관리 등 복지재정·**행정 효율화**

◇ **연금개혁 지속 추진 및 안정적 연금 운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론화 과정 적극 참여·지원** 및 **정부 내 자문기구 운영**을 통한 **개혁 논의 지속**

○ **급여제도 개선** 및 **크레딧 제도 확대 개편**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중장기 기금운용 정책 구축**을 통한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 등 **운용역량 강화**

○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장애인차별행위 금지 및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을 지원

○ 장애인의 월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제공

○ 발달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중증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의료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건관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6	19	5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①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①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자 비율
	①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복지정책 기획·총괄 건수
		②복지소외계층 발굴 건수
	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①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②신규수급자 발굴률
		③ 긴급지원의 신속처리율
	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①복지부 자활성공률
		② 자산형성사업 계좌 유지율
		③ 근로능력평가 적기처리율
		④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④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 수
		② 재가의료급여사업 -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만족도
		③ 재가의료급여사업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퇴원자 유지율
		④ 사례관리 전후 수급자 건강수준 향상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건수
	① **[민생]**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①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②민관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건수
		③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②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기준 마련을 통한 복지사업 표준화
		②복지멤버십 안내사업 추가 개수
	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①빅데이터 분석 모형의 위기가구 예측 정확도
		②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③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수
	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①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지원 건수
		②사회보장데이터 기반 지원대상자 발굴·연계 건수
		③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
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노후소득 보장률
	① **[민생]**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①국민연금 인식도 개선
		②보험료 납부자 비율
	②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①투자 다변화(해외, 대체투자 비중 확대)
		②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체계 개선안 마련
	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① 기초연금 수급자 수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②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①장애인 맞춤형 상담률
		②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운영모델 참여도
		③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
	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①BF인증 건수
		②장애차별 인식수준 개선율
		③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신고접수 건수
	③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①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비중
		②장애인일자리 참여율
		③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취업자의 취업유지율(6개월)
		④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증가율
		⑤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일상생활 향상도
	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①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만족도
		②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③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이용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보장	①장애인건강보건 관리시스템 등록 기관 수
		②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서비스 개시
		③어린이 재활환자 구성 비율
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①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①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①사회보장 주요정책 수립 및 관리
		②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활용한 분석 자료 산출
	② 사회보장제도 협의 · 조정	①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②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만족도
	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①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율
		②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1) 주요내용

○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논의**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수립**

○ **복지정책 조정·연계**, 제도 홍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좋은 이웃들 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

○ **기초생활보장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추진**

○ **위기가구** 적극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확대 추진**

○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 사례관리 등 정성적 성과관리를 통해 **사회통합** 및 **자활급여 인상**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유인 강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활성화로 **저소득 근로 청년 사각지대 해소**

○ 노숙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과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노숙인 사회 복귀 지원**

○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완화** 등 **의료보장 수준 확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의료급여제도의 **적정수준 보장**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를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위기 의심자 예방·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등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 다양한 **복지사업별 기준·절차를 합리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관심 및 복지체감도 제고**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제도 개편 및 지자체 복지사업 시행 적기 지원,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 적정성 관리 등 **복지재정·행정 효율화**

□ **연금개혁 지속 추진 및 안정적 연금 운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개혁논의 및 후속 조치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참여·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 강화, **급여제도 개선** 및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중장기 기금운용 정책 구축**을 통한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 등 **운용역량 강화**

○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차별행위 금지 및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피해 감소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을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로 빈곤 완화

○ 장애인의 월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제공

○ 발달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의료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건관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일관된 비전·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사회보장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인 장기 계획 수립**

○ 사회보장 관련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총괄조정기구**(Coordinator)**로서의 역할 강화**

○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한 **중복·누락·편중 없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유도**

- 중앙·지자체 상호협의를 통한 **국가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 분권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협의·조정제도 개선**
- **사회보장제도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수 DB 및 행정데이터 기반 **성과지표 중심 제도평가 강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증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수립 및 평가**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2.3	13.4 *	13.7 *	14.2 *	-	14.4	최근 3년('20~'22) 실적 평균치(13.8%)에 0.5%p (매년 0.1%p)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 산출 '20년~'2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행된 재난지원금을 제외하여 계산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험지출 (연금, 건강, 산재, 고용 등), 공기업 지출 비율	내부 자료 및 OECD.Stat 자료

* '18년, '19년은 확정치(OECD SOCX '23.1. 공표), '20년 이후 수치는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위해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예측치

** '23년 수치는 OECD 공표('25.1.) 이후 업데이트 예정(격년 주기로 통계생산)

성과목표II-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1) 주요 내용

□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논의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수립**

○ '차상위 확인사업' 운영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보호, 차상위 통합지원안내** 계속

○ **복지정책 연계**, 제도 홍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 좋은 이웃들 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 **의사무능력자, 해외 장기체류자 등에 대한 적정 수급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위기가구** 적극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준 인상**

□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및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시행**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

○ 고물가를 고려하여 자활급여 월 최대 161만원으로 인상 및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추진('23년 6.6만명 → '24년 6.9만명, 본예산 기준)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기반 마련 및 자립 유인 강화

○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편('22~)에 따른 **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산축적** 및 **탈수급 지원**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 의료급여제도의 **적정수준 보장**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제3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4~'26) 이행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자 비율
관리과제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정책 기획·총괄 건수
		· 복지소외계층 발굴 건수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 신규수급자 발굴률
		· 긴급지원 신속처리율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복지부 자활성공률
		· 자산형성사업 계좌 유지율
		· 근로능력평가 적기처리율
		·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신규 수급 가구 수 · 재가의료급여사업 –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만족도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퇴원자 유지율 · 사례관리 전후 수급자 건강수준 향상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자 비율(%)	34.7	35.8	37.3 (추정)	37.3	- '24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 등 약자복지 정책 확대는 복지수혜자의 증가 예상 - 그러나 최근 차상위 자활 대상자 감소,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21년) 효과의 기반영, 주민등록인구수 감소 추세는 복지수혜자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 - 또한 성과지표는 인과성·달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및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하향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율이였으나 최근 국내 경제상황 및 시계열 분리로 인해 우상향으로 변화됨) - '24년 목표치는 외부상황 및 달성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추정값)과 동일하게 설정 * 통계청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항목 변경으로 상대적 빈곤율 값을 수정('21년 수정전 15.1-> 수정 후 14.8)하여 실적 및 달성률 변경	복지수혜자 수(A)/전체 빈곤층(B) × 100 -복지수혜자 수(A)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수 (중 위 소 득 50% 이하) + 차상위자활 수급자수(중위소득 50% 이하) * 행복e음 자료 추출 -전체빈곤층(B)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 빈곤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 : 균등화 처분가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	행복e음시스템, 국가통계포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점진적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상승폭 둔화, 고용률 상승세**가 전망* 되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

* 2024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23) 1.4% → ('24) 2.2% / (고용률) ('23) 62.6% → ('24) 62.8% / (소비자물가상승률) ('23) 3.6% → ('24) 2.6% ('24년 경제정책방향)

** '23.4분기 1분위 소비지출(133.0만원)은 전년동기비 -5.2%, 1~5분위 중 유일하게 감소 (가계동향조사)

○ 가파른 속도의 **초저출산·초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 전망, **1인 가구 확산과 가족돌봄 기능 약화**로 **사회적 부양 부담** 더욱 확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 ('22) 14.8% → ('60) 27.6% / 1인가구 비중 : ('90) 9.0% → ('22) 34.5%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복지정책 기획·총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Ⅱ-1-①, 복지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체 복지제도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 및 **대안적 제도**에 대한 검토, 제도 간 **정합성 확보** 등 **복지정책 기획·총괄** 필요

○ 고물가·고금리 및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은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양극화 심화 우려**

- **부내·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 칸막이**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권익지원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복지정책 방향 수립 및 총괄**

-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현황진단·점검** 및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등을 고려한 **복지정책 방향 수립**

- 사회복지정책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점검 총괄**

- 복지정책 추진 시 **관련 부처·부서 간** 이견, 분절적 시행 등으로 협의 또는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조정·연계 총괄**

- 저소득층 특성(연령, 가구규모, 가구유형 등) 및 변동성 등 **소득 분배 동향 사전분석**(분기별) 및 **정책 대응방안** 검토

○ **복지정책 환경 변화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 위한 개혁과제 발굴과 세부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복지부-보사연 합동 세미나'** 운영

- 촘촘하고 두터운 **수요자 맞춤형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의 **복지정책 선호도,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인식 조사** 추진

○ 최신 **사회보장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주요 복지선진국**(스웨덴, 英, 美 등) 및 **국제기구**(UN, OECD 등) 정책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선진국 복지 개혁** 등 **국제동향 분석 보고** 및 「**2024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 발간(12월)

○ 취약계층 보호 및 빈곤 완충을 위해 **차상위 확인사업 운영** 등 차상위계층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 **차상위 확인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보호**

-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통합 안내 지속**, 차상위계층 국가승인통계 개발 및 발간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총괄 정책 마련 및 점검**

-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에 따른 **'24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연구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목표 설정** 및 과제 발굴, **제5차 기본계획 수립**

○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좋은 이웃들 사업** 등 민·관 협력 사업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대설 및 한파 대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수립·점검**, 우수사례 확산 및 활성화 제고를 위한 **유공 포상 등 추진**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확대** (117개소→140개소), **우수사례 공유** 및 **봉사자 격려**를 위한 **유공 포상 등 추진**

○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지원 강화**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불의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기여 홍보 및 자긍심 고취 도모
-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및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 사회복지 주요정책방향 수립	'24.1월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침 개정	'24.1월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24.1월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24.2월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24.3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포상	'24.3월	
	사회보장 최신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보고	'24.3월	
2/4분기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24.4월	
	사회복지 정책 '복지부-보사연 합동 정책 세미나' 운영	'24.4월	
	2024년 농어촌 보건복지 시행계획 수립	'24.4월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24.5월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행사 및 유공자 포상	'24.6월	
	사회보장 최신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보고	'24.6월	
3/4분기	사회복지 정책 '복지부-보사연 합동 정책 세미나' 운영	'24.7월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24.8월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	'24.8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 공모	'24.8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24.9월	
	사회보장 최신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보고	'24.9월	
4/4분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24.10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24.11월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24.11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분석	'24.12월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24.12월	
	제5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24.12월	
	사회보장 최신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보고	'24.12월	
	「2024 국제 사회보장 정책 동향」 책자 발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 사회복지 현장방문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계획 및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소통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24.3월
간담회	사회복지 정책 '복지부-보사연 합동 정책 세미나' 운영	'24.4월
현장소통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행사 및 유공자 포상	'24.6월
현장소통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24.9월
현장소통	동절기 대비 지자체 간담회	'24.11월

□ 기대효과

- ㅇ 미래 복지환경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 및 사회보장정책 부·내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복지제도 내실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ㅇ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지역기반 민간 발굴체계 상시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 운영을 통한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ㅇ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 총괄·조정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 ㅇ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훈·포장 등 포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ㅇ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사업지원(Ⅰ-5-일반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96	113
▪ 사회복지사관리(300)	일반회계	8	7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302)	일반회계	25	24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303)	일반회계	26	46
▪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305)	일반회계	9	8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326)	일반회계	28	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복지정책 기획·총괄 건수 (단위: 건)	-	신규	9	10	복지정책 현안 진단 및 복지정책 방향 수립·조정 노력 - 국내외 복지동향 및 현안진단 보고서(분기별) -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현안보고	국내외 복지 동향분석 보고서 및 장.차관 보고자료 건수	-보고자료 -가계동향 분석, OECD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정책 동향 모니터링 등
복지소외계층 발굴 건수 (단위: 건)			신규	38,000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최근 발굴 건수 추이 및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22년* 대비 약 3% 상향된 목표치 설정 * '23년 실적은 산출중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좋은이웃들)으로 발굴한 위기가구건수	좋은이웃들 시스템자료

2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Ⅱ-1-②, 기초생활보장과)

□ 추진배경 (목적)

○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향상 등*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23.下), **'24년은 계획 추진 1년차**로, 차질없는 **과제 시행 및 추진 필요**

* 예) 재산기준 추가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추진 등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

○ **핵심요원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제도 **현실적합성 제고 및 적극적 제도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초생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상 **주요 과제 차질없는 추진**

- **기준 중위소득인상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급여 접근성 향상** 및 **보장수준 강화**

* 3차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까지 단계적 완화 추진(~'26년)

- 근로의욕 고취, 자발적 탈수급·탈빈곤 촉진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검토**

- **도서·벽지 수급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추진**

- 기초생활보장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 수급자격 관리, 부정수급 예방,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등

○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위기 사유) **확대** 추진

○ **(현장소통)** 핵심요원 운영 등 **현장과의 소통강화**, 제3차 종합계획·긴급복지제도 관련 **현장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4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적용	’24.1월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추진	’24.1월	
	·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핵심요원 선발·위촉	’24.3월	
2/4분기	· 도서·벽지 수급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지자체 현황 조사	’24.4월	
	·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 개최	’24.6월	
3/4분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한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보장수준 결정	’24.7월	
	·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 홍보	’24.9월	
4/4분기	·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핵심요원 간담회	’24.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확정	’24.12월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침 확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기적으로 지자체 등 **일선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노력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핵심요원 간담회	’24.3월
간담회	· 출입기자단 대상 ‘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설명회	’24.7월
간담회	· ’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지원 지침 개정 관련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간담회	’24.11월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완화** 및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 지원 강화**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가정해체 발생** 및 **빈곤계층으로서의 유입 등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기초생활보장급여(Ⅰ-1-일반재정①)			
① 기초생활급여(1131)	일반회계	60,523	75,837
▪ 생계급여(300)		60,141	75,411
▪ 해산장제급여(303)		382	426
긴급복지(Ⅰ-1-일반재정③)			
① 긴급복지(1133)		3,155	3,585
▪ 긴급복지(300)		3,155	3,5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신규지표)	19.4	20.4	21.4 (추정)	22.3 (신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을 신규지표로 설정 ○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의 7개년('15*~'22년) 평균 증가수준을 적용, '23년도 실적치 및 '24년도 목표치 설정 * 맞춤형 급여 적용('15년)	(생계급여 수급자수/전체 빈곤층*) ×100 * 주민등록인구수(행안부)×상대적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신규수급자 발굴률 (%)(공통)	22.2	14.6	13.8	13.6	○ 최근 신규수급자 발굴률이 하향 추세*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은 곤란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인해 수급자 신규 유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2년 이후 신규 수급자 규모 축소 ○ 다만 '24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24년 목표 수준을 '23년 목표치로 설정	(신규수급자수/총 수급자수) ×100 * 생계급여 신규 및 총 수급자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긴급지원의 신속처리율(%) (공통)	96.4	96.3	98.7	97.0	○ '24년 목표치는 최근 4년 실적치 평균 96.6%에 0.4%을 올린 수치로 적극적으로 설정함	총지원 건수 중 3일 이내 지원 결정비율 (단, 의료지원은 5일 이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3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Ⅱ-1-③, 자활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수요자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를 통한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제적·정성적 자립 지원 확대**

- 자활급여 인상, 참여 대상 확대, 교육 및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탈빈곤 촉진

* 법령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하여 **근로 지속**과 **소득 안전망 구축**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자산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층 증가***, **자립** 및 **탈수급 촉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필요

* 자산 - 부채비율('17년→'22년) : ▲(39세이하)24.0% → 28.1%, ▲(29세이하) 24.2% → 37.1%

○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추진배경 (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내실화 >

○ **(기본계획 시행)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4~'26)'**('23.10월 발표) 세부 추진과제 시행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

○ **(일자리 확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자립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자활근로 6.9만명 지원**('24년 본예산) 및 **참여정원 지속 확대 추진**

○ **(자활급여 인상)** 자활근로 급여 인상(2.5%)을 통하여 자활참여자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 지원

<자활근로 급여단가(원/일·월)> *실비 제외

구 분(단위: 원/일)	2023년(1월)	2024년	증가율	표준 월소득액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56,420원	57,930원	2.7%	1,506,180원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48,890원	50,200원	2.7%	1,305,200원
근로유지형	27,020원	27,800원	2.9%	722,800원

○ **(인프라 지원) 지역자활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내실화 추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23년 93.6% →'24년 95%), **종사자 추가 배치**(하반기 84명), **농어촌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자활 인프라 개선 추진

○ **(자활역량평가 개편)** 자활참여자의 역량에 적합한 자활사업단 배치를 위해 자활역량평가 개편안('23년 연구용역 완료) **행복e음 시스템 반영 및 적용**('24년 하반기~)

< 자활기업 >

○ **(창업·성장 지원강화)** 창업·성장·성숙 단계에 따라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

○ 청년내일저축 **신규 가입 대상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확대·개선)**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제도 개선 통해 **가입 확대** (5월 신규 모집, 누적 9만명→13만명) 및 **통장 유지율 제고**

  *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 근로소득 월 230만원 이하),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적립 중지제도 개선**(군입대 등에도 지속 납입 可) 등 지침 개정(3월~)

- **(성과 모니터링)** 패널집단 및 행정데이터 조사 통한 **사업효과·성과 분석**, 분석 결과 반영하여 **지원 체감도 향상***(~11월)

  * 통장 가입자 대상 금융·자기개발·취창업 등 **자립역량교육**, 광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사 통한 **재무관리**(주거, 투자, 취·창업 등) 지원 등 개선 제공

- **(홍보) 청년 밀착형 홍보**(4월~) 및 **온라인 신청** 활성화 통한 **접근성 개선**, 통장 가입 **사전·사후 간담회** 진행 등 **소통 활성화**

○ 기존 가입자 대상 **관리 강화** 및 **지원 고도화**

- **(지원 내실화)** 기존 통장 가입자(청년내일저축 9만명, 희망저축 1.6만명) 대상 **정기적 저축 상황** 안내 및 **해지 위기** 시 **개입·지원***

  * **적립 중지**, **중도 인출** 등 활용 가능 방안 안내 및 **타 지원사업 상담·연계**

- **(관리 강화) 구통장 종료**(~'24)에 따른 **원활환 만기 지원금 지급, 해지** 등 **종결 업무 관리 강화**

  * 구 통장 만기해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1월~)

- **(시스템 개선) 지자체·자활복지개발원** 예탁금 관리 효율화 위한 **행복e음-자활정보시스템 연계** 기능 추가(3월~)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추진**

- **의학적 평가 제외 영구질환 확대 및 평가역량 강화로 평가 전문성 향상** 및 평가 수용성 제고

  * (**현행**) 절단 등 22개 질환 →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체 등록장애 중 재판정 비대상'인 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판정 비대상)** 향후 장애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장애정도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것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 >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

- **(보호 대책) 혹서**(6~9월), **혹한기**(11~3월) 거리노숙인 · 쪽방주민 등 **보호 대책 수립·시행, 노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 **(실태조사 실시) 노숙인** 등 **규모**와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제3차**('26~'30) **종합계획** 등 체계적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근거) 노숙인복지법 제9조

** '16년 노숙인 실태조사('16.10.~11.), '21년 노숙인 실태조사 ('21.5.~6.)

- **(의료지원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숙인 의료급여 개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95% 준수	'24.1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4.1월	
	자활급여 인상 지급(+2.5%)	'24.3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한 연장	'24.3월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착수	'24.3월	
2/4분기	농어촌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24.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구축연구 착수	'24.5월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시	'24.5월	
	하절기 노숙인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24.6월	
3/4분기	자활역량평가 행복e음 시스템 반영	'24.7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확대 배치(84명)	'24.7월~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24.7~9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선정	'24.8월	
4/4분기	동절기 노숙인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24.11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보고	'24.12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청년층 의견 수렴	'24.12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추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자활)** 지역·광역 단위 자활 현안 발굴 및 현장,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자활 정책 발전을 위해 자활정책포럼 등 개최

○ **(탈수급)** 저소득층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확대 위한 당사자 청년층 자문 및 간담회 실시

* (사전 자문) 2030 자문단 대상 사업 신청·홍보 방식, 지원 기준 등 관련 의견 수렴
(사후 간담회) 통장 가입 청년 대상 사업 참여 후기, 개선 필요사항 등 관련 간담회 실시

○ **(노숙인)** 노숙인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노숙인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4.2월
포럼	권역별 찾아가는 지역자활 정책포럼 개최	'24.4~11월 (6회)
회의	자활기업 대표자, ·종사자 격려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24.3월
회의	청년 체감형 홍보·지원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2030 자문단 자문회의	'24.4월
포럼	2024 자활정책포럼	'24.12월
간담회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24.12월
현장방문·의견수렴	동·하절기 노숙인 보호 현장 및 자활현장 방문, 종사자 등 의견 수렴	연중

□ 기대효과

○ 자활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향상, **경제적·심리적 자립**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자활지원(Ⅰ-1-일반재정④)			
① 자활지원(1137) ▪ 자활사업(300)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306) ▪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309)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311)	일반회계	9,397 (6,936) (0.02) (2,276) (185)	10,449 7,499 (0.07) (2,758) (192)
노숙인 등 지원 (Ⅰ-4-일반재정 ①)			
① 노숙인 등 지원(1931) ▪ 노숙인등 복지지원(304)	일반회계	51.6 (51.6)	45.6 (4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복지부 자활성공률	26.3	24.3	24.8	24.7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자립여건 난이도 상승, 자활성공률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과거 3년 자활성공률 실적치 가중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24.7 = ('21년도 실적치×0.1) +('22년도 실적치×0.4) +('23년도 실적치×0.5)	자활 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 + 취·창업자 수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gateway + 창업지원 참여 수급자 수 * 사망, 전출 제외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산형성사업 계좌 유지율*	(신규)			75	최근 3년간('21~'23) 실적값의 평균 * ('21) 72%, ('22)75%, ('23)77%	(만기(중도)지급자 수 + 유지자 수) / (계좌 누적 가입자 수) * 연도말 기준	자활정보시스템
근로능력평가 적기처리율	85.5	82.2	86.3	87.6	전년도 실적 + (100-전년도 실적치) *10% * 86.3+(100-86.3)*0.1	(21일 이내 적기 처리건수 /근로능력평가 총 결정 건수) X 100	국민연금공단 전산(NPiS) 통계자료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신규)			30	과거 실적 평균*(19.5%) 및 '24년 교육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교육 참여율 확대 ※ 30%=460명(교육참여자수) / 전체 종사자수 1,530명(기능·기술직 제외) * 과거 실적 : ('22, 3개 과정) 14%, ('23, 5개 과정) 25% 평균 19.5% ** 실시간 라이브교육·찾아가는 교육 확대 적용('23, 5회 → '24, 9회) ※ 노숙인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과정인 인권교육은 목표치 설정에서 제외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 교육참여 종사자 수 / 시설 전체 종사자 수 (기능·기술직 제외)	한국자활연수원을 통해 교육 참여자 수 확인

* 구통장사업 종료('24) 예정으로, 당초 '희망, 내일키움통장 지원율'을 개편 통장사업(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 포함된 지표로 변경 필요

4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Ⅱ-1-④, 기초의료보장과)

□ 추진배경 (목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여 가족 부양 의식약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동시에,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급권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급여 과제 목표** * 제3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4～'26)

1 **(촘촘하고 두터운 의료보장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장성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 필요도 기반 취약계층 지원 강화

2 **(수급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건강투자 확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및 내실화, 사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

3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적정 외래 이용체계 구축, 입원 연장 승인제도 도입, 약물남용 방지 등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

1 촘촘하고 두터운 의료보장 확대

○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4), 이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 검토 추진('25)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3→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공제금액 상향조정**('24)

○ **급여 기준 개선 및 보장성 강화**

- **산정특례** 적용 질환 확대 (83개 신규)
- **(정신과)** 정신질환자 입원 등 서비스 질 제고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적정 **보상방안 마련** 연구 추진
- **(식대)** 의료급여 식대를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 검토**하여 의료급여 서비스 질 도모

* '25년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단가 적용을 위한 수가 고시 개정(12월)

2 수급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건강투자 확대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및 내실화**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38개→73개), ▲예산 사용기준·모니터링 기준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하여 4차 시범사업 실시 중('23.7월~)

- **(전국 확대)** 現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시·군·구로 사업 확대**(73개→228개, '23.7.)
- **(교육체계 마련)** 시범사업 우수 추진지역의 **수행인력*을 선발**하여 신규 사업 지역 인력에 대한 **자문·상담 수행**

* 재가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부문 활성화)** ▲서비스 단가 인상, ▲지자체↔의료기관 협약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협력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유도**('24.上)
- **(만족도 조사)**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가생활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료 확보**('24.上)

○ **의료급여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 추진**

◈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재정 안정화 도모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초기 교육 및 관리를 요하는 신규 수급자와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자

- **(사례관리 기능 확대)**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과소 이용 억제** 등까지 사례관리 역할과 기능 확대

- **(시·도 관리기능 강화)** 지역 내 **사례관리 계획수립**,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 질 표준화** 등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역할 강화**

3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 **급여일수 분리 및 적정 외래 이용 기준 마련**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본인부담을 개편**하고, 연장승인 제도를 **외래 다빈도 위주로 운영**('25)

-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현실화를 위한 적정 금액구조 도출 및 시행**('25)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장심사 및 승인 도입 추진**('25)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 **현지·기획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관리 및 사전예방 강화**로 **재정 누수 방지**

- **(기획조사)** 의료급여 특성을 반영한 항목 중점 조사
- **(정기조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금액 환수
- **(사전예방)**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례 안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개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24.1월	
	의료급여기관 정기 현지조사(매월 실시)	'24.1~3월	
	2024년 상반기 의료급여 유관기관 및 지자체 워크숍	'24.3월	
	적정외래 이용방안 및 제도개선 연구 착수 보고	'24.3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4.3월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책임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	'24.3월	
	재가 의료급여 사업 교육 전문가(슈퍼바이저) 선발	'24.3월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보상방안 연구	'24.3~10월	
2/4분기	의료급여 입원체계 관리 및 제도 개선 연구 착수 보고	'24.4월	
	의료급여 사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24.4월	
	의료급여기관 정기 현지조사(매월 실시)	'24.4~6월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1차)	'24.5월	
	의료급여 과소이용자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 실시	'24.4~6월	
	재가 의료급여 신규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24.4~6월	
	재가 의료급여 운영 매뉴얼(지침) 개정	'24.5~6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4.6월	
3/4분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4.7월	
	재가 의료급여 만족도 조사 연구 착수 보고	'24.7월	
	적정외래 이용방안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 보고	'24.7월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구축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2차)	'24.8월	
	의료급여 입원체계 관리 및 제도 개선 연구 중간 보고	'24.9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4.9월	
	의료급여기관 정기 현지조사(매월 실시)	'24.7~9월	
	재가 의료급여 신규 참여지역 컨설팅	'24.7~12월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역 특화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24.8~10월	
4/4분기	의료급여기관 정기 현지조사(매월 실시)	'24.10~12월	
	의료급여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24.10월	
	재가 의료급여 만족도 조사 연구 최종 보고	'24.10월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4.11월	
	의료급여 사업 유공자 포상	'24.12월	
	2024년 하반기 의료급여 유관기관 및 지자체 워크숍	'24.12월	
	의료급여 입원체계 관리 및 제도 개선 연구 최종 보고	'24.12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4.12월	
	의료급여 수가 고시 개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급여 제도, 예산 및 수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계·학계·관계부처 의견 청취

○ 의료급여 담당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정기적(연3회,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으로 회합하여 의료급여 관련 현안 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

○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협회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시
워크숍	(상반기) 의료급여 담당 유관기관* 및 지자체 워크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24.3월
워크숍	(하반기) 의료급여 담당 유관기관* 및 지자체 워크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24.12월
사업설명회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24.1월
교육	의료급여 담당자 권역별 교육	‘24.4월
간담회	정신과 수가 개선을 위한 정신의료기관협회 간담회	’24.3월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합리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급권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

○ 의료급여기관 대상 현지조사,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의료급여(Ⅰ-1-일반재정②)			
① 의료급여(1132)	일반회계	81,232	90,984
▪ 의료급여 (302)		(81,232)	(90,9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1	'22	'23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신규 수급 가구 수			신규	8,400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범위 확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신규 수급가구 추이** 반영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 '24.1~2월 총계 1,400가구 *** 평가시기를 고려, 11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 재가 의료급여 사업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만족도(%)			신규	80.5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대상자의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중요한 지표임 「재가 의료급여 만족도 및 경험 조사」('23.6, 한국리서치) 중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결과를 목표치로 함	5점 척도(매우 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중 '매우 만족', '만족'의 응답 비율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수행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자 유지율(%)	87	88	88	88	·전년과 동일(88%) * '24년 전국 확대 예정이므로, 신규 사업지역 진입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과 동일하게 목표치 산출	(퇴원 후 재가 유지 대상자 수 / 재가의료급여 시범대상자 수) × 100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사례관리 지원단
③ 사례관리 전후 수급자 건강수준 향상도(점) (공통)	9.4	9.3	9.1	9	·의료급여 예산 성과계획의 지표 ·아래 사유로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9점)으로 설정 - 수급자의 건강관리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본 지표의 특성상 단기간 행태변화는 현실적으로 곤란 - 수급자의 고령화, 질환 유병률 및 중복질환 증가, 감염병 등의 외부요인까지 고려	(사례관리 개입 후 1인당 평균 점수) - (개입 전 1인당 평균 점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례관리지원단

성과목표Ⅱ-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1) 주요 내용

□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 **(복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복지 위기 관리를 위한 **복지 위기 알림 앱 및 복지 등기 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 **(고독사 위기 의심자 대상 예방·관리 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등을 위한 **'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위험군 발굴 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 강화 지원, 위기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 지원 등

□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복지멤버십 운영)**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안내된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복지멤버십 홍보 등 확대**

○ **(정보화 사전협의체 구축)**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구축 수요 및 추진 필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사전협의 체계 구축 추진

○ **(신청서식)** 국민이 작성하기 수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원활한 방향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개선 추진

○ **(표준화 안건 발굴)** 사업부서 및 지자체 등 일선 **업무 현장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한 개선안 도출 및 검토

○ **(복지사업 등 표준화 개선 체계 운용)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규 기준표준화 과제 발굴·조정**

□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확대)**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로 누리집 이용 편의 제고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 **(복지 정보화 확대)** 최신 인공지능 기술(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을 복지전달체계(상담, 안내)에 접목하여 복지위기가구 확인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역량을 심층상담과 복지지원에 집중

□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 지자체 업무 효율화 등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수급희망 이력관리, 공공요금 수혜정보 연계 등 다양한 복지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락서비스 발굴 지원

○ **(적정급여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 현행화**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복지재정 누수 방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건수
관리과제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 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제공 건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준 마련을 통한 복지사업 표준화 · 복지멤버십 안내사업 추가 개수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 빅데이터 분석모형의 위기가구 예측 정확도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수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지원 건수 · 사회보장데이터 기반 지원대상자 발굴 연계 건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건수 (만건)	15,770	16,558	17,061	17,061	복지급여 지급건수는 다양한 복지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므로 전년 실적으로 목표치 설정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건수 누계 (월단위)	행복e음의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실적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인력의 복지역량강화 필요

- 충원된 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과정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 개설 등 역량강화 지원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Ⅱ-2-①, 지역복지과)

□ 추진 배경 (목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소재 미확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부족,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상존**

⇨ ICT 활용, 민관협력 강화, 중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개인의 사회적 고립, 단절 심화에 따른 **고독사 사회적 문제화**

⇨ **고독사 실태 파악** 및 **로드맵 수립**을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위기가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지자체 찾아가는 복지팀 확대, 사회보장 취약지역 컨설팅,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복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 **(복지 위기 알림 앱)**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체계 마련**

- **(복지등기 서비스)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를 통한 현장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연락두절 가구 소재 파악)** 위기의심 가구 개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경찰의 협조**를 통한 대상자 조사 등 **소재 파악 추진**

- **(민관 협력)** 명예사회복지공무원(29만명), 전기·가스 검침원(1.3만명), CU 편의점(1.8만개)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② 고독사 위기 의심자 대상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예방법** 제정,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수립에 따른 '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중앙-지자체) 수립

- **(고독사 위험군 발굴) 지자체 단위** 생애주기·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계획** 수립,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안부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23년 39개 → '24년 7월 229개 시군구)

- **(대응 기반 강화)** 고독사 예방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고독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및 **고독사 사망자 통계 작성,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도 판단기준 및 고독사 예방협의회** 운영기준 **마련**

③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위기가구 발굴,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상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지역 복지기반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컨설팅,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취약지역 정책 역량 강화 지원**

- **(위기가구 사례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통합사례관리사**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 제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지침 개정	'24.1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추진실적 점검	'24.1~3월	
	2023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현황 모니터링	'24.1~3월	
	2023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모니터링	'24.1~3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발주	'24.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24.2월	
	고독사 예방 전문가 간담회 추진	'24.2월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24.2월	
	고독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24.3월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간담회	'24.3월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교육훈련 계획 수립	'24.3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2기 사업 분석 및 평가 연구용역 시행	'24.3월	
2/4분기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24.4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착수	'24.4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추진	'24.5월	
	고독사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 추진	'24.5월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 마련	'24.5월	
	통합사례관리 사례공유 컨퍼런스	'24.5월	
	복지현장 고난도 위기사례 컨설팅 사업	'24.5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2기 사업 간담회	'24.5월	
	지역사회보장계획 상반기 컨설팅 추진	'24.5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추진실적 점검	'24.4~6월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교육훈련 추진	'24.4~6월	
	웹진 '희망e야기' 발간(37호)	'24.6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상반기)	'24.6월	
	행복e음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구축	'24.6월	
3/4분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24.7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안내 개정 및 지자체 배포	'24.9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추진실적 점검	'24.7~9월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교육훈련 추진	'24.7~9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최종보고	'24.10월	
4/4분기	통합사례관리 사례공유 컨퍼런스	'24.10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안내	'24.10월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24.10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안내	’24.10월	
	고독사 사망자 통계 작성	‘24.11월	
	통합사례관리사 전국대회	’24.11월	
	통합사례관리 연간보고서 발간	’24.11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하반기)	‘24.12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	‘24.12월	
	웹진 ‘희망e야기’ 발간(38호)	’24.12월	
	지역사회보장계획 하반기 컨설팅 추진	‘24.12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2기 사업 분석 및 평가연구 최종보고	’24.12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추진실적 점검	’24.10~12월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교육훈련 추진	’24.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대(’24.7월)를 위해, 기추진 중인 39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중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24.2월)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2기 사업(8개 지역)의 2차년도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 의견수렴, 협조사항 요청 등 간담회 추진(‘24.5월)

○ 통합사례관리 업무담당자(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간담회(연2회), 현장방문(’24.6월)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효율화 방안 모색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24.2월
간담회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2기 사업 간담회 - 8개 지역의 2차년도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24.5월
간담회	○ 통합사례관리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24.6월
현장방문	○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24.6월
간담회	○ 통합사례관리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24.11~12월

□ 기대효과

- ㅇ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 ㅇ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공적 안전망 구축
- ㅇ 통합사례관리 수행인력 역량 강화로 **이용자 복지지원 체감도 향상**
- ㅇ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내실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
- ㅇ **지역 사회보장 수준 향상** 및 지역 간·지역 내 **균형발전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복지사업평가(Ⅰ-5-일반재정②)			
① 복지사업평가(2632)	일반회계	51	0
		(61)	(6)
▪ 지역복지사업평가(302)	일반회계	51	일부이관
사회복지전달체계(Ⅰ-5-일반재정⑤)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	46
		-	(352)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303)	일반회계	-	46
②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1,880	1,916
		(2,181)	(2,174)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5	238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	일부이관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3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10	1,650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302)	일반회계	13	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86.65	87.2	88.2	87.5	코로나 장기화로 '21년, '22년 실적치 저조하였으나 이후 회복 중인 점 고려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87.35점)보다 높은 목표치 설정	[('24년 긍정적 종결 대상수)/('24년 전체 종결 대상수)] ×100 -사례관리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긍정적인 결과(장기목표달성, 단기목표달성, 상황호전)로 종결된 사례관리 가구 비율로 산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자료 추출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제공(건수)	491만건	449만건	487만건	476만건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476만건)를 목표로 설정	민관복지서비스(공적급여+민간복지자원) 연계 건수 누적 취합	17개 시도 실적(행복e음 시스템 입력 자료 추출, 공문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개)	-	39	39	229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 및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 숫자인 229개로 목표치를 설정함 * 사업 수행 시군구 개수는 시범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수	보건복지부

2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Ⅱ-2-②, 급여기준과)

□ 추진배경 (목적)

○ 다양한 **복지사업별 상이한 기준·절차·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복지 체감도 및 수급 형평성 제고**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방식 등을 표준화·유형화**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국민·지자체 공무원이 모두 **알기 쉽고,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

○ 국민의 **복지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증진**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필요**

-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22.9)

- 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편의성 증진**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 발생 방지**와 **국민의 신청 편의성 증진 필요**

○ 국민이 **작성하기 수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용이한 방향**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을 개선할 필요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수 복지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식

- 복지사업의 **신청서를 통합**하여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복지사업 등 표준화 개선 체계 운용**

- **(발굴 통로 확대)** 사업부서 및 지자체 등 일선 **업무 현장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 및 발굴통로 다양화**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실시, 지자체 핵심요원 등 권역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준표준화 개선과제 발굴

  ▪ 지자체 핵심요원 추가 확대 및 활동 활성화 지원

- **(조정기능 강화)** 관계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안건 검토**를 위해 사업부서,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체계 마련**

- **(법령정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명시**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관리체계 개선)** 전산관리번호 신청 및 부여 방법, 유효기한 등 개선사항 검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운영지침 마련)** **전산관리번호**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사항**을 **반영**한 **지침 마련**

○ **(정보화 사전협의체 구축)**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필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검토 절차 및 사전협의체 마련**

○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 가입자 확대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안내된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가구 등의 **취약계층 발굴**

- 유튜브,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멤버십의 대국민 가입률 향상**

- 서민금융진흥원 등 민간·공공기관에서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장소 확대 추진

-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자체 복지서비스**까지 안내 서비스 확대 추진

○ **(실거주지 신청) 관할지 외 보장기관**에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절차 마련**

- 부내·외 복지사업 담당부서 대상으로 **신청창구 확대를 독려**하여, **실거주지**(관할지 외)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다수 확보**

- 국민이 **신청하기 용이**하고 **지자체 담당자에 업무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거주지**(관할지 외) **신청 공통 업무절차 마련**

○ **(신청지원)** 지자체 외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지원 장소 확대** 추진

○ **(신청서식)**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급여 신청 활성화, 대국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정 필요

- 지자체 및 관련 부서 서식 개정 의견 수렴 이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식 개정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복지멤버십 안내사업 확대(중앙부처 3종, 서울시 사업6종)	'24.1월	
	제7기 행복이음 핵심요원 추가 위촉	'24.2월	
	1차 실거주지(관할지 외) 신청 복지서비스 확대	'24.2월	
	'24년도 기준표준화 과제발굴	'24.3~4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24.3~6월	
2/4분기	지자체 복지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시·도간 간담회	'24.5월	
	제1차 기준표준화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24.5월	
	2차 실거주지(관할지 외) 신청 복지서비스 확대	'24.5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운영지침 마련 및 관계기관 안내	'24.6월	
	복지멤버십 대국민 홍보계약 체결, 홍보 추진	'24.6월	
3/4분기	복지멤버십 안내사업 추가 수요조사	'24.7월	
	제2차 기준표준화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24.9월	
4/4분기	'24년 기준표준화 초안마련 및 사업부서 검토	'24.10월	
	연도전환에 따른 지침개정시스템 반영사항 수요조사	'24.10월	
	복지멤버십 신청장소를 민간 · 공공기관까지 확대 관련 유관기관간 논의	'24.11월	
	제7기 행복이음 핵심요원 활동 우수자 포상계획안 수립	'24.11월	
	'24년 기준표준화 심의 · 의결, 후속 조치	'24.12월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복지멤버십 가입 장소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유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민간 · 공공기관에서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장소 확대 추진
- **(지자체)** 지자체별 출산 · 양육 지원제도 등 안내 효과성이 높은 복지제도를 중점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기 위해 시·도간 간담회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지자체 복지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시·도간 간담회	'24.5월
현장방문	복지멤버십 신청장소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간 논의	'24.11월

□ 기대효과

○ 사업 유형별로 소득재산 항목 등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표준화**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 **(국민)** 국민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복지 체감도 향상**

- **(지자체 담당자)**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국민의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상담 및 안내 가능

- **(시스템)** 각종 기준의 복잡성 완화에 따라 정보연계 오류 가능성 최소화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능력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기준 마련을 통한 복지사업 표준화	신규	신규	신규	80%	기준 마련을 통한 복지사업 표준화 개선 노력 -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업 기준 통일, 개별사업 특성으로 인한 기준적용 예외를 감안하여 80% 목표치 설정	∑ 기준표준화 복지사업 적용 - 실제기준적용 사업/기준적용 대상사업×100	- 공통기준 마련하여 복지사업 표준화 개선 노력 평가
복지멤버십 안내사업 추가 개수	신규	신규	신규	30종	연간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연평균 시·도 사회보장급여 신설 건수가 90건('13~'23)인 것을 감안하여 30개 사업 추가 목표	추가된 안내사업 개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추출

3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Ⅱ-2-③, 복지정보기획과)

□ 추진배경 (목적)

○ 발굴·신청·처리 등 **복지업무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지능형 복지 구현**

○ AI를 활용한 초기상담을 통한 위기가구 확인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 복지포털로서의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

○ **(개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체납, 의료위기, 고용위기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시스템('15.12.~)

○ **(절차)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예측된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가구마다 일일이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 **연계정보 추가,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견 가능성 및 정확도 제고로 상시운영 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을 통해 지자체 행정역량을 심층상담 및 복지지원에 집중하여 **신속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기여**

- **위기변수** 추가 등에 따른 **상담 시나리오 개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지자체 복지업무 다각적 지원

○ **대국민 복지포털『복지로』개선**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로 누리집 이용 편의 제고**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관련 현장간담회	'24.1월	
	'24년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시	'24.1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1단계 시범운영 실시('24년 1차 발굴)	'24.1~2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현장방문	'24.2월	
	복지사각지대 비대상자 처리기준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24.2월	
	복지로 웹/앱 접근성 인증 획득	'24.2월	
	'24년 복지포털 복지로 홍보 사업계획 수립	'24.2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지자체 교육	'24.3월	
	복지로 간편인증 3종 추가 도입(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24.3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정보 확대 (금융연체자 채무액,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	'24.3월	
	'24년도 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시	'24.3월	
2/4분기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1단계 시범운영 실시('24년 2차 발굴)	'24.4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현장방문	'24.4월	
	복지로 UI/UX 개선	'24.4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구축완료	'24.5월	
	'24년도 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시	'24.5월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확대(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등)	'24.5월	
	'24년 복지포털 복지로 홍보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24.6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전문가 회의	'24.6월	
3/4분기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지자체 교육	'24.7월	
	'24년도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시	'24.7월	
	여름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현장 점검	'24.8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2단계 시범운영 실시('24년 4차 발굴)	'24.8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현장간담회	'24.9월	
	'24년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시	'24.9월	
4/4분기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지자체 교육	'24.10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2단계 시범운영 실시 ('24년 5차 발굴)	'24.10월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본운영 실시 ('24년 6차 발굴)	'24.11~12월	
	'24년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시	'24.11월	
	'24년 복지포털 복지로 홍보 콘텐츠 제작	'24.11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현장 점검	'24.12월	
	복지로 사용방법 도움말 및 음성안내 제공 확대	'24.12월	
	복지사각지대 예측 모형(지역특성별, 생애주기별) 개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지자체 현장에서 AI 활용 초기상담을 통해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지자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 기능 및 상담 시나리오 지속 개선

○ 여름철·겨울철 취약계층 집중발굴에 따른 지자체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시스템 운영 개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현장간담회	'24.1월
현장방문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지자체 현장방문	'24.2월
회의	복지사각지대 비대상자 처리기준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24.2월
현장방문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지자체 현장방문	'24.4월
현장방문	여름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현장 점검	'24.8월
간담회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현장간담회	'24.9월
현장방문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현장 점검	'24.12월

□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 전국 지자체·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주요 복지사업 정보화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AI활용 초기상담 및 선제적 발굴·지원으로 누락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안전망 강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규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 편의 강화를 통해 국민 복지 체감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Ⅰ-5-정보화①)			
①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	일반회계	325	362
		(968)	(1,04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0)		109	47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305)		216	3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빅데이터 분석 모형의 위기가구 예측 정확도(%)(공통)	49.5	50.2	49.4	49.7	최근 3개년*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23년 실적치(49.4%) 대비 0.3%p 상향 설정 * 코로나19 이후 복지서비스 한시적 수급조건 완화(긴급복지 등)가 지원율 증가에 영향 (지원율 '19년 36.0%→'20년 40.3%→'21년 49.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조치완료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측되어 읍면동에 중앙발굴로 통보된 대상자 **공공서비스 (기초, 차상위, 긴급 등) 및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수혜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추출 통계 - 실적산정 기간은 지자체 합동 평가 실적산정 기간과 동일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만 명)	66.3	60.6	68.6	67.1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의 103% 수준인 67.1만 명을 목표치로 선정 * 코로나19 이후 복지서비스 한시적 수급조건 완화(긴급복지 등)가 지원대상자 증가에 영향 (수혜자 수 '19년 22.8만명→'20년 44.2만명→'21년 66.3만명)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관리되는 대상자 중 공공·민간서비스 지원으로 조치완료된 대상자 수 (중앙/지자체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추출 통계 -연간 조사실적 합산
복지로 온라인신청 건수(만 건)	116	128	132	136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125만건 대비 9%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누계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 신청 건수	복지로 추출 통계

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Ⅱ-2-④, 복지정보운영과)

□ 추진배경 (목적)

- ○ 매년 변경되는 **258개 복지사업**의 **제도 개편** 및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 지원 요구 증가**
- ○ **수급희망 이력관리** 및 요금감면 수혜이력 확보 등 **사회보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 발굴** 지원 필요
- ○ **소득재산 확인조사 등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 지자체 업무 효율화 등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기능개선 수요조사 ▸ 요구사항 검토 ▸ 과제 확정 ▸ 사업수행
- ○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수급희망 이력관리, 공공요금 수혜정보 연계 등 다양한 복지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락서비스 발굴 지원**
  - **행복이음 누락 서비스 안내 처리율 강화**를 위한 추출기준 현행화 및 서비스 유형 정비 등 개선 추진
  - **공공요금**(도시가스 등) **감면기관 수혜이력 정보연계**로 요금감면 **신청 누락자 안내 및 수급연계**
- ○ **(적정급여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 현행화**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정기확인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의 자격·급여 결정에 활용되는 소득재산 정보 갱신으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연 2회, 상·하반기)

    * 기초생활보장, 기초/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 **(월별 확인조사) 정기 확인조사**(반기별)로 인한 환수지연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월별 간이 확인조사 추가 실시**

○ **(모바일 행복이음 도입)** 초기상담,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공무원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행복이음 확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월별 확인조사 수행(1~3월)	'24.1~3월	
	복지사업별 기준, 서식 및 지침 개정사항 등 반영(연도전환 1차)	'24.1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정비	'24.1월	
	'25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조사 실시	'24.1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채용지침 배포	'24.2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소득재산 반영(연도전환 2차)	'24.2월	
	'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계획수립	'24.3월	
	영유아 연령 및 학기 변경에 따른 보육료 자격 전환(연도전환 3차)	'24.3월	
	외교부 해외출생아 여권정보 요청 및 정비 추진	'24.3월	
2/4분기	'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수행	'24.4~6월	
	취약계층 요금감면 미신청자 발굴 및 안내(상반기)	'24.4~6월	
	복지대상자 인적·보장변동 등 미처리현황 지자체 안내(상반기)	'24.5월	
	지자체 가족관계해체 가구 정비대상자 제공	'24.6월	
	변동알림 미처리자 독려(상반기)	'24.6월	
3/4분기	사업별 사회보장급여 환수 예상자 처리 안내(상반기)	'24.7~8월	
	복지대상자 인적·보장변동 등 미처리현황 지자체 안내(하반기)	'24.7~8월	
	동반출입국,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을 활용한 가족관계 해체 의심가구 정비	'24.7~8월	
	월별 확인조사 수행(7~9월)	'24.7~9월	
	'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계획수립	'24.9월	
	금융정보 연계망 참여기관 확대	'24.9월	
	'24년 지자체 행복이음 운영 분담금 계획보고	'24.9월	
	모바일 행복이음 시험운영 평가	'24.9월	
4/4분기	'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수행	'24.10~12월	
	변동알림 미처리자 독려(하반기)	'24.11월	
	취약계층 요금감면 미신청자 발굴 및 안내(하반기)	'24.10~12월	
	복지대상자 가구구성 일제 정비를 위한 자료 입수(주민정보, 가족관계)	'24.12월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	'24.12월	
	모바일 행복이음 이용기관 확대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고도화 등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 소관부서 등 참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협의체 운영('23.9월~)

○ 금융재산조사 전산연계 전환 구축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금융기관 업종별 간담회 추진(연 2회 이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협의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업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협의체 운영(위원장: 사회복지정책실장) * 월 1회 개최(논의 안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연내
금융기관 간담회	금융재산조사 참여 금융기관 업종별 간담회 추진(연 2회 이상)	연내
지자체	지자체 간담회 및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자 의견 청취	연내

□ 기대효과

○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 복지제도 개편 및 지자체 업무 효율화 등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수행 지원**

○ **(복지대상자 발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를 선제적·능동적으로 안내하여 **서비스 누락 사례**를 **방지**

○ **(급여 적기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급여 적기 지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보장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Ⅰ-5-정보화①)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	일반회계	55 (968)	15 (1,04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0)		55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지원 건수	신규	신규	39	40	'23년 지원실적(39건) 대비 3% 상향 설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복지사업 행복이음 개선·반영 건수	행복이음을 통한 산출
사회보장데이터 기반 지원대상자 발굴·연계 건수	신규	신규	195,376	139,974	'23년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긴급 안내로 요금감면 안내 건수 일시적 증가* 감안, * '20~'22년 평균 104,540건 '23년 195,376건, '20~'23년 4년 평균 127,249건 10% 상향 설정 → 139,974건	①수급희망이력 관리 수혜자 수 +②공공 요금감면 서비스 연계 가구 수 ①복지급여 수급 탈락자에 대해 기준완화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여부 재산정으로 실제 수혜로 연계된 대상자 수 ②공공 요금감면 신청 안내자 중 실제 수혜로 연계된 가구 수	행복이음을 통한 산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억원)	10,634	7,978	12,701	10,751	최근 3년('21~'23년) 평균 실적치(10,438) 대비 3% 상향 설정	확인조사 수행으로 발생하는 연간 급여 절감 예상액 =자격중지자 × 보정계수 × 사업별 평균 예상 급여 + 급여 변동자 × 변동 급여액 × 12개월	내부 산출

성과목표 II-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1) 주요 내용

□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개혁논의 및 후속 조치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참여·지원**

- **정부 내 자문기구** 등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 과제***를 **검토**하고, **중·장기 과제**는 **자문** 등을 통해 **구체화**

  * 확정기여방식(DC)으로의 전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

- **최신 인구 데이터**('2023 장래인구 추계', '23.12월 통계청) 및 거시 경제변수(KDI 수행, '24.2~) 반영한 **재정전망 추계 실시**

- **연금개혁 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홍보·소통 강화**

○ **가입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급여 합리화 등 **급여제도 개선**

-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 급속한 고령화 및 **연금수급자 증가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의 합리화** 및 **적정성 강화**를 위한 **급여제도 개선 추진**

□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 **중장기 운용정책 구축,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

- **수익률 제고**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 방안을 논의·마련하고, '25~'29년 중기 자산배분안 수립****

  *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로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

  ** 경제전망·시장여건을 고려하고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자산군별 적정 투자 비중 및 중장기 투자전략 검토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벤치마크 변경**, 부가가치 평가 도입 등 **성과평가체계 재구조화 추진**

○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 등 운용역량 강화**

- **인력 채용 횟수 확대, 절차 효율화** 등 **적극적 채용**을 통해 **증원**('24년 50명)·**결원 인력 적시 충원·관리**

  * 글로벌 투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대('24년 12억원)

-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사모대출팀·부동산플랫폼투자 전담 조직 신설, 해외사무소 확대*** **및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 샌프란시스코 해외사무소 신설로 Tech 섹터 등 우량 투자기회를 선제적 발굴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및 **기준연금액 인상*** **지급**

* 기준연금액 : ('14) 20만원 → ('18) 25만원 → ('19~'21) 30만원 (단계적 추진) → ('24) 33.5만원

○ **국회 공론화 과정** 및 **정부 내 자문기구**에서의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 적극 참여·지원**

-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실시**(상반기)

○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자체 교육, 신청 지원 등 추진**

-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7월) 및 **집중적 홍보 실시**

- 권역별 교육,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노후소득 보장률
관리과제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 국민연금 인식도 개선 · 보험료 납부자 비율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 투자 다변화(해외, 대체투자 비중 확대) ·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노후소득 보장률 (%)	83.2	83.3	86.3	84.4	최근 3개년 실적('21~'23)의 평균값(84.3%)에서 0.1%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국민연금수급자 중 65세 이상자 +기초연금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주민등록 인구통계 (재외국민 제외)	국민연금공단 및 행복e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인구) 제도 도입 이래 **합계출산율 감소**('88년 1.55명→'23년 0.72명), **기대수명 증가**('88년 70.7세→'22년 82.7세) 등 **인구구조 격변**

- **2070년** 전체 인구는 현재보다 **약 30% 감소**하고, **노인**이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지는 구조**로 **전환**(노년부양비 101%)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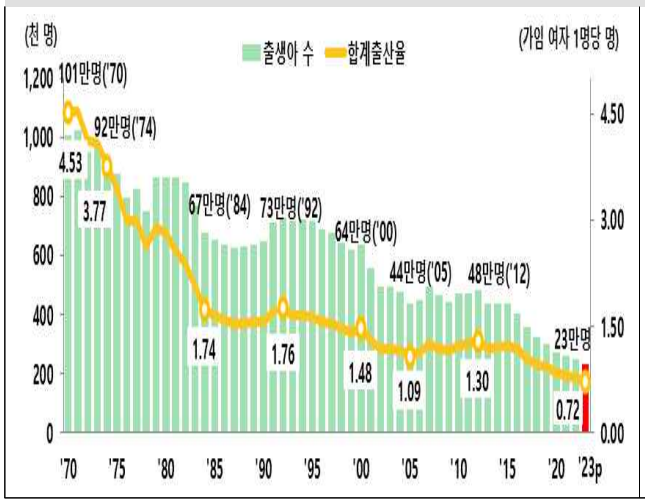

〈 연령별 인구구조, 1970~207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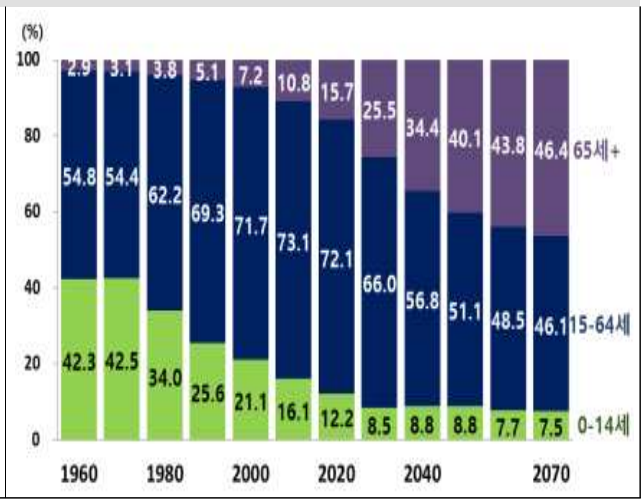

- **기초연금 도입**('14) 이후 지속된 **노인 인구 증가**, 상승하는 **물가인상률 반영*** 등으로 **재정부담**(국고·지방비 등) 증가

* 대상 : ('14)447만명→('24)701만명(+56.7%) / 기준연금액:('14)20만원→('24)33.5만원(+67.4%)

○ **(경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22년 3,600만명 → '70년 1,700만명) 등으로 **저성장 기조 유지 예상**

-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기금운용 불확실성 가중 전망**

○ **(고용) 비임금 근로자**(예 :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 등장,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 등 **충분한 가입 기간 확보 우려**

* (한국고용정보원, '21) 청년 취업자의 첫 일자리 입직 소요 기간 : 대졸 이상 11개월, 전문대졸 13개월, 고졸 이하 35개월

□ **갈등요인 분석**

○ 국민연금은 현재의 全 국민 및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인식차가 다양**

-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 및 제도와의 역할 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추진 필요**

☞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추진**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Ⅱ-3-①, 국민연금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OECD 최고 수준****

* **(65세 이상)** ('13) 48.1% → ('18) 42.0% → ('22) 38.1% (통계청)

** **(66세 이상)** 한국 39.7%('22) > OECD 평균 14.2%('20)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

* **(노후 준비 방법)** 국민연금 59.1% > 예·적금 15.7% 등 (통계청 2023 사회조사)

- 그러나, **초저출산·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악화*** ⇨ **연금개혁**에 대한 **요구 심화**

* **[4차 재정계산('18)]** '42년 수지적자 발생, '57년 기금소진 전망
[5차 재정계산('23)] '41년 수지적자 발생, '55년 기금소진 전망

○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내에서도 **가입종별·성별** 등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차이***가 크며,

* **(가입종별 평균가입기간)** 지역가입 90개월 < 사업장 가입 146개월
(성별 평균가입기간) 여성 112개월 < 남성 145개월

- **저소득 가입자**들은 **납부예외·장기체납*** 등으로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임

* 지역가입자 671만명 중 **납부예외자 294만명(43.8%)**, 장기체납자 88만명(11.5%) ('23.12)

☞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국민연금 개편 필요**

☞ **가입**이 **저조**한 **취약**계층(저임금 근로자, 납부예외자 등) 대상 보험료 지원 제도 등을 통한 **가입 유도** 및 **사각지대 축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 **(정부 논의 지속) 자문기구 운영** 등 정부 내 **논의구조 마련**

-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 **사회적 논의과제 검토** 및 **구체화**

  * 보건복지부 산하「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구성 ('24.1)

- **새로운 인구 데이터**(2023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거시경제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전망 실시**

  * 보험계리,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재정추계 실무단」구성 ('24.1)

○ **(국회 지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

-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논의 **기초자료 제공, 실무인력 지원** 등 국회 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 **[추진일정(안)]** (**'24.3월**) 의제숙의단(36명) **개혁의제 설정**
    → (**'24.4월**) 시민대표단(500명) **개혁 방향 도출**

- 공론화 과정 주요 내용 및 공론화 결과 **홍보 지원**을 통해 **개혁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

○ **(종합운영계획 이행) 국회 공론화 결과,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세부 추진과제 이행**

- 국민-기초연금 역할 정립 등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추진**

  * 출산·군복무 크레딧,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재정이 수반되는 과제도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

2. 급여제도 내실화

○ **(급여제도 개선) 제도 합리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 추진**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3년 물가변동율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을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

*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행방불명 관련 유족 대상 수급권 보장 강화)** 행방불명자(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 등) 사망급여 신청 소멸시효 기산일 적용 시점 명확화로 수급권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업무지침 개정 추진(행방불명 사망급여 소멸시효 기산일 명확화)

- **(급여제도개선 추진단 운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급여제도개선 추진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급여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실행력 확보

○ **(국민연금 권리구제 강화)**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차질 없는 운영**

- **(재심사위원회 운영)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매월 위원회 개최 및 **법정 재결기한**(60일, 최대 90일) **준수**

- **(개선과제 발굴)** 국민연금 재심사 안건 및 결과에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발굴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3. 가입제도 개선 및 연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가입제도 개선, 보험료 지원]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22.1월)됨에 따라, **국세청·고용노동부**로부터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자료 입수** 후 **사업장 편입 추진**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제도 홍보·안내 강화를 통한 보험료 지원신청 제고 및 지원상황 점검 지속

* 사업내용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생애 최대 1년**의 **보험료** 일부(50%, 최대 46,350원) **지원**

○ **두루누리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 **미신청 사업장 대상 신청 안내 강화**를 통해 보험료 **지원 누락 방지 및 신청률 제고**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저소득근로자 및 농·어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개선** 및 관련 고시 개정(12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업장 가입 전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대상 **소득신고방식 및 소득수준, 노무제공 형태, 제도수용 가능성 등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크레딧 지원]

○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 친화 여건 조성** 및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검토

- 국회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 논의, 연금개혁과 함께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

* (현행) 둘째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실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안내 강화**

- 실업크레딧 미신청 구직급여수급자 대상 안내문 발송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안내 실시

*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 제외

4. 국민연금 신뢰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맞춤형 전략홍보 추진) 연금개혁**의 **대국민 수용성 최대화**를 위해 홍보 **대상별 특성·매체 선호도 반영**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

- **(온라인 홍보 강화)** 계기별 시의성 있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 **적시에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집중 홍보**하여 **국민연금 인식 제고**

  * **청년층**이 **선호**하는 **'숏폼' 영상**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 콘텐츠** 제작, **SNS 이벤트** 등 **SNS 채널** 등에 집**중 홍보**

- **(현장 홍보·소통 강화) 청년층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밀착** 교육·설명회 및 현장 토론회·간담회 등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 청**년층이 바라보는 연금개혁 홍보방안** 간담회 등 **미래세대**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참여**와 **관심유도**

○ **(상생의 연금개혁 인식 확산) 제5차 종합운영계획 주요내용 홍보, 국회 공론화**의 적극적인 **정부지원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

-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공론화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 **홍보 내용 인식도** 및 **효과성**에 대해 **주기적 평가·환류** 실시,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대국민 공감대 확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회 공론화 과정 참여·지원(공론화지원단 내 실무인력 지원)	'24.1월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방문	'24.1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	'24.1월	
	국회 공론화 과정 참여·지원(의제숙의단 학습자료 작성 지원)	'24.2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개정	'24.2월	
	정부 자문기구 운영('개혁 자문단', '추계 실무단')	'24.3월	
	국회 공론화 과정 참여·지원(시민대표단 학습자료 작성 지원)	'24.3월	
	국민연금 급여 사후관리 실시	'24.1월~	연중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운영	'24.1월~	매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24.1월~	연중
	국민연금 수급권 청구안내 실시	'24.1월~	연중
	장애·유족 심사 적기 처리	'24.1월~	연중
2/4분기	국회 공론화 과정 참여·지원(시민대표단 토론 지원)	'24.4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업장 가입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4.4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 주요내용 홍보	'24.4~6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홍보 지원	'24.4~6월	
	정부 자문기구 운영('개혁 자문단', '추계 실무단')	'24.5월	
	국회 공론화 과정 참여·지원(백서제작 등 마무리 지원)	'24.5월	
	국민연금개혁 홍보방안 토의를 위한 현장소통	'24.5월	
	재정추계 결과 도출	'24.6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언론 홍보(중앙언론, 지역언론)	'24.6월	
3/4분기	제5차 종합운영계획 주요내용 홍보	'24.7~9월	
	정부 자문기구 운영('개혁 자문단', '추계 실무단')	'24.9월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홍보	'24.9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홍보	'24.9월	
4/4분기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개최(정기회)	'24.10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 주요내용 홍보	'24.10~12월	
	정부 자문기구 운영('개혁 자문단', '추계 실무단')	'24.12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개선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관련 고시 개정	'24.12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업장 가입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완료	'24.12월	
	행방불명자 사망급여 신청 소멸시효 적용시점 보완 지침 개정 추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자문기구 운영***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 검토** 및 **구체화**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재정추계 실무단'('24.1월 구성 완료)

○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추진단 운영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확정기여 방식 전환 등 사회적 논의과제 검토 및 구체화, 자료제공 등 국회 공론화 논의 지원	연중
	· **(재정추계 실무단)** 최신 인구 데이터(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3.12월) 및 거시경제 변수(KDI, '24.2~6월)를 반영한 재정 전망 추계 실시	
국민연금 홍보 **현장방문**	· 국민연금 홍보 우수기관 현장방문	'24.1월
	· 국민연금 관련 홍보·소통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행	'24.상반기
가입, 급여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 **(가입)**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	'24.2월
	· **(급여)** 급여제도개선 추진단 운영,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급여제도개선 과제 실행계획 검토	'24.3~5월
재심사 **회의**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확	'24.11월
공적연금 연계제도 **회의**	· 공적연금 연계제도 실무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계제도 업무(제도, 전산)에 대한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24.10~12월
시스템 점검 **회의**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안정적인 개통을 위한 복지부-공단-개발업체-PMO 등 합동 점검 회의 개최	연중 (매월 1회)
퇴직연금 제도개선 **TF**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기재·고용·복지부 참여) 디폴트옵션 활성화 등 과제 발굴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24.2월) ※ '24.5월 제도개선 방안 발표(예정)	~'24.5월

□ 기대효과

○ **정부 내 자문기구 운영**을 통한 **국회 공론화 지원** 및 **과학적 근거 축적** ⇨ **사회적 논의** 및 **연금개혁 동력 지속 확보**

-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회 공론화 진행 상황·결과** 및 **정부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

○ 연금 급여제도 개선 및 수급권 청구안내,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증가에 이바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Ⅳ-6-일반재정①)			
①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사업(7431)	국민연금기금	**317**	**341**
		(324)	(349)
▪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451)		65	63
▪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453)		250	278
▪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457)		2	-
②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7432)	국민연금기금	**1,211**	**1,157**
		(1,617)	(1,665)
▪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432)		562	530
▪ 노후준비서비스(440)		18	16
▪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441)		355	346
▪ 국민연금 조사연구(442)		22	22
▪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446)		7	6
▪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452)		180	164
▪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455)		67	73
③ 국민연금 복지사업(7433)	국민연금기금	**534**	**555**
		(534)	(555)
▪ 복지타운운영사업비(424)		87	133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425)		447	422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Ⅳ-7-일반재정①)			
① 국민연금 급여지급(7631)	국민연금기금	**390,860**	**433,729**
		(390,860)	(433,729)
▪ 국민연금 급여지급(401)		390,860	433,7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국민연금 인식도 개선(점)	73.5	74.8	77.8	76.0	최근 3개년('21~'23) 실적 평균(75.6점) 수준으로 설정 ※ '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이 있었던 해로, 그간 실적 대비 '23년 인식도 실적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3개년 평균치(75.6점) 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	(국민연금 인지도+ 국민연금 필요도) / 2	대국민 설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수행) *10~70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보험료 납부자 비율(%)	86.2	86.4	86.6	86.8	'21~'23년 보험료 납부자 비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사업장+지역(소득신고)+ 임의(계속)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100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 추출자료

2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Ⅱ-3-②, 국민연금재정과)

□ 추진배경 (목적)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용정책 구축,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및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

- **장기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환경변화에 **대응이 용이한 자산배분체계 마련, 기금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수익률 극대화 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산배분체계 전문성 강화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 **수익률 제고**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논의·마련하고, '25~'29년 중기 자산배분안 수립****('24.上)

*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로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

** 경제전망·시장여건을 고려하고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자산군별 적정 투자 비중 및 중장기 투자전략 검토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벤치마크 변경**, 부가가치 평가 도입 등 **성과평가체계 재구조화 추진**('24.下)

○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 등 운용역량 강화**

- **인력 채용 횟수 확대, 절차 효율화** 등 **적극적 채용**을 통해 **증원**('24년 50명)·**결원 인력 적시 충원·관리**

* 글로벌 투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대('24년 12억원)

-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사모대출팀·부동산플랫폼투자 전담 조직 신설, 해외사무소 확대*** **및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 샌프란시스코 해외사무소 신설로 Tech 섹터 등 우량 투자기회를 선제적 발굴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체계 및 책임투자 내실화**

- 해외투자 비중 증가, 해외기업 ESG 이슈 대응 등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 세부이행방안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운영계획 수립	'24.1월	
	2024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행사 방향 사전 공개	'24.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진	'24.3월	
2/4분기	기준포트폴리오 도입방안 확정	'24.5월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25~'29) 수립	'24.5월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정책제언 후속조치 계획(안) 마련	'24.6월	
3/4분기	해외주식 '기업과의 대화' 도입방안 의결	'24.9월	
	기금운용본부 샌프란시스코 해외사무소 설립	'24.9월	
4/4분기	국민연금기금운용 인력 확충	'24.12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 확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기금운용본부 실무직원 근무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추진	'24년 1분기
	기금 투자자산 점검 현장방문	'24년 3분기
의견수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마련 및 성과평가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논의	'24년 연중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추진 관련 학회 공동 세미나	'24년 2분기
회의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24년 연중

□ 기대효과

○ 기금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투자 다변화(해외, 대체투자비중확대) (단위: %)	46.5	50.7	59.0	55.2	과거 실적과 중기자산배분계획(2024~2028년)에 근거하여 목표치를 설정	(해외채권+해외주식+대체투자 금액/국민연금기금 금융자산 금액)×100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보고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수립	제5차 종합운영계획('23년 10월) 상 추진과제 이행 내용을 신규지표로 설정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 여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

3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Ⅱ-3-③, 기초연금과)

□ 추진배경 (목적)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4.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 강화** 추진

* 기준연금액 추이 : ('14) 20만원 → ('18) 25만원 → ('19~'21) 30만원 (단계적 추진) → ('22) 30.75만원

○ 또한, 더 많은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수급자 발굴** 등으로 **지속적인 내실화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및 **지급액 인상**을 통한 **빈곤 완화**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24.1)

* 선정기준액 : ('23) 202만원 이하 → ('24) 213만원 이하로 5.4% 인상

- **'24년 기준연금액* 고시** 및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24.1~)

* 기준연금액 : ('23) 323,180원 → ('24) 334,810원으로 3.6% 인상

** 지급대상 : ('23) 665만 명 → ('24) 701만 명에게 지급

○ **'25년 지급대상 선정 근거 마련** 및 **기초연금 예산 적시 확보**

- **'2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한 **선정기준액 등 개정안 마련**

- '25년 **예산안 편성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

○ **'24년**은 **기초연금 제도도입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간 **제도의 성과에 대한 홍보**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

- 기초연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각**을 위해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7월 예정) 시기 **집중 홍보**

- **(사전 홍보)** ①국민참여 공모전 추진, ②인포그래픽 영상 제작
- **(당일 홍보)** ①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개최, ②「기초연금 10주년 의미와 성과」연구 발표, ③심포지엄을 통한 발전방향 논의
- **(사후 홍보)** ①공모전 수상작을 영상 사례집 형태로 제작, ②기초연금에 대한 전세대의 정책 공감대 형성

○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교육, 수급률 제고를 위한 신청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추진**

- **기초연금 권역별 교육,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기초연금 담당자 역량 강화**
- 기초연금 대국민지지 확보 및 미수급 사각지대 집중 홍보(4월~)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65세 도래자 신청 안내'**, 거동불편 어르신께 **'찾아뵙는 서비스'** 등 **신청 안내**(수시)
- 기초연금 자격 결정 정보(상실 사유 등) 보유자의 탈락 시 소득인정액을 활용한 **탈락자 신청 안내 강화**
- 외부자료 활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급가능자 발굴 및 안내**

* 행안부(생년월일 변경자), 공무원연금공단 등(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여 분할 연금 수급중인 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준연금액 인상 등에 따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	’24.1월	
	소득하위 70% 수급자에 월 최대 334,810원 지급	’24.1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실시 및 수급가능 예상자 신청 안내	’24.1월	
	기초연금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24.3~6월	
2/4분기	’25년 기초연금 예산안 편성 및 확보 추진	’24.4~5월	
	’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4.5월	
	지자체 담당자 상반기 직무교육 실시	’24.5~6월	
	’25년 기초연금 집행점검 및 모니터링	’24.6월	
3/4분기	’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4.7월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24.7월	
	기초연금 10주년 기념 홍보 영상 1차 송출	’24.7월	
	지자체 담당자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24.9~11월	
	‘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회의	‘24.9월	
	기초연금 10주년 기념 홍보 영상 2차 송출	’24.9월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수급 실태조사	’24.10월	
	기초연금 지자체 담당자 등 워크숍	’24.11월	
	’25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등 고시 지자체 등 의견조회 및 개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기초연금 정책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기초연금 수급권강화 TF(국민연금공단)	수시
간담회	2024년도 기초연금 핵심활동요원 간담회 및 위촉식	‘24.3월
회의	2025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회의	’24.9월
현장방문	기초연금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현장점검	’24.12월

□ 기대효과

○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 마련 및 노인 빈곤 완화

○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로 수급자 수 지속 증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노인생활안정(Ⅳ-6-일반재정(1))			
① 노인복지지원(2131)			
▪ 기초연금 지급(300)	일반회계	185,078 (185,304)	201,789 (202,0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기초연금 수급자 수(단위 : 만명)	597.3	623.9	650.9	678.9	노인인구 증가로 '23년도 실적치가 '22년도 실적보다 4.3% 높게 나타남 - 이를 고려하여 '23년 실적 대비 4.3%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	'24년 12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수	행복e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률(단위 : %)	93.4	94.4	93.1	93.6	3개년 평균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실적치를 감안하여 '24년 목표치 설정	연간 이력관리 신청자 수 / 연간 기초연금 신 청 자 수 ×100	행복e음

성과목표II-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주요 내용

□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 ㅇ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 ㅇ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
- ㅇ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자격 관리를 통한 서비스 기반 마련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 ㅇ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 ㅇ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
- ㅇ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 및 장애분야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ㅇ 장애인 편의 증진

□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 ㅇ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한 장애인연금 인상
- ㅇ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미수급 권리구제 대상자 등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만족도 제고
- ㅇ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제공 확대 및 신규직무 개발 추진
- ㅇ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취업연계 강화
-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경영컨설팅 지원
- ㅇ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공표 및 법정비율 미달기관 구매 확대 요구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 ㅇ 보호자 부재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 ㅇ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등 실시
- ㅇ 상이보훈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지원
- ㅇ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률 제고
- ㅇ 가족에 의한 돌봄 허용 연장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 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 ㅇ 장애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운영
- ㅇ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 ㅇ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 ㅇ 장애 맞춤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활 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관리과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장애인 맞춤형 상담률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모델 참여도 · 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 BF인증 건수 · 장애차별 인식수준 개선율 · 장애인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비중 ·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취업자의 취업 유지율(6개월)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내 장애인근로자 고용 증가율 ·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일상생활 향상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만족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이용자 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등록 기관 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 비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43.7	43.8	47.7	47.8	최근 3년간('21~'23)의 평균 실적(45) 및 직전년도('23)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자 수 + 활동지원 수급자 수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 등록장애인 수	행복e음 통계 활용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29.4	29.2	29.7	29.7	최근 3년간('21~'23)의 평균 실적(29.4) 및 직전년도('23)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감소 및 등록장애인 고려를 감소할 때 전년도 실적을 유지한 것도 적극적 목표달성으로 인정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 장애수당 수급자수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 등록장애인수×100	행복e음 통계 활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급여지원 확대 및 현장 소통 요구

- 시범사업 지원규모 및 급여비율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계 등 전문기관과의 소통 적극 실시(민관협의체, 간담회, 현장 방문 등)

* 지원규모 : ('23) 4개소 120명 → ('24) 8개소 210명

** 개인예산 지원비율 : ('23) 활동지원급여 10% → ('24) 활동지원급여 20%

□ 시설장애인 중심 자립대상자 발굴에 따른 시설 및 보호자의 우려 존재

ㅇ 시설, 보호자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 설득(간담회 등)하고,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보호자 부재 등)까지 대상 확대

□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지원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65세 미만 **3~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부여 예정**
- **복지부·보훈부의 지속적인 협조 및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24.9)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요구**

ㅇ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등 기존 수행중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현장 의견 청취 및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Ⅱ-4-①, 장애인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23.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23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24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국정과제)

* (국정과제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추진

○ 장애인 권리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보장 욕구 증진과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가 표출

-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모색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중복장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수립

○ 관계부처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24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및 장애인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발표('24.4월)

(2)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 ’23년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4~’25) 추진

- 시범사업지역 공모·선정, 참여자 모집,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보완 순으로 진행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22~’24)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조성, 대상자의 장애 특성별 자립 지원모형 마련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역사회 자립 지원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국토부 및 LH) 협의 추진

○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를 통한 지역별 운영 상황점검 및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계 등 의견 수렴 진행

(4)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자격 관리를 통한 서비스 기반 마련

○ 장애인등록 적정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 추진

- ‘23년 1차 연구 후속으로 2차 연구를 추진하고 기준 개선안 검토

○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공개를 통한 장애인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장애인등록증 사용 관련 불편 개선 및 관리 강화

-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리를 강화함

○ 장애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 권익 증진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기재사항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복이음 및 복지로 시스템 개선

(5)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확립

○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직업재활, 자조모임 지원,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 지원

(6) 장애인단체-정부 간 간담회를 통한 정책연계방안 마련

○ 장애계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및 장애인단체의 정책연계 방안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진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애인등록증 반환 규제 개선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	'24.2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민관협의체 회의	'24.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2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 선정	'24.3월	
2/4분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수립	'24.4월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발표	'24.4월	
	장애인정책 청년모니터링단 모집	'24.4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24.4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역 선정 및 참여자 모집	'24.4~5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24.6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담인력 교육	'24.6월	
3/4분기	장애인증명서 사진란 삭제 및 기재사항 선택적 표시 시행	'24.7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간담회 개최	'24.8월	
	장애인등록증 (온라인)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24.9월	
4/4분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24.11월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24.12월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지원	'24.12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25년도 시범사업지역 추가 모집	'24.12월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2차) 결과 보고	'24.12월	
	장애인정책청년모니터링 관련 우수사례 포상	'24.12월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공모 사업 포상	'24.12월	
	광역도시철도 동해남부선 장애인 무임결제 시스템 개선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장애계 등 전문기관 의견수렴, 참여 지자체 및 급여 대상자 등과 현장 소통 기회 마련('24.2월~)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25개 지역) 간담회 개최('24.3월)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계, 학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약 20명) 및 회의 개최('24.6월)

○ 시청각장애 관련 연구 수행자, 시청각장애인 서비스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24.8월)

○ 시범사업 지자체, 수행기관, 자립장애인 주택 등 현장점검('24.11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장애계 등 전문기관 의견수렴, 참여 지자체 및 급여 대상자 등 간담회	'24.2월~
간담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24.3월
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24.6월
회의	시청각장애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4.8월
현장점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수행기관, 자립장애인 주택 등 현장점검	'24.11월

□ 기대효과

○ 장애인을 위한 '24년 범부처 장애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전 분야에 걸쳐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등록 적정성 제고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애인증명서 기재사항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장애인의 권익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Ⅰ-3-일반재정①)			
①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1542)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	60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300)	일반회계	73	94
② 장애인선택적복지(1535)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310)	일반회계	6	10
장애인소득보장(Ⅰ-2-일반재정①)			
① 장애인소득보장(1531)	일반회계		
▪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302)	일반회계	427	43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장애인 맞춤형 상담률(%)	17.8	18.7	25.5	21.5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값(20.5%)*의 5% 상향값을 목표로 함	장애인 맞춤형 시뮬레이션 상담 건수 /통합상담 실시 장애인 수 × 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모델 참여도	-	-	-	85.0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참여자 신청율을 목표치로 설정	시범사업 운영 참여신청자 수/ 목표인원 수× 100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 자료
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점)(공통)	-	-	79.8	80	'23년 실적(79.8점)을 감안하여 '24년 목표치(80점) 설정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 / 항목 수	한국장애인개발원 만족도 조사 결과

* '23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준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구성 필요) 반영

2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Ⅱ-4-②,장애인권익지원과)

□ 추진배경 (목적)

○ **(장애인학대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장애인 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사후 관리 등 피해장애인 권리 보호

○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국제협력)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위한 **범부처 이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권익증진 방안 마련

○ **(편의증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접급·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의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장애인 학대대응 및 장애인식개선 강화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연중)
- 학대유형 및 발생 장소 등 **장애인학대 발생요인 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개발(4~9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실시(5~8월)
-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8~10월)

* 2023.1.1.~2023.12.3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황, 장애인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등에 관한 세부 내용 분석

○ **피해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운영지원(연중)**

-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19개소) 지속 운영(연중)
- 피해장애아동 쉼터(10개소) 운영 지원(연중) 및 '24년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공모(4개소, 3~4월)및 설치 지원(하반기)

○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3~9월)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신규 지정**(8~10월)
- **장애공감주간 운영** 등 장애인식개선 홍보활동(12월)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 및 장애분야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별 이행계획 수립 및 심의·의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제장애인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연중)

* 인천전략 후속 사업 검토,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준비단 업무지원 등

3. 장애인 편의 증진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추진**(1~7월)

- 장애인 이용이 많은 제1, 2종 근생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추진

○ **BF 인증운영기관 지정·운영 예산 확보 추진**(연중)

- BF 인증대표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 추진*('24.상반기)

* 복지부-국토부 공동부령에 따른 BF인증심의위원회에 안전 상정

- BF 인증운영기관 운영을 위하여 현 대표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예산 확보** 추진

* (예산소요) 9.6억원(인건비 4.6억원<8인>, 사업비 5억원(인증기준 개발 연구(2억원)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1.5억원), 인증 전문 인력 양성 교육(0.7억원) 등)

○ **BF인증기관 정례회의**(연중)

- 복지부·국토부 및 각 인증기관(9개소) 담당자가 참여, 인증 관련 진행상황 공유, 인증 세부심사기준 논의 등 소통체계 구축

- 매 홀수달 개최예정('24년 5회)

* 1차 정례회의(1.8. 한국장애인개발원), 2차 정례회의(3.11. 농어촌지원개발원)

○ **유니버설디자인(UD) 인식 확산 추진**(1~12월)

- UD환경 조성 관련 공모대전, 전시·체험공간 운영,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장애인개발원 협업)

* 유니버셜디자인 공모대전 및 국제세미나 개최('24.9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10~12월)

- 10~12월 연1회 실시

- 복지부, 지자체, 지장협(편의센터) 합동으로 점검

- 점검 결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차구역 설치기준 미흡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교육 실시**(3~10월)

- 지자체, 교육청 등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전문 교육 실시

- 건축 전문가 교육 건축물에 편의시설 적용 실무 교육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추진	'24.3~7월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교육 실시	'24.3~10월	
2/4분기	장애인학대 발생요인 분석활용 대응 매뉴얼 개발	'24.4~9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실시	'24.5~8월	
	BF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예산 확보 추진	'24.4~12월	
3/4분기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및 심의·의결	'24.7~9월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8~10월	
	2024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신규지정	'24.8~10월	
	유니버셜 공모대전 및 국제세미나 개최	'24.9월	
4/4분기	장애공감주간 운영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자단 간담회 - 대상: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 권고기준에 대한 기자단의 의견 및 확산방안 등을 수렴	'24.4월
	○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간담회 -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지침 개정 의견 수렴 등	'24.11월
설명회	○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관련 전국 권역별 설명회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키오스크 설치 및 접근성 준수기준 등을 설명학고 현장의견을 수렴	'24.4~6월
회의	○ BF 인증 관련 현안점검 회의 - 지표 및 심사 등 주요 현안논의를 위한 관련 기관간 회의 운영	'24.1~12월

□ 기대효과

○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피해 감소**
- 장애인차별행위 금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Ⅰ-2-일반재정⑧)			
①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1542)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300)		73	68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302)		56	50
장애인복지시설확충(Ⅰ-2-일반재정⑤)			
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1536)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302)		6,346	6,69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BF인증 건수	2,221	2,125	2,231	2,343	BF인증 실적 반영 *'23년 실적대비(2,231건) 5% 증가한 인증 실적	'23년(2,231건) *1.05(5% 증)	각 인증기관의 BF인증 결과보고서
장애차별 인식수준 개선율	45.4	47.6	49.0	50.5	장애인식개선교육 후 피교육자의 장애차별 인식 정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사전·사후 변화 비교 * 전년대비 3% 향상된 50.5%로 성과목표 설정	(사후평가-사전평가)/(사전평가) × 100%	교육콘텐츠 사전·사후 조사 결과보고서
장애인학대의심사례 신고조사 건수	2,461	2,641	2,969	3,117	장애인학대신고건 중 의심사례로 분류하여 조사한 건수 * 전년대비 5% 증가한 실적	학대의심사례 *10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운영중인 장애학대정보시스템 활용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Ⅱ-4-③, 장애인자립기반과)

□ 추진배경 (목적)

○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및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 직업활동에 취약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등의 정책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 및 **소득보장 지원**, 일 경험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 영위**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참여 촉진 및 자립 기반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및 물가상승 반영한 **기초급여 인상**으로 월 최대 **42.5만원** 지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장애인연금 인상액 **적기 지급** 추진('24.1월)

-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급여 미수급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안내·정비**('24.上, 下)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3월)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장애인 소득·지출실태조사** 추진(~'24.10월)

- 중증장애인 소득분포 등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70%) 달성을 위한 **'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마련('24.12월)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우선구매비율 상향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및 우선구매 비율 고시 제정 추진

* 1%이상 → 2%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24.8월 시행)

- 구매품목, 수량 등 **구매계획 구체화** 및 미이행 기관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의 의무화를 통해 **실적부진기관 달성 독려**

- 우선구매 **민간부문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품질향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 **장애인일자리 제공 확대**('24년 31,546명) 및 장애정도·유형 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등 지속 추진

- 현장 수행기관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수행기관 **지원유형 단계적 개편방안 마련**

-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 外 장애인편의점 등 **신규 업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내실화

- 직업재활 서비스 질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등을 위해 **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추진**

-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및 시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시설의 생산품 판매촉진 등 판매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체계 도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준 개선 및 교부품목 확대, 지원기준액 인상, 교부절차 개선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활성화** 추진

-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이용장애인 안전교육 실시 등 보조기기센터 **특화사업 활성화**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	1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관련 고시 개정, 홍보	1월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4종 확대 및 지원기준액 4종 인상	1월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기준 개선 시행	1월	
	○ '24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계획 수립	1월	
	○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유형 개발 수행기관 선정	2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월	
	○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수행기관 선정	3월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규 특화사업 지원기업 업무협약	3월	
2/4분기	○ '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24년 구매계획 공표	4월	
	○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4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희망시설 모집 및 선정	5월	
	○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의료법 위반소지 해소를 위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5월	
	○ 장애인연금·수당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 정비	6월	
3/4분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	7월	
	○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유형 개발 적합성평가	8월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체계 개편 연구 결과보고	9월	
	○ '2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수립	9월	
	○ 장애인연금·수당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 정비	9월	
4/4분기	○ 중증장애인생산품박람회 개최	10월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개최	10월	
	○ 장애인 소득·지출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	10월	
	○ 장애인일자리 신규개발 직무유형 직무매뉴얼 개발·제작	11월	
	○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성과 평가	12월	
	○ '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및 관련 고시 개정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 장애인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모니터단 운영

○ 장애인연금·수당 사업안내 개정을 위한 지자체 장애인복지급여 담당자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의견 수렴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조기기센터 워크숍 개최	'24.3월
현장방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현장방문	'24.3월
설문조사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현장의견 조회	'24.3월
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24.4~7월
설명회	24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계획 설명회	'24.4월
설명회	2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설명회	'24.4월
간담회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유형 개발 수행기관 간담회	'24.5월
간담회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지자체 간담회	'24.9월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및 빈곤 완화

○ 공공일자리, 종합 직업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자립기반 마련 강화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장애인의 생활지원 및 재활지원(Ⅰ-3-일반재정)			
① 장애인소득보장(1531)	일반회계	10,938	11,123
		(11,662)	(11,920)
▪ 장애수당(기초)(300)		1,430	1,506
▪ 장애수당(차상위 등)(301)		721	685
▪ 장애인연금(305)		8,787	8,932
②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1532)	일반회계	49	50
		(67)	(60)
▪ 장애인보조기기지원(304)		49	50
③ 장애인복지시설지원(1536)	일반회계	108	116
		(6,610)	(6,983)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300)		108	116
④ 장애인일자리지원(1539)	일반회계	2,073	2,227
		(2,073)	(2,227)
▪ 장애인일자리지원(300)		2,073	2,227
⑤ 장애인직업재활지원(1543)	일반회계	220	226
		(220)	(226)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300)		196	199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302)		24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비중	신규	신규	신규	6.0	3년 평균 실적(5.9%)을 고려하여 '24년도 목표치 설정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100(연말 기준)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행복이음)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신규	신규	신규	96.3	중도참여일이 관리된 22년 96.2%, '23년 96.2%의 일자리 참여율을 참고하여 '24년 목표 설정	(일자리참여인원 참여일의 합÷(배정인원×366일))×100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취업자의 취업유지율(6개월)	신규	신규	78.2	79.0	'23년 실적(78.2%)에 최근 3년 취업유지율 평균(76.0%), 사업이 매우 성숙된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21년)71.8. (22년)78.0, (23년)78.2	(6개월취업인원/ 취업인원)×10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내 장애인근로자 고용증가율	신규	신규	6.1	6.2	3년('20년~'23년) 고용증가율 평균(5.4%)과 '22년 대비 '23년도 실적(6.1%) 향상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24년도 목표치 설정 *(21년)5.33, (22년)4.81,(23년)6.06	당해 연도 장애인근로자 수 - 전년도 장애인근로자수/전년도 장애인근로자수×1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 시스템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일상생활 향상도	신규	신규	신규	86	신규 지표 고려 및 최근 3년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균(86점)을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점수 산출	장애인 보조기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Ⅱ-4-④, 장애인서비스과)

□ 추진배경 (목적)

○ **활동지원을 중심**으로 **발달장애 대상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지원 등 사회적 요구사항**에 선제적 대응 중

< 장애인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

< 관련 국정과제 >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발달장애인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 시행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7) **제도 정비 및 서비스 내실화 지속 추진**

	2011	2016	2019	2021	2023	2024
제도	최초 시행	가산급여 도입 (680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지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원	보훈 대상자 지원
단가	8,300원	9,000원	12,960원	14,020원	15,570원	16,150원
수급자	44,811명	79,928명	105,569명	127,363명	151,259명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권익보호**(공공후견, 재산관리) 및 **낮 활동 지원**(주간·방과후활동),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등 **기존 서비스 지속 확대**

-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긴급돌봄서비스**('23.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24.6~)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장애아동 가정의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증 장애아동 돌봄 등 장애아동·가족지원·확대**

* (연간 돌봄시간) 19년600시간 → '20년720시간 → '22년840시간 → '23년960시간 → '24년1,080시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 대상자 확대* 및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확대**(연중)

* (대상자 확대) '23년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 '24.9월 상이보훈대상자 신규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 8천명 이상 확대('23년 11.5만명 → '24년 12.4만명)

** (처우개선) 제공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인건비 인상을 위해 서비스 단가 인상('23. 15,570 → '24. 16,150원), 최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가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코로나19 한시적용 **"가족에 의한 돌봄" 연장**(~'24.10), **상이보훈대상자 신규 지원**('24.9~)* 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시행, 상이 3~7급 대상(상이등급 1~2급은 국가보훈부 간호수당 대상으로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해 제외)

○ '24년도 활동지원 제공기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2~3분기), 결과 분석 및 포상(4분기)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

< 평가계획(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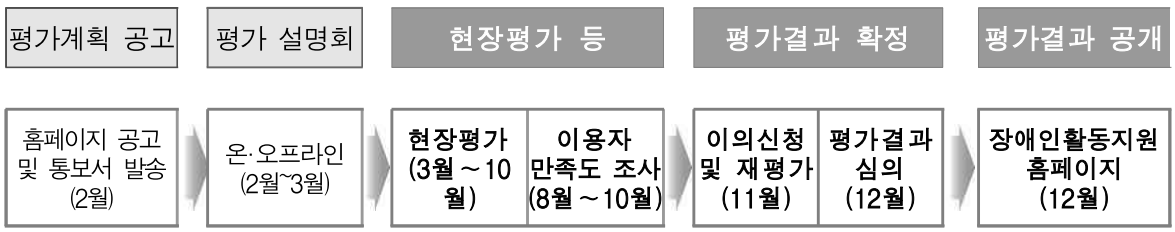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가지는 등 장애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 주간 개별 1:1 지원(500명), 주간 그룹형 1:1 지원(1,500명)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제공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 평가 추진**

* 제공대상 확대(주간활동) : ('23) 10,000명 → ('24) 11,000명(+1,000명)

** 제공단가 인상(주간·방과후활동) : ('23) 15,570원 → ('24) 16,150원(+580원)

○ **보호자** 입원·경조사,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24.12) **및 본 사업 전환 준비**

* 현장 모니터링 결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24.3월, 지침개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 및 **발달장애인 법정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24.12) 및 본사업 전환 준비

(3)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돌봄 지원시간 확대(1분기)**

* '23년 월 80시간(연 960시간) → **'24년 월 90시간(연 1,080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교육, 가족휴식 등 **서비스 확대(연중)**

○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평가 체계 마련**('23~'25), 제공기관 **평가 단계적 도입 추진**('25~)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	'24.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모의 적용	'24.1월	
	3~7급 상이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24.1월	
	24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24.2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홍보물 배포	'24.2월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24.2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침 마련	'24.3월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4.3월	
2/4분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24.4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컨설팅	'24.4월	
	2023년 장애아동 실태조사 후속 정책 마련 간담회	'24.4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완료	'24.5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24.6월	
	’25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24.6월	
	상이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지원 시스템 개선 등 현장 운영 정비	’24.6월	
3/4분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지자체 및 제공기관 집행점검 회의	’24.7월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24.8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24.8월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2차 연구」 완료	’24.9월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 ’25년 상담 제공기관 평가지표 마련	’24.9월	
	상이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24.9월	
4/4분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장방문	’24.10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연구 전문가 간담회	’24.10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	’24.11월	
	장애아가족지원 서비스 제도개선 지침 반영 등을 위한 의견 수렴	’24.11월	
	상이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24.11월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우수 제공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24.12월	
	상이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에 따른 통계 파악 등 모니터링	’2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23년 15.1만명),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자(’23년 5천명), 일상생활 지원 필요 발달장애인(약 26만명) 등

○ **(이해관계집단)**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단체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24.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유관기관 간담회	’24.2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전문가 현장 간담회	’24.4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관련 지자체 간담회	’24.7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간담회	’24.9월
현장방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24.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설명회	’24.5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방문	’24.6월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현장방문	’24.7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관련 현장의견 수렴	’24.11월
회의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협의체 회의 실시	’24.2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정책지원단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ㅇ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지원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반 마련
-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에서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 ㅇ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Ⅰ-4-일반재정⑤)			
① 장애인선택적복지(1535)	일반회계	24,427	29,361
▪ 장애인활동지원(304)	일반회계	19,919	22,846
▪ 장애아동가족지원(309)	일반회계	1,940	2,938
▪ 발달장애인 지원(309)	일반회계	2,568	3,5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만족도	92.8	90.1	91.8	91.6	최근 3년 측정된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만족도의 평균치(91.6)	서비스 이용자 대상 전문기관 설문 실시	사회서비스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6,366	9,211	12,676	11,000	예산서상 대상인원 고려 및 최근 3년 평균치 보다 상향 설정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이용자	4,071	4,290	4,988	5,500	최근 3년간 이용자 연평균 증가율(10.7%)을 고려하여 설정	장애아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기관별 이용실적 집계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Ⅱ-4-⑤, 장애인건강과)

□ 추진배경 (목적)

○ 장애인의 특성상 신체·정신건강 욕구가 높은 반면, 의료이용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위기상황에 취약함

- 이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 인프라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 내실화 필요**

-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의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중앙센터) 장애인 건강사업개발, 통계, 교육과정 등 건강관리 인프라 중심축 기능
* (지역센터)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세부사업 연계·조정·지원, 선도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토대로 대상자별 필요도 평가에 따른 특화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및 사업의 전자적 지원을 통한 사업 효율 제고

* (구성) 사업관리 및 협업·업무지원·장애인 건강통계 플랫폼, 대국민 홍보 포털

(2)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

○ **(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사업 지원*

* (1차년도) 시설·장비비 350백만원, 운영비 37.5백만원 (2차년도) 운영비 150백만원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지정기준, 절차 등) 개정에 따른 지자체 장애친화 산부인과 기준 충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구강검진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 신설

-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시 컨설팅 및 공정관리를 통해 서비스 개시기관 확대*

* **(사업개시)** ('23) 15개소 → ('24) 22개소
(지원확대) 시설·장비비 ('23) 117백만원 → ('24) 167.5백만원,
안전편의관리비 ('23) 50,350원 → ('24) 62,920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중 **구강검진만 수행하는 기관(7개소)에게 적용할 지정 기준(시설·장비)을 신설**, 사업 수행기관의 부담 경감

(3)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 사업 추진

○ **(건강주치의)** 지역사회 장애인이 건강주치의(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를 선택하여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시행('18.5월~)

- 지원대상 및 방문서비스 횟수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4차 시범사업 시행('24.2.28~)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단, 방문횟수 차등 중증 24회, 경증 4회)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18회→24회)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지원 확대

* ('23) 100만원 → ('24) 120만원

(4) 맞춤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활 지원

○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확대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 7개소 운영 중, 2개소 건립 추진 중(충남, 전북)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장애아동에게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순차적 개원('23년~) 및 운영관리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및 운영 실적 평가* 추진

* (평가대상) '23년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기관 / (평가일정) '24.5~6.(예정)

○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장애아동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개선수가를 적용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공급 확대('20.6~)

- 시범사업을 수도권 포함 전국 확대하여 제2기 시범사업 실시

* (제1기) '2010~'24.2 7개 권역 15개소 / (제2기) '24.3.1.~, 15개 권역 39개소 지정·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바우처 지원대상인원(+7천 명) 및 지원예산(+113억 원) 확대

- 장애아동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기준 상향(6세 미만→ 9세 미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24.1.2.개정, '25.1.3.시행 예정)

○ **(발달장애인 의료 지원)** 발달장애인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체계적 의료지원 및 행동 문제 치료*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구축·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의 공격, 자해 등의 행동은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보호자의 스트레스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개입 체계 필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시	2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제2기 시범사업 개시	3월	
	권역재활병원 운영실태 점검	3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개통	3월	
2/4분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 공모	4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평가	6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전담인력 신규 수요조사	6월	
3/4분기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컨설팅	7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재지정 평가 실시	7월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9월	
4/4분기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통합성과대회	10월	
	장애인 구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	10월	
	방문재활 등 근거 마련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	12월	
	발달재활서비스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장애인 건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 인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우수 수행기관 현장방문	2월
간담회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실무자 간담회	3월
간담회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3월
간담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현장의견수렴	4월
간담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	5월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5월
간담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의견수렴	9월
간담회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현장의견수렴	10월
현장방문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현장점검	12월

□ 기대효과

○ 장애인 맞춤형 의료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건관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Ⅰ-3-일반재정)			
① 장애인소득보장(1531)	일반회계	286	359
▪ 장애인의료비 지원(310)		286	359
② 장애인선택적복지(1535)	일반회계	1,324	1,450
▪ 장애아동가족지원(305)		1,272	1,384
▪ 여성장애인지원(308)		8	8
▪ 발달장애인지원(309)		44	58
③ 장애인복지시설지원(1536)	일반회계	2	6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309)		2	6
④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1542)	일반회계	106	102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307)		100	100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311)		6	2
⑤ 장애인의료재활지원(1563)	국민건강증진기금	72	102
▪ 재활병원건립(301)		40	70
▪ 권역재활병원 지원(304)		7	7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309)		25	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등록 기관수	신규	신규	신규	1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정식 개통 및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의 등록 수를 목표치로 설정	시스템 등록 기관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7	4	4	7	'23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누적 110개소를 지정하여, '24년부터 서비스 개시 기관 확대로 목표를 설정	서비스 개시 개소수	서비스 개시 충족에 따른 승인문서 등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비율(평균)	41.9	34.4	47.1	42	'24년 신규 개원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사업 초기 운영 안정화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4년에도 과거 3년 평균 실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함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어린이재활 환자구성비율의 합/기관수 * (만 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 환자 수/전체 전문재활치료 환자 수)*100%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연간 사업실적 보고

성과목표 II-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1) 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도 총괄·조정 기능 강화

- ㅇ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한 제도**를 규정
- ㅇ **범정부 사회보장 의제를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기구**(Coordinator)로서의 **역할 강화**
- ㅇ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보편적 서비스 복지 확충** 등 **제도 내실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등** 복지혁신 추진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한 **중복·누락·편중 없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유도**
- ㅇ 중앙·지자체 상호협의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ㅇ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지자체 현금복지 확산 우려 등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협의·조정제도 내실화**

□ 사회보장제도 평가

- ㅇ 각 부처의 사회보장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ㅇ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보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보장 현황 및 효과성 분석** 실시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관리과제	사회보장제도 총괄 기능 강화	▪ 사회보장 주요정책 수립 및 관리 ▪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활용한 분석 자료 산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만족도
	사회보장제도 평가	▪ 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율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 컨설팅 비율 (%) (공통)	40.7	44.2	46.5	44	2024년 성과계획서(예산)와 공통 지표로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 2024년 성과계획서에는 '20~'22년간 평균 컨설팅 비율('20 44.4%, '21 40.7%, '22 44.2%, 3년 평균 43.1%)을 감안하여 설정	전체 협의요청 건수 중 컨설팅을 통한 재협의 건, 또는 협의요청서를 수정·보완한 건 및 컨설팅 결과 통보 건의 비율	통계결과 보고 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보장 총괄·조정 기능 강화 요구 증가

○ 복지제도 외형적 완비, 복지지출 기준으로 복지국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인구·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담보에 대한 요구 증가**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 **인구·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격차 발**생 등 **미래선제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 기능 강화**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내실화 요구**

○ **지자체 현금복지 확산 우려, 지자체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효과 분석 기전 마련** 등 **협의제도 내실화** 요구

○ **중앙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이행력 강화** 및 **지자체 사업**과 **사후 중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지자체 신설사업 협의** 시 **성과분석계획이 포함**된 충실한 **사업설계를 유도**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신설사업 등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아울러,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 해소를 위한 협의 원칙 마련** 및 협의절차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제도 효율화 노력 요구**

○ **기존의 평가제도**는 **개별 단위사업**(제도)에 대한 분석·평가에 그쳐 **다부처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 필요

* 각 부처에서 정부업무평가(국조실), 재정사업 자율평가(기재부),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 등을 수행 중이나 기관평가 혹은 사업평가 중심 평가수행

○ 국민 복지욕구 충족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해 개별 사업 평가에서 **제도(사업군) 평가로 전환**, **사업단계별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통합적 분석·평가*** 실시

* 대상포괄성, 급여충분성, 대상자 간 형평성, 제도 효율성을 종합평가

- 사회보장제도 **사업군별 심층분석·평가**를 위한 **제도평가 강화** 및 범부처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추진**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Ⅱ-5-①, 사회보장총괄과)

□ 추진배경 (목적)

○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불확실성** 및 **복합성 증가**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 아젠다 발굴** 및 공론화,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필요

○ **사회복지사업 증가** 및 **복지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및 **근거자료 제공** 등 **총괄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제고 필요**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해 **재정지출 산출·추계** 및 관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총괄·통합성 강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4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범부처·지역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 통합성 강화**

- **(심의·조정 기능 내실화)** 범부처 핵심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부처간 협력 사항 발굴**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 도모

- **(현장 소통 강화) 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참여 기회 확대** 등 정책 관련 **의견 수렴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본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에게 필요시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발언 기회 부여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모색**

- 일회성이 아닌 **논의 주제를 지속 발전**시키는 연속 **간담회·포럼**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조정 기제 및 개선방안 모색**

* 사회보장제도 조정 및 평가기제 개선 방안 연구('24, 보사연)

○ **근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통계 생산 및 관리**

-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보장 지출산출 및 재정추계 관리**로,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생산·관리**

❶ **(지출산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통해 **사회보장 수준 파악** 및 **OECD 국가 간 국제비교**

* '20, '21년 확정치 및 '22~'24년 예측치('24.하반기 OECD 제출 예정)

❷ **(재정추계)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표** 및 발표 결과에 따른 재원 분담구조, 국가채무 현황 등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연구**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행관리 추진방향 논의(기획전문위)	'24.1월	
	▪ 사회보장 기본계획 '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 논의(기획전문위)	'24.1월	
	▪ 사회보장제도 조정 및 평가기제 개선방안 연구 추진	'24.2월	
	▪ 제1~4차 사회복지지출(SOCX) 검토 작업반 워크숍 개최	'24.1~3월	
2/4분기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4년 시행계획 수립	'24.5월	
	▪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24.6월	
	▪ 제5~7차 사회복지지출(SOCX) 검토 작업반 워크숍 개최	'24.4~6월	
3/4분기	▪ 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24.9월	
	▪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결과 OECD 제출	'24.9월	
4/4분기	▪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24.11월	
	▪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표	'24.11월	
	▪ 사회보장 전달체계 민관협력 방향 공론화	'24.11월	
	▪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지표 구축 결과보고(기획전문위)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회보장제도 **조정 및 평가 기제 개선연구**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실효적·입체적 방안** 모색

○ 사회보장 **재정·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전문위**를 통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안) 검토** 및 논의

-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및 유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SOCX 산출 기준·방식 등 협의

○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본·실무·전문위 위원의 임기 만료('24.하)에 따라 **위원회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사회복지지출(SOCX) 검토 작업반 워크숍 개최	'24.1~6월
간담회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실무위 위원장 간담회(6회)	'24.2~11월
현장방문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실무위 위원장 현장방문(2회)	'24.2~11월
회의	SOCX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24.6~7월
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의견수렴	'24.9~11월

□ **기대효과**

○ 사회보장 **아젠다의 발굴,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등을 통해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

○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제도간 정합성** 제고

- **통합적·효율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 **사회적 의제 발굴·논의** 및 결과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사회보장 **재정·통계 생산 및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책개선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사업지원(Ⅰ-6-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04)		31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사회보장 주요정책 수립 및 관리	신규	9	33	30	사회보장 주요정책 논의·심의를 위한 사보위 회의 개최 (본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3회, 전문위원회 24회(6개 전문위, 각 4회씩))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개최 횟수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자료 (분기별 집행 실적 자료)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활용한 분석 자료 산출	신규	신규	5	6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산출하여 국제비교, 사업분류 기준 등 세부분석 자료 산출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보험, 공기업, 민간, 조세혜택, 각1건 이상)	SOCX 분석 자료 건수	안건자료 및 재정위원회 결과보고

2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Ⅱ-5-②, 사회보장조정과)

□ 추진배경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13.1.27)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의무화**

○ **중앙·지자체 상호협의**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지자체 현금복지 확산 우려** 등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협의·조정제도 운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보장사업 협의 제도 운영 효율화**

- **사전협의 제도취지** 및 **협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협의제외 대상 사업 개선 및 현실화**
-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확보**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및 배포**

○ **협의지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운영**

- **지역, 분야별 전문가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협의안건의 체계적 검토·분석** 및 **컨설팅 내실화** 도모
- 협의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협의 이행력 제고**

-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 **협의절차 준수 유도**

- 협의제도 지속 안내 및 각종 **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사회보장 사업 협의절차 준수 여부 확인**토록 규정

○ **사회보장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 협의제도 상호이해·소통을 위한 **제도 교육 및 홍보**

- 사회보장사업 기획력 강화 및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을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권역별 방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회보장 협의시스템 관리·운영**

- 사회보장사업 협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 요구**에 맞는 **사회보장 협의시스템의 관리 및 지속적 개선**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개정·시행	'24.1월	
	▪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수도권)	'24.1월	
	▪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충청권)	'24.2월	
	▪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착수보고 ('24년 1차 제도통합 전문위원회 상정·논의)	'24.3월	
	▪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강원권)	'24.3월	
2/4분기	▪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영남권)	'24.4월	
	▪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호남권)	'24.5월	
	▪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제주권)	'24.6월	
3/4분기	▪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중간보고 ('24년 2차 제도통합 전문위원회 상정·논의)	'24.7월	
	▪ 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 보고	'24.9월	
4/4분기	▪ 2025 정부예산(안) 기준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전수자료 마련	'24.11월	
	▪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최종보고 ('24년 3차 제도통합 전문위원회 상정·논의)	'24.12월	
	▪ 2024 사전협의 및 협의 이행 유공자 선발·포상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일반 국민, 사업 급여 및 서비스 수혜자

○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교육・컨설팅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수도권)	’24.1월
교육・컨설팅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충청권)	‘24.2월
교육・컨설팅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강원권)	‘24.3월
위원회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착수보고 (‘24년 1차 제도통합 전문위원회 상정·논의)	‘24.3월
교육・컨설팅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영남권)	’24.4월
교육・컨설팅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호남권)	‘24.5월
교육・컨설팅	사전협의 지침 개정 등 권역별 교육·컨설팅(제주권)	‘24.6월
위원회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중간보고 (‘24년 2차 제도통합 전문위원회 상정·논의)	‘24.7월
위원회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최종보고 (‘24년 3차 제도통합 전문위원회 상정·논의)	‘24.12월

□ 기대효과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설계 단계부터 중복·누락·편중이 없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유도** 기대

○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협의제도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을 통한 협의·조정결과의 수용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사업지원(Ⅰ-6-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04)		31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공통)	40.7	44.2	46.5	44	2024년 성과계획서(예산)과 공통지표로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2024년 성과계획서에는 '20~'22년간 평균 컨설팅 비율('20 44.4%, '21 40.7%, '22 44.2%, 3년 평균 43.1%)을 감안하여 설정	전체 협의요청 건수 중 컨설팅을 통한 재협의 건, 또는 협의요청서를 수정·보완한 건 및 컨설팅 결과 통보 건의 비율	통계결과보고자료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만족도(점)	80	80.5	88	83	최근 3년간('21 80점, '22 80.5점, '23 88점, 3년 평균 83점)의 실적치 추세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권역별 교육·컨설팅 후 사업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결과자료

3 사회보장제도 평가 (Ⅱ-5-③, 사회보장평가과)

□ 추진배경 (목적)

- ㅇ 각 부처의 사회보장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ㅇ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른 **중앙-지자체 사업간 연계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심층평가 추진**
- ㅇ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범부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결합**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범부처 차원 기본 분석틀 구성 및 정착**
- ㅇ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입안자의 사회보장 정책**(수립-운영-평가) **지원 및 핵심통계 생성·관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ㅇ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기여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23년도 시행계획 추진 97개 과제 평가
  -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과제**를 **분석**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홈페이지 공지 및 장관 표창** 등을 통해 **이행**의 **동기부여**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목표 달성 점검·평가**를 통해 미진한 사항 및 보완 필요 사항 **분석**

○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 노력을 알리고 매년 추진상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

② 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 선정**

○ 사회보장제도 중점평가과제 **정책효과 진단·평가**

- **평가대상** 사업군 또는 개별사업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효과성·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

* 지원방식의 적절성, 사업대상자의 포괄성, 급여액의 적정성, 정책목표 대비 효과성 등

-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필요시 FGI 및 현장조사 등 병행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장제도 성과제고**를 위한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제도평가 결과 통보 후 **정책개선 유도**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후속 관리***

*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안) 사보위 보고, 평가대상 부처(지자체) 제도개선(안) 통보, 관계부처(지자체)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③ 범부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결합

○ 통계청 인구·가구등록부를 기반으로 **표본 구축**

-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구 표본 설계 및 추출('24.1월)

*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지역 및 소규모 집단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표본규모 유지('22년 19.4%→ '23년 19.9% → '24년 19.8%)

○ 가명정보* 형태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 및 연계·구축**

*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제도별·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회보장제도 단위인 개인과 가구를 기초로 연계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24.3~10월, 31개 정보보유 기관의 800여개 항목 연계 추진)

* 소득·재산(과세자료, 주택임대차계약), 사회보험(4대보험 및 특수직역연금 등),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서비스(돌봄·주거·고용 등)

- 구축·결합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DB의 품질진단과 관리 목적의 기술적 분석 연구 시행('24.3~12월)

④ 행정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책 분석 및 공동활용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수집·구축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데이터 **활용 환경 지원**(상시)

○ 내·외부 **공동 활용** 및 **분석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범부처 공유 기반 확대(상시)

○ 정책분석 수요(범부처, 지자체, 정보보유기관, 국책연구기관, 학회 등) 중심의 **데이터 소개** 및 **분석 활용사례 공유**('24.3월)

○ 사회보장**통계 활용강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통계 지표(안) 마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의 통계지표 구축 및 e-book 제공

* 범부처에서 생성되는 14개 분야, 51개 세부영역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한 통계연보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본 구축	'24.1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소개 및 활용 사례 공유(지자체, 경인사연)	'24.2월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착수보고	'24.2월	
	▪ '23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보고	'24.2월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24.3월	
	▪ '23년 내·외부 공동 활용 결과 보고	'24.3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소개 및 활용 사례 공유(복지부, 지자체)	'24.3월	
2/4분기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중간보고	'24.4월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과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24.4월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24.4월	
	▪ '24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연구계획 수립	'24.4월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대상기관 현장방문	'24.5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자료 연계추진	'24.5월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24.6월	
3/4분기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통계집 발간	'24.7월	
	▪ '24년 내·외부 공동활용 결과 보고	'24.9월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최종보고	'24.9월	
4/4분기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대상기관 현장방문	'24.10월	
	▪ '23년 사회보장제도 제도개선(안) 추진상황 모니터링	'24.10월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과제 수요조사 실시	'24.11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적정성 검토	'24.11월	
	▪ '24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최종보고	'24.12월	
	▪ '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 마련 및 통보	'24.12월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통계·지표(안) 마련	'24.12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회보장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사업 수행주체**(중앙 및 지자체 등) **현장방문** 등 추진

- 각 전달체계 담당자 및 이행당사자 등 대상 FGI(초점집단면접)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 정책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평가결과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안) 이행관리

- 평가결과 온라인 공개, 보도자료 배포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소개 및 활용 사례 공유(지자체, 경인사연)	’24.2월
간담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소개 및 활용 사례 공유(보건복지부, 지자체)	’24.3월
현장방문	사회보장제도 평가대상 지자체(사업수행주체) 현장방문	’24.5월/8월
정책토론회	사회보장제도 평가 정책토론회	’24.12월
회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분기별 1회

□ 기대효과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한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을 통해 **시행계획의 실행력 제고**

○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추진**을 통해 **중앙-지자체 복지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통합관리 강화**

○ **범정부 차원 기본 정책 분석틀 정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거기반 체계 구축**

○ 다양한 **내·외부 공동 활용**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운영·평가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사업지원(Ⅰ-6-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04)		31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율(%) (* 사회보장제도 사업군별 시범평가 추진율(%))	100	75	100	85	○ 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 현황(추진율) -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른 중앙-지자체 통합관리(국정과제 42-2) 계획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 - 목표치 : ('23) 시범평가 추진율 80% → ('24) 제도평가 추진율 85% *지자체 평가확대를 반영하여 평가추진율을 지표로 설정 후 목표치 상향 조정	(실제 제도평가 추진건수 /제도평가 추진계획 건수) * 100 - 추진건수 : 정책보고서, 통계분석, 보고자료 등의 합계건수 - 추진계획건수 : 사회보장 제도평가계획건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관련 연구보고서,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정책현황 자료, 관계 부처(부서)별 검토의견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건)	6	7	18	15	○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된 현황 - 본사업 3년차의 진입단계 사업임을 감안하여 3개년 실적치 평균값(10건)에서 15% 상향시킨 데이터 활용 15건을 '24년도 목표치로 설정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된 현황, 활용 건수 (정책보고서, 정책TF 제공, 통계분석,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보고자료, 내부이용 등의 합계 건수)	관련 공문, 연구보고서, 정책근거자료, 보도자료 등

전략목표 III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기 본 방 향

◇ 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인식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인식전환 추진

○ 전국민 대상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지원

◇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아동보호 시스템의 체계화

○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절차 전반의 공적 책임성 강화, 입양인식 개선 및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 복지증진

○ 아동양육비용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

◇ 어르신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취약노인에게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강화

○ 노년기 사회참여 강화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 강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아이와 부모가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 추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안전** 등 보육 서비스 질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성과평가,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표준모델 공유화·다변화, 품질인증 고도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통계·법체계 정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스타트업 지원, 규제발굴 워킹그룹 운영 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 청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의 가사·간병·병원동행·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공급
- 공급취약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스마트 사회서비스 R&D 투자확대
- 시·도 사업 성과평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품질 향상 및 일자리 확충, 중앙-지방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및 협력 강화, 부정수급 관리 등

○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의 운영 적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공공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 자원 육성·지원 및 민간의 사회공헌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근무자 등 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및 제공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수급관리 및 역량 강화 청사진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 총괄 등 일자리 TF 참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9	19	6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①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
	① [민생]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효과성
	②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①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②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
	③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①자기돌봄비 수급 가족돌봄청년 달성률
		②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 인원 달성률
		③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참여·소통 수
	④ 임신·출산 건강지원	①난임·우울증상담 센터 대상자 만족도
		②미숙아 NICU 퇴원후 생존율
		③임신·출산 종합 상담이용자 만족도
		④첫만남이용권 지급률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①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	①입양체계 개편 세부 시행방안 마련
		②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
		③아동정책기본계획(안) 마련
		④「위기임신보호 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②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①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율
		②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③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 기능 향상 기여도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①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횟수
		②위기발굴아동 서비스 연계율
		③학대피해아동별 서비스 제공 실적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②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③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④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⑤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① 취약 노인 돌봄 강화	①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②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③노인학대 사후관리 횟수
	②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①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②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률
		③노인자원봉사 참여자 수
		④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
		⑤공설 장사시설 설치 예산 실집행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①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②장기요양기관 운영 컨설팅 실시기관 수
		③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기관 수
		④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수급자
		⑤중증수급자(1·2등급) 월 한도액 인상
	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①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개소 수
		②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③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실적
		④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도
	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①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②치매파트너즈/ 치매 파트너즈 플러스 누적 모집 인원
		③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①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①부모급여 지급률
		②보육료 지원 서비스 만족도
		③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
		④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비율
		⑤가정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⑥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①어린이집 평가 유지 비율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②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③보육교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①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①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 성과평가 실시
		②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 누적 모집 공유 기관 수
		③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
		④신규펀드 조성 시 펀드 결성 목표액 달성률
		⑤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한 횟수
		⑥개선한 규제과제 수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내실화	①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②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③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노력도
	③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①전년도 평가 미흡 시설의 맞춤형 컨설팅 참여율
		②자원봉사 등 주요 나눔활동의 경제적 가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수
		④사회복무요원 심화 직무교육 현업적용도
	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만족도
		②사회서비스일자리 고도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전략목표III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1)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확대·구축**

- ㅇ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
- ㅇ「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른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도모**

□ 고령화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ㅇ 요양 전 단계 예방적 돌봄 확대, 촘촘한 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돌봄 강화**
- ㅇ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강화 및 현 세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대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 ㅇ **고령화·1인가구화 지속**에 따른 **간병**,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공급**
- ㅇ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점)	-	70.8	74.6	73.3	77.4	89.7	목표치=전년도 실적치 대비 3% 증가 *최근 3년('20~'23)간 연평균 증가율 3% 감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 점수 *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효과 조사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합계출산율)** ’23년 **0.72명,** ’18년 이후 **극초저출산**(1명 미만) **지속**

* (합계출산율, 명) ’18년0.98 → ’20년0.84 → ’22년0.78 → **’23년 0.72**

○ **(출생아수)** ’23년 **23.0만명, ’15년 이후** 매년 평균 **2.7만명 감소 추세**

* (’15) 43.8만명 → (’17) 35.8만명 → (’19) 30.3명 → (’21) 26.1만명 → (’22) 24.9만명 → **(’23) 23.0만명**

○ **(사회적 영향)** ▲생산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로 필수 인프라 붕괴,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저하 등 **국가 존립 위험**

- 국내외 언론은 **저출산 심각성과 특단대책 필요성** 연일 보도

□ 갈등관리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공유 및 과제 발굴 협조

○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4) 기타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021~2025)

성과목표Ⅲ-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1) 주요 내용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Society of all ages) 구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저출산 완화 및 고령화 대응 강화**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핵심과제 발굴·추진

※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인식의 총체적 결과이자 개인의 **삶의 질 결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 방안**

- 이에 정책비용 대비 성과 관점의 접근 틀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인식개선**을 포함한 **전 사회적 노력 제고**

□ 생애 초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메시지 확산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가치관 형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인구교육 활성화 추진**

○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등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
관리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 자기돌봄비 수급 가족돌봄청년 달성률 · 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 인원 달성률 ·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참여·소통 수
	임신·출산 건강 지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 임신·출산 종합 상담이용자 만족도 ·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점)	74.6	73.3	77.4	78.9	목표치=전년도 실적치 대비 5% 증가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증가율 4.9% 감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 점수 *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효과 조사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합계출산율)** '23년 **0.72명, '18년 이후 극초저출산**(1명 미만) **지속**

* (합계출산율, 명) '18년0.98 → '20년0.84 → '22년0.78 → **'23년 0.72**

○ **(출생아수)** '23년 **23.0만명, '15년 이후** 매년 평균 **2.7만명 감소 추세**

* ('15) 43.8만명 → ('17) 35.8만명 → ('19) 30.3명 → ('21) 26.1만명 → ('22) 24.9만명 → **('23) 23.0만명**

○ **(사회적 영향)** ▲생산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로 필수 인프라 붕괴,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저하 등 **국가 존립 위험**

- 국내외 언론은 **저출산 심각성과 특단대책 필요성** 연일 보도

□ 갈등관리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공유 및 과제 발굴 협조

○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4) 기타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021~2024)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Ⅲ-1-①, 인구정책총괄과)

□ 추진배경 (목적)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인식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인식전환 추진**

* (결혼 긍정 청년 비중) '12. 56.5% → '22. 36.4%(△20.1%p),
결혼 이후 자녀 무계획 비중 : 53.5% ※ [출처] 2023 청년 결혼·출산 인식발표, 통계청

** 국민은 미디어의 결혼·출산 영향(81%), 인식 제고 캠페인 필요성(71%) 응답
※ [출처] 2023 저출산 인식조사, 저고위·문체부

- **종교단체·기업·시민단체·언론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저출산 극복** 위한 인식 변화 추진토록 협력 사업·광고상 신설 등 검토

○ 전국민 대상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지원**

- **❶지역협업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❷인구교육을 이끄는 전문인력 집중 양성, ❸인구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근거 >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정부 주요 정책과제 관리**(상시)

- 국정과제* 및 매년 선정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부처평가)에 반영되는 **주요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 점검 관리**(~'24.12)

* (46.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도입, 난임지원·영아기 건강관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지원 강화 등

** ('23년 "양육노후 걱정없는 지원체계 구축") ▲출산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인권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환경 조성

○ **(인구포럼)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 개최**(7월)

- 한·중·일 정부 및 인구정책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각국의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24.12)

※ 제1차 포럼('10년, 중국) 이후 한·중·일이 순차적 개최 추진

○ **(저출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일가정양립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 및 **그간 정책효과 분석**과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출산율 반전 추진 방향 보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를 통한 일가정양립 및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 **발표**('24.上)

- 저출산 정책 대책 발굴 및 효과성 관련 연구 계획(~'23.3)

○ **(캠페인 기획) 명확한 홍보 타깃**(출산x 기혼자, 결혼x 2030) 대상 **캠페인 전략 기획** 및 **메인 영상 제작**(4~6월)

- **메시지, 집중 홍보시기, 프로그램 성격** 등을 고려한 **연간 캠페인 운영 전략** 마련

○ **(SNS 홍보) 2030 친화적인 SNS 채널**(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 **운영** 위한 **채널 리뉴얼** 및 SNS 통한 **정책 정보 제공**(4월~)

○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남성육아참여모델 **'100인의 아빠단' 14기 모집·운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개방형**으로 **개편 등 외부 홍보 강화**

- **가족참여 의견청취 프로그램**(前 청출어람단) 기획, 운영 검토

○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홍보**(5~7월)

- 인구의 날(7.11) 인지도 제고 위해 사전·당일·사후 홍보실시,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 기념식·부대행사 개최**

※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업을 통해 '인구주간' 운영 등 국민적 관심 유도

○ **지역의 특성**과 **국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실질적 인구교육** 지원

-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총 9종), **연구·선도학교 선정**(총 12개교), 대학 온라인강좌 개발·보급(1개강좌) 등 **인구교육 기회 확대**

- 학교인구교육 핵심 교원(100명), **지자체 선도 전문인력**(100명)을 집중 양성하고,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인력 풀 관리,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등 인력 관리 체계화('24.)

- **중·고등학교용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급별 표준영상교육 콘텐츠 개발·지원**(4종)

* (중) 인구교육 분야 인정교과서 1종 개발('24.말) 및 고시외과목으로 운영 지원('25.3.)

* (고) 기존 '인구와 미래' 교과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정·보완('24.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개선 홍보계획 수립	'24.3월	
	'24년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 연간 운영계획 수립	'24.2월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계획 수립	'24.3월	
	'24년 인구교육추진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24.3월	
2/4분기	'24년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 사업 홍보 용역 업체 선정	'24.4월	
	민간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보조사업자 공모	'24.4월	
	"100인의 아빠단" 14기 모집(초보아빠단·멘토단) 및 운영	'24.4~12월	
	일가정양립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 대응방안 발표	'24.上	
3/4분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7.11)	'24.7월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 개최	'24.7월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 중간보고회	'24.8월	
4/4분기	'24년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개선사업 자체평가 및 '25년 홍보 전략 수립	'24.11~12월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24.12월	
	국정과제 연간 추진실적 점검 및 주요정책과제 실적보고서 작성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연구·선도학교, 지역특색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원

○ 인구정책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국내 최고 권위 광고상인 대한민국광고대상의 '공익성' 기준에 저출산 인식개선 추가토록 협의	'24.4월
현장간담회	인구교육 중점지역 관계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간담회	'24.5, 9월
현장간담회	연구·선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24.7월
행사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을 위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4.7.11
현장간담회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간담회	연중

□ 기대효과

○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

○ 全 사회적 저출산 대응 동참·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제도·인프라 도입 기반 마련**

○ 타깃 맞춤형 홍보 강화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통한 인구문제 관련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Ⅳ-3-일반재정③)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2537)	일반	41	51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300)		12	8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301)		29	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효과성(점)	67.0	64.1	64.9	65.5	목표치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대비 1% 증가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증가율 △1.5% 감안	홍보 캠페인 접촉 후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와 '홍보 캠페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 점수 *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효과 조사 결과 보고서

2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Ⅲ-1-②, 인구정책총괄과)

□ 추진배경 (목적)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여성 경력단절 현상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30~40대가 가장 낮음('22.4., 통계청)

** 경력단절 극복 위해 영유아 중심 돌봄정책에서 탈피, 초등돌봄체계 개선 필요(KDI, '21.6.)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휴식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프라 확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등을 포함,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지속 확충**('24년 129개소 신규 설치 추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지속 추진('24년 30개소)
-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서비스 질 제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한도(아동 1인당 월 10만원) 폐지

- 외부 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현장학습 포함)운영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별 추가 이용료 수납 허용
- 센터별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하여 돌봄 이용자(아동·학부모)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

○ **(인력증원)** 돌봄수요 지원을 위해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별 1명씩 총 3,001명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단가** 전년 대비 **2.5% 인상**, 지속적 처우개선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마을돌봄시설 사업안내 지침 개정(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한도 폐지 포함)	'24.2월	
	마을돌봄시설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 지원	'24.1~2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컨설팅 지원 실시	계속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속	
2/4분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교육 실시	'24.1~11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집행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24.6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채용 현황 조사	'24.6월	
3/4분기	다함께돌봄센터 대상 설치·운영 컨설팅 실시	'24.5~11월	
	마을돌봄시설 돌봄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안 마련	'24.9월	
	마을돌봄사업 공모전 개최	'24.8~10월	
4/4분기	마을돌봄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4.7~11월	
	마을돌봄시설 시설평가 실시	'24.5~11월	
	2025년 마을돌봄시설 사업안내(안) 마련	'24.12월	
	마을돌봄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마을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방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지속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마을돌봄시설 운영 및 안전 점검,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시설 현장방문 실시	반기 1회
간담회	마을돌봄시설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반기 1회
회의	2025년 마을돌봄시설 사업안내(안) 마련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지침 개정사항 검토	하반기 1회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를 통해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발생 방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가정 내 양육부담 경감으로 경력단절·출산포기 방지, 돌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복원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Ⅳ-1-일반재정)			
① 방과후 돌봄지원(1338)	지특회계	420	339
	(지원계정)	(420)	(339)
▪ 지역아동센터 지원(300)		397	339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314)		23	-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Ⅳ-1-일반재정)			
① 방과후 돌봄지원(1338)	지특회계	34	42
	(제주계정)	(34)	(42)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300)		30	35
▪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제주)(314)		4	7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Ⅳ-1-일반재정)			
① 방과후 돌봄지원(1338)	지특회계	2,402	2,702
	(자율계정)	(2,402)	(2,702)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300)		1,856	2,137
▪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자율)(314)		546	565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Ⅳ-1-일반재정)			
① 방과후 돌봄지원(1338)	지특회계	10	12
	(세종계정)	(10)	(12)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300)		6	7
▪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세종)(314)		4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공통)	91.6	93	92.6	92.4	최근 3년간 실적 고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91.8	91.2	90.8	91.3	최근 3년간 실적 고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5점 척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이용아동 만족도 실적 보고 자료

3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Ⅲ-1-③, 청년정책팀)

□ 추진배경 (목적)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

- **(가족돌봄청년, 약 10만명 이상**('22년 실태조사))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부양 부담으로 자립이 지연되고 빈곤의 대물림 악순환

  *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등 가족돌봄청년 관련 언론보도 및 문제 지속 제기 (22세 청년 父 간병 중 생활고로 방치·사망, "존속살해 혐의 징역 4년 선고")

  * 일반 청년 대비 우울감 7배 이상, 미래계획 어려움 약 40%('22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 **(고립은둔청년, 최대 54만명**('23.5월, 국조실-통계청 조사))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취업 경쟁 심화 등으로 '쉬었음 청년' 증가*

  *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 ('16) 24.9만 → ('22) 36만 → ('23) 40.2만명(통계청)

○ **조기 발굴 및 개입이 중요하나, 기존의 정책 틀로는 한계**

- **(공통) 복지대상자로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부재**하여 발굴·지원에 어려움이 존재

- **(가족돌봄청년) 청년의 근로 능력**과 가구 보유 주택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저소득층 지원체계**로는 발굴에 **한계**

- **(고립은둔청년)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특성**으로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할 **전담 기관 부족**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

  * '23 보사연 심층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80% 이상 탈고립 원한다고 응답, 67.2%는 민간기관 문의 등 시도했으나 실패 (정보부재(28.5%), 비용부담(11.9%), 지원기관 부재(10.5%) 순)

○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 국정과제 91-3 :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실태파악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추진 근거 : 청년기본법 제 21조>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통) 신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 추진('24.신규)

* 청년복지 5대과제('23.9.19) 당정협의 및 발표 → '24년 예산반영

○ **취약청년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청년미래센터, 시·도단위)를 **신설**, 전담 인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 4개 시·도 선정, 2년간('24~'25) 선도모델 개발 후 전국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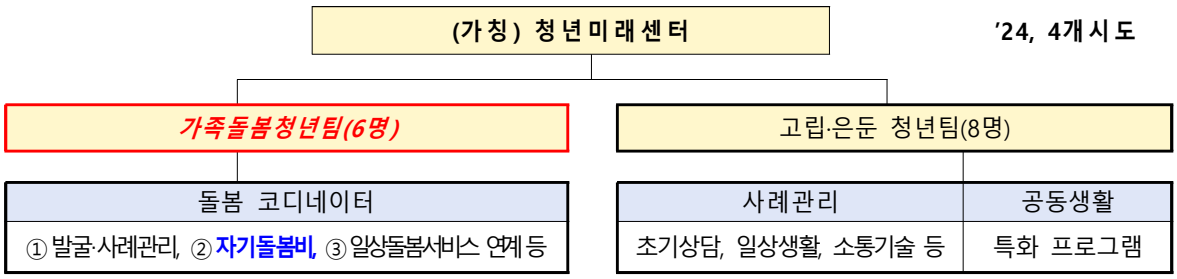

* 행정지원으로 센터별 청년인턴 6명 추가 파견

② (가족돌봄청년) 2,400명 발굴, 960명 자기돌봄비 지급

○ **(발굴)** (가칭)**청년미래센터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병원 등과 협업하여 **원스톱 연락체계 구축** 및 가족돌봄청년 **발굴**

* 주 발굴 대상 : 부모님의 갑작스런 수술, 건강악화 등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청(소)년

○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여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조성**

○ **(사례관리)** (가칭)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청년 및 돌봄 필요 가족 대상 **밀착 사례관리 제공**(정기면담, 긴급상황 현장 출동, 기존 자원 연계* 등)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③ (고립은둔청년) 960명 지원('24.12.13 대책발표)

○ **(발굴)** 고립·은둔청년 **자가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한 **웹페이지 배너 신설**, 비대면 상시 발굴체계 마련

- **(우선 지원)** ’23.12.13 대책 발표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대상자 명단 지자체에 순차 안내(1,903명 중 4개지역 소재)

○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개별 사례별 유형을 분류**하여(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등) 전담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기반마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민간 종사자 정보시스템 활용 권한 지원** 등

④ **2030 자문단**(20명) **운영 및 청년인턴**(155명) **관리**

○ **(2030 자문단)** 정기회의·분과별(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회의 추진, 수시 정책 자문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마련

- 분과별 연간 브랜드 과제 선정, 논의 및 주요 정책 모니터링 실시 지원 (분기별 소관부서와 정기미팅 및 현장방문 추진)

○ **(청년인턴)** 부서 배치계획 수립, 정책 참여 등 활동 지원 및 관리

- 청년인턴 대상 업무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1)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기돌봄비 관리방안 및 공모 계획 수립	‘24.2월	
	시범사업 사업안내서 마련 및 공모(2.21~3.8)	‘24.3월	
2/4분기	「청년복지 사업 기반 구축 및 성과 평가 기초연구」 착수 - 취약청년 지원 법적 근거마련 - 시범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 고립은둔 자가진단 척도 개발	‘24.4월	
	시범사업 수행지역 선정	‘24.5월	
	자기돌봄비 지급관리 관련 우리은행과 MOU 체결	‘24.5월	
	시범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배포	‘24.6월	
3/4분기	시범사업 실시 - 도움 요청 고립·은둔 청년, 지자체 연계 등 우선 지원 - 시범사업 신청 접수 임시창구 개설	‘24.7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24.8월	
	신취약청년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보수교육 실시	‘24.9월	
4/4분기	청년미래센터 현장 방문 및 사업 모니터링 실시	‘24.12월	

2) 2030 자문단 운영 및 청년인턴 관리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기 신규 자문단원 선발 및 발대식	'24.2월	*부내 수요에 따라 자문단 간담회 및 토크콘서트 등 수시 개최
	자문단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정	'24.2월	
	자문단 분과별 연간 브랜드 과제 선정	'24.3월	
2/4분기	자문단 분기별 소관부서와 정기미팅 및 현장방문 추진 청년인턴 맞춤형 업무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24.6월	
3/4분기	분기별 소관부서와 정기미팅 및 현장방문 추진	'24.9월	
4/4분기	분기별 소관부서와 정기미팅 및 현장방문 추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 공청회 등 지속 추진**

- **(공모 준비)** 천안 청년센터 현장 방문(1.11), 지자체 간담회(2.27) 실시
- **(시스템)** 자기돌봄비 지급 관리관련 우리카드社 회의('23.12, 2.28) 진행,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배너 신설을 위한 시스템 회의 추진
- **(인력 교육)**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간담회 추진
- **(국회 공청회)** 김예지 의원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참석 및 국회 상임위 의원실 취약청년 법 필요성 설명(2.14)

○ (가칭)**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 애로사항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간담회	(공모 준비) 천안 청년센터 현장방문, 지자체 간담회 실시	1/4분기
회의	(시스템)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배너 신설을 위한 시스템 회의	2/4분기
간담회	(인력 교육)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간담회 추진	3/4분기
현장방문	(현장방문) 청년미래센터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 애로사항 청취	4/4분기

□ 기대효과

○ **신취약청년 대상 원스톱 전담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존 저소득층 중심 체계 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정한 출발의 기회 제공**

○ 발굴된 **신취약청년**(가족돌봄 2,400명, 고립은둔 960명)의 **자립, 탈고립**

* 고립은둔 자가진단 척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모형 개발 예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Ⅳ-3-일반재정③)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2537)	일반회계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303)		- (97)	37 (19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자기돌봄비 수급 가족 돌봄청년 달성률(%) (공통)				80%	자기돌봄비 목표 인원에, 소득재산 기준(중위 100% 이하, 78% 수준) 감안하여 산출	자기돌봄비 수급 인원 / 자기돌봄비 신규 목표인원 (960명)	지방자치단체 취합 통계
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 인원 달성률(%) (공통)				80%	고립·은둔 청년 중 탈 고립·은둔을 원하는 비율이 약 80.8%('23년 실태조사 결과)임을 고려하여 80% 수준으로 목표치 산출	고립은둔 발굴·지원 인원 / 고립은둔 발굴·지원 신규 목표 인원((320명)	지방자치단체 취합 통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참여·소통 수(건)			35	30	'23년 실적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전체회의, 정책 간담회 행사 참여, 정책 자문·심사, 언론, 홍보 등 참여 실적 산출	부내 실적 취합

④ 임신·출산 건강지원(Ⅲ-1-④, 출산정책과)

□ 추진배경(목적)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가임력 저하, 고령출산, 난임 및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 **발생률** 등 지속 증가

* (산모연령) 첫째아 출산 ('13) 31.3세 → ('22) 32.6세
*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13) 20.2 → ('16) 26.4 → ('18) 31.8 → ('20) 33.8 → ('21) 35.0 → ('22) 35.7
* (난임 진단자) ('17) 21만명 → ('19) 22.8만명 → ('21) 24.8만명 (건보공단)
*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 ('14) 5.7% → ('18) 6.2% → ('22) 7.8% (19,213명)
  (출생아 중 조산아 비율) ('14) 6.7% → ('18) 7.7% → ('22) 9.8% (24,273명)

- 임신·출산 관련 **여성 및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산전·산후 우울 등 **정신건강 지원** 필요

○ **선제적·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산전·산후 체계적 관리**를 통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 대상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및 **양육 역량 강화**

○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체계 마련으로 아동의 생명·인권보호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환경 조성 지원**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복지부-광역시·도 협의***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24.1월~)

*** (1차)'23.5.19, 2차'23.6.2, 3차'23.12.21)**

**** '23.7월 9개 광역시·도 旣폐지(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24.1월 8개 광역시·도 폐지(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광역시·도와 협의(1월) 및 사회보장협의 완료(1월),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24.2월~)

현행				개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 **(난임상담 심리·정서 지원 강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중앙 1, 권역 7개소)*를 통해 **상담**(유선·대면·방문·온라인) 및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 '24. 3분기 중 신규 권역 상담센터 2개소 설치·운영 예정(중앙 1, 권역 9개소)

- **(난임시술 질 관리 강화) 수도권·권역별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협회 대상, 제3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 설명회**('23.4~5월)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24.4월)

○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및 정보제공**

- **(산전·산후 건강관리)**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신·출산·육아 종합 정보 제공, 임신·출산모바일앱 아이맘중 고도화

- **(생애초기 건강관리)** 보건소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도입·확대**('23. 59개소 → '24. 70개소)

○ **임신·출산 의료비 및 양육부담 완화**

- **(가임력 검사비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 희망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女 13만원, 男 5만원) 지원

  * 女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男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첫만남이용권 지원)** ①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②**첫만남이용권 이용기한 연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공**

  * '24년 1.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과 이용기한 연장(1년 → 2년)

- **(청소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 산전·후 관리가 미흡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필수품 지원 단가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액 인상 : 기저귀 월 8→ 9만원, 조제분유 월 10→11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보편적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대상 입원치료비 지원

ㅇ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 체계 마련**

- **(출생통보제 도입)** 영아유기, 출생미등록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 시행('24.7.19~)

ㅇ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경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
  (지원기준)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진단·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 및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 인정

- **(미숙아 지원강화)** 미숙아 NICU 퇴원 후에도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성장발달 상황에 대한 상담·검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
- **(선천성 난청 지원 강화)** '24년부터 난청검사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보청기 지원을 만 5세까지 확대하고, 일측성 난청도 지원
- **(모유수유 친화적 환경조성)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 **모유수유 담당자**(보건소, 산후조리원 등) 교육 등

ㅇ **안전한 산후조리환경 조성**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교육)**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대상 감염·안전관리 교육실시 및 그 밖의 인력(영양사, 미화원 등) 대상 교육 관리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분야**의 효과적인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아과·산부인과 임상경력 간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후조리 정책지원)** 산후조리 분야 정책연구를 통해 믿고 찾을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 조성

ㅇ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강화**

- **(종합상담 제공)** 임신갈등 상황에 처한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의료·건강정보 제공, 사회복지자원 연계 등 인구협회 등을 통한 종합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확충)** 임신·출산 관련 전문가풀(Pool) 구성하여 온라인 상담 체계 구축 등 건강 정보 및 사회적 상담 확충
- **(전화 상담 강화) 위기갈등 상황**에서의 **임신·출산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복지 정보** 안내, **정서적 지원** 및 **심리상담 제공**
- **(성·피임 교육 강화)**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피임 교육 강화, 상담 절차 안내 자료 배포** 등 병행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첫만남이용권 상반기 예산 지자체 교부	'24.1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24.1월	
	난임시술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시술횟수 확대	'24.2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선정 공모 추진	'24.1~3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24.1~3월	
	고위험임산부·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사업홍보	'24.1~12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추진	'24.1~12월	
	2024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24.3월	
	성·생식건강증진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24.2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24.2월	
	'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신규보건소 공모 및 선정	'24.2~3월	
	출생통보제 시행 관련, 의료기관 및 상용SW업체 대상 제도 등 설명회 실시	'24.2~3월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교육(1차)	'24.2월	
	모유수유 담당자 교육 실시	'24.3~12월	
	'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지원단 선정 공모 추진	'24.2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지자체 교부	'24.3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	'24.3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24.3~4월	
	2025년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대상 및 지원횟수 확대 방안 논의	'24.3~4월	
2/4분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4.1.~)	'24.4월	
	출생통보제 시행 대비, 출생통보시스템 시범 운영	'24.5월	
	2024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행	'24.5~6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시행	'24.4~5월	
	제3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 설명회	'24.4~5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운영위원회 개최 및 지원 개선방안 등 협의	'24.4~12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관련 간담회 추진	'24.5~6월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교육(2,3차)	'24.4,6월	
	수유시설 실태조사 계획 및 실시	'24.6~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출생통보제 시행(7.19~)	’24.7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e보건소 신청 시스템 구축	‘24.7월	
	’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신규 선정 보건소 사업 인력 교육 실시	‘24.7월	
	첫만남이용권 하반기 예산 지자체 교부	‘24.7~9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 실적 취합	’24.7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24.9월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교육(4차)	‘24.9월	
	PKU 환아 가족캠프 개최	‘24.7월	
4/4분기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교육(5,6차)	‘24.10, 11월	
	2024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행	‘24.10~12월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24.10월	
	모자보건사업 유공 표창	’24.10~11월	
	2025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관련 시도설명회 추진	’24.10~11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24.11월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개정 의견 조사 추진	’24.11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 및 만족도 조사 분석	’24.12월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24.12월	
	’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회	‘24.12월	
	모자보건사업 등 지침 개정	‘24.12월	
	’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실적 통계 및 대상자 만족도 등 결과보고회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출생통보제의 원활한 시행(’24.7.19)을 위해 출생통보시스템 개발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용SW업체 대상 설명회 실시(’24.2~3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및 예방적 성·생식건강증진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난임부부 간담회	‘24.2월
	난임시술 전문가 간담회	‘24.2월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24.8월
	산후조리원 컨설팅 참여기관 사후간담회	’24.11월
설명회	의료기관 및 상용SW업체 대상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설명회 개최	’24.2~3월
	제3차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계획 설명회	’24.4~5월 ’24.11~12월
현장방문	난임 시술 의료기관 등 현장방문	’24.연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운영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현장방문	’24.연중

□ 기대효과

○ 첫만남 이용권,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청소년 산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에 의료비 지원 등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용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조성 등을 통한 **임신·출산 건강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기반 확대

○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시술 횟수 확대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지자체 시술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난임부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체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Ⅰ-1-일반재정②)			
① 모자보건사업(2535)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302)		134	245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307)		65	78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저출산대응인구정책(2533)	일반회계		
▪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301)		4	2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305)		382	443
▪ 첫만남이용권 지원(306)		3,194	3,804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운영 (303)			
- (내역)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94.0	94.7	96.8	95.0	최근 3개년('21~'23)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만족도 평균값(95.1점) 및 '24.3분기 2개소 신규 개소로, 센터별 운영 역량 차이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만족률 = 만족도 평가점수 / 만족도 총점(20점) × 100	센터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신규)	88.6	89.9	88.2	최근 2년간 실적치('22~'23)와 '23년 목표치(86.0%)의 평균값(88.17%)으로 설정	KNN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2024.12월 발행 국립보건연구원 「KNN 연차보고서」 실적 기준
임신·출산 종합상담이용자 만족도	84.6	85.2	85.8	85.2	이용자 만족도의 3년치 평균과 질적 조사인점 감안하여 85.2로 목표치 설정	만족도 설문 조사(5점척도) 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사업 보고 자료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단위: %)	-	95.0	95.5	95.0	연말 신청자는 지급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전년과 같이 '24년 목표 지급률 95%로 설정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 '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수 / '24년 출생아수(연도말 기준)×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서 자료 추출

성과목표 III-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1) 주요 내용

□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 ㅇ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시행)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아동의 알 권리 보장
- ㅇ 아동정책 비전 제시 및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적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수립
-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ㅇ 국제 기준에 맞게 입양아동 보호 등 입양 관련 핵심 절차를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입양체계를 개편('25.7월 시행)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입양인의 권익·복지 증진
- ㅇ 아동양육비용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
- ㅇ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한 아동 인권 증진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가정형 보호 강화,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 ㅇ 자립 기반이 약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소득·주거·취업·사례관리 등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 ㅇ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소규모 아동그룹홈 등 지원체계 강화
- ㅇ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보호아동 대상으로 보호아동 치료재활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ㅇ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양육 환경과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 실종 발생 예방 홍보를 통한 아동실종 예방 인식개선, 장기 실종 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아동 찾기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관리과제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 입양체계 개편 세부시행방안 마련 • 사례결정위원회 개최횟수 •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마련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율 •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 기능향상 기여도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횟수 • 위기발굴아동 서비스 연계율 • 학대피해아동별 서비스 제공 실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89.6	89.1	89.6	90	최근 3년('21~'23) 실적 평균 점수(89.5)와 직전년도('23) 점수보다 상향된 점수로 목표 설정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설문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기관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24.7.19.) 대비 미혼모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 진행

- 보호출산제 제정 관련 국회토론회, 심포지엄 진행 등('23년)

○ 입양체계 개편시까지 입양기관의 역할 축소에 따른 추진 동력 약화로 입양절차 지연 우려,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편방안 마련 필요

○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특수욕구아동(장애, ADHD, 경계선지능 등)의 증가*로 시설·가정위탁 등의 보호체계 기능 다변화·특화 필요

* 2016년에 2.8%였던 장애아동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에는 4.8%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23년)

- 시설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특수욕구아동 양육코칭 시범사업 등에서 충분한 현장(위탁부모, 종사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설계 및 이행

** 한국아동복지협회 종사자/원장 워크샵, 아동권리보장원 정책참여단(부모, 아동, 자립준비청년) 운영 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Ⅲ-2-①, 아동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시행)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아동의 알 권리 보장

* 법적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 '24.7.19.)

○ 아동정책 비전 제시 및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적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수립 필요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국제 기준에 맞게 입양아동 보호 등 입양 관련 핵심 절차를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입양체계를 개편('25.7월 시행)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입양인의 권익·복지 증진

* 법적근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25.7.19.시행)

○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아동이 주체가 되는 행사(아동총회, 어린이날 등)를 개최하여,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시행)을 통한 아동의 건강권·생명권 보호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법적 지원 등을 연계·정보제공 및 상담하는 지역상담기관 전국 운영

- 그럼에도 직접 양육이 어려운 일부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②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전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 추진 및 업무매뉴얼 개정 등

○ 보호출산제 도입, 입양체계 개편 등 아동보호체계 內 제도 개편 및 지자체 책임 강화에 따른 프로세스 정립·교육 내실화

③ 입양절차 전반의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 **(입양체계 개편)** 입양절차 전반의 국가책임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양체계개편 세부실행방안 마련**

○ **(입양인식개선)** 입양에 대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 및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입양부모 및 입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사후관리 강화)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입양 후 **가정방문**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입양 후 한달 이내 최초 가정방문 등 **방문상담 실시**(1년 총 6회), 입양아동과 가족 욕구에 따른 **단계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중장기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아동인권 증진 지원

○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5~'29)' 등 마련을 통해 아동의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방향 수립

○ 아동권리에 대한 개인(아동·성인)과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수행

- 어린이날, 가정의달(5월) 각종 행사 및 아동총회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독려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국제동향 분석

○ 아동인권 증진 및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시행 및 지원

-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사물주소 등록 및 민간서비스 연계 추진

- 아동권리 인식개선 및 대국민 관심유도를 위한 아동권리포럼 개최

⑤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 관리

○ 8세미만 모든 아동(약 234만명)에게 매월 아동수당 지급 등 수급 관리 지속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구성	'24.1월	
	• 2024년 입양실무매뉴얼 개정·시행	'24.2월	
	• 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배포	'24.2월	
	• 아동수당 미신청자 및 신규 대상자(출생아) 신청 안내	'24.3월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2023년 추진실적 평가	'24.3월~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수립 마련 연구 실시	'24.3월~	
	• 2024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개정 및 배포	'24.3월~	
2/4분기	•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24.4월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교육 실시	'24.4월~	
	• 아동보호팀 팀장과정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실시	'24.5월~	
	• 어린이날(5.5) 및 입양의날(5.11) 행사 개최	'24.5월~	
	• 아동수당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지속	'24.5월	
	• 아동수당 연구용역 실시	'24.6월	
	• 아동보호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과정 실시	'24.6월~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 독려 및 점검	'24.6월	
3/4분기	•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지역대회) 개최	'24.7월~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24.7월	
	• 지자체 아동수당 예산집행 모니터링	'24.7월	
	• 아동보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	'24.7월~	
	•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전국대회) 개최 및 결의문 도출	'24.8~9월	
4/4분기	• 아동권리 포럼 개최	'24.11월	
	• 국제입양법 및 국내입양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24.12월	
	• 입양기관 지도점검 실시	'24.12월	
	• 어린이 놀이시설 사물주소 등록 관련 보도자료 배포	'24.12월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2023년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선정 유공 표창	'24.12월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25~'29) 마련	'24.12월	
	• 아동보호체계 구축·운영 우수지자체 선정 유공표창	'24.12월	
	• 아동수당 유공자 포상	'24.12월	
	• 25년 아동수당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24.7.19.)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아동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아동보호팀·아동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현장의견 수렴 및 아동보호체계 內 제도 개편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 실시

○ 입양제도 개편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문 등을 위한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구성·운영

*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입양기관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 단체 등

○ 아동권리 옹호 사업 관련 주요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24.3.)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	'24.1월
간담회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도 관련 의료계 간담회	'24.1월
현장방문	위기임산부 관련 상담·진료 현황 파악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현장방문	'24.2월
간담회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참관 및 아동보호팀 간담회(서울 노원구청)	'24.2월
간담회	아동권리 옹호 사업 관련 민간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24.3월
현장방문	아동복지시설(일시보호시설) 방문 및 현장 의견 수렴(인천보라매아동센터)	'24.3월
간담회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참관 및 아동보호팀 간담회(경기 군포시청)	'24.3월
현장방문	아동복지시설(일시보호시설) 방문 및 현장 의견 수렴(서울복지센터)	'24.3월
설명회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등 설명회	'24.4월
간담회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참관 및 아동보호팀 간담회(미정)	'24.4~12월
회의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제2차 회의	'24.6월
회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보고회	'24.9월
회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4.11월
회의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	'24.12월

□ 기대효과

- ㅇ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여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 ㅇ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아동에 대해 적절한 초기개입을 실시하고 아동에게 최우선적인 보호조치 결정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기회 확보
- ㅇ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 마련으로 아동의 권익보호 및 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강화
- ㅇ 종합적 아동 대상 지원 정책 마련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 및 발달·성장 지원 등 보다 강화된 아동 중심의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ㅇ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전달체계(Ⅰ-5-일반재정②)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지특회계	206	210
	(지원계정)	(1,601)	(1,650)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306)	지특회계	-	-
-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지특회계	206	210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Ⅳ-1-일반재정②)			
① 가정입양 및 위탁지원(1333)	일반회계	17	21
	일반회계	(96)	(85)
▪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301)	일반회계	17	21
아동보호 및 권리보장(Ⅳ-1-일반재정⑦)			
① 아동보호 및 권리보장(1339)	일반회계	257	264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300)	일반회계	257	264
입양아동 가족지원(Ⅳ-1-일반재정⑩)			
① 입양아동 가족지원(6364)	복권기금	224	202
▪ 입양아동 가족지원(346)	복권기금	224	202
아동수당 지원(Ⅳ-2-일반재정④)			
① 아동수당 지원(2539)	일반회계	22,564	21,115
▪ 아동수당 지급(300)	일반회계	22,564	21,115
저출산대응인구정책(Ⅳ-2-일반재정⑨)			
① 저출산대응인구정책(2533)	일반회계	-	42
	일반회계	-	(4,290)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307)	일반회계	-	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입양체계 개편 세부 시행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마련	국제입양법 및 국내입양특별법 제·개정('23.7월)으로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이 강화되도록 입양체계를 개편할 예정('25.7월)임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	협의체 구성·운영 등 유관기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보도자료, 관련 공문 등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	6.5	7.9	7.6	7.8	지자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시적·전문적 심의를 위한 시·군·구 연 평균 사례결정위원회 개최실적 측정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의 총합/229(시·군·구 개수)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자료 (연도말)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마련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기간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20~'24.), 향후 5개년 간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마련 필요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기본계획안 마련	보도자료, 관련 공문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마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지원과 일부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가명 이용 등 지원하여 산모와 아동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필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연구용역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하위법령 제정	보도자료, 관련 공문 등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Ⅲ-2-② 아동보호자립과)

□ 추진배경 (목적)

○ **(개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 강화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적 지원** 및 **주거·취업·교육** 등 **욕구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소규모 아동그룹홈 등 가정형 보호체계 강화**
-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양육 환경과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15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의2, 제40조, 제42조, 제52조 및 제59조

▸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상)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 확대 배치, 사례관리 지원 확대**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 수요 맞춤 정보 제공 등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 지원**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대상 방문 자립교육, 멘토링 등 수행하는 자립멘토단

○ **자립지원 대상자**에 **조기종료아동**을 **포함**하고, **보호종료 이후**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사례관리사**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② 가정형 보호 강화

○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 **양육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 등 위탁가정 지원 강화**

- '20년 **연령별 양육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지원 기준 상향**

- **위탁가정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부모 양육코칭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일선에서 가정위탁에 참여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전문가정위탁 참여 희망 대상자 교육 등 실시

-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위탁부모·아동 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편함 최소화**

○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아동**들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 지원**

③ 보호아동 치료재활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상담·치료 개입**이 필요한 정서장애,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및 **특화프로그램** 등 제공

* 아동의 인지능력, 사회성 수준 등을 고려한 영역별 서비스 제공 등

④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및 조기 개입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범위 확대** 및 가입·적립 제고, 만기 **미해지자** 현황파악 및 **해지·활용 독려**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신규가입 가능범위
('23) 중위40%이하, 12~17세까지만 → ('25) 중위50%이하, 0~17세까지

○ 취약계층 아동 대상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조기개입 체계 안착을 위해 **영유아 대상 발굴** 및 **위기가구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우선실시 등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 현장 밀착형 슈퍼비전 체계 강화를 위한 **슈퍼바이저 자격검정과정 운영** 및 **양성 인력 지자체 배치**('24년 15명 신규배치)

- 사례관리·가정방문 상담 등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아동통합사례관리 수준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 연차별(1~2년, 3년차 이상), 직무별(팀장,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교육과정을 기본・전문화・특성화과정으로 세분화·차별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단가 인상 ('23. 월40만→'24. 월50만)	'24.1월	
	○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확대 적용	'24.1월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추진('23. 180명 → '24. 230명)	'24.1월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신규 배치	'24.1월	
	○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확대('23. 2,000명 → '24. 2,750명)	'24.1월	
	○ 자립지원대상에 조기종료아동 포함 제도 개선	'24.2월	
	○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추진	'24.2월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기준 개선 반영 지침 배포	'24.2월	
	○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적용	'24.3월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운영 매뉴얼 배부	'24.3월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24.3월	
	○ 드림스타트 실무자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24.3월	
2/4분기	○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실시 실적 조사	'24.4월	
	○ 위탁부모 양육코칭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24.4월	
	○ 지자체 전문가정위탁 책정 현황 조사	'24.4월	
	○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	'24.4월	
	○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발표	'24.4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24.5월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실시	'24.5~10월	
	○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포상 실시	'24.6월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선정	'24.6월	
3/4분기	○ 바람개비서포터즈 워크숍 운영	'24.8월	
	○ 보호종료 이후 재보호조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4.8월	
	○ 디딤씨앗통장 가입·지원 대상자 조사	'24.9월	
4/4분기	○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24.10월	
	○ 시설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 운영	'24.10월	
	○ 바람개비서포터즈 위촉	'24.12월	
	○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및 유공자 포상 실시	'24.12월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자격검정과정 실시	'24.12월	
	○ 자립수당·정착금 사용내역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 정책 공유 및 지자체 실무자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드림스타트 추진협의체 운영(연 2회)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실시 및 제도 개선사항 검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디딤씨앗통장 현장간담회	’24.1월
	해담이(가정위탁 정책참여단) 정기모임	’24.4월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24.4월
	바람개비서포터즈 워크숍	’24.9월
	자립지원전담기관 간담회	’24.9월
회의 (토론회, 협의체 등)	한국아동복지협회 ‘가정형 보호 체계 전환 관련 연구’ 결과발표회	’24.2월
	아동·청소년 탈시설 토론회 참석	’24.2월
	보건복지부-지자체 드림스타트-아동권리보장원 간 드림스타트 사업 개선 방안 논의 및 기타 현장의견 수렴	’24.6월, 12월
	디딤씨앗통장 개선을 위한 현장 및 업무관계자 회의	‘24.9월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협회, 지자체 등)회의	‘24.11월
현장방문	보라매 아동센터(아동일시보호시설) 방문	’24.3월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방문	‘24.9월

□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

○ 취약계층 아동(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방지

○ 보호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 및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빈곤 대물림 방지 및 사회비용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아동자립지원(Ⅳ-1-일반재정①)			
① 아동자립지원(1331)	일반회계	597	639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302)	일반회계	13	8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303)	일반회계	437	454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304)	일반회계	147	17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Ⅳ-1-일반재정③)			
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335)	일반회계	499	1,267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302)	일반회계	499	1,267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Ⅳ-1-일반재정②)			
① 가정입양 및 위탁지원(1333)	일반회계	79	63
▪ 가정위탁 지원·운영(300)	일반회계	79	63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Ⅳ-1-일반재정⑤)			
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	일반회계	471	523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301)	일반회계	471	523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Ⅳ-1-일반재정⑦)			
①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6352)	복권기금	24	20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334)	복권기금	24	20
사회복지전달체계(Ⅰ-5-균특회계⑤)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일반회계	541	547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306)	일반회계	541	547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541	547

□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율(%)	신규	71.8	73.7	73.2	과거 3개년('21~'23년) 실적치('23년은 목표치)의 평균값(73.2%)로 '24년 목표 설정 * ('21) 75.3%, ('22) 71.8%, ('23 목표치) 72.6%	(해당 연도 사후관리 실시한 자립준비청년 수 / 최근 5년 이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수) * 10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자립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취합
▪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42.6	41.7	42.2	42.4	▪ 최근 5개년('19~'23년)에 걸친 장기실적 바탕의 β분포 방식 활용하여 목표치 설정 $Y=\frac{Y_a+3Y_m+Y_b}{5}$ (Y_a: 과거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 Y_b: 과거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 Y_m: 평가 직전 연도 실적치) * ('19) 44.1, ('20) 41.5, ('21) 42.6, ('22) 41.6 ('23) 42.2	k-CBCL 정상범위 아동수 / 사업참여자수 * 100	아동권리보장원 결과보고서
▪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 기능 향상 기여도(점)(공통)	75.6	75.7	76.2	75.8	'21~'23년 실적치 평균을 고려하여 '24년 목표치(75.8점) 설정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14문항) 점수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연구

3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Ⅲ-2-③, 아동학대대응과)

□ 추진배경 (목적)

○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신고 활성화 등 국민인식 개선 및 위기아동** 발굴·조사·개입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등을 통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 **(신고 활성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 교육** 안내·시행('24년 연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장과 종사자

- **(긍정양육 확산)**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에 따라 부모-자녀간 상호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확산, 부모교육 확대** 등 긍정 양육으로의 인식 전환*

* '긍정 양육 129원칙'을 활용한 공익광고, 리플렛, 부모교육 책자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취업제한 점검) 아동관련기관 운영·재직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전력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 **(조기발견)**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아동학대 우려 사례 조기발견·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운영**(1~3분기),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건보료 연체 등 44종

- **(만3세 아동 전수조사)** 가정 내 양육 중인 만3세 아동('20년 출생아동) 전수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

- **(조기지원) 학대 판단 전** 또는 **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4월~)**

- **(실종아동등 보호·지원)** 조속한 발견을 통한 **유기·실종** 아동 **발생 예방*** **홍보** 및 **실종가족**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을 통한 **안정 도모**

* 실종아동 등 유전자검사, 사전지문등록 등 예방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심리상담·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실종가족회의·간담회 등 추진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 **(대응인력 전문화)**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전문교육 연중 상시 운영**

* 교육 종류에 따라 e러닝, 비대면 집합교육, 대면교육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 **(전담공무원 업무 지원) 핵심요원제도 시범 운영*** 등을 통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원 강화**

* 신규 전담공무원의 자문 및 멘토링 등 업무 지원,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교육 강의 시 강사 활동, 복지부-전담공무원 소통창구 역할 등

- **(유관기관 컨설팅 등)** 지자체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컨설팅(법률자문, 우수사례 공유 등) 실시를 통해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 역량 제고 등 지원

* 상시컨설팅, 희망컨설팅, 권역별 컨설팅 등

**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 시 애로사항 등 파악·지원 등을 위한 별도 조사 등 병행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지자체·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연계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 공유 및 아동보호지원 등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운영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 **(전담의료기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24. 17개소)을 통해 지역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 기능** 등 지원

  * 광역 전담의료기관에 표준화된 교육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전담의료기관까지 표준화된 교육 전파

-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 강화

- **(가족 회복지원)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족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사업 운영**('24년 2,400가구)

  * 원가정 보호된 학대피해가정을 방문하여 감정 대처방법,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지원

- **(심리지원 강화)** 거점심리지원팀에서 고난도·위험사례에 대한 직접 심리서비스 제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e아동행복지원사업 조사 실시(1차수)	'24.1월	
	'24년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사업설명회 및 운영협의체 개최	'24.2월	
	'24년도 아동학대 대응 핵심요원 선정 및 설명회 개최	'24.2월	
	무연고 보호아동 신상카드 일제 정비	'24.2월	
	'24년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계획 수립	'24.3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24.3월	
	'24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24.3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회의	'24.3월	
2/4분기	e아동행복지원사업 조사 실시(2차수)	'24.4월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 실태 관련 조사 등 실시	'24.4월	
	'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지침 안내	'24.4월	
	'24년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운영 시작	'24.4월	
	'24년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시	'24.4월	
	실종아동의 날 주간 행사	'24.5월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복지부-법무부 합동교육(10회) 실시	'24.6~12월	
3/4분기	e아동행복지원사업 조사 실시(3차수)	'24.7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4.8월	
	아동학대 대응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24.9월	
4/4분기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24.10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개최 및 기념주간 집중 홍보	'24.11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회의	'24.11월	
	'24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회	'24.12월	
	실종아동 등 예방 안내서 및 교육콘텐츠 개발·배포	'24.12월	
	실종아동 가족지원 만족도 조사	'24.12월	
	'25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24.12월	
	'25년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교육매뉴얼 제작 및 배포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하여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 적극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24년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협의체(수행기관 의견수렴)	'24.2월
현장방문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방문(현장 의견 청취)	'24.2월
회의	쉼터 관계자 회의(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마련)	'24.2월
회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회의(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24.3, 11월
회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상시발굴체계 구축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24.6월

□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아동학대 인프라 확충,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확대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Ⅳ-1-일반재정⑥)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	일반회계	413	486
		(413)	(486)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301)		413	48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Ⅳ-1-일반재정⑦)			
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1334)	일반회계	471	522
		(471)	(522)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 설치		214	241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Ⅳ-5-일반재정②)			
①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1032)	일반회계	29.1	14.5
		(29.1)	(14.5)
▪ 아동안전 전문교육(303)		6.5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304)		22.6	1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횟수(회)		신규	10.1	10.2	최근 3년간('21~'23) 정보연계협의체 평균 운영 횟수(시군구당 평균 7.6회) 대비 35% 상향하여 10.2회를 목표치로 설정	정보연계협의체 전체 운영 횟수/시군구 개수	보건복지부 자체조사 (지자체 실적 취합)
위기발굴아동 서비스 연계율(%)		신규	13	13.2	최근 3년간('21~'2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발굴한 위기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비율 (12.6%) 대비 5% 상향된 13.2%를 목표치로 설정	(3년간 서비스 연계건수/3년간 전체 대상자수)	보건복지부 자체조사 (지자체 실적 취합)
학대피해아동별 서비스 제공 실적		신규		80건	전년도 학대판정 아동 등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79건 대비 2% 상향된 80건을 목표치로 설정	전체서비스제공 횟수/학대피해 아동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성과목표 III-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주요 내용

□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

○ **(맞춤 돌봄 제공)** 노인에 대해 **사전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 ('24년) 대상자 55만명

- **사회참여, 건강운동, 인지저하예방** 등의 **예방적 서비스 강화**
- **직접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는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 민간후원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 예방 강화)** 노인보호 신고·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으로 **취약노인의 권익 옹호와 삶의 질 향상**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내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 **노년기 사회참여 강화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전년대비 공익활동형(4.6만개), 사회서비스형(6.6만개) 및 민간형(3.5만개) 일자리 14.7만개 신규 확대* 및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등 내실화 추진

* ('23년) 88.3만개 → ('24년) 103만개(+14.7만개)

○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되도록 지원하고 어르신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24년 목표 48천명)

○ **(노인여가 활성화)**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노인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노인 우울 해소**

○ **(장사문화 인식개선)** 고령화·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 관리 및 국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대비한 장사시설 비상운영,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수요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 및 국민인식 개선 홍보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장기요양 등급 체계 개편안 등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24.4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24.1월~)

○ **(서비스 다양화 및 보장성 개선)** 통합재가서비스 확산(참여기관 75→150개, 가정 방문형 서비스 도입),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24.9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 '24년 : (1등급) 1,885,000원 → 2,069,900원 / (2등급) 1,690,000원 → 1,869,600원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안정화위한 적정 수준 보험료율 결정, 합리적 급여 제공을 위한 적정 수준 수가 조정, 재정 누수 방지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신규기관 개설단계부터 적정 서비스 운영 컨설팅,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방식 및 실무위 운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 **(관리체계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표준매뉴얼'** 마련, **갱신제 시행** 준비, 환기설비 설치 지원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 개선 추진('23~'25), CCTV 설치 의무화,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강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53개소 단계적 확대 추진(~'27)), 우수기관 방문을 통한 운영 사례 및 노하우 공유, 신노년층 서비스 수요 반영 위한 신규 요양시설 모델 마련, 의료·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시범사업 추진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5~9월)을 통해 선임요양보호사에게 수당(15만원/월) 지급(10월~) 등,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내실화 추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 등 지속 추진

* 이론 126시간(+46시간), 실기 114시간(+34시간), 실습 80시간(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직업윤리 등 보완)

□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①**(운영고도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등, ②**(사례관리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 개정·배포 등 ③**(치매정보 연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추진

○ **(서비스 향상 및 다양화)** ①**(법령 개정)**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 서비스를 위한 규칙 개정, ②**(조기 관리강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초로기 치매환자 대상 지원 사업 검토 등, ③**(가족·보호자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이동편의서비스 제공, 등 ④**(치매의료서비스)**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4.7월~) 등

○ **(치매 친화 환경 조성)** ①**(실태조사)**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 실시 ②**(우수모델 확산)** 치매안심마을* 등 우수사례 발굴·홍보 추진, ③**(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양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④**(인식개선·홍보)**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관리사업 지속 홍보

* 치매환자와 가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23년 800개소)

** '23.12월 기준 치매파트너 1,635천명, 치매파트너 플러스 231천명

○ **(노인건강 관리 지원)** ①**(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실명예방,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요실금 치료지원 등, ②**(노인건강 정책 개발)** 노인건강운동 등 노인건강 관련 정책 개발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 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관리과제	취약 노인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노인학대 사후관리 건수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 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률 · 노인자원봉사 참여자 수 ·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 · 공설 장사시설 설치 예산 실집행률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 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실시기관 수 ·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기관 수 ·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수급자 · 중증수급자(1·2등급) 월 한도액 인상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개소 수 ·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실적 · 요양시설 내 의료 서비스 강화도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 치매파트너즈/치매파트너즈 플러스 누적 모집 인원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점)	86.2	85.7	87.1	87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점수 평균치보다 목표치 상향 설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 (100점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단위 : 천명)	836	862	925	1,030	'24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인구 10% 수준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합산 (중복 제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세대업무통합시스템)
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개소)	신규	31	75	150	'23년 실적(75개소)*200%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신규	신규	83.9	85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활용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공통, %)	67.4	72.5	77.6	81.2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증가량(4.5%)의 80% 수준 반영 (상향 한계치 근접 추정에 따른 보정)하여 81.2%로 설정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자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 **'25년 초고령사회(20%) 진입, '7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수준**(47.5%)으로 **전망**

* **노인인구**: ('00) 339만명, 7.2%(고령화) → ('17) 712만명, 14.2%(고령) → ('20) 857만명, 16.6% → **('25) 1,051만명, 20.3%(초고령) → ('70) 1,768만명, 47.5%**

○ 평균수명 연장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수명 증가로 **要돌봄 노인 증가**

* 건강수명: ('00) 68.1세→ ('15) 73.2세 / 평균수명: ('00) 76.0세→ ('15) 82.1세

- **가족돌봄·사회관계망 약화**로 **노인의 사회적 돌봄 수요 확대**

* **자녀 왕래**(주1회 이상): ('17) 38.0% → ('20) 16.9% / **친인척 왕래**(주1회 이상): ('17) 5.6% → ('20) 4.7% /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주1회 이상): ('17) 78.2% → ('20) 69.4%

- 특히 건강·소득 측면에서 취약하고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노인 1인가구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23년 199만명 → '40년 302만명)

□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정책 확장 및 다양화 요구**

○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 증가** 예상

- **과거에 비해 건강상태, 교육 및 경제수준에서 큰 차이**
-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 욕구가 큰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세대 내 **다양한 욕구**(경제적, 사회참여 욕구 등)에 따른 **일자리,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 필요

* '20년 노인실태조사,노후생활 희망활동 1위가 취미여가 (33.7%)

- 전국 16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복지관협회** 등과 연계를 통해 취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 新 노년층 등의 여가활동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취약 노인 돌봄 강화(Ⅲ-3-①, 노인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해 **공공서비스** 및 **민관협력**을 통한 돌봄을 강화하여 **취약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노인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사업 통합**하여, 장기요양 등급 이전의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노후 질 제고** 및 **고비용 돌봄 예방**

○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국정과제 45번-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ICT 돌봄 기술)** AI, IoT 등 ICT 발전으로 **효율적인 돌봄 체계** 구축 추진이 가능해짐

- **(안전망 제공) 홀로 살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재가노인은 댁내 안전사고 발생에 빈번히 노출되며, **도움 요청이** 어려워 지원 필요

* 3년간('20~'22년) 주거 화재로 인한 고령층의 사망은 427명(전체 주거 화재 사망자 중 85.4%), 부상자는 1,558명(전체 중 26%) (「화재통계연감」, 소방청)

○ 고령화에 따른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건수 대비 **드러나지 않는 학대행위**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최근5년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판정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신고 건수	15,482	16,071	16,973	19,391	**19,552**
노인학대 판정 건수	5,188	5,243	6,259	6,774	**6,807**
일반사례 건수	10,294	10,828	10,714	12,617	**12,745**

* 2023년 현황은 2024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공표 예정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와 노인 1인 가구 급증 효과가 가중되어 **의료·돌봄수요 폭발적 증가**

- 대상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논의**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근거 법령 마련되어 하위 법령 마련 등 제도 확산

○ **초고령 사회** 및 **노인 1천만 시대** 대비,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강화**

- **(서비스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 증원**을 통해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점돌봄군**(약 6만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 ‘24년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총 2,435명 증원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 확대(월평균 16시간 → **20시간 이상**)

- **(예방적 서비스 강화)** 생활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요양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

* 건강관리, 운동지원, 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 **(특화서비스 및 자원 연계)** 노인의 고립·우울감 완화를 위한 **정서지원 서비스 강화**(수행기관 193개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민간후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촘촘한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급성기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돌봄 필요노인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 도입** 등 일상생활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시범운영** 통해 서비스 내실화 추진

* 집중관리군, 소득기준 제한 없음, 본인부담 검토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확대·발전**

- **(대상자 확대)** 안전취약계층 등 총 31만 가구('23년 24만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응급상황 신속 대처 서비스 제공

* 수행인력 70명 증원 및 경력 수당 등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추진

- **(발전 계획)**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기를 고도화하며, 자부담 구조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설계 추진

* (시범사업) 광주서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평가 및 시범적 기술 적용을 통한 발전 가능성 모색 추진('22년~'24년)

* (4차사업) 웨어러블 기기, 가족돌봄어플, 음성인식 등 고도화된 ICT기기를 바탕으로 응급상황 감지 및 신고의 고도화 서비스 제공 추진(1.2만가구)

○ 노인보호 신고·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으로 **취약노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

-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어플**(나비새김) **활용성*** **제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신고체계 강화**

*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가족) 대상 어플 설치 안내·홍보 등

- **(인식개선)** 노인인권교육(연1회 4시간 이상) 및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운영 등 대국민 노인학대 인식개선 등 홍보 강화

- **(학대피해노인 보호)**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학대피해노인 상담·사례관리 등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 **(인프라 구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역량 제고

* 종사자 교육과정 세분화, 온라인 교육 등 상시 운영 등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정립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지속 추진('23~'25, 12개 지자체)**

*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위한 복지부, 건보공단, 지역전문가, 지자체 참여 협의체 운영 ('23.4~)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조치 추진**

- **하위 법령 마련**, 제도 확산 위한 **교육·홍보,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재택의료·재가요양·돌봄 서비스, 기반 조성** 등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4.~)**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서비스 확대 시행	'24.1월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자체 설명회	'24.1월	
	명절(설) 보호대책 시행	'24.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24.1~12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4년 사업 설명 및 지자체 교육	'24.1월	
	노인인권교육 및 학대예방교육 전년도 실적 집계	'24.1~5월	
	노인학대행위자 취업제한 점검 현황 집계	'24.1~5월	
	고령자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관련 통합관제센터 현장 방문	'24.3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24.3~10월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4.3월	
	지자체별 시범사업 시행계획안 마련	'24.3월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지자체 실시 현황 점검 등 상반기 간담회 실시	'24.4월	
	시범사업 안내 책자 발간 및 배포	'24.4~6월	
	시범사업 전국화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24.4월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24.5월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	‘24.5월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관한고시」 개정	’24.6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6월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24.6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실시	’24.6월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발표	‘24.6월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 시행	‘24.6월	
3/4분기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배포	’24.7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상황 및 폭염 현장점검	’24.7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상태 관련 현장 점검 실시	’24.7월	
	시설 내 학대 판례집 발간 및 배포	’24.7~9월	
	시스템 구축 준비를 위한 ISP 실시	’24.7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4.8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4.9월	
	명절(추석) 보호대책 시행	’24.9월	
	취약노인 보호 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 및 접수	’24.9~11월	
	4차사업 관련 사업 설명회 개최	’24.9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하반기 간담회 실시	’24.9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24.9월	
4/4분기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24.11월	
	사랑나눔의 장 행사 개최	’24.12월	
	차년도 사업지침 마련	’24.12월	
	우수사례 공모전 포상 실시	’24.11월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2차년도) 연구 최종보고회 및 연구결과 검토	‘24.11~12월	
	고령자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결과보고	’24.12월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결정문 발간	‘24.12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 공유대회 개최	‘24.12월	
	하위법령안 마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체계 운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수행기관 자체점검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 및 의견수렴	'24.5~9월
혹서·혹한기 현장방문	이용자 보호대책, 비상연락망, 이행사항 등 확인 및 현장 의견수렴	'24.6월, 12월
만족도조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24.10~12월
언론보도	사업추진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체계 운영	상시
간담회	시·도 담당공무원, 광역지원기관 정례, 수행기관 및 종사자 간담회 등	상시

○ 유기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수행기관의 의견수렴** 마련 및 발전된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술 간담회**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설명회	전국 수행인력 대상 지침 설명 및 애로사항 확인	1~2월
수행기관 자체점검	전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점검 및 의견수렴	5~9월
만족도조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10~12월
현장 간담회	시·도 담당공무원, 거점기관 정례, 수행기관 및 종사자 간담회 등	분기별
기술 간담회	ICT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전된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상반기

○ 노인보호사업의 발전 및 현장의견수렴을 위하여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등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간담회 및 신임기관장 간담회 실시	6월, 12월
만족도 조사	노인학대예방시스템 및 노인학대현황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기대효과

○ 취약노인에 대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자립 능력 향상** 등 취약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노인에 대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자립 능력 향상** 등 취약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지속가능한 돌봄) AI, IoT 등 ICT 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홀로 살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재가노인의 삶의 질 제고

○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정된 노년기 생활의 기틀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노인돌봄서비스(Ⅳ-4-일반재정④)			
① 단위사업명(213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20	5,46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303)		5,020	5,461
노인돌봄서비스(Ⅳ-4-일반재정④)			
① 단위사업명(213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5	293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300)		285	293
* '23년부터 회계이관(응급기금→균특회계)			
노인관련기관지원(Ⅳ-4-일반재정③)			
① 노인관련기관 지원(2133)			
▪ 노인보호전문기관(300)	일반회계	119	123
사회복지기반조성(Ⅰ-5-일반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42	69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336)		42	6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점)	86.2	85.7	87.1	87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점수 평균치보다 목표치 상향 설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 (100점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자 만족도(점)	95.5	89.5	90	90	'22년부터 '실제로 응급상황 신속 대응 여부 및 대상자의 적극적인 기기 사용'에 초점을 맞춰 설문을 구성해 '22, '23년 2개년 평균치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 (100점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노인학대 사후관리 횟수	3.7	3.5	4.6 (잠정)	3.7	노인인구 및 노인학대 건수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3년 사후관리 목표치를 설정	최근3년 학대판정 노인 사후관리 건수 / 최근3년 노인학대판정건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집계

2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Ⅲ-3-②, 노인지원과)

□ 추진배경 (목적)

○ **(정책여건)** ’24년 **노인인구 1천만명**,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 **베이비붐 세대(‘55~’63년)의 노년층 진입**,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중 증가에 따라 학력, 소득 등 측면에서 **노인인구 특성 다변화**

- **약자복지** 차원에서 **후기 고령층(75세 이상)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필요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11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전년대비 공익활동형(4.6만개), 사회서비스형(6.6만개) 및 민간형(3.5만개) 일자리 14.7만개 신규 확대* 및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등 내실화 추진

* (’23년) 88.3만개 → (‘24년) 103만개(+14.7만개)

- **(민간·사회서비스형)**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대비하여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1만개 확대 및 비중 지속 확대**

* 학력·경력이 우수하며, 높은 근로의욕을 바탕으로 일자리 참여 적극 희망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 (’22년) 28.0% → (‘23년) 31.1%→ (’24년) 36.5%

○ **(노인여가 활성화)**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노인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노인 우울 해소**

- **(경로당 기능강화)** 전국 경로당(68천여개소)에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유형별 우수사례 등 공유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7종 프로그램을 확대한 경로당 ('24년 목표 신규 7,009개소)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개인별 사례관리형 서비스, 사회참여 교육 확대** 및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 등 **추진**

-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되도록 지원하고 어르신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24년 목표 48천명)

- **(수요자 맞춤형 활동 강화) 노인의 전직·경력 등을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노인자원봉사 활동* 강화**

* (활동 예시) 미용사 → 이·미용 봉사, 초등교사 → 어린이집 돌봄 봉사 등

○ **(장사문화 인식개선)** 고령화·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 관리, 산분장 등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확산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 추진

* ('22년 장사시설 현황) 화장장 62개소, 봉안시설 594개소, 자연장지 184개소, 장례식장 1,102개소

- **(준비된 장례문화 확산)** 미리 준비하는 장례를 통한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노인복지관, 여가시설) 등을 통한 자연장, 웰다잉, 이별준비노트 등 장례문화 교육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24.1월	
		'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선정	상반기	
	여가복지	광역별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24.1월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중)	
	장사지원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 및 민원답변 사례집 발간 웰다잉 표준매뉴얼 개발	'24.3월	
		'25년 장사시설 설치 지자체 수요 조사	'24.3월	
2/4분기	일자리	「노인일자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4.5월	
		'24년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수요조사	'24.6월	
	여가복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중)	
	장사지원	'24년 장례문화 국민인식 개선 홍보계획 수립 이별준비노트 및 장례문화 홍보·교육 실시	'24.4~6월	
		'25년 장사시설 설치 지자체 수요 검토 및 예산 편성	'24.4~6월	
3/4분기	일자리	'23년 사업지침 개선 의견수렴	'24.7월	
		집행실적 점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24.9월	
	여가복지	경로당 현장점검 실시	'24.7월	
	장사지원	이별준비노트 및 장례문화 홍보·교육 실시	'24.7~9월	
		장사시설 설치 예산 집행부진 지자체 현장점검	'24.7월	
4/4분기	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4.11월	
		'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4.12월	
		'25년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시범사업 선정 및 준비	~'24.12월	
	여가복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24.12월	
	장사지원	장례문화 국민인식 개선 공익 캠페인 송출 교육·홍보 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24.11 ~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노인일자리·여가 복지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 **(노인일자리)**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지침 개선, 사업 방향 안내 등 간담회 개최

- **(노인자원봉사)**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위탁기관과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월례회의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교육 및 간담회	'24.5월, 8월
간담회	'25년 노인일자리 사업지침 개선 등 간담회	'24.10월
간담회	'25년 노인일자리 사업 방향 안내 등 간담회	'24.11월
회의	노인자원봉사 월례회의	정기 개최
현장방문	하절기·동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건강관리 확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24.7-8월, 11-12월경

□ 기대효과

○ **노년기 빈곤 완화**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 생활 지원**을 통한 **약자복지 실현**

- **(빈곤 완화)** 심각한 노인빈곤율에 대응('22. 38.1%), 노인일자리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 보전**으로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 대비 빈곤율이 10.2%p 완화('2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건강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건강 증진, 노인 우울감 해소** 등으로 **국가 차원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연간 약 5,107억원)

* 노인의료비 절감 추정액: 연간 약 5,107억원(60.8만명×84만원(1인당 연간 절감액))

** **(1인당 월평균 의료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202,824원 / 미참여자: 273,323원

- (고독·무위 개선)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독거노인 등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노인 우울감 해소 등 사회 관계적 효과 개선*

* (우울의심군 비율) 노인일자리 참여자: 7.2% / 미참여자: 32.3%('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취미·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미리 준비된 장례를 통해 건전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노인일자리 지원 (Ⅳ-4-일반재정(5))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39)	일반회계	15,400	20,26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02)	일반회계	15,400	20,264
노인관련기관 지원(Ⅳ-4-일반재정(3))			
① 노인관련기관지원(2133)	일반회계	914 (914)	1,008 (1,008)
▪ 노인단체 지원(301)	일반회계	795	884
장사시설 설치(Ⅳ-4-일반재정(3))			
① 장사시설 설치(2140)	균특회계	519	448
▪ 장사시설 설치(300)	균특회계	519	4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단위 : 천명)	836	862	925	1,030	'24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인구 10% 수준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합산 (중복 제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세대업무통합시스템)
시니어인턴십 장기 고용률(%)	17.0	17.1	21.9	22	시니어인턴십 사업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민간시장에서 노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표	장기고용인원(18개월 이상)/전년도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세대업무통합시스템)
노인자원봉사 참여자 수(단위 : 천명)	47	49	49	48	노인전문자원봉사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위탁기관(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표	위탁기관별 성과보고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지원본부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단위: 개소)	6,608	6,778	6,850	7,009	최근 4년간 실적 평균*에 5% 상향 설정 * 4년평균 6,675건('20년 6,467건) ×1.05 = 7,009건	7개 프로그램 분야 중 전년대비 1개 이상 프로그램 확대한 경로당 수	경로당 DB관리시스템 입력 데이터
공설 장사시설 설치 예산 실집행률 (단위 : %)	39	68	73	74	집행과정상 변수(사전절차, 주민반대 등)가 많은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특성 및 과거 실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2% 상향하여 목표 설정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취합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취합(e나라도움) * 장사시설 설치 예산의 실집행률은 지역별로 적기에 장사시설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Ⅲ-3-③, 요양보험제도과)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08.), **노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함

○ **초고령사회 진입('25년)** 등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질적·양적 고도화** 및 **제도의 안정 및 내실화** 방안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후기 고령인구(75세↑) 증가**에 따라 **의료·요양 복합 욕구 대응** 체계 마련, **서비스 보장성 개선** 등 추진
- **베이비부머('55~'63년생)** 노년 진입에 따라, **다양한 욕구 대응**을 위한 **재가서비스 다양화** 실시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대비해 **재정건전화** 및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❶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통합판정체계 개선(안)**을 적용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 및 **▲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실시**('24.4월~)

* 요양병원 간병지원 서비스, 지자체 돌봄서비스 연계

-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24.1월~)*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현장방문** 등 **운영지원**

* 전국 72개 시군구, 95개소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평가를 통해 본사업 기반 마련

❷ 서비스 다양화 및 보장성 개선

- **(재가서비스 확충) ▲통합재가서비스** 확산(참여기관 75→150개, 가정방문형 서비스 도입)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15개 지역→전국 확대) **▲장기요양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한계점을 보완, **기술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추진**('24.9월~)

  * 1차 시범사업('23.7월～'24.6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시범사업 추진

- **(재가서비스 보장성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 '24년 : (1등급) 1,885,000원 → 2,069,900원 / (2등급) 1,690,000원 → 1,869,600원

❸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안정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정 수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지원** 확보 노력 **▲적정 수준 보험료율 결정**

- **(합리적 급여 제공)** 기관의 합리적 급여 제공 유도를 위해 **▲중복·과다 지출** 성격의 **가·감산제도 조정** 검토 **▲적정 수준 수가 조정**

- **(재정누수 방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청구관리 시스템(FDS)* **부당모형을 고도화**하여 **현지 확인 심사에 적용** **▲부당청구 자율점검 확대 운영 등 부당청구 발생 사전 방지**

  * FDS(Fair Detection System) : 장기요양급여, 건보자격 등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요양기관의 청구경향분석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❹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 **(신규기관 質 관리)** **신규기관 개설단계부터 적정 서비스** 제공기준 **운영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 **(거버넌스 개편)**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방식** 및 **실무위 운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재가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사업설명회 개최	’24.1월	
	• (통합판정)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24.3월	
2/4분기	• (통합판정)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운영 실시	‘24.4월	
	• (운영컨설팅)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시범사업 매뉴얼 마련	‘24.6월	
	• (재가서비스) 장기요양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24.6월	
	• (재택의료) 재택의료센터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24.6월	
3/4분기	• (재가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사업설명회 개최	’24.7월	
	• (복지용구)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평가	‘24.8월	
	• (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24.9월	
	• (수가) 수가 개선(안), 재가서비스 보장성 강화(안) 마련	‘24.9월	
	• (복지용구)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실시	‘24.9월	
4/4분기	• (재정) ’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4.10월	
	• (재택의료)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평가 실시	‘24.12월	
	• (수가) 수가 변경 시 고시 개정	‘24.12월	
	• (재정) 보험료율 변경 시 시행령 개정	‘24.12월	
	• (위원회) 거버넌스 체계 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	‘24.12월	
	• (재가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대비 시행규칙 개정	’24.12월	
	• (현지조사) 부당청구 자율점검 실시(연중)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장기요양 수급자 및 그 가족

○ **(이해관계자)** 보험자(건보공단), 공급자(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제공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참여경험자 간담회	’24.4월
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시설 및 재가 급여비용, 가족요양비 급여 지급기준 등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4.3월
현장방문	통합재가서비스 참여기관 현장방문	’24.5월

□ 기대효과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요양 연계 ▲재가서비스 다양화 ▲서비스 질 개선 ▲운영 기반 내실화** 등을 통한 전반적 품질 제고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 ▲합리적 급여 제공** 등을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Ⅲ-3-④)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2231)	일반회계	22,446	24,976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303)		22,446	24,97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개소)	신규	31	75	150	'23년 실적(75개소)*200%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실시기관 수(개소)	신규	120	182	200	'23년 신규개설기관(약 4천개소)의 약 5% * 시범사업의 취지와 운영여건,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적정 규모 등 고려	운영컨설팅 실시기관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기관 수(개소)	15	20	46	80	'21~'23년 자율점검 시범사업 확대 추세와 사전관리(부당청구 발생 방지) 중심 부정수급 관리 기조 감안	자율점검 실시기관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수급자(명)	신규	신규	2,340	3,800	'24년 참여기관수(95개소)*40명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수급자	건강보험공단(청구 기준)
중증수급자(1·2등급) 월 한도액 인상	신규	신규	고시 개정	고시 개정	중증수급자 월한도액 인상 결정 및 인상(안) 수가 고시 반영	고시 개정 여부	고시 개정

4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Ⅲ-3-④, 요양보험운영과)

□ 추진배경 (목적)

○ **(기관관리 강화) 민간 운영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으로,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입·퇴출 엄격화**

* 개인(85.1%), 법인(14%), 국가·지자체(0.9%) 등('24.1월 기준)

○ **(치매전담형 시설 확대)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필요

* 치매 노인수(65세 이상) 전망: ('16년) 66만명→ **('20년) 84만명→ ('23년) 98만명→ ('30년) 136만명**→ ('50년) 302만명

○ **(의료서비스 강화) 장기요양 수급자 특성상**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급성기 이후**에도 **의료·간호 필요**

* 수급자 평균 만성질환 3.4개, 1일 평균 약물복용 9.8개('19 실태조사)

- 특히, 요양시설 입소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외래 진료 등 이용이 불편하여, **적시에 의료수요 대응이 어려움**

○ **(시설환경 개선)** 사생활 보호 등 욕구가 높은 **신노년층**이 '30년 **요양시설 주요 입소 연령층**(75세↑)이 되므로 **대응책 마련** 필요

* (시설급여 이용자 수) '22년 19.0만명→ '30년 30.3만명→ '40년 47.6만명
(수급자 연령대) 75세 미만 14.2%, 75~79세 13.5%, 80~84세 26.7%, 85세 이상 45.5%

** 요양시설 입소 시 1순위 고려 사항은 물리적 환경(30.5%), 시설 내 공동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율 60.5%에 불과하며 주요 불만족 사유는 입소자 간 갈등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필요

- 아울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갱신기준 마련)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표준매뉴얼'** 마련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차질없는 갱신제 시행*** **준비**

  * '19.12월 법 개정·시행 → (6년 유효기간 경과) → '25.12월 첫 갱신심사

- **(운영현황 정비)** 갱신제 시행 이전 시설장 미등록 기관·**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등 일제정비** 통해 심사 효율화

○ **재난·재해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구축**

- 시설 내 호흡기 집단감염을 사전 방지하도록 **환기설비 설치 지원**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 개선** 추진('23~'25)

- 시설 점검(정기 및 상시), 안전 관련 매뉴얼 개정, 연락체계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 위기 예방·대응체계 구축

○ **수급자와 보호자가 믿고 안심하는 서비스 제공**

- **CCTV 설치 의무화**로 학대 예방 등 **시설 투명성 제고**

  *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에 따라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추진

-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강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부족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 추진(~'27)

- 치매전담실 전환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우수기관 방문**을 통한 **운영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 **멘토링 실시**

○ **도심지 등 공급확대 필요지역의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신노년층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시설 설치·품질관리 등 방안 마련

○ **의료·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시범사업 추진**

- **(법령개정)** 노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요양시설 내 수행 가능 의료범위 명확히 제시해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원활화

  *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4.4~7. 예정)

- **(전문요양실) 중증 질환 보유**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입소자** 대상 **강화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범사업 실시

<전문요양실 모델(안)>

구분	현재	⇨	모델(안)
모델	-		간호유니트(unit) 신설
촉탁의	월 2회 시설 방문		**주 1회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등 역할 강화
간호 인력	입소자당 간호(조무)사 25:1		**배치기준 강화(6:1)**, 간호인력의 60%는 간호사, **간호인력 24시간 3교대 근무** 등
수가	-		전문요양실 별도 수가체계 마련

○ **신 노년층을 위한 신규 요양시설 모델 마련**

- 사생활 확보 등을 위해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배치·전문성 강화**한 **유니트케어 모델 시범사업** 진행('24.7.~'25.6.)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 **종사자 직무, 경력을 고려한 승급제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운영(5~9월)**을 통해 선임요양보호사에게 수당(15만원/월) 지급(10월~)

  * **5년 이상 입소시설 근무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입소자 직접 돌봄 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각종 기록 확인·점검, 갈등 중재 및 고충상담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및 자격취득 후 장기간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예정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의무화**

- 실시기관 지정신청 접수(2월), 실시기관 지정(3월), 보수교육 실시 및 대외 홍보(4월~), 현장 모니터링(5월~), 운영 개선 협의(~12월)

*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방식)** 대면 및 온라인교육, (내용)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내실화** 추진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내용 보완**을 통해 **양성 시부터 전문성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서비스 질 제고**

* 이론 126시간(+46시간), 실기 114시간(+34시간), 실습 80시간(치매노인관리, 노인학대 예방, 직업윤리 등 보완)

○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광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확충**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검토**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리 침해, 고충해소 상담·지원, 역량 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 등 지속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침 배포	'24.1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신청 접수	'24.2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간담회	'24.2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4.2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추가 수요조사 실시	'24.3월	
	요양시설 환기설비 설치지원 사업 추진	'24.3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	'24.3월	

2/4분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24.4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4.5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실시	‘24.5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현장 모니터링	‘24.5월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착수보고	’24.4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준 공고 및 홍보	’24.5~6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홍보	’24.6월	
3/4분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신축사업 추진 모니터링	’24.7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및 시범사업 개시	’24.7월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24.9월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표준매뉴얼 배포	’24.9월	
4/4분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 수요조사 실시	‘24.11월	
	요양보호사 선임직무 수당 지급 추진	‘24.12월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24.12월	
	‘24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신축사업 확정내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방문** 및 **추진단 회의**를 통한 **관련 전문가, 종사자 등 의견수렴** 진행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기관 현장 모니터링** 및 **양성교육 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상황 점검** 등 간담회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서울형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방문	’24.1월
회의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 추진단 회의 개최	’24.2월
간담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간담회	’24.2월
현장방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현장 모니터링	‘24.5월
간담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확대 시도 간담회	’24.5월
간담회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수행기관 간담회	’24.9월

□ 기대효과

○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등**을 통해 **양질의 기관을 선별**함으로써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및 시설환경 개선 등 **이용자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해 **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등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노인요양시설 확충(Ⅳ-5-일반재정③)			
①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	일반회계	548	217
▪ 노인요양시설 확충(300)	일반회계	548	2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개소 수(개)	신규	신규	신규	395	'23년 기준 377개소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24.12.31 기준 치매전담실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활용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신규	신규	83.9	85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활용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실적(명)	신규	신규	92	2,200	'24년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 시 배치대상인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 인원수를 목표로 설정	'24년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적자료 활용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도(건)	신규	신규	신규	661	'22~'23년도 의료서비스 강화도의 평균치(37건)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24.12.31 기준 요양시설 종사(계약)의사 수 대비 진료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활용

5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 관리 지원 (Ⅲ-3-⑤, 노인건강과)

□ 추진배경 (목적)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 및 **사회적·경제적 부담 심화****로 **치매환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 수 : ('23) 98만명→('25) 107만명→('30) 136만명 →('50) 302만명

** '23년 기준 환자 1인당 치매관리비용 2천3백만원

○ 국가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관리비용 감소**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노인인구 천만명('24년), 초고령사회 진입('25년) 등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건강관련 정책 개발 및 노인성질환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건강 문제에 대응 필요**

* '22년 전체 인구의 17.4%, 898.1만명이 노인 → '24년 노인인구 약 1,000만명 → '25년 노인 비율 20% 초과,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23. 장래인구추계)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❶ 지역 치매 관리 중심축으로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 **(운영 고도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등***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2차년도 대상 기관('24년 기준 126개소) 운영평가 실시, 1차년도 대상 기관 중 16개소 컨설팅 시행 예정

○ **(사례관리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 개정·배포** 등 **치매환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확대**

* ('23년) 18개 → ('24년) 전국(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실시

○ **(치매정보 연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차세대, 건보공단 등 **치매환자 관련 정보와의 연계** 체계 구축 추진 지속(다년도 추진과제)

❷ 지역사회 내 치매예방·치료 서비스 향상 및 다양화

○ **(법령 개정)**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조기 관리강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매뉴얼 개발** 및 **초로기 치매환자** 대상 **지원사업 검토** 등 **관리방안 마련**

○ **(가족· 보호자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이동편의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배포** 및 **단계별 돌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배포**

○ **(치매의료서비스)** 공립요양병원(75개소) 중심 치매전문병동 설치·장비 구입 지원(계속)

- 중증 치매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계속)
  *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6개소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24.7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관리** 및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강화**
  * 포괄평가·계획수립, 주기적 점검·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지원**
  *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 친화 환경 조성, 치매인식개선 사업,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 **(공공후견)**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대상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제도 활성화**

○ **(전문성 강화)** 치매안심센터, 공립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종사자**에 대해 **직종별 전문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강화**

* 치매 진료·돌봄 등에 종사하는 6개 직종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치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여 전문성 증대

❸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 **(치매역학·실태조사)**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 실시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 대상 **치매 현황 및 돌봄 부담** 등 **조사**('23.3.~'24.5.)

*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 추이 및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돌봄 부담** 등 파악

○ **(우수모델 확산) 치매친화적 돌봄체계 도입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등 **우수사례 발굴·홍보 지속 추진**

* 치매환자와 가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23년 800개소)

○ **(치매파트너)**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 '23.12월 기준 치매파트너 1,635천명, 치매파트너 플러스 231천명

○ **(인식개선·홍보)** 각종 **매체** 및 **민간·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관리사업 지속 홍보**

❹ 노인건강 관리 지원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①실명예방, ②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③요실금 치료 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의료지원 확대**

○ **(노인건강 정책 개발)** 노인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운동 등 노인건강 관련 정책 개발 추진**

* 노화에 따른 신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노인 실명예방사업 및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착수	'24.1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시행규칙 마련	'24.2월	
	2024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 마련·시행	'24.2월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시행	'24.3~12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연중)	'24.1~12월	
2/4분기	2025년도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 사업 수요조사	'24.4월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운동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계약	'24.4월	
	치매전문교육 수행기관 선정 및 교육 운영	'24.4~12월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메뉴얼 배포	'24.5월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실적 성과평가	'24.5월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산	'24.5월	
	치매공공후견인 대상 경진대회 개최	'24.6월	
	치매파트너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	'24.6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착수	~'24.6월	
3/4분기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포함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4.7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24.7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유공자 포상	'24.9월	
4/4분기	치매친화사회(치매안심마을) 조성 위한 우수사례 발굴	'24.11월	
	경도인지장애 대상 관리메뉴얼 마련	'24.12월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유기적인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등 정책 현장방문 및 전문가회의 등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24.1월
회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을 위한 산업계 등 전문가 회의	'24.2월
현장방문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및 현장방문	'24.3월
간담회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범사업 정례협의회(분기별)	'24.6~12월(3회)
현장방문	맞춤형 사례관리 시행 현장점검	'24.9월
현장방문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미운영 기관 현지점검	'24.9월

□ 기대효과

- ㅇ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 ㅇ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ㅇ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치매예방프로그램 인·검증을 통해 신뢰성 있고 체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ㅇ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을 통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치매관리사업지원(Ⅳ-7-일반재정①)			
① 치매관리사업지원(2234)	국민건강증진기금	1,897	1,920
■ 치매관리체계 구축(300)	국민건강증진기금	1,897	1,920
② 노인건강관리(2235)	국민건강증진기금	67	83
■ 노인건강관리(304)	국민건강증진기금	67	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공통, %)	67.4	72.5	77.6	81.2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증가량(4.5%)의 80% 수준 반영(상향 한계치 근접 추정에 따른 보정)하여 81.2%로 설정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실적
치매파트너즈/치매파트너즈 플러스 누적 모집 인원(명)	1,252,861/ 201,134	1,426,275/ 224,725	1,629,183/ 231,558	1,725,792/ 238,504	-치매파트너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13.7%) 목표치 설정 -치매파트너 플러스의 경우 규정 변경*에 따라 직전년도 증가율(3%)로 목표치 설정 *교육시간 2시간 이수 등 규정 강화	수행기관(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모집한 실적(누계)	치매파트너 관리자 시스템 실적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91.2	최근 4년('19~'22년, 3회)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평균 만족도(90.3점)와 '22년도 만족도(91.2점),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91.2점으로 목표치 설정 * 20년도는 코로나19로 만족도 미실시, '23년은 조사 진행중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치매환자, 보호자 등) 만족도 조사 결과(5점~1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

성과목표 Ⅲ-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지급)**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

○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지원) 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인프라 공백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

○ **(가정양육 맞춤 종합지원)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 맞춤양육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

○ **(장애아 보육지원 강화)** 장애아 보육시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장애영유아들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 **(야간·휴일돌봄 지원 강화) 맞벌이 가정 등의 야간·휴일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기본보육**(07:30~19:30) **외 보육서비스**(그밖의 연장형 보육) **안정적 제공 기반** 마련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집중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유도 및 지원** 필요

○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의 **인적·물적 환경 개선** 지원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2024년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시행 2차년도로, 중점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에 역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인력 지원** 등 주요과제는 **기존 성과지표의 조기 달성** 등 **성과 창출 노력**

○ **(공공보육 확충)**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컨설팅·전문교육 등 품질관리를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방식 효율화** 도모

- **'농어촌 초과보육 특례인정'**에 따라 영유아를 초과보육 중인 교사에게 대한 **처우개선 향상**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교육방식 일원화 추진 및 교육이수율 제고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보육실태조사 추진)**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제공

○ **(보육정책 홍보)** '보육·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 지속 전달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관리과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지급률 · 보육료 지원 서비스 만족도 ·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 ·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비율 · 가정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어린이집 평가 유지 비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보육교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81.8	81.6	80.8	83.2	최근 3년간 실적치('21년 81.8점, '22년 81.6점, '23년 86.2점)의 평균인 83.2점으로 '24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인구학적 측면)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22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 310만명에서 '22년 230만명으로 지속 감소(연평균 5.8% 감소)

* 현 추이 지속 시 영유아 수는 '27년 170만명대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여성 경제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육아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으로 **육아정책의 중요성 증대**

○ **(사회적 요구 및 어린이집 공급구조 전환)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 집중과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증가 추세

○ **(보육사무 주관 중앙부처 이관) 「정부조직법」 개정**('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중앙부처 일원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 갈등관리계획

○ **(갈등요인)**

- 부모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확대,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감독 요구

* 부모 부담 경감(추가보육료, 특별활동비 등), 급식·안전 등 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성 강한 어린이집 지속 확충, 아동학대·급식·안전 등 서비스 질 관리 철저

-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료 지원 단가 현실화**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요구** 지속,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요구**

○ **(갈등관리계획)**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다각화

-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 정책 병행 추진, 시간제보육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야간·휴일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연장형 보육 제공 등 수요자 중심 보육으로 개선

-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및 운영, 물가·임금 상승 등 경제적 변화 반영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조치 시행,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 보육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 어린이집의 인적·물적 환경 개선 지원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4) 기타

□ 업무지침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Ⅲ-4-①, 보육사업기획과)

□ 추진배경 (목적)

○ **(부모급여 지급)**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

○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지원) 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인프라 공백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

○ **(가정양육 맞춤 종합지원)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 맞춤양육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

○ **(장애아 보육지원 강화)** 장애아 보육시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장애영유아들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부모급여로 영아 가정의 소득 보전 및 경제 부담 대폭 경감**

○ **0~1세 영아**에게 매달 **부모급여 지원**(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대국민 부모급여 신청 안내 등 부모급여 제도 **홍보·안내 실시**
- '24년 부모급여 지원예산의 **안정적·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 및 **'25년 부모급여 지원예산 확보 추진**
- **'25년 부모급여와 보육·양육서비스**(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② **보육료·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보육료 지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0~5세 영유아**에게 **취학년도 2월까지 보육료*** **지원**('13년~)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시 0~2세 영아는 39.4~116.9만원 지원,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보육료 28만원 지원('23.12월 기준 101.2만 명 지원, '24년 예산 2조 6,731억원)

- 어린이집에서 **0~2세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개설·유지**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및 운영

*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0세반, 1세반, 2세반 각 최대 62.9만원, 68.4만원, 69.6만원)

- 보육료의 안정적·효율적 집행, 지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예산 확보·집행 실적 주기적 모니터링** 및 **시·도협의체 개최**

-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물가·임금 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정한 '24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인건비 지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저출생 심화,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및 폐원 문제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조치*** 시행

*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기준**(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

③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하여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10~20만원) **지원***

* ('23년 지원아동 수) 월 11.4만명(12월 기준), ('24년 예산) 1,081억원(국비 기준)

- **양육수당의 안정적·효율적 집행**, 지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수시 **사후관리** 실시

○ **(시간제보육 확대)** 가정 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23년 1,000개반 → '24년 2,315개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시간제보육)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6~36개월 미만(통합반의 경우 6개월~2세반) 영아 대상, 월 최대 60시간 지원, 시간당 5천원 중 3천원 지원·2천원 자부담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신규 운영모델(통합반*) 도입**으로 제공기관 대폭 확충('24.7월~)

* 1차 시범사업('22.9월~'23.2월) 및 2차 시범사업('23.7월~'23.12월) 실시 후 본사업 운영('24.3월~)

- **수기 신청·결제** 중인 **급·간식 이용 절차의 시스템화** 등 예약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맞춤 양육지원)** 가정양육부모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역 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부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등 실시

*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을 지역별 거점 기관으로 지정한 후, 부모-자녀 체험활동,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④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부모급여 지급 개시	'23.1월	
	'24년 부모급여 신청안내 등 집중홍보	'23.1월	
	'영아반 인센티브' 신규 도입	'24.1월	
	'24년 공통 부모교육 운영지침 개정·배포	'24.1월	
	'24년 표준보육비용 결정(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4.2월	
	'24년 보육료·양육수당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계획 모니터링	'24.2월	
	'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지침) 개정·배포	'24.2월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특례 해제 모니터링 실시	'24.3월	
	지자체별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선정 보고(인건비 지원관련)	'24.3월	
	'24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사업 운영 개시	'24.3월	
	'23년 4분기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관리	'24.3월	
	'24년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공모	'24.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부모급여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1분기)	’24.4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1분기)	’24.4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실적 점검(1분기)	’24.4월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정 추진	‘24.4월	
	’24년 부모급여 정부예산안 검토 및 부처안 마련	‘24.5월	
	보육료 예탁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도협의체 개최(’24.上)	’24.5월	
	1년미만 보육교직원 퇴직적립금 반납 시행	’24.5월	
	시간제보육 담당 공무원, 관리자, 보육교사 교육 실시	’24.5월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사업 운영	’24.5월	
	’24년 1분기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관리	’24.6월	
3/4분기	부모급여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2분기)	’24.7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2분기)	’24.7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실적 점검(2분기)	’24.7월	
	’24년 부모급여 정부 예산안 편성 협의	’24.8월	
	’24년 부모급여 정부 예산안 확정	‘24.9월	
	’24년 2분기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관리	‘24.9월	
4/4분기	부모급여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3분기)	’23.10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3분기)	’24.10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실적 점검(3분기)	’24.10월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현장방문 모니터링	‘24.10월	
	시간제보육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4.11월	
	부모교육 영상 컨텐츠 e-러닝 탑재	‘24.11월	
	부모급여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사업안내	‘23.12월	
	’24년 부모급여 지원 사업지침 마련	’23.12월	
	‘24년 부모급여 지원 예산 확보	‘23.12월	
	보육료 예탁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도협의체 개최(’24.下)	’24.12월	
	’24년 3분기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관리	’24.12월	
	’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호봉표) 마련	’24.12월	
	시간제보육 이용현황,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24.12월	
	지역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결과보고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시간제보육 담당 공무원, 관리자, 보육교사 교육 실시	’24.5월
현장방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24.8월
현장방문	국공립 및 취약보육 어린이집 현장방문	’24.8월
현장방문	지역 거점형 양육지원 사업 현장방문	‘24.10월
간담회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24.11월
간담회	시간제보육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4.11월
설문조사	시간제보육 이용현황,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24.12월
간담회	장애아동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부모급여 지원을 통한 출산·양육 초기 손실되는 소득 보장으로 저출산 분위기를 반대로 전환하는데 기여

○ 보육료 및 인건비의 적정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맞춤 양육지원을 통해 다양한 보육·돌봄 수요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접근성 및 질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영유아보육료 지원(Ⅳ-4-일반재정①)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	일반회계	30,455 (30,455)	26,981 (26,981)
▪ 영유아보육료 지원(331)	일반회계	30,251	26,731
▪ 시간제보육 지원(336)	일반회계	204	250
영유아보육료 지원(Ⅳ-4-일반재정③)			
① 어린이집 관리(3135)		9 (315)	9 (284)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353)	일반회계	10	9

어린이집 지원(Ⅳ-4-일반재정④)				
	① 어린이집 지원(3140)	일반회계	17,504 (17,504)	18,863 (18,863)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04)	일반회계	17,504	18,863
가정양육수당 지원(Ⅳ-4-일반재정⑤)				
	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3141)	일반회계	1,759 (1,759)	1,081 (1,081)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300)	일반회계	1,759	1,08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Ⅳ-4-일반재정⑦)				
	①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3143)	일반회계	16,215 (16,215)	28,889 (28,889)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300)	일반회계	16,215	28,88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부모급여 지급률(%)	신규	89.9	95.1	95	지난 2개년치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부모급여 지원 아동수/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수	행복e음 통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만족도(점)	81.6	81.6	85.9	83.0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11개 항목 중 보육료 지원에 직접 관련된 6개 항목* 만족도를 사용하며, 최근 5년간('19~'23) 실적치 평균(80.2점) 및 '23년 실적치(85.9점)를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81.7점)보다 1.3점 상향 조정한 83점으로 설정 * 원장, 보육교사, 시설설비·실내외 환경, 교재교구·장비, 비용, 급·간식관리 ** ('19) 77.8점, ('20) 74.1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 ※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시 해당 조사 대체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호봉)	8.1	8.5	8.9	9.2	과거 실적 및 추세 등을 고려하여 상향 목표치 설정	보육교사 호봉 총합/전체 인건비 지원 보육 교사 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 아동 비율(%)(공통)	3.1	6.6	10.3	8.3	'22년 실적 및 '24년 예산 확대 비율(22%)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중복제거한 연간 이용아동 수)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자 수) x 100	보육정책 DW시스템 및 행복이음 사회보장 통계정보시스템
가정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72	80	71.6	71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축소 및 상대적으로 단가 인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 개소수(개소)	신규	1,570	1,637	1,707	'22년 대비 '23년 증가치(67개소)보다 약 4.5% 높은 70개소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Ⅲ-4-②, 보육기반과)

□ 추진배경 (목적)

○ **맞벌이 가정 등의 야간·휴일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기본보육**(07:30~19:30) **외 보육서비스**(그밖의 연장형 보육) **안정적 제공 기반** 마련

○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집중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유도 및 지원** 필요

○ 어린이집의 **인적·물적 환경 개선** 지원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25~) 및 단계적 개선 추진안 검토

- **(보육과정 내실화)** 보육교사 대상 1:1 맞춤형 보육과정 컨설팅* 및 컨설턴트 재교육**

  * 어린이집 총 50개소, 교사 100명 대상 개별 맞춤 컨설팅 진행(지방육아종)

  ** 보육과정 전문컨설턴트 총 100명(중앙육아종)

- **(야간·휴일돌봄 지원 강화) 그밖의 연장형**(야간연장·휴일보육 등) 보육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 개선**

- **(사업홍보)** 평가제도 개편 세부 내용에 대한 대국민 정책 홍보 (유튜브 등 SNS을 활용한 매체 홍보, 영상 및 리플릿 제작 등)

- **(품질관리 지원)** 평가 결과 연계 자율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조직진단 결과 기반 컨설팅을 통해 상시 질 관리 지원

○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

- **(시행방안 확정)** 컨설팅 중심 평가제 개편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및 **평가 운영체계** 및 **평가지표** 확정(6월)
- **(설명회·교육 개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권역별 개편 설명회 및 지표교육 개최
- **(현장방문 멘토링 운영)** 시행 초기 개편안 적용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자 현장 방문 기반 **사전 컨설팅*** 제공(9월)

  * 개정 평가지표 안내, 현장평가 대비 점검, 현장 문의사항 지원 등

- **(평가운영)**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8월~) 및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의 현장평가(10월~) 실시
- **(사업홍보)** 평가제도 개편 세부 내용에 대한 대국민 정책 홍보 (유튜브 등 SNS을 활용한 매체 홍보, 영상 및 리플릿 제작 등)
- **(품질관리 지원)** 평가 결과 연계 자율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조직진단 결과 기반 컨설팅을 통해 상시 질 관리 지원
- **(평가시스템 고도화)** 평가제 개편에 따른 운영체계 전반의 평가관리통합시스템 개선(~9월)

○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 개선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연중)

  * '24년 목표 : 증개축 4개소, 개보수 550개소, 장비비 298개소

- **(노후환경 개선)** 민간어린이집 등에 저리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24년 목표 : 시설이전 2개소, 환경개선 12개소

- **(점검) 하절기**(6~9월) 및 **동절기**(11~2월) 급식위생, 차량안전, 시설 등 **안전점검** 및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 시행

  * 시설 자체 전수점검(전체 어린이집), 지자체 현장점검(15%이상 선정 점검)

- **(안전교육)** 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운영과정 확대* 추진(어린이집안전공제회)

  * (4종→6종)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 Ⅱ), 유아담당교사(Ⅰ, Ⅱ)로 개편 예정

○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 관리**

- **(수시 조사)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 연계 조사** 등 **수시 조사 연중 실시**

○ **지자체 지도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정책 지원)** 지도점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조사 기반 강화** 및 **정책 공유**를 위한 **지도점검 자문단*** **운영**

  * 지자체공무원, 학계,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30명 내외 위촉

- **(역량 지원) 어린이집 현지조사 직무 업무이해도 향상** 및 **실무행정 지원**을 위한 **공무원용 어린이집 현지조사 지침*** **개정**

  * ①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②영역별 중점 점검사항 체계화 ③조사방법, 조사표, 조사 관련 서식 현행화

- **(교육 강화)** 현지조사 시 **주요 점검 사항*** 및 **전년도 다빈도 위반 사례** 등 지자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보육료 환수, 보조금 반환법, 재무회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온나라 시스템과 점검시스템간 행정처분 위한 연계방법

○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 지원 확대**

- **(운영 통합 매뉴얼) 어린이집 운영관리 내실화 도모 및 운영 전 분야 품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통합 매뉴얼 개정***

  * 최신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등 현행화

- **(교육/정보제공)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아동권리존중** 및 **위반사례*** **교육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 필요경비 사적 유용, 필수서류 미구비, 급식·위생 관리 위반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4년 어린이집 평가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1차)	’24.2월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1차)	‘24.2월	
	어린이집통학차량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4.2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계획안 마련 및 국고보조금 지급	’24.2월	
	‘24년 지도점검 자문단 위촉	’24.3월	
2/4분기	’24년 1차 그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현황 모니터링	’24.4월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2차)	‘24.4월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보급	’24.4월	
	상반기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24.5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2분기)	’24.5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책사업 추진 지자체 및 어린이집 의견 수렴	’24.6월	
	어린이집 평가 국고보조금 교부(2차)	’24.6월	
	어린이집 하절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24.6월	
	상반기 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교육 실시	’24.6월	
3/4분기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 및 평가 매뉴얼 안내	’24.7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확대 운영	‘24.7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3분기)	’24.8월	
	어린이집 평가 국고보조금 교부(9월)	’24.9월	
	그밖의 연장형 보육 관련 「보육사업안내」 개정(안) 검토	’24.9월	
	어린이집통학차량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4.9월	
4/4분기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공간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24.10월	
	’24년 2차 그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현황 모니터링	’24.10월	
	하반기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24.10월	
	어린이집 동절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24.11월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교육 실시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간담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책사업 추진 지자체 및 어린이집 의견 수렴

○ **(간담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안전교육 플랫폼 운영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회의 진행

○ **(간담회) 지도점검** 관련 **지자체 애로사항, 현지조사 방식·분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간담회** 운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확대 관련 회의(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4.4월
간담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책사업 추진 지자체 및 어린이집 의견 수렴	'24.6월
간담회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간담회	'24.10월

□ **기대효과**

○ 야간·휴일 등 **틈새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긴급하거나 특수한 보육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

○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충실한 평가**와 **구체적인 서술형 평가결과 제공**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 강화

○ 어린이집 노후환경 개선 및 안전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부모 걱정 없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감소·예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영유아보육료 지원(Ⅳ-3-일반재정①)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	일반회계	283	283
▪ 영유아보육료 지원(331)	일반회계	283	283
- (내내역사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일반회계	283	283
어린이집 기능보강(Ⅳ-3-일반재정②)			
① 어린이집 기능보강(3134)		35	76
▪ 어린이집 기능보강(341)	일반회계	35	-
▪ 어린이집 기능보강(300)	지특회계	-	76
어린이집 관리(Ⅳ-4-일반재정③)			
① 어린이집 관리(3135)	일반회계	106.7	93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372)	일반회계	106.7	93
- (내역사업) 어린이집 평가	일반회계	95	81.6
- (내역사업)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및 현지조사 지원	일반회계	11.7	11.4
어린이집 지원(Ⅳ-4-일반재정④)			
① 어린이집 지원(3140)	일반회계	849.7	993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04)	일반회계	849.7	993
- (내역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회계	195	300
- (내내역사업) 방과후 교사 인건비	일반회계	6.7	7
- (내내역사업)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일반회계	648	6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어린이집 평가 유지 비율(%)	신규	신규	신규	94.6	어린이집 평가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평가 유지 어린이집 비율은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성과지표로 적합 * 최근 3년 평균 어린이집 평가 유지 비율(94.6%)을 목표치로 설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관리시스템 통계자료

3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Ⅲ-4-③, 보육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2024년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시행 2차년도로, 중점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에 역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인력 지원** 등 주요과제는 **기존 성과지표의 조기 달성** 등 **성과 창출 노력**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시행

-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 방식 효율화** 도모
- **'농어촌 초과보육 특례인정'**에 따라 영유아를 초과보육 중인 교사에게 대한 **처우개선 향상**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교육방식 일원화 추진 및 교육이수율 제고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차질 없는 유보통합 추진

-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4.6.27 시행)을 통해 **중앙부처 일원화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공보육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0.9% 달성*** **추진**

  * 전년말 대비 2.6%p 증가

· 신축,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 (품질 제고) 신규 장기임차 선정된 어린이집 대상 운영기준 등 교육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역량 강화

○ 맞춤형 정보·정책성과 홍보를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및 국민 신뢰 강화 및 보육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 (보육정책 홍보) '보육·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 지속 전달

* 정책수요자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영유아보육법」 개정('24.2)을 통해 기관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체계적 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및 보육과 양육의 통합 지원 기능 수행 지원

*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부모모니터링, 공공형어린이집, 현지조사, 시간제보육, 취약보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 신설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보조·연장,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보조·연장교사(6.1만명) 및 대체교사(4천명) 지속 지원

- (대체교사 효율화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대체교사 효율화 방안* 지속 추진

* ① 보조·연장교사를 대체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어린이집 내 비담임교사 지원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역할 수행 지속 추진

- (보육교사 권익 보호)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중앙고충처리센터를 설치('24.7)하여 고충상담, 법률자문 제공,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홍보 등 추진 및 전문적 상담 지원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과정 개편)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전문역량 강화 교육방식 일원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시행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 향상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 전문교육 등 품질관리를 강화,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운영 컨설팅) 공공형어린이집 및 예비 공공형어린이집 2,000개소 내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재무회계 관련 컨설팅 실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한 보육사업 관리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제고

- 보육제도 변경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필요한 보육시스템 개편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

- 보육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전략수립(BPR/ISP)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사업 착수보고	'24.1월	
	2024년도 중장기 보육 시행계획 수립	'24.2월	
	농어촌 특례 초과보육 관련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무규정 배포	'24.2월	
	보조·연장·대체교사 인력운영 현황 조사 실시	'24.2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제작	'24.3월	
	국공립 신축·리모델링 추가 수요조사	'24.3월	
2/4분기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사업 현황실태조사(간담회, 현장방문)	'24.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 명단 공표	'24.5월	
	202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24.5월	
	보육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	'24.5월	
	보수교육방식 개편에 따른 지자체 및 보수교육기관 간담회 추진	'24.5월	
	국공립 신축·리모델링 추가 수요조사	'24.6월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방식 보수교육 시행안 수립	'24.6월	
	한국보육진흥원 교육부 이관에 따른 추진과제 수립	'24.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24.7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중앙고충처리센터’ 개소	’24.7월	
	국공립 신축·리모델링 추가 수요조사	’24.8월	
	보육양육지원 관련 정책홍보 실시(인쇄물 제작, 영상 제작 등)	’24.9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BPR/ISP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및 전략수립(안) 마련	’24.9월	
	보육실태조사 수행(방문조사 등)	‘24.9월	
4/4분기	2024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24.11월	
	신규 장기임차 선정어린이집 대상 교육	’24.11월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컨설팅 운영	’24.11월	
	보육실태조사 결과 중간보고	’24.11월	
	보육교사 권리보호 관련 하위법령 마련	‘24.12월	
	어린이집 대체교사 효율화 사업 ‘24년 추진현황 분석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활성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보육실태조사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부내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교육부, 유관기관 등) 대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착수보고회 통한 의견수렴	’24.1월
간담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 BPR/ISP 사업 관계기관 FGI 등을 통한 의견수렴	’24.3월
현장방문 및 간담회	대체교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간담회, 지자체 및 어린이집 현장방문)	‘24.4월
간담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 지역연계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관계자 간담회	‘24.4월
간담회	효과적인 보수교육 방식 개편을 위한 지자체 및 보수교육기관 간담회를 통한 보수교육의 전문성 향상 방안 강구	‘24.5월
회의	보육실태조사 중간보고회의	‘24.11월
간담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확충사업 참여율 확대 방안, 사업개선 필요사항 등)	’24.7월~12월

□ 기대효과

- ㅇ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모든 영유아(0~5세)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 ㅇ **근거리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 ㅇ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제공
- ㅇ 보조·연장・대체교사 지원, 중앙고충처리센터 설치, 보수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어린이집 기능보강(Ⅲ-4-일반재정②)			
①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3134)		492	416
▪ 어린이집 확충(344)	특별회계	492	416
어린이집 관리(Ⅳ-4-일반재정③)			
① 어린이집 관리(3135)		236	237
▪ 보육실태조사(362)	일반회계	-	7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354)	일반회계	18	13
▪ 보육진흥원 운영 지원(372)	일반회계	218	217
어린이집 지원(Ⅳ-4-일반재정③)			
① 어린이집 지원(3140)		4,582	4,864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04) - (내역사업) 보조, 대체교사 지원	일반회계	4,582	4,8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공통)	22.6	25.3	28.3	30.9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4년 비율 - 직전 3개년도 증가율 평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 10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추출 통계 활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79.4	81.5	78	85	'23년도 실적인 84.3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 상향할 것을 목표로 설정	(조사 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합계)/항목 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추출 통계 활용
보육교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점수)	4.27.	4.23	4.45	4.36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질 향상과 상관관계가 학부모들의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로 설정(3개년도 증감률 추이 반영)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5점 척도 기준	21년 보육실태조사결과 및 22, 23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성과목표 III-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에 따른 **고도화 추진** 및 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실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논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및 내실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규모화·조직화·다변화** 추진, **품질인증** 고도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통계·법체계 정비·현황 파악

○ **(사회서비스 민관 협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 투자 활성화, 현장종사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발굴 워킹그룹** 운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스마트 서비스 개발)** 청년, 1인가구, 등의 일상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스마트 사회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해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추진

○ **(서비스 관리체계 내실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 세부기준 적정성 및 효과성 검토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충 및 사업 내실화 추진

□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 **(시설 안전성 및 운영 적정성 제고)**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종사자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및 시설 등 운영 활성화·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근로여건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품질 제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전망, 자격 및 교육기준 체계화 연구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관리과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전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 성과평가 실시 ·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누적 모집 공유기관 수 ·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 · 신규펀드 조성 시 펀드 결성 목표액 달성률 ·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한 횟수 · 개선한 규제과제 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노력도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 전년도 평가 미흡시설의 맞춤형 컨설팅 참여율 · 자원봉사 등 주요 나눔활동의 경제적 가치 ·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수 ·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현업적용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만족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도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9.3	9.5	9.7	9.8	'24년 실적 대비 2% 수준에서 상향 조정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의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 비중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적 전개,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복잡·다양화

○ 사회서비스 확충, 품질 제고 및 통합적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혁신**으로 모든 국민 대상의 **보편적인 복지·돌봄체계 구축 필요**

□ **사회서비스 新 생태계 형성**으로 증가하는 **돌봄·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현** 필요

○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기능혁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규모화·다변화 사업 실시**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Ⅰ-3-①, 사회서비스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적극 육성 지원** 필요

- 양질의 **제공기관 육성을 저해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발굴·논의**하고 **개선 추진**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3. 공급 혁신 기반 조성 ('5 규제 합리화')

- **투자자금 공급,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 체계적 육성** 및 **산업 활성화**

- 제공기관들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가맹 모델**과,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공급체계 구성** 지원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의 **자발적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공급 주체 선택권 강화**를 위한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지속실시

-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법체계 정비 및** 공급 **현황·추이 파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성과평가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이후 그간의 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실시('24.下)

②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해 학계·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 포럼 운영**(연 3회)

* (포럼주제(안)) ①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②품질관리 고도화 방안, ③사회서비스 규제 완화·합리화 방안, ④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등

2)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및 내실화

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규모화·조직화 지원

○ '규모화·조직화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23년~)

- **(거점기관 육성·지원)** 표준모델 개발·공유를 추진할 **거점기관**(3개)**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표준가맹모델 구축)** 거점기관 외에도 **규모화·조직화**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공유**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분야 표준가맹모델 구축'**
- **(생태계 조성)** 거점기관 간 **간담회** 및 수범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사업 주체 간 **협력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컨소시엄형 공급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추진**('23년~)

- **(사업지원·내실화)** 사업 **운영매뉴얼*** **제작 및 성장지원**(전문가 자문·컨설팅, 간담회 등)**을 통해 컨소시엄**(10개)** 공급체계 활성화**

* 사업 추진목표, 대표·구성기관 등 역할정립, 예산 사용비율, 수익금 회계처리 방안 등

** 대표기관 1개소와 구성기관 2개소 이상으로 구성(바우처·민간 제공기관 등)

- **(성과체계 마련)**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공유회 개최**

②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고도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추진**('22년~)

- **(인증운영 내실화)** 참여기관 모집 및 **인증**, '22~'23년 **품질인증받은 기관**(39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추진**

* 연차별 각 기관의 인증수준 자체·현장점검 실시 후 컨설팅 실시

※ 인증 개소 수 : ('22년) 15개소(목표 15) → ('23년) 24개소(목표 20) → ('24년) 20개소(목표치)

③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 개정(5월) 및 지정(~10월)

④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통계·법체계 정비 및 현황 파악

○ **(통계·법체계 정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전담 수행 등 법적 근거 명확화**

*「통계법」 제18조 근거, '13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통계승인번호 제117078호)

○ **(실태조사)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재무 실태 등 **기초통계 현황 및 추이 파악**

○ **(산업통계)** 사회서비스 범위 확장*,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23)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편 추진**

* (현재) 복지·보건·고용·교육·문화 영역만 포괄 → (개선) 주거·환경 영역까지 확대

⑤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운영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등 품질관리 지원**,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운영·관리**

○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보고회, 만족도 조사 추진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해산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3) 사회서비스 민·관 협업 활성화

①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 **(투자 펀드) '24년 펀드 추가 조성**(정부 50억+민간 20억)하여 복지 기술 기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 기업들에 **투자자금 지속 투입**

* '23년 총 145억 원 규모(정부 100억 + 민간 45억)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집행 중

○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 기업-투자자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사회서비스 분야 초기 진입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

②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 **(규제발굴)** 사회서비스 분야 현장종사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워킹그룹*' 구성·운영**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

* (주제) 제공기관 운영, 돌봄 제공인력, 민관협력 활성화 등

○ **(규제개선)** 워킹그룹 등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복지부 1차관 주재)를 거쳐 **개선계획 마련 및 추진**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발표('23.5월)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포함('23.8~9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24.1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23년 성과평가 및 연장 결정	'24.1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24년 경영평가 지침 배포	'24.1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설명회 개최	'24.1월	
	'24년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관리 추진	'24.1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관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4.2월	
	’24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계획 마련	’24.2월	
	’24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 공고	’24.3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모니터링	’24.2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24.2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3년 성과평가 및 연장 결정	’24.2~3월	
2/4분기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24.4월	
	통계청 협의 등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 개편 추진 착수	’24.4월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발굴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개최	’24.4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컨설팅	’24.4~11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표준가맹 모델 매뉴얼 개발	’24.5~12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컨설팅 계획 수립	’24.4월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추진계획 마련	’24.6월	
	제1차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 개최	’24.6월	
3/4분기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24.7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현장모니터링	’24.7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	‘24.7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수행기관 현장 방문	‘24.8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관련 추진현황 홍보	’24.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24.8월	
	제2차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 개최	’24.9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보고회	‘24.9월	
4/4분기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24.10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4.10월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중간 점검	’24.10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 개편 중간 점검	’24.11월	
	’24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결성	’24.12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실무자 간담회	’24.11월	
	2024년 품질인증 부여	’24.11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미흡기관 컨설팅	‘24.11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만족도조사	’24.11~12월	
	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 성과평가	’24.12월	
	사회서비스 다변화·공유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4.12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일반국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 (이해관계자) 사회서비스 관계부처, 지자체, 제공기관, 관련 기업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24.1월
간담회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사회서비스 기능 고도화 방안 안내	’24.2월
현장방문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참여 독려 및 모니터링	‘24.2월
포럼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24.4월
회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현장종사자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워킹그룹*‘ 구성·운영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 * (주제) 제공기관 운영, 돌봄 제공인력, 민관협력 활성화 등	’24.4~12월 (연중 수시)
포럼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24.7월
현장방문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수행기관 현장 방문	’24.8월
포럼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24.10월
간담회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실무자 간담회	’24.11월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보편복지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달성**

○ 품질인증 부여를 통해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공급자 신뢰 및 선택권 강화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비영리법인 금융지원 정책 등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등 과제 도출과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사회공헌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 참여의 활성화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적극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조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3	'24
사회복지전달체계(Ⅰ-5-일반재정⑤)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	302	257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307)	일반회계	302	257
사회복지기반조성(Ⅰ-5-일반재정⑤)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	-	100	50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316)	일반회계	100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 성과평가 실시	-	-	신규	평가 실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12.12.)에 따라 관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실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 성과평가 실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고도화 분야 추진실적 성과평가 보고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누적 모집 공유기관 수	-	-	7	22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1차년도에 조성한 공유화 기반을 바탕으로 '24년 거점기관(3개소)별 5개소씩 총 15개소 신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공유기관 모집 수	사업 결과보고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공통)				800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간 제공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 목표 도입 -개소당 50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목표로 설정(총16개 사회서비스원 운영 중)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 합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현황 보고
신규펀드 조성 시 펀드 결성목표액 달성률(%)	-	-	103.6	100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계획에 알맞은 합리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내 펀드를 결성*하고, 신규펀드 결성목표액 달성률 100%를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며, - 연내 혁신기업에의 투자 집행 시작이라는 다음 단계 돌입을 위해 필수적이고 도전적 목표임 * '23년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한 펀드(79개) 중 연내 결성성공한 비율이 76%에 불과하며, 동 펀드와 같이 6개월 내 결성 성공율은 절반 수준	신규펀드 조성 시 펀드 결성목표액 달성률 = 신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결성총액/신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결성목표액 x 100	㈜한국벤처투자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한 횟수(회)	-	-	-	3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검토하는 과정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과제 목표에 적합하며, - 워킹그룹 내 분과별* 1회 이상 논의로 다양한 주제 검토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돌봄 제공인력, ▲민·관 협력 분과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워킹그룹' 분과별 논의 횟수 총합	회의 개최계획 등
개선한 규제과제 수(개)	-	-	-	5	현장방문, 워킹그룹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발굴한 과제를 복지부 내외 과제 관련 담당 부서와의 검토과정을 거쳐 실제로 개선	'24년 개선한 규제과제 수	보건복지 규제혁신TF 회의자료 등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Ⅰ-3-②, 사회서비스사업과)

□ 추진배경

○ 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필요성 증가

○ 저출산·고령화,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변화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스마트 사회서비스 개발 필요

-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확장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44-2.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44-4.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스마트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

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스마트 서비스 개발(국정과제 44-2, 44-4 관련)

○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에게 돌봄·병원동행·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23.8.~)' 활성화 추진**

* ('23) 51개 시군구, 국비 186억원 → ('24) 179개 시군구, 국비 335억원

- **1개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사업방식이 아닌, **이용자의 욕구·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주 돌봄자 공백·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실시**('24. 신규)

○ **공급취약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또는 제공인력)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내 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출장비, 운영비 및 인센티브 등 지원**

  * ('23) 18개 제공기관, 국비 16억원 → ('24) 30개 제공기관, 국비 21억원

○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탄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디지털-스마트 사회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해 **스마트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 추진

- 사업을 **통해 검증된 모델**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로 **진입**하는 **절차 마련 추진**

②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국정과제 44-2 관련)

○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검토 및 확대방안 마련을 통한 신규서비스 안정화 도모

○ 시·도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역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가 미흡한 지역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내실화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지역의 일자리 확충에 기여

○ 사업관리의 효율과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간 간담회, 워크숍 등 소통 및 협력 강화

○ 지자체 합동점검 등 실시하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철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24.2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및 시행	'24.2월	
	긴급돌봄 지원사업 계획 수립	'24.2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계획 수립	'24.2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4.2월	
	'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24.3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년 시·도 성과평가 계획 수립	'24.3월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심사 및 확정	'24.3월	
2/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지원단 간담회	'24.5월	
	가격탄력제 시행 안내 및 지역별 시행계획 협의	'24.4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년 시·도 성과평가 기관 선정	'24.4월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	'24.4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24.5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공인력 교육추진	'24.6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 점검	'24.6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현장 방문	'24.6월	
3/4분기	긴급돌봄 지원사업 현장점검	'24.7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24.9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현장 방문	'24.9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현장 점검	'24.9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현장점검	'24.9월	
4/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24.12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개정	'24.12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공자 표창	'24.12월	
	'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성과평가	'2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 사회서비스 확충,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품질관리 등은 일차적으로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이차적으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 창출로 시장 확대와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인력에 대한 전문성 관리 강화, 현장점검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조 요청 등 갈등관리로 이해관계 충돌 최소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24.2월
회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자체 설명회	'24.2월
회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	'24.3월
회의	가격탄력제 시행 안내 및 지역별 시행계획 협의	'24.4월
회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관련 협의	'24.5월
간담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지원단 간담회	'24.5월
현장방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일상돌봄 현장 방문	'24.6월
회의	생활 사회서비스 사업 및 공급취약지 지원사업 시행 관련 협의	'24.7월
현장방문	긴급돌봄 지원사업 현장방문	'24.7월
현장방문	지투, 일상돌봄, 가사간병, 스마트 시범사업 현장 점검	'24.9월

□ 기대효과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및 新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별 성과평가, 컨설팅·교육으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내실화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Ⅰ-5-일반재정④)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		31	29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303)	일반회계	31	2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Ⅰ-5-일반재정⑥)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		2,359	2,566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305)	특별회계	269	433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306)	특별회계	2,090	2,1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명)	신규 1,49 2,754 3	2,800	①(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일자리 수) 1,300명 → '23년 예산(5,670백만원) 대비 '24년 예산(3,591백만원) 36.6% 감소로 사업비 조기 소진이 예상되며, 동 사업은 정신건강 정책 수요 증대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24.下)으로 통합·흡수되어 종료 예정, 이에 따라 '23년 일자리 수 2,007명('23.12월) 대비 35% 감소한 1,300명 설정 ②(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수) 1,500명 → 생활사회서비스는 '23.8월 신규 시행한 서비스로, 사업 수행 5개월간('23.8~12월) 제공 인력 747명 확보하였으며, 차년도 서비스 지속 추진 및 사업 참여 지역 확대(참여 시군구 '23년 51개 지역 → '24년 100여개 지역) 계획으로 일자리 수 1,500명[750명 × 2(시군구 확대)] 달성 예상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 인력 수의 합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점)	신규 신규 91.2	85.0	'23년(+1개), '24년(+2개)에 신규 도입되는 보조사업이 다수로, '23년 실적치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만족도 91.2점을 '24년도 목표치 설정의 기준으로 잡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사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사업의 '23년 이용만족도는 90.8점, 87.7점, 89.5점으로 4개 사업의 평균은 89.8점임 '24년 목표치 설정 시 내역사업의 변동(신규사업 추가)을 감안하여 '23년 4개 사업의 평균 점수인 89.8점의 95% 수준인 85점으로 설정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종합 만족도 평균	전문조사기관의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③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노력도(건)	5 7 8	7	지표 도입 이후 실적(최근 3년) 평균치를 목표로 제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노력 및 안정화	시범사업 실시건수, 표준모델 도입건수, 연구용역 실시건수

3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Ⅰ-3-③, 사회서비스자원과)

□ 추진배경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개별화·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역할도 다양화**되고 있음

-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품질 관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필요**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 **공공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나눔, 기부 등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역할과 필요성도 지속 증가 중**

- **민간사회복지자원의 육성·지원**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지속 추진**

- **(제도개선)**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단체·협회, 법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의 운영 적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관리감독) 정기** 및 **수시 감사**를 통해 소관 법인의 **운영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24년 감사 : 관리법인·단체 총 74개(사단 36, 재단 34, 협동조합 4) 중 23개(사단 10, 재단 13)

○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안전점검)** 안전점검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상·하반기) 실시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연중) 강화

- **(안전교육)**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투명성)**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운영을 통한 법인·시설의 투명한 수입·지출 및 예·결산 지원

○ 공공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및 **민간의 사회공헌 활성화**

- **(민간복지자원)** 사회복지자원봉사, 푸드뱅크(기부식품등제공사업) 및 사랑나눔실천사업 등을 통한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사회공헌)**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운영, 사회서비스 참여 연계 등을 통한 민간의 사회공헌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근무자 등 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및 제공서비스 질 제고**

- **(환류체계 강화)** 시설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평가 우수·개선시설(인센티브** 대상)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 **(이용자·서비스 중심)** 이용자 중심 및 서비스 질을 유인하는 **제10기** ('26~'28) **평가지표개발 및 모의평가 시범 도입, 개선지표 교육** 시행('24년 하)
- **(종사자 디지털 교육)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사회복무요원 교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능력 향상**
  - 지자체·병무청과 협업을 통해 ①사회복무요원의 **진로탐색교육** 및 ②**사회복무요원 근무기관의 관리자 교육**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계획 수립	'24.1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착수	'24.3월	
	'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 수립	'24.3월	
	'24년 소관 법인·단체 감사계획(안) 수립	'24.3월	
2/4분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디지털 교육 계획 수립	'24.4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간담회 개최	'24.5월	
	소관 비영리법인·단체 정기감사 추진	'24.4~12월	
	'26년도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현장 등 의견수렴	'24.5월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기관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24.5~12월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24.6월	
3/4분기	사회복지시설 현황조사	'24.7월	
	사회복지법인 현황조사	'24.7월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실시	'24.7~9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연계 위한 공모전 개최	'24.9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시	'24.9월	
4/4분기	사회복무요원 SNS 영상 및 우수사례 공모	'24.10월	
	전국사회복지나눔 유공 포상	'24.11월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 개최	'24.12월	
	'2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확정 및 설명회 개최	'24.12월	
	'25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관리안내 개정(안) 마련	'24.12월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24.12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업적용도 조사	'24.12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운영	'24.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일반국민,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관련 기업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이용자 중심 시설 '26년 평가지표 개선 추진 관련 협회 간담회	4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5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및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5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10월
현장방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디지털 교육기관 현장방문	6월
	디지털-스마트 서비스 제공사례 우수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10월
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디지털 교육 관련 실무협의	2월

□ 기대효과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사용자·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의 **운영 적정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및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기반 마련**

○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 확보**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기반조성(Ⅰ-5-일반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2631-308)	일반회계	97.2	69.5
사회복지기반조성(Ⅰ-5-일반재정⑤)			
① 사회복무제도운영(2636)	일반회계	122	133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2636-313)	일반회계	122	1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전년도 평가 미흡 시설의 맞춤형 컨설팅 참여율(단위: %)	-	-	-	90%	('24년 신규지표) 미흡등급 시설의 컨설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율 90%를 목표로 설정	(참여시설/대상시설)*100	컨설팅 결과보고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자원봉사 등 주요 나눔 활동의 경제적 가치	-	-	-	4,004 억원	('24년 신규지표) '23년 실적(3,887억원) 대비 3% 증가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가치(봉사시간×최저시급)+기부식품 등 모집금액+사랑나눔 실천 모금액)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 결과보고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수	-	-	-	600 개소	('24년 신규지표) '23년 실적(531개소) 대비 13% 증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결과보고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현업적용도	3.82	3.86	3.95	3.95	'23년도 목표치 3.9점을 고려하여 '23년 목표치 대비 0.05점 상향한 3.95점으로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료제공(외부기관 연구용역 결과)

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Ⅰ-3-④,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추진배경 (목적)

○ **(처우개선)** 110대 국정과제(44-5)*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적정화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국정과제 44-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종사자 규모**는 지속적 **증가***한 반면 **낮은 보수수준****, **열악한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필요성**은 **증대**

*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 통계청) '18년 2,149천명(7.8%) → '23.6월 2,872천명(10.1%)

**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 임금(월 229만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월 387만원)의 59.1%에 불과('22년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20, 보사연)
연차휴가 미보장(39.4%) → 과도한 업무량/업무공백(36.6%) 및 동료 등 눈치(34.7%)

- **종사자 부당대우·위험 상황**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 방안 확산·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종사자 권리보호 환경 조성 필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비, 이에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공인력 제도개선 필요**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23.12.12발표)에 따라 사회(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관리 및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고용상황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정책 및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범부처 일자리 협의체 총괄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근로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인상** 및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 (연도별 가이드라인 준수율) : ('21)90.2%→('22)93.4%→('23)94.1%→('24 잠정)95.2%

-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연2회)

  * '22.12월부터 구성·운영, 복지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유관 부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15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 **종사자 안전·권리보호 매뉴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방문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안전·위협 상황과 대응 방법」 영상 제작 및 홍보

  ** 이용자의 폭언, 업무소진 등으로 정서·심리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대상 전문 상담 의뢰 지원('24년 85명, 1인당 총 5회, 중앙사회서비스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에 따른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성화***

  * (주요내용) 대체인력 추가 확보로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인건비 단가 인상 및 추가교통비 지급 등 대체인력 종사자 처우개선,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강화로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수급관리** 및 **역량강화 청사진**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 총괄 등 일자리 TF 참여

-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주요 **돌봄인력 수급 전망 통계**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돌봄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양성기준(자격·교육 등) 표준화·체계화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

  * 서비스 유사성이 높은 성인(노인·장애인) 돌봄부터 유사 교육과정 감면, 필수·보수교육 강화 등

- 범부처 일자리 TF(기재부-고용부 공동주관, 매월),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고용부 장관) 등 참여·대응 총괄

- 취약계층 생계 안정 및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 및 일자리창출 실적 취합 등 부내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점검

  * '24년 복지부 직접일자리 계획 인원 113.8만명(노인일자리 103만명, 자활근로 6.9만명, 노인맞돌 3.9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 117.7만명의 96.6%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1분기 대체인력지원사업 현장점검	’24.2월	
	○ 대체인력지원사업 관계기관 간담회	’24.3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24.3월	
2/4분기	○ ’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24.4월	
	○ 돌봄인력 수급 전망 관련 연구 추진	’24.4월	
	○ ’24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출	’24.5월	
	○ ’24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24.6월	
	○ ’24년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24.6월	
	○ 2분기 대체인력지원사업 현장점검	’24.6월	
	○ 재정지원 일자리 집행 점검	’24.6월	
3/4분기	○ ’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지자체 회의	’24.7월	
	○ 3분기 대체인력지원사업 현장점검	’24.8월	
	○ 지자체 처우개선 시행 사항 점검	’24.9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24.9월	
4/4분기	○ 4분기 대체인력지원사업 현장점검	’24.10월	
	○ ’25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 개정 작업	’24.12월	
	○ 돌봄인력 수급 전망 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24.12월	
	○ ’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24.12월	
	○ ’24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24.12월	
	○ ’25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예산 확정	’24.12월	
	○ 대체인력지원사업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24.12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처우개선) 처우개선위원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종사자), 지자체담당자 등의 **현장의견 수렴**

○ **(대체인력)** 현장점검, 관계기관 간담회, 워크숍 등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제도 개선**(지침 등)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추진

※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 시 서면 의견 수렴 병행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대체인력) ○ 분기별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방문, 사업추진 독려 및 현장의견 수렴 * 지자체,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 이용시설 관계자 등 참석	'24.3월, 6월, 8월, 10월
간담회	(대체인력) ○ 대체인력지원사업 위탁기관과의 현안 및 개선방안 논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등	'24.3월
회의	(처우개선) ○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24.6월
회의	(처우개선) ○ '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지자체 회의	'24.7월
의견수렴(서면)	(대체인력) ○ '25년도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의견 수렴	'24.10~11월
회의	(처우개선) ○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보수 수준 적정화, 휴식권 보장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 유입 여건**을 **조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유도**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고도화(수급관리, 역량강화 등)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도모**

* 고용유발계수 : 사회복지서비스 26.4, 사회서비스 11.0 vs 전체 산업 7.4('21, 한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사회복지사업지원(Ⅰ-6-일반재정(1))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327)	일반회계	65.4	6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만족도(공통)	94.3	94.2	94.7	94.5	과거 3년간의 실적 등을 감안하여 돌봄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목표 유지 설정	시도별 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6~10월 중 파견 이용자(복지시설, 전수)로부터 파견 종료 후 설문지 취합
(신규)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도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	-	-	6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사회(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전망 및 역량 강화 등 인력(일자리) 고도화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적 목표 설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도화 관련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간담회 등 회의 개최 횟수	사회서비스 일자리(인력) 고도화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자료

전략목표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기 본 방 향

◇ **바이오헬스 혁신기반 조성**

○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 **연구중심병원** 및 **개방형 실험실** 운영, **전문인력** 양성, **첨단 의료복합단지** 운영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진흥 기반 고도화**

◇ **보건의료전략기술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체계 구축**

○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안보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분야 등 중장기 임무지향적 투자체계 구축**

○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등 추진을 통한 **공익적 임상연구 기반 확대**

◇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경제 대도약**

○ 제약(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

○ 바이오신약 등 **신약 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 산업 분야 개척**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모델개발·현지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한국 의료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강화**

◇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건강 향상**

○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활용**, 혁신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창출**

○ **병원**의 **스마트化 추진** 및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 보조, **ICT 활용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의료기관 디지털 대전환**

◇ **바이오디지털 연구개발로 바이오헬스 기술 강국**

○ **라이프로그(일상정보), 임상정보, 유전체** 연계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로 **암, 희귀질환**의 **근원적 치료방법 연구·개발**

○ **임상·유전체·공공보건의료** 정보기반 **100만명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으로 **정밀의료 연구개발 촉진**

◇ **첨단재생의료 생태계 조성 및 집중 육성**

○ **민간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 생태계 촉진**

○ 민간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장기 과제**에 대해 **국가 투자 집중**하고, **민간 임상연구 지원 확대 및 산업생태계 촉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7	2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①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
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국내 개발신약 허가 누적 현황 ②국내 제약기업 의약품 기술수출 규모
	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①보건산업 창업육성 지원 건수
		②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수
		③첨복재단 기업지원 건수
	②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구축	①보건의료 R&D 분야 종합계획 수립
		②보건의료실용화지수
		③의사과학자 사업 지원 인원
	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①제약바이오수출액
		②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과제의 매출액 증가율
		③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활용 건 수
	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①해외환자 유치수
		②의료 해외진출 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①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 수 ②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① **[민생]**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①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 수
		②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
		③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전송 건수
		④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심사건수
	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①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데이터셋
		②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 연구 건수
		③ 핵심교류데이터(KR CDI)항목 마련
		④데이터·AI 인력양성 교육 참여자 만족도
	③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①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②임상연구 신청건수
		③재생의료 R&D 사업 기술이전 건수

전략목표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1) 주요내용

□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 ㅇ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및 투자 강화,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ㅇ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 ㅇ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수요 분석 및 현행 인력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을 통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수립·추진**
-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지원 인프라** 활용하여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고도화 추진**
- ㅇ **연구중심병원**의 **국내연구문화 저변 확대** 및 **해외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R&D과제 지원**
- ㅇ **권역별, 분야별 특화 생태계**(의료기기·백신 등)를 **선정하여 민간 주도하에 산업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ㅇ 보건의료 중장기 목표인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 ㅇ 펜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혁신적 연구체계(KARPA-H 프로젝트)** 추진
- ㅇ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해외 연구자 간 체계적 공동연구** 추진

○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R&D 고도화 추진**

○ 의료기술 최적화, 약물전달기술개발, 치매극복연구 등 **공익목적 R&D** 추진

□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23, 총 2,61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집중 투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현장 수요 맞춤형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GMP 수준 대규모 교육시설 구축 및 실습 교육 제공*

○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운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산업 전주기** 특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모델 개발·현지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의료기관 및 연관기업 대상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진출** 및 **현지 정착 도모**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턴 채용, 실무교육** 등 지원

○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강화**

○ 지역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의료서비스 혁신*** **도모**

* ①정밀의료 및 예방의료, ②개인맞춤 건강관리, ③일상·건강·의료 연속 서비스 등

○ **ICT 기술을 활용,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 협진** 등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실제 **교류 정보의 양 제고**

○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성공적 시행**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100만 명 규모 임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통한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 촉진**

○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 연구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원인정보** 등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개발, 가상환자·가상세계 기반 의료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의료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고품질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세포·유전자 치료, 바이오 인공장기 등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 · 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정비**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위험도 분류체계 정비, 치료계획 심의, 치료비용 관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실시 기반 마련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신설**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적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체계화**, 임상연구 인력 **교육** 제공, **연구심의 전문성** 제고,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 유전자전달체, 인공아체세포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 (단위 : 억불)		신규	257	244	219	323	'23년도 수출액(219억불) 대비 매년 10% 증가율 반영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연간 수출액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세청

성과목표 Ⅳ-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 ㅇ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및 투자 강화,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ㅇ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 ㅇ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수요 분석 및 현행 인력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을 통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수립·추진**
-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지원 인프라** 활용하여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고도화 추진**
- ㅇ **연구중심병원**의 **국내연구문화 저변 확대** 및 **해외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R&D과제 지원**
- ㅇ **권역별, 분야별 특화 생태계**(의료기기·백신 등)를 **선정하여 민간 주도하에 산업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ㅇ 보건의료 중장기 목표인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 ㅇ 펜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혁신적 연구체계(KARPA-H 프로젝트)** 추진
- ㅇ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해외 연구자 간 체계적 공동연구** 추진
- ㅇ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R&D 고도화 추진**

○ 의료기술 최적화, 약물전달기술개발, 치매극복연구 등 **공익 목적 R&D** 추진

□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23, 총 2,61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집중 투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현장 수요 맞춤형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GMP 수준 대규모 교육시설 구축 및 실습 교육 제공*

○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운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산업 전주기** 특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모델 개발·현지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의료기관 및 연관기업 대상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진출** 및 **현지 정착 도모**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턴 채용, 실무교육** 등 지원

○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강화**

○ 지역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개발신약 허가 누적 현황 · 국내 제약기업 의약품 기술수출 규모
관리과제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 보건산업 창업육성 지원 건수 ·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수 · 첨복재단 기업지원 건수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 보건의료 R&D 분야 종합계획 수립 · 보건의료실용화지수 · 의사과학자 사업 지원 인원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약바이오수출액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 과제의 매출액 증가율 ·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활용 건 수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수 · 의료 해외진출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내 개발신약 허가 누적 현황(단위 : 건)	34	36	36	38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역량 집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전년도 누적 허가 건수 대비 5%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로 제시	국내 개발된 신약 중 해당 연도에 신규 허가된 품목 건수의 누적 합계	식 품 의 약 품 안전처 의약품 허가보고서(익년 4월 보고서 발간)
국내 제약기업 의약품 기술수출 규모(비공개 제외) (단위 : 조원)	13.4	6.6	7.9	8.7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주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전년도 기술수출액 대비 10%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로 제시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기술수출 건수 중 공개된 수출금액의 합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기술수출 규모 실적 자료(익년 1~2월 중 발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해외 각국은 잠재성장률 회복과 **바이오헬스 시장 주도권 경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법제도 마련 중**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자국화 생산정책('22.9.15)발표(NBBI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중국:「신인프라건설('20~'25)」 신형 인프라 7대 분야(5G, AI 등) 선정, 2조1천억 투자

□ 인구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 증가 중,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시장 성장 예상**

*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시장 규모: 1,520억 달러('20) → 5,080억 달러 ('27) (GIA, '20)

□ 코로나19 대응 이후 상승한 국제적 인지도 바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수출 증가 등 글로벌 도약 가능성 확인**

* 바이오헬스 수출(억 달러): ('18) 149 →('19) 157 →('20) 217 →('21) 254

** 체외진단의료기기수출(억 달러): ('19) 4.3 →('20) 35.7 →('21) 46.5

□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와 급속한 시장 성장 예상,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Ⅳ-1-①, 보건산업정책과)

□ 추진배경(목적)

○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

* **성장률(~'30) 전망**(%):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산업은행 등)

* **글로벌 시장 전망**: ('21) 2조 2,892억달러 ⇒ **('28) 3조 1,192억달러**
(Fitchsolutions, Euromonitor international)

▸ (참고)글로벌 반도체시장 전망: ('21) 약 6,000억달러 ⇒ ('30) 1조달러(매킨지)

* 일자리 수(만명) :('20) 94.9 →('21) 98.6 →('22) 101.7 →**('23) 105.2**

○ 코로나19로 각 국은 **바이오헬스 기술격차**와 **국민 불안** 경험,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중심**이 될 전망

* 미국('22, 6.5B$), 독일 (10년간 1.2B$), 일본 (5년간 0.9B$) 등 백신,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의학 및 보건의료 기술혁신 가속화 재원 공급 추진 중

○ 세계적 의약품 **공급망 위기 발생**으로 대다수 국가는 **백신·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자체 역량 보유** 노력 중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자국화 생산정책('22.9.15)발표
(NBBI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저성장 추세 속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추진 필요**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규정·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및 투자 강화,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수립 및 추진**

-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수요 분석 및 현행 인력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산업 수요**에 **대응**한 **융복합·실습 교육 강화, 실습 시설 신규 구축, 대학 민간의 실습 강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 과학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지원 인프라** 활용하여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고도화 추진**

- **(인프라 고도화) 신약개발 데이터 완전성**(Data-Integrity), **세포주 특성분석 기반** 및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역량 확보

* **글로벌 품질관리 요건**에 부합하는 GxP 데이터 완전성 시스템 구축(~'26)

- **(창업지원)** 혁신 창업 기술상용화 센터(오송, ~'24),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대구, ~'25) 등을 통해 **창업 기업 입주공간, 연구·생산 시설, 장비** 등 **지원**

○ **연구중심병원**의 **국내연구문화 저변 확대** 및 **해외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R&D과제 지원**

- **병원의 연구 문화 확산 도모**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

* (현재)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 (개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7월 시행예정)

- **해외 우수병원**과의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글로벌 유망 의료기술 확보** 위한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과제 추진(14개)

○ **권역별, 분야별 특화 생태계**(의료기기·백신 등)를 **선정하여**

민간 주도하에 산업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K-바이오헬스 전략·지역센터 운영 등을 통한 **바이오 클러스터 자원 활용 전략수립**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연구중심병원** 등의 우수한 **임상 연구**의 **산업 연계를** 위한 별도 **민관협력 펀드 구축, 지원 구조** 마련

- 혁신 창업 기술 상용화 센터('23) 등을 통해 **창업 기업 입주 공간, 연구·생산 시설, 장비** 등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	'24.1월	
	유망 창업기업 분야별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24.3월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과제 공고	'24.3월	
2/4분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 발표	'24.4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이행상황 점검 발표	'24.4월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과제 선정	'24.5월	
	오송첨복재단 데이터완전성(Data-Intergrity) 구축 착수	'24.6월	
	보건의료TLO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24.6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25년 신규 지정계획 수립	'24.6월	
3/4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장벽 철폐 방안' 발표	'24.7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24.7월	
	한미혁신성과창출R&D 협약 및 연구개시	'24.7월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하위법령, 복지부 고시안 제·개정・시행	'24.7월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사전공고 및 설명회	'24.8월	
	보건산업 창업기업 기술설명회	'24.9월	
4/4분기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및 세포주특성분석 지원기반 착공	'24.10월	
	보건산업 성과확산을 위한 교류회	'24.11월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 계획(안) 수립 및 평가단 구성	'24.11월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완공	'24.12월	
	오송첨복재단 데이터완전성(Data-Intergrity) 구축 완료	'24.12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반 관련 연구 용역 발표 (바이오헬스 인력구조 현황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요인 분석)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바이오헬스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병원·대학·산업계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협·단체 간담회	'24.1월
현장 방문	개방형실험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과제 발굴	'24.1월
간담회	2024년도 연구중심병원 신년회	'24.1월
간담회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산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데이	'24.3월
현장 방문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 현장 방문 상담 실시 (규제개혁마당)	'24.3월~ (수시)
간담회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간담회 개최	'24.3월~~, 6월, 8월, 11월~~
회의	연구중심병원 인증기준(안)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24.4월
회의	개방형실험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정책지원 개선 사항 발굴	'24.5월
간담회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위한 진행사항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24.3월
간담회	보건의료TLO의 우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24.6월
간담회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3년 미만) 대상 센터 이용 관련 건의사항·필요 지원사항 등 의견 수렴	'24.11월
설명회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	'24.7월
간담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 CEO 포럼' 현장 의견수렴	'24.9월
간담회	바이오헬스 창업기업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투자 등 기업들의 관심분야 설명회를 개최하는 "K-BIC 벤처카페" 개최	'24.3~12월 (분기 1회)
간담회	바이오헬스 산업 내 새로운 이슈와 변화들에 대해 논의하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2030년, 바이오헬스 수출 600억 달러**('21년, 257억 달러), **일자리 160만개**(現 98만개) 달성 등 **주력 산업**으로 성장

○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바이오 디지털 연구개발** 확대로 **국민건강 향상**

○ **산·학·연·병 간 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 상품화 촉진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의료연구개발(Ⅱ-4-R&D①)			
①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일반	577	632
		(5,611)	(6,849)
▪ 연구중심병원 육성(R&D)(310)		468	605
▪ 바이오헬스 투자 인프라 연계형 R&D 사업(434)		109	27
보건산업정책(Ⅱ-4-재정④)			
① 보건산업정책(3033)	일반	7.2	6.4
		(193)	(164)
▪ 보건산업정책 사업관리(303)		0.6	-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506)		6.6	6.4
보건산업진흥(Ⅱ-4-재정⑤)			
① 보건산업진흥(3039)	일반	225	221
		(1,268)	(1,115)
▪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302)		72	-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310)		152.5	220.9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Ⅱ-4-일반재정⑦)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19.6	603.6
		(519.6)	(60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보건산업 창업육성 지원 건수	190	311	347	350	최근 3개년도(21~23) 지원 실적의 20% 이상 상향 제시 * 직전년도 실적치 이상 목표 설정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수혜기업 수	지원 수혜기업수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수(만명)	신규	101.7	105.2	108.3	보건산업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도출된 직전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수를 3%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로 산정 (최근 3개년('20~'23) 연평균 성장률 2.7% 고려)	해당연도 4분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제조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 합계 (해당연도 4분기 데이터를 연간 고용수치로 간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용동향 발표 자료 내 일자리 수 제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기초로 보건산업 일자리 수 제시)
첨복재단 기업지원 건수(건)	2,841	2,731	3,032	3,104	첨복단지 기업지원 지속 확대 추진을 위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연평균증가율 14% 및 가중치 3% 반영) *(목표치 산출식) { 2,631건(최근 4개년 평균) + 2,631건(최근 4개년 평균) × 14.56%(최근 4년 연평균 증가율) } × 1.03(3% 가중치) = 3,104건	대구경북 및 오송 첨복재단 장비를 활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분석평가/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임상시료생산 등 지원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2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Ⅳ-1-②,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추진배경 (목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년)*」('23.4.)에 기반한 **2024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

○ 신종 감염병 확산,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의료 분야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 **R&D 체계 도입** 및 **바이오분야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글로벌 Top tier 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등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치료제·백신 기술 개발** 및 **현장중심 방역체계 구축 필요**

○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치매 등 **주요 위험 질환**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의료현장 **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해결, 신기술 융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의사과학자 육성 필요**

○ **정부포상** 등을 통하여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및 **개발의욕 고취**, **보건의료기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 수립)** 보건의료 중장기 목표인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 **(도전혁신형 R&D)** 펜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혁신적 연구체계**(KARPA-H 프로젝트) 추진

- **추진단장·PM 선정** 및 PM 주도 **도전적 문제발굴, 과제 기획·선정·평가·관리** 등을 통한 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 과제 추진

*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대·내외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채용설명회,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추진**

○ **(글로벌 R&D)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해외 연구자 간 체계적 공동연구** 추진

-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공동연구사업단**(복지·과기부) 선정 및 **글로벌 공동연구 개시**
-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연구 협력·지원**

  *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24～'28) 등

○ **(감염병 대응)**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R&D 고도화 추진**

-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주권 강화**(예방), **진단기술**(확산방지) 및 **치료제 개발역량**(치료) 고도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감염체를 구분하지 않는 **RNA바이러스 기전 타겟의 항바이러스제 개발** 지원
- 미래 방역체계 구현에 필요한 **실시간 감시, 지능적 예측·차단, 신속 진단, 효능이 입증된 방역물품 개발·검증 기반** 고도화 추진
- **보건의료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기술**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실증**하는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추진

○ **(공익적 R&D)** 의료기술 최적화, 약물전달기술개발, 치매극복연구 등

- **(환자중심)** 의료질 향상,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근거 생성 및 환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 확대 추진

  *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23～'27), 한국형 수술질 향상 프로젝트('23～'27) 등

- **(고령화 대응)** 고령화에 따라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 등)의 **질환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0～'28),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23～27) 등

- **(중개연구 확대) 기초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상 현장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는 **임무 지향적 질환별 중개연구 확대**

*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24～'28),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23～'27) 등

- **(약물전달)**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바이스 및 소재개발 지원** 연구 추진('23～'27)

-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내 장기·조직에 분포하는 주요 부위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자원 및 데이터셋** 구축 및 **진단·치료 기술 개발**

○ **(인력양성) 바이오헬스**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추진**

①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 교육인프라 구축 및 전공의·전일제 박사과정 연구 지원

- **(의과대학 의사과학자 인프라 지원) 의과대학과 이공계대학 간 협업** 기반 학부·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지원 지속

- **(전공의 연구지원)**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연구 방법 교육 및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의 수련 후 의사과학자 진출지원**

- **(전일제 박사학위지원) 바이오메디컬 융·복합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 타 학문의 교육 및 연구지원

② **(박사후 연구성장지원)**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특화연구지원 트랙**(GPS) **확대·운영**

* (현행) 신진의사과학자(2년 내외) → (확대) 신진(3년), 심화(3년), 리더(5년) (최대11년)

③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국내 우수 **의사과학자가 연구책임자**로서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 지원

④ **(글로벌 연수지원)** 국내 의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연구기관 내 연수 기회 제공**

* 의약학 계열 전문자격자,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자 대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24.1월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 신규 연구과제 공모	'24.1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 연구과제 공모	'24.1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대학원과정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간평가 실시	'24.1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학부과정 중간평가	'24.2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신규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24.2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설치 및 추진단장 임명	'24.2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PM 공모 및 채용설명회 개최	'24.2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선정	'24.3월	
2/4분기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신진) 신규 선발 지원	'24.4월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신규 선발 지원	'24.4월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24.4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사업단 출범	'24.5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24.6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PM 채용 및 과제 기획	'24.6월	
	감염병 R&D 사업단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24.6월	
3/4분기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심화·리더) 신규 선발 지원	'24.7월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신규 선발 지원	'24.7월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수요기반형) 신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24.7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과제 연구개시	'24.8월	
	글로벌공동연구지원센터 지정	'24.8월	
	감염병 R&D 사업단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24.9월	
4/4분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24.10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교류회 개최	'24.10월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24.11월	
	비대면진료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협의체 개최	'24.12월	
	감염병 R&D 사업단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24.12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컨퍼런스 개최	'24.12월	
	202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안) 수립	'24.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업수혜자**(국민,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 및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사업 추진방향 설정·공유

※ R&D 지원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연구성과 현장활용도 제고를 위한 **성과교류회**, 수혜자 의견수렴을 위한 **컨퍼런스**, 관계부처와의 보건의료 R&D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보건복지부 글로벌 R&D 사업 설명회 개최	'24.1월
설명회	2024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24.1월
설명회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PM 채용 설명회 개최	'24.2월
성과교류회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24.10월
성과교류회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교류회 개최	'24.10월
성과교류회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24.11월
컨퍼런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컨퍼런스 개최	'24.12월
위원회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민간에서 회피하는 **도전적·고위험 분야**의 연구를 통한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기여

○ 보건의료 분야 특화 연구수행 가능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재 육성** 가능

○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지속적·체계적 **협력체계 구축**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

○ **임상 및 공공보건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성과**의 **임상적용 및 실용화 연계 기여**

○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백신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방역위기 대응**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및 부작용이 많은 기존 치료법 한계 극복 가능성 제시 등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산업정책(Ⅱ-4-일반재정(6))			
① 보건산업정책(3033)	일반회계	107	84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349)		107	84
보건의료연구개발 R&D(Ⅱ-4-R&D(1))			
①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일반회계	1,939	3,041
▪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R&D)(334)		289	268
▪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377)		144	80
▪ 글로벌 연구협력지원사업(380)		41	287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382)		133	41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84)		132	135
▪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ODA,R&D)(408)		100	100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414)		134	191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433)		450	505
▪ 공익적의료기술연구사업(R&D)(462)		146	71
▪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484)		38	39
▪ 질환유효성평가센터(486)		45	81
▪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500)		16	17
▪ 비대면진료기술개발(R&D)(501)		56	60
▪ 뇌신경계질환임상현장문제해결기술개발(R&D)(504)		50	85
▪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 X)대비항바이러스 치료제개발사업(509)		38	38
▪ 약물전달치료기술개발사업(515)		60	76
▪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모형개발및실증연구사업(R&D)(524)		37	32
▪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사업(R&D)(525)		30	30
▪ 임상현장수요연계형중개연구(R&D)(556)		-	38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557)		-	495
② 보건의료연구개발(3040)	기금	50	61
▪ 한국형 수술질 향상프로젝트(309)		50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보건의료 R&D 분야 종합계획 수립(건)	4	4	5	4	보건의료기술육성 시행계획 등 보건의료 R&D 분야 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계획 수립 건수	계획 수립 보고서 등
보건의료실용화지수(점)	109.1	93.2	104.3	105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최근 3년간 평균 실적('21~'23)의 3% 상향된 값으로 설정 ※ R&D 기술성숙도(TRL)에 따른 가중치 부여	(임상시험 승인 건수×0.7)+ (기술이전 건수 ×1.0)+ (품목허가 건수 ×1.3)	보건의료R&D포탈 (HTDream) 등록 기준
의사과학자 사업 지원 인원(명)	신규	신규	신규	127	의과학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연구 단절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 지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선발 인원수 + 글로벌 의사과학자 선발 인원수	기관별 자료 제출

3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Ⅳ-1-③, 보건산업 진흥과)

□ 추진배경 (목적)

○ **(제약)** 세계 시장규모('21년 약 1.4조 달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8% 성장, '28년까지 1.76조 달러**로 성장 전망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신약개발 중심**으로 **재편**되며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격차 감소에 한계***

* (기술수출 현황) '19년 8조 4,315억원 → '20년 10조 9,782억원 → '21년 14조 516억원 → '22년 6조 3,458억원 → '23년 7조 9,622억원

-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의료기기)** 고령화 등에 따라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고성장이 전망***되며, **고용 창출력****도 높은 유망산업**이나,

* 세계 의료기기시장(억 $): ('24) 4,752 → ('28) 6,716 연평균 5.9% 성장(Fitch Solutions)
** 고용유발계수(명) : 의료기기(7.36) > 화장품(7.01) > 제조업(6.14) [보건산업진흥원]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

* ('22)생산액 100억원 이상 기업 180개(4.3%), 10억원 미만이 기업 3,345개(80.1%)
** 종사자 100명 이상인 제조업체는 152개(3.6%), 100명 미만인 제조업체는 4,024개(96.4%)

○ **(화장품)** 세계 경제불황과 글로벌 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등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 화장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22년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23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 반등** 추세

* 화장품 수출액(억달러) : ('19)65.2 → ('20)75.72 → ('21)91.8 → ('22)79.5 → ('23)85.0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장기 연구, 펀드, 시설 투자 등을 통한 우수제품 개발 지원 >

○ **(투자확대)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23, 총 2,61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1천억 원 이상 집중 투자 추진**

* (투자대상)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M&A, 글로벌 진출 기업 등

○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신약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해 혜택 부여('12년~)

* (현황) '23.12월 기준 46개사, (인증혜택) 정부 R&D 참여 시 가점, 세제지원 등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에 대한 **연장 평가**(6월 28개사/12월 5개사)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신규인증은 2년마다, 인증연장은 3년마다 실시

○ **(R&D)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 글로벌 공동연구** 중심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 및 **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임상 경쟁력 강화

*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복지·과기·산업, 총 21,758억원(국고 14,747억원+민간 7,011억원),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사업**('23~'27, 총 194.38억원)

- **(의료기기)**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에 이르는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20~'25,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공동 총 9,876억원), 수요자중심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23~'27, 총 266억원),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24~'28, 총 472억원)

- **(화장품)** 피부취약층(민감피부, 노화, 탈모 등)의 피부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피부과학 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R&D, '23~'27, 총 438억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제약)** 美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보스턴 **CIC 입주기업 확대**(23년 20→24년 30개) 통한 **글로벌 C&D 강화 지원**('24년, 11억)

* 전문 기술자문단(C&D SAB) 구성하여 법인설립·인허가 등 분야별 컨설팅 및 주요 학회·투자설명회 등 협업 체계 구축

○ **(의료기기)** 국내 유망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및 현지 플랫폼** 운영**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최대 15백만원 10개 기업)

** 3개소 운영 : 베트남('13년~), 인도네시아('13년~), 미국('21년~)

○ **(화장품)**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 확대·다각화 지원을 위해 신흥시장** 대상 **팝업부스 운영, 전략국** 대상 **판매장 운영**

* '24년 해외 화장품 판매장 4개국 및 팝업부스 4개 도시 운영 예정

< 제약·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

○ **(생산)** 현장 수요 맞춤형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GMP 수준 대규모 교육시설 구축 및 실습 교육 제공*

* K-NIBRT 센터 구축 및 시범교육과정 운영(인천 송도,'21~'25),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전북 정읍, '22~'25) 및 K-BIO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23~'25) 구축

- (K-NIBRT)**양성규모 확대**('23년 450명 → '24년 600명) 및 **교육과정**(첨단바이오·규제) **신설,** (교육시설)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감독 강화**

○ **(연구)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운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산업 전주기** 특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수렴 및 커리큘럼 반영** 등 추진

* 학생 장학금,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학위과정(석사)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및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 **(화장품)** 규제대응 및 인력양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유럽('13), 중국('21)에 이어 미국('22)에서도 화장품 제품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규제 강화

** '22년 57명 → '23년 219명 → '24년 400명 전문인력 양성 점진적 확대

< 최신 정보 및 국산제품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통합적 지원 >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기업 대상 유관기관·전문가 연계 **통합 컨설팅 제공 및 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찾아가는 상담(1회) 및 기업맞춤형 테마 상담 운영(4회) 및 전주기 통합상담 지원('23년 395건)

○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의료진의 국산제품 사용 경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시설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병원형 훈련센터** 및 지자체 연계 **광역형 훈련센터**를 통한 **신규 교육 개발** 및 의료진 대상 **교육 확대 추진**

* ('24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10건, 교육 운영 100건 예정, 총 41억원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 통한 **의료계 내 사용경험 확대**와 **공신력 확보** 지원

* ('24년) 사용자 평가지원(18건, 20억원) 및 의학회연계 의료진 지원(3건, 4.2억원)

○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 의료기기 R&D산출물의 **의료현장 도입** 및 **글로벌 규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지원체계 마련

- 의료기기 중점분야의 병원 기반 **실증지원센터*** **구축** 및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임상시험·실사용평가 지원**

* **주력기술**(영상·계측진단, 체외진단, 치과), **사회문제해결기술**(보건안보, 고령화), **유망기술**(의료용 로봇,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 총 37.2억원

○ **(K-뷰티 체험홍보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 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 운영('21. 1개(명동) → '24. 2개(명동, 홍대))

* 뷰티제품 전시, 상설체험, 뷰티 세미나,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Arab Health 2024 연계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운영	1월	
	국가신약개발사업 제2대 사업단장 선임 및 1차 과제 공고	1~2월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 지원대상 공모	1~2월	
	K-뷰티 체험홍보관 참여대상 기업 및 제품 선정(1·2차)	1~3월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	1~3월	
	K-NIBRT 연차평가 실시 및 항체공정 이론·실습 교육 운영	1~4월	
	K-뷰티 체험 · 홍보관 2호점(홍대점) 개소	2월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및 판매장 운영기업 공모	3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10대 대표성과 성과보고회 개최	3월	
2/4분기	국가신약개발사업 1차 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4월	
	2024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최	4월	
	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신규과제 선정	4월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협약 및 연구 개시	4월	
	K_NIBRT 백신공정 이론·실습 교육과정 운영	4~6월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	4~6월	
	K-뷰티 체험홍보관 참여대상 기업 및 제품 선정(3차)	5월	
	세계 임상시험의 날 행사 개최	5월	
3/4분기	국가신약개발사업 2024 Global Biotech Showcase 개최	7월	
	국가신약개발사업 2차 과제 공고 및 선정평가	7~9월	
	K-뷰티 체험홍보관 참여대상 기업 및 제품 선정(4·5차)	7~9월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및 판매장 개관	7~9월	
	K-NIBRT 특화과정(재직자,고교생 등) 실시 및 국제기구 협업 교육 운영	7~9월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착공식	8월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개최	9월	
4/4분기	국가신약개발사업 2차 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10월	
	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KIC) 개최	10~12월	
	K-NIBRT 첨단바이오의약품 이론교육과정 신설·운영	10~11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신규 공모	10~11월	
	K-뷰티 체험홍보관 참여대상 기업 및 제품 선정(6차)	11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규·연장 평가 시행	11월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연차/단계 보고서 접수 및 단계평가 실시	12월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결과 보고	12월	
	특성화대학원(제약/의료기기) 연차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12월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결과보고	12월	
	「K-블록버스터 미국진출」 사업 결과보고	12월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연중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외국 기업, 의료기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회의·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특성화대학원 운영회의를 통해 대학(교육제공자)·기업(인력수요자) 의견 청취	’24.1월
간담회	바이오헬스 기업 글로벌 협력 간담회	’24.3월
간담회	중국 수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24.3.14
회의	임상시험 분야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민관협의체 16회 (4개 협의체, 협의체 당 분기별 4회) 개최	‘24.3월, 6월, 9월, 12월
행사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개최	‘24.7월
회의	국가신약개발사업단-SNU Science Conference 공동 개최	‘24.8월
세미나	국제공동세미나 개최(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24.11월
세미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및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 결과 세미나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제약·바이오)**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해외 진출 확대**, 국내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의료기기산업)**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확대**, **전문 인력 양성**, **혁신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등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화장품산업)** 중소화장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산업진흥(Ⅱ-4-일반재정(5))			
① 보건산업진흥(3039)		722	671
■ 제약산업 육성지원(300)	일반회계	446	327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301)	일반회계	213	197
■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구축(303)	일반회계	155	1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제약바이오수출액 (억 불)	70.4	80.8	75.5	77.9	최근 4년('20~'23년) 제약바이오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3.1%)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 ('20년) 68.9억불, ('21년) 70.4억불, ('22년) 80.8억불, ('23년) 75.5억불	제 약 바 이 오 분야 수출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 재가공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과제의 매출액 증가율(%)	40	40	40	40	최근 3년('21~'23) 실적(40%)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테스트 지원 제품의 매출액 증가율 / 지원 과제 수 주1. 매출액 증가율이 (-)면, 0%로 처리 주2. 매출액 증가율이 40% 이상일 경우, 40%로 처리	지원기업 대상 매출액 조사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활용 건 수(건)	-	-	신규	2,000	최근 3년('21~'23) 활용 건 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20년) 1,921건, ('21년) 2,018건, ('22년) 2,147건	화장품 안전성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활용 건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안전성 통합 정보 시스템 가입 회원 대상(2,769명) / 시스템 통계 조사 자료

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Ⅳ-1-④,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추진배경 (목적)

○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확대·성장**에 따라, '09년「의료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16년「의료해외진출법」제정**을 통해 **규정 완비**

○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가 경제 활력**을 **견인**

* ('21)10.4조 달러(연평균50.1%)→('27)14.5조 달러(연평균6.7%)(출저: Fitch solutions, '22)

○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발판삼아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요구 증대**

*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병원운영 노하우, 건강보험제도를 보유했으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지원 부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급부상**, 신종감염병, 고령화 대비 등 보건의료 관심증대로 **한국의료 해외진출 기회 확대***

- 국내 의료기관, 보건산업 기업의 **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필요**

* 해외진출 건수 : ('20년) 25건 → ('21년) 34건 → **('22년) 37건 → ('23년) 41건**

**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1년 10.4조달러에서 **'27년 14.5조 달러** 지속적 성장 반면, **한국 점유율은 '21년 0.15조달러(1.16%) 저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024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2차 종합계획('22~'26)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 수립**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선점**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3대 중점 전략 및 7대 주요과제의 실행계획 마련**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정책협의회)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따른 정책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24.1.9.공포, 7.10시행)

- **(사전·사후관리)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 상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사전보고 의무삭제 및 보고항목 축소**를 통한 **외국인환자 대상 ICT사전·사후관리 활성화 유도**

- **(인증마크)** 기존 **의료기관 평가인증(KOIHA)과의 절차** 및 **인증마크 통합**을 통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 **(진료비 부과실태)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수립 및 통계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한 유치의료기관의 진료비 부과실태 조항 마련**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평가·인증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시행('22.12.22)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4주기 평가인증 추진** 및 **홍보 강화**

* 명칭변경(평가·지정제→평가·인증제), 유효기간 변경(2→4년), 조건부인증(1년) 추가 등

· **「메디컬코리아 2024」** 등 채널을 통한 평가·인증제 홍보

- **(ICT 사전·사후관리)** 높은 수준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 사업 운영**을 통해 **치료 효과성 제고**

· '24년 신규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23년 우수 사업기관 지속 지원

- **(외국인환자 편의제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의료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및 **불법유치행위 근절 등 시장 건전화 지원**

· 시장 건전화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 등 추진

- **(한국의료 홍보)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강화**

  · **(의료인 연수)** 유·무상 연수 지속 운영, 유상 연수기관 확대, 무상 연수 교육 과정 추가 개발 등 제도 내실화

  · **(나눔의료)**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초청 진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 **(국제행사) 보건·의료체계 우수성 홍보** 및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4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3.14.~15.)' **개최**

  · **(브랜드 확산) 한국의료 브랜드 'Medical Korea'** 활용, 주요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중증 의료 중심 해외 홍보 확대** 추진

○ **우수한 K-의료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우수기관 인센티브)**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가칭) K-헬스케어 마크'** 부여 및 **거점협력센터 지정**

- **(신고제도 개선)**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해 **산업화 지원**

* 「의료 해외진출법」 개정 추진('24.하) → 신고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 **상법상 회사 포함**

- **(진출사업 고도화)** 해외진출 사업의 지원유형, 수행체계 등을 개선하고 사업간 유기성을 확보하여 효율성 제고

○ 의료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강화)** 해외 의료기관 개설, 운영컨설팅 등 K-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사업단계별 집중 지원**

* 프로젝트 지원사업 ('23) 최대 3억 → ('24) 최대 5억, 동반진출 및 중대형 지원 강화

- **(전문가 컨설팅 확대)** 해외진출 관련 **법률·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프로젝트 **밀착 지원**

* 분야별 해외진출 전문가(GHKOL, Global Heathcare Key Opinion Leader) 재정비 및 충원, **그룹 자문단의 심화컨설팅 확대 실시**

- **(국제입찰 조달시장 참여지원)** 국제기구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신속한 입찰 정보제공** 및 **국제입찰 전문성 제고**

○ ICT기반 K-의료시스템 수출 촉진

- **(수출지원) 진출국가의 관심분야**(원격·비대면진료·AI진단 등)와 **국내 우수기업을 매칭하여 현지에서 시범사업** 지원 강화

* 시범사업 ('23) 2억 → ('24) 3억원↑, 해외실증 ('23) 0.5억 → ('24) 3억원↑, 기업 맞춤형 지원

- **(판로개척)**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력의 **해외시장 인지도 확산**을 위해 국내외 홍보관, 로드쇼 운영 등 **선진시장 홍보 강화**

*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지원 및 해외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메디컬코리아 보건의료 분야 관련 협력 논의(G2G)	'24.3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사업 공고	'24.3월	
	ICT 사전·사후관리 수행기관 공모·선정	'24.3월	
	메디컬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개최	'24.3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선정	'24.3월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선정	'24.3월	
	의료 해외진출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데이)	'24.3월	
2/4분기	국제입찰 정보제공 주기 등 개선	'24.4월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대상자 공모·선정	'24.4월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 사업 수행	'24.4월	
	유치 통합 고시 제정	'24.5월	
	2024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24.6월	
	나눔의료 대상자 모집 공고	'24.6월	
	'24년도 온라인 불법 유치행위 모니터링	'24.6월	
3/4분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4.7월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략 세미나 개최	'24.7월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 선정 방안 마련	'24.7월	
	국제입찰 참여기업 컨설팅 및 교육	'24.7월	
	ICT 사전·사후관리 사업 중간 점검	'24.8월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지원사업 중간점검	'24.9월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쇼 참여	'24.9월	

4/4분기	나눔의료 대상자 선정 및 치료	’24.11월	
	온라인 연수(MKA e-dlass) 교육 운영	’24.11월	
	ICT 사전·사후관리 수행기관 최종 평가	’24.12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24.12월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지원사업 성과 교류회	‘24.12월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최종결과 보고	‘24.12월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 선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유치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담당 지자체, 국제의료협회 회원기관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제언 청취 등

○ **(인재양성 협의체)**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사업 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진출간담회)**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기업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한국국제의료협회 정기 총회	‘24.2월, 12월
간담회	의료 해외진출 전문가 자문	’24.2월
간담회	의료 해외진출 다기관 의견수렴	’24.5월
간담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무 지자체 의견 수렴 간담회	‘24.6월
회의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 협의체	‘24.8월
간담회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관 간담회	’24.12월
간담회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기업 간담회	‘24.12월
간담회	권역별 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중동, CIS, 아세안)	~’24.12월

□ 기대효과

○ **관련 법·제도 정비, 시행계획 수립·이행**등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여

○ 한국 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 수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3037)	일반회계	115 (115)	107 (107)
▪해외환자 유치지원(300)	일반회계	49	44
▪의료시스템 수출지원(301)	일반회계	66	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해외환자 유치수(만명)	14.6	25	34 (추정)	40	'23년 추정치(34만명) 대비 약 20% 증가 ('27년 70만 달성 위해서는 매년 약 20% 증가 필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실환자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시스템 (www.medicalkorea.or.kr/korp)
의료 해외진출 수 (누적건)	125	162	204	239	○ '23년 의료 해외 진출 누적건수(204건)의 17.2% 상향 목표 설정	'24년도에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진출*로 신고 완료된 건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신고확인증 발급 건수

※ 지표변경사유

의료 해외진출은 상품과 같은 현물수출이 아닌, **의료 서비스(업) 진출로 단년도 실적이 아닌, 누적실적으로 관리함이 적정**

*** 한국 의료시스템(운영, 컨설팅, 교육, IT시스템)이 해외에 진출하여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누적관리가 적정**

서비스업의 경우 국제관계(정세)에 따라 **진출실적 변동폭이 커 전년대비 증가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단년도 개념 지표설정 부적정**

* 또한, 최근에는 유형별 컨소형태 진출이 증가하여 누적관리가 적정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러우전쟁 등 상황에도 단년도 실적을 계속적으로 전년대비 10% 증가률을 적용하였으나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설정의 "도전성"에 문제제기('22,23년 업무평가)

<단년실적 vs 누적건수 비교>

구분	'20	'21	'22	'23	증가율	'24	'25
단년실적(현행)	25	34	35	41	10%	45	49
누적건수	91	125	162	204	17%	239	280

* 재정사업 성과지표 ('23년까지) 단년도 진출건수 → ('24년부터) 누적건수 변경

성과목표 Ⅳ-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1) 주요 내용

□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ㅇ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의료서비스 혁신*** **도모**

  * ①정밀의료 및 예방의료, ②개인맞춤 건강관리, ③일상·건강·의료 연속 서비스 등

- ㅇ **ICT 기술을 활용,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 협진** 등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 ㅇ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실제 **교류 정보의 양 제고**
- ㅇ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성공적 시행**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ㅇ **100만 명 규모 임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통한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 촉진**
- ㅇ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 연구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원인정보** 등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ㅇ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개발, 가상환자·가상세계 기반 의료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ㅇ 의료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고품질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세포·유전자 치료, 바이오 인공장기 등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 · 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정비**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위험도 분류체계 정비, 치료계획 심의, 치료비용 관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실시 기반 마련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신설**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적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체계화**, 임상연구 인력 **교육** 제공, **연구심의 전문성** 제고,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 유전자전달체, 인공아체세포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 수 ·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관리과제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 수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 ·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전송 건수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심사건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데이터셋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 연구 건수 ·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항목 마련 · 데이터 · AI 인력 양성 교육 참여자 만족도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 임상연구 신청건수 · 재생의료 R&D 사업 기술이전 건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 (누적, 개소)	신규	245	860	1,003	'23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후,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 의료기관 확산이 중요하므로 본가동 대비 약 16.6%* 상향된 143개소 추가 목표 * '23년 기준 누적 참여 의료기관 대비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된 의료기관 수	자체 수집(건강정보 고속도로)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누적, 개소)	34	56	85	101	전년도 목표치(76개소)에 21~22년 실적치 증가분(+22)과 22~23년 실적치 증가분(+29)의 평균(+25) 값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보건복지부 지정통보 (복지부 홈페이지 및 첨단재생의료 포털 게재)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 주요 선진국은 국가차원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으로 미약하여 **의료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곤란**

- **국가적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 민감정보 유출 등 우려**

○ **보건의료데이터**는 건강,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유출 우려**와 **규제 완화 요구** 간 **균형점**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를 통해 **활용 확대** 추진

□ **첨단재생 법·제도 시행 초기로 신규 정책 개발 및 관련 분야의 빠른 기술환경변화 대응 필요**

○ 법 시행 초기, **빠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신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발굴 등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뒷받침** 필요

○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유형별, 핵심원천·제조·상용화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핵심 공백 기술 적극 발굴

-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 적극적인 상용화 연계 등을 통해 재생의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여 지원할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Ⅳ-2-①, 의료정보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의 중요성** 부각

* 국민 다수(76.9%) 개인 건강정보를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희망, 실제 활용한 경우는 30.7%에 불과(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20) / 병원 진료기록·검사결과 전송·활용 희망 비율 81.5%(4차위, '20.1)

-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국민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조회·저장·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미흡

⇨ **환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능동적 참여, ICT를 활용한 의료정보 응용 확산기반 마련** 필요

○ OECD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이나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는 지속

-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빠른 진단, 적시 신속한 치료 제공을 통한 **효율적 의료자원 투입 방안 마련** 절실

○ **의료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류, 과거 진료기록 공유** 등을 지원하여 지역 협진 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 **의료 질 제고, 환자안전 및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국가 차원 제도적 관리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의료분야 비대면 문화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로 **디지털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본방향)**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하여, 환자안전 강화, 의료 질 향상, 국민 건강증진 기여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23.9월~) 연계 의료기관 확대 및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확대

- 플랫폼 기반 개인 건강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의료정보 응용)**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ICT를 활용한 혁신 의료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의료취약지(섬·벽지 등) 주민, 복막투석 환자 등에게 ICT를 활용한 진료협진을 지원하여, 의료접근성 제고

-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기획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여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 확보

* 대상정보 : 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CT · MRI 등 영상정보

-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업 내실화 방안 추진

○ **(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통과 시 제품·사용 인증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및 품질 향상 도모

-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하고, 의료현장 확산 추진을 통해 EMR 인증제도 안착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건강정보 고속도로 미참여 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24.1월	
	EMR 2주기 인증 시범사업설명회	'24.2월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 모집 공고	'24.2월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24.3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업체 선정·심사	'24.3월	
	나의건강기록앱 국민활용 실적 분석·보고	'24.3월	
2/4분기	진료정보교류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24.4월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및 계약	'24.4월	
	의료기관 원격협진 운영체계 및 시스템 구성 요건제언 연구용역추진	'24.4월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발도구(SDK) 시범운영	'24.5월	
	EMR 2주기 인증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24.5월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발도구(SDK) 배포	'24.6월	
3/4분기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교류 이력 확인 등 진료정보교류 누리집(mychart)개편	'24.8월	
	'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 선정	'24.9월	
	의료데이터 활용기관 선정심사 제도 마련·시범적용 착수	'24.9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 지침 개정	'24.9월	
4/4분기	나의건강기록 앱 국민활용 경험 설문조사 실시	'24.10월	
	의료데이터 생산·제공·활용 인센티브 방안 마련	24.11월	
	나의건강기록 앱 장기기증 희망 신청·조회 기능 구현	'24.11월	
	의료기관 원격협진 운영체계 및 시스템구성 요건 마련	'24.12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성과보고회	'24.12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R&D 성과교류회	'24.12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2주기 인증기준 해설서·시험절차서 발간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건강정보 고속도로 이용 확산을 위한 데이터 제공기관, 활용기관 대상 현장 사업설명회, 월간회의 등 추진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사업 간담회 및 심포지엄 등 추진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표준제품 개발 유도 및 의료질 제고를 위한 이해단체 간담회 및 인증기준 개정 등 추진

○ 원격협진 제도 및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의 정례적 협의회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공문시행	'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예산·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24.2월
공문시행	'23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주요실적 시도 및 지자체별 분석·환류	'24.2월
간담회	원격협진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24.3, 6, 9월
현장방문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	'24.3~4월
현장방문	약물알레르기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시범구축 심포지엄 개최	'24.4월
간담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시도 담당자 간담회	'24.3월, 10월
현장방문	의료기관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현황 현장점검	'24.6월
간담회	진료정보교류 사업 의료정보업체 간담회 개최	'24.6월
회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대상 운영협의회 개최	'24.7월
현장방문	의료마이데이터 활용·연계 기업, 과기부 합동 현장방문	'24.11월

□ 기대효과

○ 개인 건강정보 활용생태계 조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돌봄 전달체계 강화, 국민 참여 기반 건강관리 활성화 등 국민 체감 혁신 서비스 구현

○ 보건의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진료연속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 및 합리적 의료비용 관리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혁신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산업육성(Ⅱ-4-일반재정①)			
① 보건산업정책(3033)	일반회계	21 (193)	16 (164)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운영(504)		21	16
보건산업육성(Ⅱ-4-일반재정②)			
① 의료정보 활용 정책지원(3034)	일반회계	199 (233)	226 (226)
▪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301)		7	6
▪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302)		32	34
▪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사업(304)		97	122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307)		63	64
보건의료연구개발(Ⅱ-4-R&D)			
①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일반회계	138 (5,266)	218 (6,671)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510)		63	83
▪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511)		75	135
공공보건의료확충(Ⅱ-2-일반재정⑧)			
① 의료취약지 지원(2750)	균특회계	168 (209)	172 (214)
▪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300)		168	1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 수(누적, 개소)	신규	245	860	1,003	'23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후,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 의료기관 확산이 중요하므로 본가동 대비 약 16.6%* 상향된 143개소 추가 목표 * '23년 기준 누적 참여 의료기관 대비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된 의료기관 수	자체 수집(건강정보 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누적, 개)	7,002	7,509	8,605	9,400	의료기관 참여 현황 및 확산계획에 근거하여 목표 설정	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 수(누적)	자체수집(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전송 건수(만건)		26	38	40	영상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약 400개소)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영상정보 건수 약 5% 확대 목표	의료기관에서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한 영상정보 건수(당해년도)	자체수집(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심사건수(건)		50	96	100	2주기 인증시행('25.1월) 전으로 인증심사건수 증가 요인이 적어 전년과 유사수준의 인증심사 건수 목표 설정	인증위원회의 인증 심의 건수(당해년도)	전자의무기록 인증심사 결과(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2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Ⅳ-2-②,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추진배경 (목적)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의료현장과 접목하여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기획, 의료 질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보건의료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 기반 구축**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국정과제 25-4)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 **(거버넌스)** 정부, 의료계,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현장소통)**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운영, 브리프 발간, 현장 간담회 등 실시로 데이터 활용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소통 강화**

○ **(가이드라인)**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비정형의료데이터 가명정보 처리 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지속 개정**

(2) 고품질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산업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 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

* 유전체 데이터(불변)와 보건의료 데이터(임상정보, 공공데이터 등, 지속·추적)로 구성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데이터 및 활용 인프라·인력 등 지원체계 마련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암 질환 대상** 의료기관 임상 정보, 공공기관 청구·검진·사망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활용 추진**

- **(공공)**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전체 암 환자 정보를 결합·개방
- **(임상)** 10개 암 임상데이터를 암종별로 표준화·적재('24. 폐암·췌장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데이터 확대 개방 및 신속한 결합·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보건의료 표준화)** 표준에 기반한 의료정보의 생산·교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용어, 기술,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등) **표준 고시, 보건의료 표준화 추진단 운영** 및 국내·외 표준 개발 협력체계 강화 등

○ **(디지털 병리 AI) 디지털병리 데이터** 기반 암 진단 정확도 향상 및 판독 시간 단축, 상태 예후·예측 등 **AI CDSS 개발·실증**

*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21~'25, 442억원)

○ **(중환자 AI)** 중환자실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생체데이터 기반**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및 상태악화 예측 등 **AI CDSS 개발·실증**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기술 개발 사업('21~'25, 435억원)

○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술)** AI 성능향상을 위한 스마트(자동화)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술 및 자동 품질평가 기술 개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 개발 사업('22~'26, 171억원)

○ **(임상데이터 활용체계 지원)** 임상 고아군(희귀난치 등) 레지스트리 및 메디컬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분야별 임상연구·진료 체계 구축 지원

* 실사용데이터 기반의 임상연구 지원 사업('22~'26, 314억원)

○ **(의료 메타버스)**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및 병원 운영·관리(원무 프로세스 효율성·접근성 향상 모델) 기술 개발·실증

*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 사업('23~'27, 375억원)

○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AI 신약개발** 관련 온라인 및 현장실습 교육,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한 **직무·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19~단년도 계속사업, 10억원)

○ **(의료AI 융합인재 양성)** 의대(의학)-공대(ICT·AI)-병원(현장·데이터)간 융합과정 개설·운영 및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 개발·운영

*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22~'24, 136억원)

○ **(AI 신약개발)** 안전한 데이터 활용모델인 연합학습 모델 기반 **AI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 추진

*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 사업(복지부·과기부, '24~'28, 348억원)

○ **(응급실 AI)** 응급실 내원 환자 중증도 분류, 대기 중 상태예측 AI 개발(CDSS) 및 실증으로 의료 질 향상, 자원 불균형 완화

* 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사업('24~'28, 228억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3차 개정	'24.1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24.1월	
	보건의료데이터 AI·분야 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협약	'24.1월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추진	'24.2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24.3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안) 마련	'24.3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 계획(안) 수립	'24.3월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개최	'24.3월	
2/4분기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촉진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유관기관 간담회	'24.4월	
	'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R&D 신규과제 선정	'24.4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보고회	'24.4월	
	보건의료데이터·AI분야 연구개발사업 '23년 종료과제 최종평가	'24.5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선도병원 지정	'24.5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연구활용 접수	‘24.7월	
	K-CURE 공공 라이브러리 경진대회 개최	‘24.8월	
	K-CURE 포털을 통한 암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	‘24.8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원격 분석서비스 구축	‘24.9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기관 교육	‘24.9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표준 고시 개정	‘24.9월	
4/4분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 개시	‘24.10월	
	국제보건의료용어표준(SNOMED CT) 국제회의 및 엑스포 개최	‘24.10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24.11월	
	보건의료 데이터·AI 분야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회의	‘24.11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 성과교류회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및 활용기관 애로사항 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강화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24.2월
현장방문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현장방문	‘24.3월
협의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 실무협의체	‘24.3, 12월
간담회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기관 간담회 개최	’24.6월
포럼	보건의료 빅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24.11월
간담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국민)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맞춤화된 의료,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 수명 연장

- (의료계) 디지털 기반으로 의료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의료인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산업계)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로 경제 활성화

- (정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 재정 부담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산업진흥(Ⅱ-4-일반재정)			
① 보건산업진흥(3039)	일반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311)		118.9	94
보건의료연구개발(Ⅱ-4-R&D)			
①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일반		
▪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R&D)(317)		34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R&D)(363)		35.9	35.9
▪ 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 지원(R&D)(472)		86.6	76.6
▪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R&D)(463)		92.5	92.5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R&D)(464)		91	91
▪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개발(R&D)(505)		75	75
▪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R&D)(546)		-	23
▪ 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R&D)(545)		-	36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520)		-	170.5
보건산업정책(Ⅱ-4-일반재정)			
① 보건산업정책(3033)	일반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503)		27.3	27.2
보건의료정보표준화(Ⅱ-1-일반재정)			
① 보건의료정보표준화(4348)	일반		
▪ 국가보건의료표준화(300)		19.5	2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데이터셋(건수)	신규	31	35	40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공개 데이터셋 수	데이터 제공기관의 데이터셋 측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셋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연구 건수(건)	146	150	165	175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3년 대비 10건 상향 조정	연구 결과보고서+논문+출판 건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논문
핵심교류데이터 (KR CDI) 항목 마련(건)	신규	신규	77	81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상호교류에 필요한 핵심교류 데이터(KR CDI) 항목 확대를 통해 의료데이터 표준화 기반 마련 * 한국 핵심교류 데이터의 현장 확산을 고려, 전년항목 대비 5% 향상	핵심교류데이터 (KR CDI) 항목 수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데이터·AI 인력양성 교육 참여자 만족도	신규	신규	4.16	4.1	교육참여자 응답 평균 "만족" 수준에서 '23년 만족도 결과를 고려 전향적 목표 설정 * 5점 만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23년 실적 수정(4.3 → 4.16) (종료사업인 정밀의료인재양성 사업 실적 제외)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데이터·AI 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결과

3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Ⅳ-2-③, 재생의료정책과)

□ 추진배경 (목적)

○ **첨단재생의료**는 **미래 바이오 新산업의 핵심***이자, **중증 희귀·난치질환자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미래의료 핵심기술**

*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시장은 '19년 230억달러(한화 약 30조원)에서 '30년 1,280억달러(한화 약 168조원)로 연평균 17.5% 성장 전망(SPER, '22년)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20.8월)으로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임상적용 경로 구축** 등 **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존 합성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물질의 특이성·복잡성, 장기간 체내 유지, 인체 투여 후 배설 제한, 짧은 유효기간, 환자 맞춤형으로 대규모 임상 한계

○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시행('21.1)하고, 3차례 시행계획 마련**

* ①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제도화, ②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접근성 확대, ③기술촉진 혁신생태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행계획 마련, 정책 추진 중

- **국정과제**(25-1,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에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민간 임상연구 지원 확대'** 포함

-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신설('25.2 시행예정)

* 치료제도 도입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국회 통과('24.2.1), 공포('24.2.20), 시행('25.2.21 예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첨단재생의료 치료 접근성 확대 및 임상연구 활성화**

- **(치료 접근성 확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치료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시스템 정비 등 추진***

* 하위법령 및 지침에 치료제도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별도 연구용역 추진), 치료의 진행상황 보고,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준비

- **(임상연구 활성화) 심의체계 개선*** 등으로 연구 실시** 확대, **개정법 시행 준비***** 및 **임상연구비 지원예산**('25~) **확보** 추진

* 2기 심의위 구성 · 운영, 연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진

** (적합 임상연구 현황) ('21) 8건 → ('22) 6건 → ('23) 23건 (총37건)

***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심의위 위원수 증원(20→25명) 등

- **(임상연구 안전관리)**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안전성 모니터링**,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실시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 및 역량 강화**

- **(기관 지정) 임상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 23.12월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총 85개소 지정 완료

· 표준작업지침서 작성가이드 및 예시모델 개정, 심사 **사례집 발간,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용IRB 위탁 등 **지원 강화****

* 기존 임상연구 수행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분석·조사 내용 반영 등

** '24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101개소 이상 지정 목표

- **(연구역량 강화)** 임상연구 관련 **생명윤리(IRB) 전문과정 및 기초이론 교육 등 신규교육** 기획 및 GMP 시설 활용 **심화교육* 등 제공**

* 인체유래세포(MSC 및 T-cell) 배양 실습 중심 현장형 교육

○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 **(범부처 R&D)** 희귀·난치 질환 등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재생의료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1~'30, 5,955억원, 복지·과기)

** '24년 연구개발과제 149개 지원(계속 128개, 신규 21개)

- **(임상연구) 임상연구 연구비**(21개 과제) **및 연구기반**(8개 과제) **지원***, 사업 일몰에 따른 **2단계 지원 사업 기획** 추진('25~'28년, 490억원)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21~'24, 422억원),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22~'26, 465억원)

- **(유전자전달체)** 유전자치료제 필수 핵심소재인 **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을 위한 **과제(12개) 신규 지원**

  * 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 가속화 사업('24~'27, 354억원)

- **(인공아체세포) 체내에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신규인자 발굴**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과제(3개) 신규 지원**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24~'29, 420억원, 복지·과기)

- **(비임상평가법)** 임상시험과의 정합성이 높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등을 위한 **'25년 신규사업 기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사업('25~'29, 499억원, 복지·산업)

○ **혈액 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재생의료 기술개발 연구지원**

- **(이종장기)**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이종 고형장기** 및 **이종 세포·조직 이식 기술 개발 과제(9개) 지속 지원**

  *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23~'27, 360억원)

- **(인공혈액)** 수혈용 혈액 부족 현상 개선을 위한 **인공혈액 생산 기술 확보** 및 평가법 개발 등을 위한 **과제(11개) 지속 지원**

  *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23~'27, 451억원, 복지·과기·산업·식약·질병)

○ **첨단재생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산업실태 파악)** 급변하는 첨단재생의료 **산업 현황 파악** 및 **신기술**의 **선제적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산업 실태조사*** 실시

  *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 산업체 대상 연구개발, 투자유치 현황, 인프라 규모 등 조사

- **(상용화촉진) 범부처 R&D 과제** 중심으로 **특허, 규제대응, 기술이전** 등 컨설팅 제공, **기술가치평가 시범사업(3개 과제)** 등 제품화 가능성 제고

  * 사업화하려는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원칙 및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사업화 역량 판단의 근거로 활용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 제1차 수시 접수·평가 공고	'24.1월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24.2월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24년도 과제 최종평가	'24.2월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개정	'24.2월	
	· 인공아체세포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 사업단장 공모	'24.2월	
	· 인공아체세포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	'24.3월	
2/4분기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24.4월	
	· 인공아체세포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	'24.4월	
	· 인공아체세포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평가	'24.4월	
	·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24.4월	
	· 인공아체세포기반 재생치료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	'24.6월	
	· 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가속화사업 신규과제 공고	'24.6월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24.6월	
3/4분기	· 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4.7월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심사 사례집 발간	'24.7월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작성가이드 개정	'24.7월	
	· 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가속화사업 신규과제 선정	'24.8월	
4/4분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대상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	'24.10월	
	·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4.10월	
	· 제3기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4.11월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24년도 과제 단계평가	'24.12월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25년도 과제제안서 기획	'24.12월	
	· 첨단재생의료 산업 실태조사 수행	'24.12월	
	· 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평가 시범사업 수행	'24.12월	
	·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24.12월	
	· 첨단재생바이오 '25년도 시행계획 수립	'24.12월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의료기관 및 임상연구자, 주요학회, 산업계 등과의 간담회, 설명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운영을 통한 민·관 소통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책임자 및 관계자 대상 연구 설계 및 수행 단계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24.3월
설명회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전국 권역별 설명회 -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신청, 연구 단계별 절차 등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24.6월
포험	· 첨단재생의료 인재양성 포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최신정보의 학습기회 제공 등을 위해 유관학회와 공동 포럼 개최	'24.7월
간담회	· 첨단재생의료 R&D 성과교류회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 과제 연구자 우수성과 및 최신 연구동향 공유	'24.8월
포럼	·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 - 글로벌 재생의료 기술·산업·정책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공유	'24.10월
간담회	· 첨단재생의료 기술교류회 - 기술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술 소개 등 소통의장 마련	'24.10월
포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포럼 - 주요질환별 임상연구 개발 경험 및 규제현황 등 발표를 통한 임상진입 및 활용방안 모색	'24.10월
간담회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간담회 - 재생의료 연구자 의견수렴 및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4.11월

□ 기대효과

○ 중증 희귀·난치 등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및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술발전을 통한 **산업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보건산업정책(Ⅱ-4-일반재정(6))			
① 보건산업정책(3033)	일반회계	31	30
		(193)	(164)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505)		31	30
보건의료연구개발 R&D(Ⅱ-4-R&D(1))			
①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일반회계	458.5	599.5
		(5,611)	(6,84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443)		291.5	353.1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475)		91	101.8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R&D)(485)		60	60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R&D)(522)		16	15.5
▪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가속화사업(R&D)(540)		-	50.5
▪인공아체세포기반 재생치료기술개발(R&D)(541)		-	18.6
② 보건의료연구개발(3040)	국민건강증진기금	161	-
		(2,789)	
■ 첨단의료기술개발(R&D)(305)			
- (내내역)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R&D)		16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공통)	34	56	85	101	전년도 목표치(76개소)에 21~22년 실적치 증가분(+22)과 22~23년 실적치 증가분(+29)의 평균(+25)값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누적, 개소)	보건복지부 지정통보 (복지부 홈페이지 및 첨단재생의료 포털 게재)
임상연구 신청건수	신규	신규	신규	150	21~23년 전체 신청건수(113건)의 평균값(+37)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임상연구 신청건수(누적)	첨단재생의료 심의위 사무국 자료
재생의료 R&D 사업 기술이전 건수	신규	신규	신규	36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목표치(~'27년, 48개)의 75%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	기술이전 건수 (누적)	보건의료 R&D 포탈 HTDream

Ⅳ 협업과제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 과제 목표

○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 이용량** 등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

○ **필수의료** 및 **의과학 연구 분야** 등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인력 양성**

□ 주요 내용

○ **(의대정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 국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3,058명 →5,058명)

○ **(필수의료 분야)** 외상·소아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참여 지원**

○ **(공동수련 시범사업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고,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의료환경 수련**을 **제공**

□ 부서 간 협업 필요사항

○ **(의료인력정책과) 의대정원 확대 및 수련환경 개선**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24.2.1.)의 **구체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 부담 경감

○ **(지역의료정책과·공공의료과)** 민간·공공병원 육성 및 국립대병원 거점화

□ 추진계획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통해 실천 로드맵 마련('24.上~)

2.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 과제 목표

○ **중증·응급환자** 등 **적기치료 실패 사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제공, 보상 강화 및 인력 확보 대책 등 **추가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한 **정책성과 도출**

□ 주요 내용

○ **필수의료 강화방안 수립**

- **중증응급, 분만, 소아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방안 마련**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 정책연구, 포럼 및 의료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과제 발굴 및 정책 보완**

○ **지역완결적 진료체계 구축**

-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완결적 소아진료 제공체계 구축**

□ 부서 간 협업 필요사항

○ **(필수의료총괄과)**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과제 발굴**

○ **(공공의료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지원확대**

○ **(보험급여과)**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불제도 다변화 추진

□ 추진계획

○ 정책 설명회 및 의료진 간담회, 의료현장 방문 등 **지속적인 정책 현장 의견수렴 추진**(연중), 소아의료 등 **추가대책 수립**(3분기)

3.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비대상 처리기준 개선

□ 과제 목표

○ **유사·중복 비대상 항목 정비**

- 비대상 처리기준 항목 간 유사 중복으로 동일한 상황을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입력***(빈집, 이사, 연락두절)

* 현장조사 결과, 발굴 대상자가 주소지에 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웃 증언 등에 따라 빈집, 이사, 연락두절로 비대상자 등록

○ **비대상자 등록 후 사후관리 기능 마련**

-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대상자 등록을 통해 **종결 처리, 추가적 관리 절차 부재**

< 비대상자 개요 >

- **(개념)** 위기 변수가 입수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중 **지자체 조사 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비대상자로 관리
- **(운영 배경)** 지원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의 반복 통보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지자체 **사각지대 발굴업무 효율성 제고**
  - 비대상자 등록 시 입수되는 위기 변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서 제외(단, 연락두절, 이사, 정보 불일치는 예외)
- **(관리 현황)** 빈집, 이사, 사망, 소득재산 초과, 장기출타, 연락두절, 정보 불일치 등 **15개 유형**으로 **등록 관리**

□ 주요 내용

○ 비대상 항목 분류 시 **포괄성, 상호 배타성 원칙** 준수

- 빈집, 이사, 연락두절 항목은 현장 방문 시 이웃의 증언,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입력되고 있어 세부 항목 구분 삭제**

○ 소재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관리를 위한 **소재 확인 대상 신설**

- 빈집, 연락두절, 정보 불일치 ⇒ **소재 미확인 대상** 분류

⇒ **소재 미확인 대상자는 “상시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발 및 관리 강화

- 이사, 장기출타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해외 거주 등 명시적 사유를 확인해 **소재 확인 대상** 분류

※ 현재 ①빈집, ②연락두절, ③정보 불일치, ④이사, ⑤장기출타 대상으로 실거주지 사실조사 등 소재 파악 수행 중

□ 부서 간 협업 필요사항

○ **(지역복지과)** 비대상 처리기준 개선(안) 마련, 찾아가는 보건복지 매뉴얼 개정

○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기능 개발

□ 추진계획

○ 비대상 처리기준 개선(안) 마련(3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발(~4월)

○ 비대상 처리기준 개선 적용(5월~)

4.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국민연금 내실화

□ 과제 목표

○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국민연금 개편 필요**

○ **가입**이 **저조**한 **취약**계층(저임금 근로자, 납부예외자 등) 대상 보험료 지원 제도 등을 통한 **가입 유도** 및 **사각지대 축소**

□ 주요 내용

○ **(정부 논의 지속) 자문기구 운영** 등 정부 내 **논의구조 마련**

-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 **사회적 논의과제 검토** 및 **구체화**

  * 보건복지부 산하「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구성 ('24.1)

○ **(국회 지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

-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논의 **기초자료 제공, 실무인력 지원** 등 국회 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 공론화 과정 주요 내용 및 공론화 결과 **홍보 지원**을 통해 **개혁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제고**

○ **(종합운영계획 이행)** 국민-기초연금 역할 정립 등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추진**

□ 부서 간 협업 필요사항

○ **(국민연금정책과)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개혁논의 및 후속 조치 추진, 국회 공론화 논의** 위한 재정추계 등 **기초자료 제공**

○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참여·지원** 및 **제5차 종합운영계획 주요내용·후속 조치 홍보**

○ **(기초연금과) 국회 공론화 과정** 및 **정부 내 자문기구**에서의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 적극 참여·지원**

□ 추진계획

○ **국회 공론화 과정 참여·지원** 계속 (~5월)

5.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 과제 목표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인식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인식전환 추진**

○ 전국민 대상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지원**

□ 주요 내용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Society of all ages) 구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저출산 완화 및 고령화 대응 강화**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핵심과제 발굴·추진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인구정책총괄과) 일가정양립**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

○ **(출산정책과)** 저출산 완화를 위한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 환경 조성 지원**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노인정책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건강과)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 추진**

□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를 통한 일가정양립 및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 **발표**('24.上)

6.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과제 목표

○ **ICT 기술을 활용,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 협진** 등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실제 **교류 정보의 양 제고**

□ 주요 내용

○ **(의료정보 응용)**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ICT를 활용한 **혁신 의료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의료취약지(섬·벽지 등) 주민, 복막투석 환자 등에게 **ICT를 활용한 진료협진을 지원하여, 의료접근성 제고**

-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기획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여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 확보**

* 대상정보 : 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CT.MRI 등 영상정보

□ 부서 간 협업필요 사항

○ **(의료정보정책과)**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CT**를 활용한 **의료정보 응용,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계획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선도병원 지정(5월)

○ 의료데이터 생산·제공·활용 인센티브 방안 마련 (11월)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체계

구 분	임 무	비 고
자체평가위원회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심의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소위원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자체평가실시	자체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총괄지원부서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보완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 입력상황 관리 및 내용 점검·보완
소위원회별 평가지원담당부서	· 소관 분야 과제 실적 점검 · 평가위원 현장점검 지원	소관분야 과제 담당부서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실적 등 입력 보조, 내용 점검·보완

□ 자체평가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민간위원(1인)이 겸임

- 위원 : 실장급 내부위원 및 외부 민간위원(25인)으로 구성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 주요정책(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행정관리,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소위원회 구성

○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는 필요시 수시개최

□ 점검방법

○ 주요정책분야

- 주요정책과제 담당부서에서 분기별 추진실적 작성 후 평가지원 담당부서에서 작성된 내용 점검 및 보완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에서 점검·관리

- 소위원회에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실시

  *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개선방향 제시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상반기에는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하반기에는 자체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

○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분야

- 소위원회에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실시(재정사업은 별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지원담당부서에서 작성된 내용 점검 및 보완

-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

□ 점검일정

구 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정책분야 점검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작성 내용 보완	반기별 실시	평가지원담당부서
재정사업 및 기타 역량 분야 점검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작성 내용 보완	반기별 실시	평가지원담당부서
소위원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수시	평가총괄지원부서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심의·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반기별 실시	평가총괄지원부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정부업무평가와 부내평가를 연계**하여 개인의 주요 업무가 조직의 성과로 드러나도록 평가체계 설계

○ 정부업무평가항목을 부서단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개인평가항목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평가·개인평가 가점 반영 등 실시

□ 최종 평가결과를 **인사, 예산, 보수체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문화정착 유도

○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

* ('23년 반영실적) 평가결과 50% 반영

○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 우수·미흡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며, 예산안 편성 시 반영

□ **우수과제 확산 및 미흡·부진과제 개선**을 통해 성과향상 도모

○ 평가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평가위원 지적사항 및 검토의견에 대해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개선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적인 부내·외 홍보 등으로 확산시키고 부내 학습자료 등으로 활용하며, 미흡·부진사례는 차기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수정 반영

○ 부서평가결과 그룹별 평가 우수 부서 및 성과향상 부서에 대한 포상 실시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0%)	0 (0%)	1 (25%)	3 (75%)	4 (100%)
성과목표	18	30	0 (0%)	0 (0%)	6 (20%)	24 (80%)	21 (70%)
관리과제	72	219	7 (3.2%)	1 (0.5%)	158 (72.1%)	53 (24.2%)	174 (79.5%)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국민건강 검진수검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00	71.3	정량	결과	
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등), 공기업 지출 비율	14.4	정량	산출	
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 점수 *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89.7	정량	결과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바이오헬스산업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 (단위 : 억불)	바이오헬스산업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연간 수출액 현황	323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 실적(건)	최근 3개년 보건의료정책 지원 및 건강보험정책 지원 건수(ⓐ+ⓑ+ⓒ)의 평균치 ⓐ 정부 아젠다 지원 ⓑ 정부시책 반영 ⓒ 법령 제·개정 지원	12.4	정량	결과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개선율(%)	중간현장조사 후 당해연도 '개선완료'한 병원 수/ 중간현장조사 시행 후 당해연도 개선대상 요양병원 수×100	88.0	정량	결과	
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율(%)	성과목표 내 목표달성과제/ 관리과제 수	100	정성	결과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 도착 90분내 최초PCI 시술률(%)	각 센터의 시술률(90분 이내 PCI) 평균의 합/권역심뇌센터 수(14개소)	98	정량	결과	
	책임의료기관 확충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소 수(누계)/「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상 목표 지정 책임의료기관 개소 수(87개소)	83.9	정량	결과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권역응급의료 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 권역응급 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 *100	92.0	정량	결과	
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점)	전국의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간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참여에 따른 건강개선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화	81.5	정성	결과	
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0.0	정성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대상 등록자 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 등록자 수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수	23.5	정량	결과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관리된 인원(명)	32,056	정량	결과	
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한의(韓醫)서비스 개선 추진율	∑각 지표별 ①이용기관 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 (53%)*0.5 ②한의약 R&D 표준 진료지침 개발 건수(5건)*0.5	100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자 비율(%)	복지수혜자 수(A)/전체 빈곤층(B) × 100	37.3	정량	결과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 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건수(만건)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건수 누계 (월단위)	17,061	정량	산출	
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보장률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84.4	정량	산출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자수 + 활동지원 수급자 수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 등록장애인수	47.8	정량	산출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 장애수당 수급자수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 등록장애인수×100	29.7	정량	산출	
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전체 협의 요청 건수 중 컨설팅을 통한 재협의 건, 협의요청서를 수정·보완한 건 및 컨설팅 결과 통보 건의 비율	44	정량	산출	
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심도(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 점수 *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78.9	정성	결과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설문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90	정성	결과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100점 환산)	87	정성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합산 (중복 제거)	1,030	정량	결과	
	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개소)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150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방식	85	정성	결과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서비스 이용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자	81.2	정량	산출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83.2	정성	결과	
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의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 비중	9.8	정량	결과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 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개발신약 허가 누적 현황(단위 : 건)	국내 개발된 신약 중 해당 연도에 신규 허가된 품목 건수의 누적 합계	38	정량	결과	
	국내 제약기업 의약품 기술수출 규모(비공개 제외) (단위 : 조원)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기술수출 건수 중 공개된 수출금액의 합계	8.7	정량	결과	
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 수(개소)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 수	1,003	정량	결과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개소)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누적, 개소)	101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1.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연내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로드맵 마련	정성	산출	
		의료질평가 지표 사전공개	연내 '26년 평가지표 사전 공개	'26년지표 공개	정성	산출	
		비대면진료 제도화방안 마련	실시현황 분석결과 자문단 운영, 간담회 개최 횟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방안 보완	정성	산출	
		전문병원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연내 제도개선로드맵 마련	로드맵 마련	정성	산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24.5)	위원회 구성	정성	산출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의대정원 확대(명)	'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명)	2,000	정량	산출	
		'25년도 레지던트 정원 비수도권 배정 비율	(비수도권에 배정한 '25년도 레지던트 정원 / '25년도 레지던트 총 정원) × 100 *최종정원 기준	46.0	정량	산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컴퓨터시험(CBT) 시행 시험(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컴퓨터시험(CBT) 시행 건수(누적)	12	정량	산출	
	3.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시행규칙 개정 완료	개정 완료	정성	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개정 완료	개정 완료	정성	산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개정	정성	산출	
	4.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①환자안전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 최근 3년간('21년~'23년) 실적치 평균(52.4%) 대비 102% 상향하여 목표치(53.4%) 설정 ②세계환자안전의 날 글로벌 활동보고서 등록(WHO) ③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교류회 개최	100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의료기관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매뉴얼 개정 ①내진보강지원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내진현황 점검 ②의료기관 테러 대응 점검 ③보건의료위기 표준 매뉴얼 개정 ④'24년도 안전대진단 추진	100	정성	결과	
		조정중재 개시율(공통)	조정중재 개시율(%) =(조정·중재 개시 건수(A))÷{조정·중재 개시 건수(A) +불참(각하)건수(B)} × 100	66.5	정량	산출	
		조정중재 성공률(공통)	조정중재 성공률(%) = {합의 조정건수(A)+조정성립건수(B)+화해중재건수(C)+중재판정건수(D)}÷ {조정개시 사건 중 당해연도에 종료된 사건 수(조정개시 이후 각하건수 제외(E))} × 100	66.7	정량	산출	
	5.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의약품 공급내역 적기 보고율(%)	기한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수량 / 의약품 공급내역 전체 수량 *100 *일련번호 보고대상은 출하시(익일까지), 그 외 의약품은 익월까지 보고	99.3	정성	신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명)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명)	170,271	정량	산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법령 개정	법령개정 완료	개정 완료	정성	결과	
	6.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이용환자 수 (단위: 만명)	'21~'23년도 이용환자 수 등 확대 추이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이용환자 수 목표치 산출(약 10%증)	270	정량	산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3교대제 운영 비율 (단위: %)	예측불가능한 3교대제 대신 다양한 근무제 도입 사업 취지에 따라 3교대제 비율 50%이하로 목표 설정(사업 참여전 평균 3교대제 비율 88.9%('22년))	50	정량	산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환자수(명)	24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환자 수 60명x10여개소= 600명 목표 설정	6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자격·부과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개선 추진율(%)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여부 * 각 항목별 가중치 0.05~0.20 적용	100	정성	결과	
	2.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율(%)	시범사업 기관 지정기준 충족률 *기관 신규지정 시 대비 추가 장비, 병상 수 등 인프라 강화 여부	100	정성	결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급여 확대 추진율(%)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여부 * 각 항목별 가중치 0.1~0.3 적용	100	정성	결과	
		공정한 보상체계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추진율(%)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여부 * 각 항목별 가중치 0.1~0.2 적용	100	정성	결과	
	3.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연간 약제 접근성 개선 및 적정관리 추진율(%)	∑ 각 항목별 제도개선 이행여부	100	정성	결과	
	4.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자율점검 사전예방 비율(%)	자율점검 항목의 점검 전·후(1년) 청구금액 평균 감소율	17.85	정량	산출	
		하위기관 적정성평가 결과 향상률(%)	해당연도 평가결과가 향상된 기관수/질 향상 통합관리 기관수	40.1	정량	산출	
	5.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필수의료 보완대책 수립	대책, 연구보고서 자료 활용(건수)	2	정성	산출	
		소아의료 지역협력 시범사업 참여율	시범사업 참여 지역네트워크 /20개지역*100	80	정량	산출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총 진료비*100	12.2	정량	산출	공통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률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기관 수/제출대상기관 수*100	80	정량	산출	
		공사보험협의체 개최	개최여부	1	정량	투입	
	6.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실시율(%)	적합성 평가 실시 항목 수 / 적합성 평가 대상 항목 수 × 100	100	정량	산출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발표여부	1	정성	산출	
		지역 병원 육성방안 수립	발표여부	1	정성	산출	
		지역의료지도 및 지역수가 추진 계획 수립	발표여부	1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1.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병원 도착 90분내 최초PCI 시술률(%)	각 센터의 시술률(90분 이내 PCI) 평균의 합/권역심뇌센터 수 (14개소)	98	정량	산출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운영	5	정량	산출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한국훈련 시행	계획 수립 및 훈련 시행	정성	산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수립	정성	산출	
		2024년 호스피스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수립	정성	산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계획 수립	계획 수립	정성	산출	
	2.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책임의료기관 확충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개소 수(누계)/「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상 목표 지정 책임의료기관 개소 수 (87개소)	83.9	정량	산출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공공병원 경영혁신 계획서 제출 건수 / 41개 공공병원	90	정량	산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혜 가임여성인구비율(%)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가임여성인구수 / 분만취약지 가임인구수	52.2	정량	산출	
	3.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권역응급의료 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를 제공한 환자/권역응급 의료센터에 내원한 최종치료 필요 질환 환자*100	92.0	정량	산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환자 비율(%)	(최초 중증도 분류 결과가 KTAS 1-3등급인 환자 / 내원 환자) x 100	59.3	정량	산출	
	4.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단위:%)	KDLS-B과정 수료자 / KDLS-B과정 참여 대상자 × 100	98.4	정량	산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점검 평균 응답률 (단위:%)	재난안전통신망 월별 정기점검 결과(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약 700여개 기관 대상)	97.4	정량	산출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 발병 후 24시간 이내 내원하여 입원한 중증응급환자	50.1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도착률(단위: %)					
	5.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정자 기증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개정 완료	개정 완료	정성	산출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시 환자 의사 반영 비율(%)	환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이행비율(①+②+③/①+②+③+④)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방법 ①연명의료계획서,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③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가족 진술, ④가족 전원 합의	79.6	정량	산출	
	6.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수 (만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되는 기증 희망자 수 (누적)	42.5	정량	산출	
		기증희망등록자 수 (누계)(만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수 (누계) 집계	298	정량	산출	
		30세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수 (연인원)(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 등 의료기관 혈액원 통계	1,250,000	정량	산출	
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1.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가건강검진 제도개선 이행률(신규)	7대 추진과제 이행률	96	정량	산출	
		금연홍보 사업 인지도(%)	대국민 설문조사	76.8	정량	산출	
	2.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점)	전국의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참여에 따른 건강개선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화	81.5	정량	결과	공통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이용자 만족도 (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9.8	정량	결과	
	3.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록 환자 수(명) (공통)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 수	660,000	정량	산출	
		구강질환 예방관리율(%)	①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25%)+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25%) + ②성인 스케일링 이용률(25%) + ③노인 방문진료이용률(25%) 가중합산	23.0	정량	결과	
		구강보건사업 성과도(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건강	91.1	정성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개선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 수(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장애인 환자 수	90,000	정량	산출	공통
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1.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0.0	정성	결과	공통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수혜자 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동료지원센터, 공공후견활동지원, 절차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서상 수혜자 수	2,451	정량	산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수혜자 수	'24년말 기준 권역정신응급센터 지정 기관수	12	정량	산출	
	2.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재난 심리지원 담당 인력 교육·훈련 이수 인원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집계한 재난 심리지원 직무교육 이수자 수	450	정량	산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지원 대상 등록자 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 등록자 수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수	23.5	정량	산출	공통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수(명)	750	정량	산출	
		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리커트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0.0	정성	결과	
	3.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실인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관리된 인원(명)	32,056	정량	산출	공통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율(%)	사례관리서비스 동의자 수/ (이번 자살시도에 대한 의학적 결과-사망, 응급실 사업 수행 병원 전원)을 제외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총수	66.3	정량	산출	
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1.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의·한 협진 의료질 개선도(단위:점)	시범사업 표준임상경로 도입률 × 0.5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환자 만족도* × 0.5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환자들 중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환자의	85점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비율 분석				
		한의약 서비스 활성화(단위:건)	①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미추진 지역 컨설팅 건수 + ②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활용 보건소 수	2개 56건	정량	결과	
		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단위%)	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中 인증제참여 개소수/이용기관수 500개소 이상 원외탕전실 개소수 *100	53	정성	산출	
	2.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한의약 R&D 표준진료지침 개발 건수 (단위:건)(공통)	당해연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 표준진료지침 추인 건수	5	정량	산출	
		한의약 제품개발 맞춤형 기업지원금 대비 매출 기여율(단위:%)	3개년도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금 대비 제품 매출액 비율=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제품매출액)/∑(지원금)*100	64.0	정량	결과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 (단위:명)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	9,000	정량	산출	
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1.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정책 기획·총괄 건수 (단위: 건)	국내외 복지 동향분석 보고서 및 장.차관 보고자료 건수	10	정량	산출	
		복지소외계층 발굴 건수 (단위 : 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좋은이웃들)으로 발굴한 위기가구건수	38,000	정량	산출	
	2.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전체 빈곤층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생계급여 수급자 수/전체 빈곤층*) ×100 * 주민등록인구수(행안부)× 상대적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22.3	정량	산출	
		신규수급자 발굴률 (%)	(신규수급자수/ 총 수급자 수) ×100 * 생계급여 신규 및 총 수급자수	13.6	정량	산출	
		긴급지원의 신속처리율(%)	총지원 건수 중 3일 이내 지원 결정비율 (단, 의료지원은 5일 이내)	97.0	정량	산출	
	3.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복지부 자활성공률	자활 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 + 취·창업자 수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gateway +창업지원 참여 수급자 수 * 사망, 전출 제외	24.7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자산형성사업 계좌 유지율	(만기(중도)지급자 수 + 유지자 수) / (계좌 누적 가입자 수) * 연도말 기준	75	정량	산출	
		근로능력평가 적기처리율	(21일 이내 적기 처리건수 /근로능력평가 총 결정건수) X 100	87.6	정량	결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교육참여 종사자수 / 시설 전체 종사자수 (기능·기술직 제외)	30	정량	결과	
	4.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신규 수급 가구 수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 수	8,400	정량	산출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만족도(%)	재가의료급여 만족도 및 경험조사('23.6, 한국리서치) 중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결과 (5점 척도 중 '매우만족' 및 '만족' 응답비율	80.5	정량	결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자 유지율(%)	(퇴원 후 재가 유지 대상자 수/재가의료급여 시범대상자 수) ×100	88	정량	산출	
		사례관리 전후 수급자 건강수준 향상도(점)	(사례관리 개입 후 1인당 평균점수) - (개입 전 1인당 평균 점수)	9	정량	산출	공통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1.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24년 긍정적 종결 대상수)/ ('24년 전체 종결 대상수)] ×100 -사례관리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긍정적인 결과(장기목표달성, 단기목표달성, 상황호전)로 종결된 사례관리가구 비율로 산출	87.5	정량	결과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제공(건수)	민관복지서비스(공적급여+민간복지자원) 연계건수 누적 취합	476 만건	정량	산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개)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수	229	정량	산출	
	2.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준 마련을 통한 복지사업 표준화	∑ 기준표준화 복지사업 적용 - 실제기준적용사업/ 기준적용대상사업 ×100	80%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복지멤버십 안내사업 추가 개수	추가된 안내사업 개수	30종	정량	결과	
	3.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빅데이터 분석 모형의 위기가구 예측 정확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조치완료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49.7	정량	산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관리되는 대상자 중 공공·민간서비스 지원으로 조치 완료된 대상자 수(중앙/지자체 발굴)	67.1	정량	결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수(만 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누계	136	정량	산출	
	4.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지원 건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복지사업 행복이음 개선·반영 건수	40	정량	산출	
		사회보장데이터 기반 지원대상자 발굴·연계 건수	①수급희망이력관리 수혜자 수 +②공공 요금감면 서비스 연계 가구 수 ①복지급여 수급탈락자에 대해 기준완화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여부 재산정으로 실제 수혜로 연계된 대상자 수 ②공공 요금감면 신청 안내자 중 실제 수혜로 연계된 가구 수	139,974	정량	결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억원)	확인조사 수행으로 발생하는 연간 급여 절감예상액 = 자격중지자 × 보정계수 × 사업별 평균 예상급여 + 급여변동자 × 변동급여액 × 12개월	10,751	정량	산출	
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1.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국민연금 인식도 개선(점)	(국민연금 인지도+ 국민연금 필요도) / 2	76.0	정량	결과	
		보험료 납부자 비율(%)	[사업장+지역(소득신고)+ 임의(계속)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100	86.8	정량	산출	
	2.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투자 다변화 (해외, 대체투자 비중확대) (단위 : %)	(해외채권+해외주식+ 대체투자 금액/ 국민연금기금 금융자산 금액)×100	55.2	정량	산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마련 여부	수립	정성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기초연금 수급자 수	'24년 12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수	678.9만명	정량	산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률	연간 이력관리 신청자 수 / 연간 기초연금 신청자수 ×100	93.6%	정량	산출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맞춤형 상담률	장애인 맞춤형 시뮬레이션 상담 건 수/통합상담 실시 장애인 수 × 100	21.5	정량	산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모델 참여도	시범사업 운영 참여신청자 수/목표인원 수× 100	85.0	정량	산출	
		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점)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 / 항목 수	80	정량	결과	
	2.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BF인증 건수	BF인증 실적 반영 - '23년 실적대비 5% 증가한 실적	2,343	정량	산출	
		장애차별 인식수준 개선율(%)	(사후평가-사전평가)/(사전평가) * 100%	50.5%	정량	결과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신고조사 건수	학대의심사례 × 100%	3,117	정량	산출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비중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100 (연말 기준)	6.0	정량	산출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일자리참여인원 참여일의 합÷(배정인원×366일))×100	96.3	정량	산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취업자의 취업유지율 (6개월)	(6개월취업인원 / 취업인원) ×100	79.0	정량	산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내 장애인근로자 고용증가율	당해 연도 장애인근로자 수 - 전년도 장애인근로자 수/전년도 장애인 근로자 수×100	6.2	정량	산출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일상생활 향상도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점수 산출	86	정량	산출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대상 전문기관 설문 실시	91.6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11,000	정량	산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이용자	장애아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합	5,500	정량	산출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시스템 등록 기관 수	시스템 등록 기관 수	18	정량	산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개소수	7	정량	산출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 비율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어린이 재활 환자 구성 비율의 합 / 기관 수 * (만 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환자 수/전체 전문재활치료환자 수)*100%	42	정량	산출	
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1.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사회보장 주요정책 수립 및 관리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개최 횟수	30	정량	투입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활용한 분석 자료 산출	SOCX 정책영역별 분석 자료 건수	6	정량	산출	
	2.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비율(%)	전체 협의요청 건수 중 컨설팅을 통한 재협의 건, 또는 협의요청서를 수정·보완한 건 및 컨설팅 결과 통보 건의 비율	44	정량	산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만족도(점)	권역별 교육·컨설팅 후 사업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	83	정량	결과	
	3.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율(%)	(실제 시범평가 추진건수 / 시범평가 추진계획 건수) * 100	85	정량	산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건)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된 현황, 활용 건수	15	정량	산출	
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1.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점)	'홍보 캠페인 접촉 후 결혼·출산 ·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와 '홍보캠페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 응답 평균(매우	65.5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그렇다+그렇다) 응답 비율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2.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92.4	정량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5점 척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91.3	정량	결과	
	3.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자기돌봄비 수급 가족돌봄청년 달성률(%)	자기돌봄비 수급인원 / 자기돌봄비 신규 목표인원(960명)	80%	정량	산출	공통
		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 인원 달성률(%)	고립은둔 발굴·지원 인원 / 고립은둔 발굴·지원 신규 목표인원((320명)	80%	정량	산출	공통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참여·소통 수(건)	전체회의, 정책 간담회 행사 참여, 정책 자문·심사, 언론, 홍보 등 참여 실적 산출	30	정량	산출	
	4. 임신·출산 건강 지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 = 만족도 평가점수 / 만족도 총점(20점) × 100	95.0	정량	결과	
		미숙아 NICU 퇴원후 생존율(%)	KNN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88.2	정량	결과	
		임신·출산 종합 상담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설문 조사(5점척도) 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85.2	정량	결과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단위: %)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수 / '24년 출생아수(연도말 기준)×100	95.0	정량	결과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1.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	입양체계 개편 세부시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 유관기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세부시행방안 마련	마련	정성	산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횟수의 총합/229(시·군·구 개수)	7.8	정량	투입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마련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기본계획안 마련	마련	정성	산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연구용역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하위법령 제정	마련	정성	산출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율(%)	(해당 연도 사후관리 실시한 자립준비청년 수 / 최근 5년 이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수) * 100	73.2	정량	결과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 / 사업참여자수 * 100	42.4	정량	결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 기능향상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14문항) 점수	75.8	정성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기여도(점)(공통)					
	3.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횟수(회)	정보연계협의체 전체 운영 횟수/시군구 개수	10.2	정량	투입	
		위기발굴아동 서비스 연계율(%)	(3년간 서비스 연계건수/3년간 전체 대상자수) × 1.05	13.2	정량	결과	
		학대피해아동별 서비스제공 실적	전체서비스제공횟수/학대피해아동수	80	정량	산출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취약 노인 돌봄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점)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100점 환산)	87	정성	결과	공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자 만족도(점)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100점 환산)	90	정성	결과	
		노인학대 사후관리 횟수	최근3년 학대판정노인 사후관리건수/최근3년 노인학대 판정건수	3.7	정량	산출	
	2.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단위 : 천명)	노인일자리참여자 수 합산(중복제거)	1,030	정량	산출	공통
		시니어인턴십 장기 고용률(%)	장기고용인원(18개월 이상)/전년도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수	22	정량	산출	
		노인자원봉사 참여자 수 (단위 : 천명)	위탁기관별 성과보고서	48	정량	산출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	7개 프로그램 분야 중 전년대비 1개 이상 프로그램 확대한 경로당 수	7,009	정량	산출	
		공설 장사시설 설치 예산 실집행률 (단위 : %)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취합	74	정량	산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통합재가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개소)	예비사업 참여기관 수	150	정량	산출	공통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실시기관 수(개소)	운영컨설팅 실시기관 수	200	정량	산출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기관 수(개소)	자율점검 실시 기관 수	80	정량	산출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수급자(명)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수급자	3,800	정량	산출	
		중증수급자(1·2등급) 월 한도액 인상	고시 개정 여부	고시 개정	정량	과정	
	4.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개소 수(개)	'24.12.31 기준 치매전담실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수	395	정량	산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서비스	리커트 5점 척도 방식	85	정성	결과	공통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만족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실적(명)	'24년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자 수	2,200	정량	산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도(건)	'24.12.31 기준 요양시설 종사 (계약)의사 수 대비 진료건수	661	정성	산출	
	5.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내실화 및 노인건강관리 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공통,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자	81.2	정량	산출	공통
		치매파트너즈/치매 파트너즈 플러스 누적 모집 인원(명)	수행기관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모집한 실적(누계)	1,725,792/ 238,504	정량	산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치매환자, 보호자 등) 만족도 조사 결과(5점~1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91.2	정성	결과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부모급여 지급률(%)	부모급여 지원 아동 수/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수	95	정량	산출	
		보육료 지원 서비스 만족도(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드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3.0	정성	결과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호봉)	보육교사 호봉총합/전체 인건비 지원 보육 교사 수	9.2	정량	산출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비율(%)	(중복 제거한 연간 이용아동 수)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자 수) x 100	8.3	정량	산출	공통
		가정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설문지(리커드 5점 척도) 통해 만족도 조사결과 100점 기준으로 환산	71	정성	결과	공통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개소)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개소수	1,707	정량	산출	
	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평가 유지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	94.6	정량	산출	
	3.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측정산식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 100	30.9	정량	산출	공통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 수	85	정성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점수)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5점 척도 기준	4.36	정성	결과	
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 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평가 실시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실적 성과평가 실시	실적 성과평가 실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누적 모집 공유기관 수	공유기관 모집 수	22	정량	산출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공통)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 합	800	정량	산출	
		신규펀드 조성시 펀드 결성 목표액 달성률	신규펀드 조성 시 펀드 결성목표액 달성률 = 신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결성 총액/신규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결성목표액 x 100	100	정량	산출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한 횟수(회)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워킹그룹' 분과별 논의 횟수 총합	3	정량	투입	
		개선한 규제과제 수(개)	'24년 개선한 규제과제 수	5	정량	산출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인력 수의 합	2,800	정량	산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종합만족도 평균	85.0	정량	결과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노력도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노력 및 안정화	7	정량	산출	
	3. 사회서비스 자원 관리 효율화	전년도 평가 미흡시설의 맞춤형 컨설팅 참여율	(참여시설/대상시설)*100	90%	정량	산출	
		자원봉사 등 주요 나눔활동의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봉사시간×최저시급)+기부식품 등 모집금액+사랑나눔실천 모금액)	4,004 억원	정량	산출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수	600 개소	정량	산출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현업 적용도	5점 리커트 척도	3.95	정량	산출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만족도	시도별 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94.5	정량	결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간담회 등	6	정량	투입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일자리 고도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회의 개최 횟수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보건산업 창업육성지원 건수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수혜기업 수	350	정량	산출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수(만명)	해당연도 4분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제조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 합계	108.3	정량	산출	
		첨복재단 인프라 활용 기업지원 건수(건)	대구경북 및 오송첨복재단 장비를 활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분석평가/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임상시료생산 등 지원 건수	3,104	정량	산출	
	2.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보건의료 R&D분야 종합계획 수립(건)	계획 수립 건수	4	정량	산출	
		보건의료실용화 지수(점)	(임상시험 승인 건수×0.7) + (품목허가 건수×1.0)+ (기술이전 건수×1.3)	105	정량	결과	
		의사과학자 사업 지원 인원(명)	융합형 의사과학자 선발 인원수 + 글로벌 의사과학자 선발 인원수	127	정량	투입	
	3.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약바이오 수출액(억불)	제약바이오 분야 수출액	77.9	정량	산출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과제의 매출액 증가율(%)	∑테스트 지원 제품의 매출액 증가율 / 지원과제 수	40	정량	산출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활용 건 수(건)	화장품 안전성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한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활용 건 수	2,000	정량	산출	
	4.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수(만명)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실환자 수	40	정량	산출	
		의료 해외진출 수 (누적 건)	'24년도에「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진출로 신고 완료된 건수	239	정량	산출	
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1.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된 의료기관 수	1,00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수(누적, 개소)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 (누적, 개)	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 수	9,400	정량	산출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전송 건수 (만건)	의료기관에서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한 영상정보 건수(당해년도)	40	정량	산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심사건수(건)	인증위원회의 인증 심의 건수(당해년도)	100	정량	산출	
	2.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데이터셋 (건수)	데이터 제공기관의 데이터셋 측정	40	정량	산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연구 건수(건)	연구 결과보고서 건수	175	정량	산출	
		핵심교류데이터 (KR CDI) 항목 마련(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항목 수	81	정량	산출	
		데이터 · AI 인력 양성 교육 참여자 만족도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4.1	정량	결과	
	3.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관 수 (누적, 개소)	101	정량	산출	
		임상연구 신청건수	임상연구 신청 건수(누적)	150	정량	산출	
		재생의료 R&D 사업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건수(누적)	36	정량	산출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①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1)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4)
	② [민생]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1)
	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2)
	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⑥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 · 돌봄지원체계 강화(45-2)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1)
2.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건강보험 신뢰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4)
	②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1, 66-2, 66-4)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1, 67-2)
	③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3)
	④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4)
	⑤ [민생]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1, 66-3, 66-4)
	⑥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66-1, 66-2, 66-4)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① 체계적인 질병광리 체계 구현선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 2-3)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 66-2)
	②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 66-1, 66-2)
	③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 2-3)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 66-2)
	④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 66-2)
	⑤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⑥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②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국정45-5)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1)
	③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1)
	④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국정47-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5. 온 국민 마음건강대책 추진		
	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3)
	②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3)
	③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67-3)
6.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① 한의(韓醫)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Ⅱ. 약자복지 강화 및 복지-성장 선순환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1. 공공부조 혁신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		
	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5)
	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국정43-1, 43-3)
	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91-3)
	④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안화 추진 검토(국정43-2)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 [민생]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3)
	②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3)
	③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3)
	④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3)
	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3)
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 [민생]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내실있는 국민연금 운영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개혁 (국정42-1)
	②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개혁 (국정42-1)
	③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개혁 (국정42-1)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지립지원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국정47-1, 47-2)
	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국정47-5)
	③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 촉진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국정47-3)
	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국정47-4)
	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47-2, 47-4)
5.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①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개혁 (국정42-2)
	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개혁 (국정42-2)
	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개혁 (국정42-2)

Ⅲ.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통한 선제적 미래 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 [민생]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4)
	②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3)
	③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신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91-3)
	③ 임신·출산 건강지원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4)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5)
	②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5)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91-3)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5)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 취약 노인 돌봄 강화	·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지원체계 강화(국정45-3, 45-4, 45-5)
	②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국정45-1)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국정45-3)
	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지원체계 강화(국정45-3)
	⑤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국정45-3)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2)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2)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46-2)
5.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1, 44-2)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1, 44-2)
	③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화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1)
	④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44-5)
Ⅳ.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		
1. 바이오헬스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25-1)
	②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25-1, 25-2)
	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25-1)
	④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① [민생]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 25-3)
	②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 25-4)
	③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 25-1)